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ing Correctional Treatment to Support
the Inmate's Child Rearing

권수진·신연희

머리말

우리나라 교정시설에는 수용자 이외에, 임신부 수용자의 태아와 수용자가 낳은 만 18개월 이하의 유아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죄로 인해 부득이하게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는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부모와 분리되어 보호와 양육 측면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된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들이 수용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 나은 환경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정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정시설 내 임신부 수용자, 교정시설에서 만 18개월 이하 유아를 양육 중인 수용자와 유아,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 수용자들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수용자와 관계 직원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자세히 비교 검토하여,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결과로 제안된 개선방안이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에 밑거름이 되어, 수용자 자녀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더 나은 환경에서 보호, 돌봄, 지원을 받으며 자라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연구원은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자문 및 자료 협조 등 많은 도움을 주신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 조사에 응해주신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교정직원, 워크숍 및 자문회의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교정본부 금융명 서기관님, 김영식 서기관님, 윤순풍 서기관님, 권창모 사무관님, 고재익 사무관님, 한세대학교 박선영 교수님을 비롯한 자문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함께 수행한 성결대학교 신연희 교수님, 윤이경 조사연구원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부연구위원 권 수 진



목 차

국문요약	1
------------	---

제1장 권수진

서 론	5
-----------	---

제1절 연구의 목적	7
------------------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	----

1. 연구의 범위	11
-----------------	----

2. 연구의 방법	12
-----------------	----

제2장 권수진

우리나라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15
----------------------------	----

제1절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의 발전	17
-------------------------------	----

1. 고려시대	17
---------------	----

2. 조선시대	18
---------------	----

3. 일제 강점기	21
-----------------	----

4. 형행법 적용 시기(1950년~2008년)	22
---------------------------------	----

5. 형집행법의 제정 및 관련 규정의 변화	26
-------------------------------	----

제2절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관련 법제도	30
-------------------------------	----

1. 국내 법규	30
----------------	----

2. 국제 규칙 및 협약	45
---------------------	----

3. 수용자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53
----------------------------	----

4. 관련 부처의 정책	63
--------------------	----

제3절 수용자 자녀 양육 현황	75
1. 임신, 유아 양육 현황 및 처우	75
2. 수용자 미성년 자녀 양육 현황 및 처우	76
3. 민간단체의 수용자 자녀 지원 현황	80
제4절 수용자 자녀 양육 관련 정책권고 및 판례	81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권고 사례	82
2. 법원 판례	83
3. 헌법재판소 판례	84

제3장 신연희

수용자 자녀 양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87

제1절 조사목적과 조사내용	89
제2절 조사방법	91
1. 연구모집단 일반현황	91
2. 조사대상자	94
3. 자료 분석	98
제3절 조사결과	98
1. 설문조사 결과	98
2. 심층면접 결과	119
제4절 소결	136
1. 주요 발견사항 요약	136
2. 정책함의	143

제4장 권수진

외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155

제1절 미국	157
--------------	-----

1. 임신부 수용자 처우	157
2. 교정시설 내 유아 양육 지원	172
3. 수용자 자녀 지원	185
제2절 영국	198
1. 임신부 수용자 처우	198
2. 교정시설 내 유아 양육 지원	201
3. 수용자 자녀 지원	206
제3절 독일	213
1. 임신부 수용자 처우	213
2. 교정시설 내 유아 양육 지원	215
3. 수용자 자녀 지원	221
제4절 일본	225
1. 임신부 수용자 처우	225
2. 교정시설 내 유아 양육 지원	230
3. 수용자 자녀 지원	235
제5절 대만	236
1. 임신부 수용자 처우	236
2. 교정시설 내 유아 양육 지원	241
3. 수용자 자녀 지원	245
제6절 국가별 교정기관 유아 양육 관련 규정	247
제7절 시사점	251

제5장 권수진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개선방안 253

제1절 임신부 수용자 처우 개선	255
1. 수용 환경 및 처우 개선	255
2.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지침 마련	258
제2절 유아 양육 수용자 처우 개선	259

1. 유아 양육 환경 개선	259
2. 유아 양육 지원	260
제3절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 처우 개선	262
1. 체포 구속시 자녀 보호	262
2. 수용자 자녀 정보 파악 및 지원	264
3. 가족 교류 확대	269
4. 부모 역할 지원	275
제4절 자녀보호를 위한 형사제재	276
1. 기존 구금제도의 개선	276
2. 대안적 형사제재의 활용	277

제6장 권수진

결 론	281
-----------	-----

참고문헌	285
------------	-----

Abstract	303
----------------	-----

부록 설문지	307
--------------	-----

표 차례

[표 2-2-1]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63
[표 2-2-2]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64
[표 2-2-3] 피의자 체포 시 자녀 배려 등 유의사항	71
[표 2-3-1] 교정시설 내 임신부 수용자 현황	75
[표 2-3-2] 교정시설 내 만 18개월 이하 유아 양육 현황	75
[표 2-3-3]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연령별 현황	76
[표 2-3-4]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관계 현황	77
[표 2-3-5] 미성년 자녀를 둔 기결수형자 현황	77
[표 2-3-6] 1년간 미성년 자녀와의 전화통화 횟수	77
[표 2-3-7] 1년간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 횟수	78
[표 2-3-8] 1년간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현황	78
[표 2-3-9] 수용자 자녀 지원 현황	79
[표 2-3-10] 결정 이유 중 Ⅲ. 민사집행과정의 아동인권 보호방안 검토 ‘판단’ 내용	82
[표 2-3-11]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2019.5.7.	83
[표 2-3-12] 서울고등법원 2015.9.18. 선고 2015노1430판결 이유	84
[표 2-3-13] 헌법재판소 2003.11.27. 선고 2002헌마193 결정요지 일부	85
[표 3-2-1]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일반현황	93
[표 3-2-2]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현황 파악 주요조사의 조사결과 비교	94
[표 3-2-3] 조사대상 기관별 조사대상 인원과 설문조사 실시인원	95
[표 3-2-4] 유아 양육 및 임신부 수용자 심층면접 대상자	96
[표 3-2-5] 어린 자녀를 둔 남녀 수용자 심층면접 대상자	96
[표 3-2-6]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 대상자	97
[표 3-2-7] 조사유형별 조사대상자 구성	97
[표 3-3-1] 수용자의 어린 자녀 수 및 연령별 현황	99
[표 3-3-2] 수용자의 일반적 특성	101
[표 3-3-3] 형사사건 진행 단계별 자녀 양육자 유형 현황	103
[표 3-3-4] 가정의 경제적 상황	104

viii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표 3-3-5] 수용 전 자녀와 동거여부 및 체포현장 자녀 소재	105
[표 3-3-6] 수용자와 자녀 및 양육자와의 관계	106
[표 3-3-7] 수용사실에 대한 자녀의 인지	107
[표 3-3-8] 수용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유	108
[표 3-3-9] 자녀와 교류제도 이용현황 및 이용욕구	109
[표 3-3-10] 자녀 접견 빈도에 관한 의견	111
[표 3-3-11] 접견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113
[표 3-3-12] 자녀와의 접촉제도 개선에 관한 수용자 욕구	115
[표 3-3-13] 자녀문제 유형별 동조율	116
[표 3-3-14] 자녀 지원에 관한 수용자 욕구	117
[표 3-3-15] 출소 후 자녀 부양 의사	118
[표 3-3-16] 출소 후 걱정되는 사항	119
[표 3-3-17] 심층면접자 구성(유아 양육 및 임신부 수용자)	120
[표 3-3-18] 심층면접자 구성(어린 자녀를 둔 남녀 수용자)	120
[표 3-3-19]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 대상자	121
[표 3-3-20] 심층면접 조사내용	121
[표 3-3-21] 양육유아 및 임신부의 시설 내외 환경과 처우욕구	122
[표 3-3-22] 수용자 어린 자녀들의 양육환경 실태와 처우욕구	129
[표 4-2-1] 영국 엄마와 아기 유닛(MBU) 운영 현황(2013~2015년)	205
[표 4-3-1] 독일 여성 수용자 현황	214
[표 4-3-2] 독일 여성 기결수 현황	214
[표 4-4-1] 일본 형사시설의 수용율 추이	226
[표 4-4-2] 일본 형사시설 남녀 수용인원 추이	227
[표 4-5-1] 대만 수용자 현황	237
[표 4-5-2] 대만 여자감옥 3개소의 수용자 현황	238
[표 4-5-3] 도원여자감옥 진료 시간표	240
[표 4-6-1] 국가별 교정기관 유아 양육 관련 주요 사항	247



그림 차례

[그림 2-2-1] 국내 교정시설의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37
[그림 2-2-2] 수용자 자녀 지원체계 절차	67
[그림 4-1-1] 교도소 임신 통계 프로젝트 참가 지역	159
[그림 4-1-2] 임신부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금지법을 제정한 주	167
[그림 4-1-3] 일리노이 주 로건 교정센터 임신부 특별 시설	172
[그림 4-1-4] 뉴욕 주 베드포드 힐스 탁아소 시설	177
[그림 4-1-5] 일리노이 주 디케이터 교정센터 시설	179
[그림 4-1-6] 워싱턴 여자교도소 “양육주거 프로그램” 시설	182
[그림 4-1-7] 오하이오 여자 교정시설(Ohio Reformatory for Women)의 탁아시설	183
[그림 4-2-1] 영국 엄마와 아기 유닛(MBU) 방 내부	204
[그림 4-2-2] 아동 친화적 교도소 방문자 센터	208
[그림 4-2-3] 수용자 가족 도움의 전화 안내서	209
[그림 4-3-1] 어머니-자녀-수용시설(JVA Schwäbisch Gmünd)	218
[그림 4-3-2] 디아코니 “자유공간” 팸플렛	222
[그림 4-4-1] 가코가와형무소 보육실 시설	233
[그림 4-5-1] 임신부 수용자 의료처우	239
[그림 4-5-2] 임신부 특별식 및 영유아 건강검진	240
[그림 4-5-3] 양육유아 수용거실	242
[그림 4-5-4] 교정기관 내 보육실 및 시설물	242
[그림 4-5-5] 유아원 통학 및 유아원 통학 버스	244
[그림 4-5-6] 야외수업	244
[그림 4-5-7]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245
[그림 4-5-8] 미성년 자녀 접견 관련 사진자료	246

우리나라 교정시설에는 수용자 이외에, 임산부 수용자의 태아와 수용자가 낳은 만 18개월 이하의 유아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죄로 인해 부득이하게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는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보호와 양육 측면에서 열악한 처지에 남겨진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이 있다. 이 연구는 이들이 수용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 나은 환경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정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정시설 내 임산부, 교정시설에서 만 18개월 이하 유아를 양육 중인 수용자,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수용자들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외국의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수용자의 자녀 양육을 배려하는 국내 규정을 살펴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제53조의2), 접견(제41조), 동법 시행령의 접견(제58조) 및 접견의 예외(제59조), 동법 시행규칙의 접견장소(제99조),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복장(제9조)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집행법에는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제53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교도소장이 신입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녀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의무화되었다. 이에 더하여,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41조 제2항 및 제3항).

한편, 수용자 자녀와 관련한 국제협약으로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UN)최저기준 규칙(만델라규칙), 유엔(UN)여성수감자 처우와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 유엔(UN)아동권리협약, 2018년 유럽평의회 수용자 자녀 권리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권고안 등이 있다. 특히, 유엔(UN)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은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

2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로 인해 차별받아서 안 되고(제2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제3조), 부모와 분리된 아동은 부모와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접촉을 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이러한 규정들은 우리에게 강제되지는 않으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교정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3월에, “부모의 체포, 사법절차, 법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청장,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수용자 자녀 양육 실태를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자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조사표본 수용자들의 자녀들은 양육자의 부재 내지는 안정성이 결여된 양육환경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양육환경의 특성으로서 절반 정도의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었으며, 한쪽 부모가 양육자인 경우가 많았고, 조손 가정이 늘어가는 경향이 뚜렷하였고, 시설에 있거나 자녀끼리 방치된 어린 자녀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수용자 가정의 상당수가 가난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극빈가구가 2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의 대다수는 부모가 수용되기 전에 부모와 함께 살았고, 일부는 부모가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의 70% 이상이 부모의 수용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수용된 부모의 대부분은 향후에도 자녀에게 수용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비교법적 연구로 미국과 영국, 독일과 일본, 대만의 교정시설에서의 임신부 수용자와 유아 양육, 수용자 자녀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다. 미국은 임신부 수용자 데이터를 구축하고, 임신부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의 사용 금지를 비롯하여 교정시설 내 임신부 지원을 위한 법령 제정에 노력해 왔다. 그리고, 미국은 임신부 수용자를 위한 특별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신부 도우미 둘라(Doula)제도를 활용하여 임신, 출산 전후 여성 수용자들을 지원하고, 모성 및 돌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수용자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서도

경찰, 보건복지부, 법원, 교정본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다. 영국은 민간단체 출산 동행(Birth Companions) 등을 통해 임산부와 아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에 엄마와 아기 유닛(Other and Baby Unit)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민간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방문자 센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도움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 및 각 주의 행형법에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시민 여성에 대한 지원과 상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여자 교정시설에 어머니 수용자와 아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인 어머니-자녀-수용시설(Mutter-Kind-Heim)을 설치하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어머니 수용자가 함께하지 못하는 아이와의 외출, 유치원 통원, 외부병원 진료 등 아이의 보육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카리타스협회는 수용자 가족을 위한 온라인 상담과 수용자 아이들을 위한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다수의 여성 전문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정시설 내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 등과 관련하여 의료처우를 실시하고 있고, 과밀수용이 문제가 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수용자 자녀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에 위탁하기 시작하였다. 대만에는 다수의 여자교도소가 있고, 유아 수용거실, 보육실, 야외 놀이터 등의 별도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수용자 자녀를 위한 보육교사가 배치되어 도우미 여성 수용자와 함께 수용자의 유아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 자녀 중 만 2세 이상 유아는 외부 유아원 통학도 가능하다. 이처럼 대만은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유아 보육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유아인 자녀가 유아원에 있는 동안 수용자는 작업 및 직업훈련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만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상황 및 지원 필요 여부 등을 파악하여, 사회국에 가정방문을 요청하거나 작업기금으로 취학보조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임산부 수용자에 대하여는 수용 환경 및 처우의 개선으로서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충분한 영양공급, 냉난방 및 온수목욕 확대, 수용거실 환경 개선,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지침 마련을 제안하였다. 둘째, 교정시설 내 유아 양육 수용자에 대해서는 유아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방교정청별 여자교도소의

4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추가 설치 및 유아 양육 시설 설치, 유아 수용 거실 환경의 개선, 유아 양육을 위한 자비 구매물품의 확대, 유아 양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였다. 셋째, 사회에 남겨진 수용자의 어린 자녀의 양육 지원을 위해서는 부모의 체포·구속시 자녀들을 보호하여 수용에 따른 자녀들의 충격을 완화하고, 자녀위탁시설을 마련하며,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정보 파악과 수용자 가정 지원, 스마트접견 등 접견 개선, 가족관계회복 지원 등 가족 교류 확대, 그 외 부모 역할 지원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으로 임신부와 어린 자녀가 있는 수용자에 대한 근거리 교정시설 배정, 자녀 보호를 위한 외출휴가를 제안하였다. 다섯째, 임신부와 어린 자녀가 있는 피고인의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주말구금, 주중구금, 재택구금 등의 대안적 형사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제안된 개선방안이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에 밑거름이 되어, 수용자 자녀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더 나은 환경에서 보호, 돌봄, 지원을 받으며 자라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제 1 장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서 론

권 수 진

제1절 | 연구의 목적

교정시설에는 수용자 이외에 임신부 수용자의 태아, 만 18개월 이하의 유아가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죄로 인해 부득이하게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는 부모의 체포, 구속을 직접 목격하여 심리적 충격을 받거나 그 과정 중 방치된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도 있다. 이들은 부모의 교정시설 수용으로 가정 해체, 경제적 빈곤,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 사회적 낙인 등 여러 면에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즉, 수용자의 자녀들은 범죄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받는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범죄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배우자를 대신해서 다른 한쪽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 자녀의 유일한 양육자였던 경우, 이들의 자녀들은 조부모, 친인척, 지인에게 맡겨지거나 위탁시설로 보내지게 되며, 심지어 홀로 방치되기도 한다.

유엔(UN)아동권리협약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아동은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제2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선

1) 유엔(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 금지, 불법 해외 이송 및 성적 학대 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 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한국(1991년 가입)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이 비준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1052&cid=43667&categoryId=43667>, 2019.12.15. 최종검색)

8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조). 그리고 부모와 분리된 아동은 부모와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접촉을 할 권리가 있다(제9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3월에, “부모의 체포, 사법절차, 법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청장,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²⁾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임신부와 유아를 양육 중인 여성 수용자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동법 시행령 제78조(출산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 형집행법 제53조(유아의 양육) 규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와 달리 부모의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부모와 분리되어 사회에 남겨진 자녀들의 수는 상당하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수용자 자녀 수는 일일 평균 약 22,000명, 연간 약 54,000명이다.³⁾ 수용자와 그 자녀들을 배려하는 규정으로, 형집행법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제41조(접견), 동법 시행령 제58조(접견) 및 제59조(접견의 예외), 시행규칙 제99조(접견장소),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복장 등)이 마련되어 있다. 이 중 신입 수용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 보호조치를 의뢰하고, 교정시설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한 형집행법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미성년 자녀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41조(접견) 등의 규정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하여 2019년에 새로 마련된 규정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의하면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장에게는 피고인에게 구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의 유무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에게는 아동의 부모에 대한 접견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정시설 내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설치 및 아동친화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접견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2019.3.14., 1~2면 참조.

3)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용자 자녀 수는 일일 평균 22,000여 명, 연간 54,000여 명으로 추산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필요 제도 개선 등 권고”, 2019.5.30.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4&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4184>, 2019.12.15. 최종검색)

수용자 자녀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가 실시된 바 있는데, 부모의 수용으로 인한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 국내 학계가 주목한 초기단계에서는 수용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항목 중에 자녀들의 현황이 일부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그러다가 점차 부모의 수용이 자녀의 생활이 미치는 영향, 지원 필요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로 발전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성 수형자 중 74.2%가 자녀가 있으며 이들의 71%가 자녀와의 면회경험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보고한 연구,⁴⁾ 기혼기결수형자를 대상으로 구금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관한 성별 차이를 비교하면서 수용자 자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⁵⁾ 장기수형자의 처우 및 교정관리에서 가족관계가 장기수형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때 수형자의 가족관계의 특성을 혼인관계 변화, 가족의 경제적 형편, 자녀 관계로 구분하고, 자녀들은 생계부양자의 수용으로 인해 극빈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⁶⁾가 있다.

한편, 수용자 자녀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주목하여 2007년 법무부 인권국이 지원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수행한 연구로 『수용자 가정건강성 실태조사』가 있다. 이 연구는 전국 8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결수형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녀들의 양육환경 실태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⁷⁾ 그리고 법무부 산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2014년에 출소자와 출소 예정 수형자를 대상으로 수용자 가족복원 및 자녀 지원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⁸⁾ 2015년에는 구치소 미결수용자 1,005명에 관한 자료 분석을 통해 부모와 분리된 초기단계의 자녀들의 상황에 대해 보고하였다.⁹⁾

이 외에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 관한 인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제기한 연구¹⁰⁾

4) 최인섭, 『여자수용자의 처우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5) 신연희, 『기혼여자재소자에 관한 연구: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6) 김승만/신연희, 『장기수형자 처우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80~84면; 정영진/신연희, 『장기수형자 처우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7) 전영실/신연희/김영식, 『수형자 가족관계 건강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 연구』, 법무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8) 이동훈/신연희/최관/방기연,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가족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4.

9) 신연희,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 지원필요성과 지원방안”, 「한일 수용자자녀 및 가족지원에 관한 실태와 과제 정책세미나」 발표문, 국회의원 유승희 의원실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2015.

10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등이 있다. 최근에는 아동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실시한 연구에서는 수용자 자녀들을 인권보호가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아동으로 접근하였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형사사법기관인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에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권고를 하였다.¹¹⁾ 수용자 자녀들의 권리보장을 다룬 또 다른 연구로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용자 자녀 지원에 관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연구¹²⁾와 수용자 자녀 관련 정책과 제도분석을 통해 정책의 과제를 제시한 연구¹³⁾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번 2019년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연구는 죄를 지은 부모의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무고하지만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는 유아와 사회에 남겨져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이 돌봄과 지원을 받으며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처우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등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교정시설 내 임신부, 교정시설에서 만 18개월 이하의 유아를 양육 중인 수용자와 유아,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수용자들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0) 남상철/신연희, “재소자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교정정책의 방향”, 『교정연구』 제15호, 한국교정학회, 2002, 99~124면.

11)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필요, 제도개선 등 권고”, 2019.5.30.

12) 최경욱/신연희/이경림, “델파이조사를 통해 본 수용자자녀 권리보장 및 지원방안”, 교정담론 제12권 제3호, (사)아시아교정포럼, 2018, 1~39면.

13) 신연희, “수용자자녀들의 상황과 관련제도의 과제 :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수용자 및 출소자 가족 지원제도와 교정복지의 실현」, 제30회 아시아교정포럼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9.

제2절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처우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등을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정시설 내 수용 중인 임신부 수용자, 교정시설에서 만 18개월 이하의 유아를 양육 중인 여성 수용자, 그리고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사회에 남겨 두고 온 남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국내외 교정당국, 형사절차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국가 관련 부처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처우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을 연구범위로 한다.

이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편제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그리고 관련 현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근대형법 이전 구금시설에서의 임신부, 유아 양육, 그리고 구금된 부모의 자녀 양육을 위한 국가의 처우에 대하여 연혁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관련 법제도로써 국내 법규, 국제 규칙 및 협약의 관련 규정을 차례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임신부 현황 및 처우, 교정시설에서 만 18개월 이하의 유아를 양육 중인 수용자와 유아의 현황 및 처우, 그리고 사회에 자녀를 남겨둔 수용자의 자녀 양육 지원 현황 및 처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수용자 자녀들의 양육환경 실태와 교정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실증 조사연구로서, 교정시설 내 임신부 수용자와 만 18개월 이하의 유아를 양육 중인 여성 수용자, 사회에 만 12세 이하 자녀를 남겨 둔 남녀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관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에 관한 면담을 통해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를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담았다.

제4장에서는 비교법적 연구로서 외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관련

12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법제도 및 정책, 현황에 대해 검토하며,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과 비교연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영미법계를 대표하는 미국과 영국,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일본,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현황 및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정시설 내 임신부 수용자 처우, 교정시설에서 만 18개월 이하의 유아를 양육 중인 수용자 및 유아 처우, 그리고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사회에 남겨둔 남녀 수용자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를 위해, 우선 문헌연구로서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관련 국내외 단행본, 논문, 기사, 정책 자료, 관련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근대형법 시행 이전의 옛 문헌자료는 인터넷으로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추가로 검색 및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관련 현황을 수치로 검토하기 위하여 교정통계연보의 공개 통계자료와 법무부 교정본부에 요청한 관련 내부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수용자 자녀들의 양육환경 실태와 교정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연구로서, 교정시설 내 임신부, 교정시설에서 만 18개월 이하의 유아를 양육 중인 수용자,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사회에 남겨 둔 남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 및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그 내용은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처우와 개선점이었다. 또한, 관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는 교정시설 내 임신부 수용자, 교정시설에서 만 18개월 이하의 유아를 양육 중인 수용자,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사회에 남겨둔 남녀 수용자이다. 여기서 연구모집단을 초등학교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로 설정

한 것은 연구자가 해당 연령대에 속하는 수용자 자녀들의 상황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사회에 만 12세 이하 어린 자녀를 남겨둔 남녀 수용자 754명을 대상으로 하고, 심층면접은 임신부 여성 수용자와 만 18개월 이하의 유아를 양육 중인 수용자 6명, 사회에 어린 자녀를 남겨 둔 남녀 수용자 15명, 그리고 교정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비교법연구로서 주요국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그리고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관련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문헌연구, 인터넷 검색,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영미법계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의 수용자 자녀 처우 현황을 살펴보고, 대륙법계 국가로는 독일의 자료를 대표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사법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은 문헌연구, 인터넷 검색에 더하여 연구자가 일본의 교정시설(구치소, 여자교도소, 의료형무소) 4곳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을 참관하고 자문회의를 통해 수집한 자료도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더불어 아시아 국가 중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대만의 자료를 수집,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각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관련 자료를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 반영을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 관련 연구학자, 민간단체(두루, 세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담당자를 초청하여 워크숍 및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수용자’와 ‘수형자’ 용어를 모두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미결수와 기결수를 구분하지 않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임신부 수용자, 교정시설에서 만 18개월 이하의 유아를 양육 중인 수용자,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사회에 남겨 둔 남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미결수와 기결수를 모두 포함하여 ‘수용자’라 칭하고, 예외적으로 외국의 내용 등에서 기결수만을 지칭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라고 표기하였다.

제 2 장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우리나라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권 수 진

제2장

우리나라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제1절 |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의 발전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혁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수용자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처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문헌상 그 기록을 찾을 수 있는 고려시대부터 해방 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연혁을 검토하였다.¹⁴⁾

1.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임신부 수용자 및 수용자 자녀 양육 등에 관련된 기록으로는 여성 수용자의 출산 시 휴가에 대한 것이 있다. 이 내용은 당률(唐律)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사죄(死罪)는 오늘날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 유죄(流罪)는 당시 유배 형에 해당하는 죄를 의미한다.

부인(婦人)이 해산하는 달(產月)이 되면 보증인(保)을 세우고(責保) 출옥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때 사죄(死罪)는 산후(産後) 만 20일, 유죄(流罪) 이하는 만 30일의 휴가를 주었다.¹⁵⁾

14)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의 연혁적 검토의 주요내용은 권창모, “임산부 수용자 및 수용자 자녀양육 지원의 역사적 발전”, 「제2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0.4.을 수정·보완하였다.

15) 채웅석, 『고려사 형법지 역주』, 신서원, 2009, 531면; 권창모, 앞의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0.4. 1면에서 재인용.

2. 조선시대

가. 세종 때의 수용자 자녀 및 남녀 구분수용

조선시대에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는 세종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종은 수용자의 자녀를 가족 및 친척이 보살피도록 하고, 만약 그들이 보살피지 못하면 국가가 보살피도록 하면서, 추후 감독기관까지 지정하였다. 세종 이후에는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세종 13년(1431년) 7월 28일에 세종은 형조에 전지(傳旨)하기를 “죄를 범하여 옥(獄)에 있는 홀아비, 과부 및 형벌을 받은 사람의 어린 자식들을 만약 돌보아 기르지 아니하면 혹 굶주리고 추워서 죽음에 이를 것이니, 지금부터는 그 친족에게 주고 젖먹이 아이는 젖 있는 사람에게 주며, 친족이 없으면 관가에서 거두어 보호하고 기르되 그 지방에 있는 관리로 항상 보살피게 하라 하며, 만일 잘 보살피지 아니하여 굶주리고 추위에 떨게 한다면, 서울 안에서는 헌사(憲司), 지방에서는 감사가 규찰해 다스리게 하라”고 하였다.¹⁶⁾

임산부 수용자 및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용환경은 남녀 구분수용이다. 그 이유는 남녀 공동수용에서 발생하는 여성 수용자들의 수용 중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출생한 유아의 사망 가능성이 높아 구분수용에 대한 논의 없이는 임산부 수용자 및 수용자 자녀 양육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종은 남녀(男女) 구분수용¹⁷⁾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였다. 세종은 옥(獄)의 수용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설계도를 만들어 임산부 수용자 및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기초적인 수용환경을 만들었다.

16)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28일 경인(庚寅) 3번째 기사 국편영인본 3책 333면, (http://sillok.history.go.kr/id/wda_11307028_003, 2019.12.15. 최종검색)

17) 서양에서는 1597년 암스테르담 징치장에서 여자방적감을 분리한 때를 남녀 구분수용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 18세기 존 하워드(John Howard)도 감옥개량운동에서 남녀 구분수용과 감염병환자들과 아이들을 함께 수용하는 수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바 있다. 암스테르담 징치장에 대한 연구는 T.Sellin의 연구, *Pioneering in Penology: the Amsterdam Houses of Correction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University of Philadelphia Press, 1944가 대표적이다. 이 암스테르담 징치감의 여자방적감에는 부랑소녀는 물론이고 매춘여성이 수감되었다. 한인섭, 『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2006, 55면. 또한 존 하워드는 18세기 당시 감옥제도의 큰 문제는 모든 수형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수용되어 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보았다. 한인섭, 앞의 책, 2006, 122면.

세종 14년(1432년) 7월 11일, 세종은 형조에 전지(傳旨)하기를 “각 고을에서 혹은 옥(獄)을 만들지 않고 경내(境內)의 죄인들을 다른 고을로 옮겨 가두어, 왕왕 이 옥사(獄事)를 조장(助長)하게 되니 매우 폐단이 있다. 비록 이미 만든 것이라도 매우 좁아서, 죄수들이 군취(群聚)하매 매양 추운 절후와 더운 절후를 만나면 병이 발생하여 상하게 된다. 지금부터 각 고을에 옥이 없는 것은 새로 짓고, 좁은 것은 고쳐 수리하고, 남자, 여자와 경(輕)하고 중(重)한 죄수가 거처하는 데를 구별하여,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하여 흠흠지인(欽欽之仁)을 넓히도록 하라”고 하였다.¹⁸⁾

나. 중종 때의 남녀 구분수용

세종 때에 이어 중종 때에 이르기까지도 감옥에서의 남녀(男女) 구분수용 관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종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중종실록』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중종 13년(1518년) 1월 6일에 김양진이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전옥서(典獄署)와 의금부(義禁府)에서는 남녀의 옥(獄)을 구별하지 않고 같이 수용한다 합니다. 중죄인은 자기의 죄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이미 알므로 서로 간음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혹은 옥중에서 아기를 낳은 일도 있으니, 담을 쌓아서 분리 수용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리하라” 하였다.¹⁹⁾

다. 광해군 때의 관련 처우

광해군 때는 여성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와 관련하여 여의(女醫)가 있었다. 『광해군일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광해 6년(1614년) 11월 26일에 사간원이 아뢰기를 “의금부는 왕옥(王獄)으로서 지극히 엄중한 곳인데도 신진(新進)의 도사(都事)들이 사체를 알지 못하여 무리한 일을 많이 행합니다. 나장(羅將)의 경우 건복(巾服)을 벗기고 말을 끌게 하거나 풀을 베게 하므로 낮에는 감옥을 지키는 나장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일 승전(承傳)하여 부정을 조사할 경우 문밖 근처에 사는 사람에게 나장의 건복을 입혀 대신 점검을 받습니다. 여의(女醫)는 병이 있는 여자 죄수를 구료하는 자입니다”라고 하였다.²⁰⁾

- 18)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7월 11일 정묘(丁卯) 3번째 기사 국편영인본 3책 401면, (http://sillok.history.go.kr/id/wda_11407011_003, 2019.12.15. 최종검색)
- 19)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6일 병오(丙午) 1번째 기사, 국편영인본 15책 386면, (http://sillok.history.go.kr/id/kka_11301006_001, 2019.12.15. 최종검색)
- 20)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 84권, 광해 6년 11월 26일 갑술(甲戌) 3번째 기사 국편영인본 32책 351면, (http://sillok.history.go.kr/id/kob_10611026_003, 2019.12.15. 최종검색)

또한, 광해군도 남자와 여자 죄수를 서로 구분하여 수용하도록 명하였다.

광해 8년(1616년) 6월 3일에 금부가 아뢰기를, “금부의 감옥은 32칸인데 해주의 죄인은 35명입니다. 전에는 한 칸에 한 사람씩 가두었는데, 이제 칸수는 적고 죄인은 많으니, 이미 공초를 받은 사람들은 함께 가두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해주 죄인은 섞어서 가두어서는 안 된다. 안성(安城) 죄인과 나누어 가두되 여인들은 한 칸에다가 함께 가두도록 하라” 하였다.²¹⁾

라. 『대명률』, 『대전통편』, 『목민심서』, 『형법대전』의 관련 처우

조선시대 형전(刑典)의 근거인 『대명률』(大明律)에서도 임신 및 출산한 여성 수용자에 대한 고문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었다.

무릇 부인의 범죄는 간통 및 사죄(死罪)로 수감하는 외에 기타 잡범들은 본인의 남편에게 책부(責付)하여 수관(收管)하고, 만일 남편이 없는 자는 친족에게 책부한다. 만일 부인이 애기를 가졌으면 산후 100일을 기다려서 고문 처결한다. 만약 애기를 낳기 전에 고문 처결하여 낙태시킨 자는 장일백 도삼년(杖一百 徒三年)에 처한다.²²⁾

또한,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도 사죄(死罪), 즉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도 임신 여부를 살핀 후에 형벌을 집행하게 하였다.

부녀자는 비록 살육죄를 범하였더라도 그 태아(胎兒)의 유무를 살피고 나서 형벌을 시행하는 법인데 하물며 다른 죄에 있어서라?²³⁾

그리고 1905년에 나온 조선의 마지막 법률서인 『형법대전』(刑法大全)에는 감옥에 갇힌 죄인이 병에 걸리거나,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에는 보증인을 세우고 보방(保放)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때 감옥에 갇힌 죄인에는 임신부 수용자도 포함될 수 있고, 신병(身病)에는 출산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임신부 수용자 역시 보증인을 세우고

- 21)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광해군일기』 중초본 36권, 광해 8년 6월 3일 임인(壬寅) 1번째 기사 국편영인본 28책 693면, (http://sillok.history.go.kr/id/kob_10806003_001, 2019.12.15. 최종검색)
- 22) 박철주 역주, 『역주 대명률 직해』, 민속원, 2014, 664~665면. 大明律 卷第二十八 刑律 斷獄 婦人犯罪 부분.
- 23)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목민심서』 형전 제3조 신형(慎刑), 장순범 역, 1986,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288A_0100_050_0080, 2019.12.15. 최종검색)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금옥(禁獄- 감옥에 갇히는 것) 이하의 죄인이 신병(身病)위중하거나 친상(親喪)을 조(遭- 만날) 할 시(時)는 신인(信人- 보증인)을 입보(立保-세우고)하고 보방(保放)함을 득(得)함이라.²⁴⁾

3. 일제 강점기

가. 관련 규정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나라에 적용된 교정 관련 법률은 일본 감옥법의 뿌리가 되는 1908년 감옥법과, 1912년 공포된 조선 감옥령이다. 그런데 조선 감옥령은 사실상 1908년 감옥법의 내용을 따르도록 하고 있었다.

조선 감옥령(조선총독부령 제14호, 1912.3.18)

제1조 감옥에 관한 사항은 이 영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옥법에 의한다²⁵⁾.

감옥법(법률 제28호, 1908.3)

제12조(유아의 대동) ① 새로 입감하는 부녀가 그 자(子)를 대동할 것을 구하는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만 1세에 달할 때까지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② 감옥에서 분만한 자에 대하여도 역시 전항의 예에 의한다.²⁶⁾

또한, 1938년 12월 24일 일부 개정되어 1939년부터 시행된 조선 감옥령 시행규칙 제12조에는 만약 부녀와 아이가 동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아이를 맡아줄 만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아이를 감옥소재지의 경찰관서에 인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24) 『형법대전』 행형업무(行刑業務) 제19절 보방규칙(保放規則) 제185조(第百八十五條), (http://db.history.go.kr/law/item/level.do?levelId=jlawb_190_0040_0010_0190_0010, 2019.12.15. 최종검색)

25) 조선 감옥령(조선총독부령 제14호, 1912.3.1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isInfoP.do?lsiSeq=65002#0000>, 2019.12.15. 최종검색)

26) 일본 감옥법(법률 제28호, 1908.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jinken-library.jp/search_detail/55632.html, 2019.12.15. 최종검색)

22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조선 감옥령 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244호)

제12조 새로 입감하는 부녀에게 아이의 동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당하는 인수인이 없는 때에는 그 아이를 감옥소재지의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하고, 동행이 허용된 아이가 만 1세에 달하거나 달리 재감을 허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상당하는 인수인이 없는 때에도 같다.²⁷⁾

나. 관련 기사

“동아일보 4면 1926. 8. 12. 영어중(囹圄中)의 신음 13,700여”

당국의 조사에 의지하면 금년 6월말일 현재 조선 26개 형무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피의자 남자 142명 여자 2명, 형사피고인 남자 1,041명 여자 52명, 수형자 남자 11,674명 여자 395명, 노역장유치자 남자 400명 여자 26명, 유아 남자 8명 여자 12명, 합계 남자 13,265명 여자 491명으로 금년 6월말일 현재에 비교하면 272명이 증가 하였더라.²⁸⁾

“동아일보 1면 1933. 1. 26. 천진(天真)한 유아(乳兒)도! 13명이 옥(獄)사리”

전 조선 형무소에 수용되어 있는 기결, 미결수 중에는 조선인의 여자가 기결수 376명, 미결수 79인 등 모두 455명이나 됨으로 그 중에는 어린 자식을 낳자마자 형무소에 입감이 되어 어린 자식을 데리고 있는 부녀자 또는 아이를 베인 채 형무소에 입감되어 그 안에서 아이를 나서 그대로 데리고 있는 부녀자들도 적지 아니하여 작년 12월말 현재의 재감 아동들만도 남녀 30명이라 한다. 그 같은 아동들은 아무 죄도 없이 세상에 태어나 그야말로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억울한 철창생활을 하는 것이라 한다.²⁹⁾

4. 행형법 적용 시기(1950년~2008년)

기존의 행형법은 1950년 제정 및 공포되었고, 2008년까지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근거법으로 적용되었다.

27) 조선 감옥령 시행규칙(조선총독부령 제2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stInfoP.do?lsiSeq=63652&viewCls=lsRvsDocInfo> R#0000, 2019.12.15. 최종검색)

28) 동아일보, “영어중(囹圄中)의 신음 13,700여”, 1926.8.12,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26081200209202008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6-08-12&officeId=00020&pageNo=2&printNo=2130&publishType=00020>, 2019.12.15. 최종검색)

29) 동아일보, “천진(天真)한 유아(乳兒)도! 13명이 옥(獄)사리”, 1933.1.26,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33012600209102007&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3-01-26&officeId=00020&pageNo=2&printNo=4351&publishType=00010>, 2019.12.15. 최종검색)

가. 행형법의 관련 규정

행형법(법률 제105호, 1950. 3. 2. 제정)

제8조 신입의 여자가 소생의 유아 휴대를 신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생후 18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할 수 있다. 수형중에 출생한 자녀도 동일하다.

제29조 임부, 산부, 노쇠자는 이병자에 준할 수 있다.³⁰⁾

행형법(법률 제858호, 1961. 12. 23. 전부개정)

제8조 ② 신입의 여자가 소생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당해 소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수형중에 출생한 유아에 대하여도 전항을 준한다.

제30조(임부 등) 임부, 산부와 노쇠자는 이병자에 준한다.³¹⁾

행형법(법률 제6038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8조 ③ 신입의 여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도소 등의 안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당해 소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수용중의 여자가 출산한 유아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30조(임산부 등) 임산부와 노쇠자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³²⁾

나. 행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행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25호, 1956. 2. 2. 제정)

제13조 신입의 여자에게 자녀의 휴대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 상당한 인수인이 없을 때에는 그 자녀를 형무소 소재지의 시, 구, 읍면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휴대를 허가한 자녀가 생후 18개월에 달하거나 또는 계속하여 휴대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 상당한 인수인이 없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³³⁾

3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InfoP.do?lsiSeq=6914&efYd=19500318#0000>, 2019.12.15. 최종검색)

3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InfoP.do?lsiSeq=6915&efYd=19611223#0000>, 2019.12.15. 최종검색)

3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InfoP.do?lsiSeq=59665&efYd=20000329#0000>, 2019.12.15. 최종검색)

3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InfoP.do?lsiSeq=33635&efYd=19560202#0000>, 2019.12.15. 최종검색)

행형법 시행령(각령 제626호, 1962. 4. 3. 폐지 제정)

제12조(유아대동) ① 소장은 신입의 여자에게 자녀의 대동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자녀의 상당한 인수인이 없을 때에는 그 자녀를 당해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여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동을 허가한 자녀가 생후 18개월에 달하거나 계속하여 대동의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 그 자녀의 상당한 인수인이 없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03조(치료상의 조치) ② 소장은 여자수형자가 분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산사를 둘 수 있다. → 형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95호, 2008. 10. 29 전부 개정)에서 삭제)

제106조(임부 등의 정의) 법 제30조의 임부라 함은 수태 후 6월이상의 부녀자, 산부라 함은 분만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부녀자, 노쇠자라 함은 연령 70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³⁴⁾

행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756호, 1995. 8. 26. 일부개정)

제13조(유아대동) ① 소장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 수용자에게 유아의 대동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유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인수인이 없을 때에는 그 유아를 당해 교도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여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동이 허가된 유아가 생후 18개월에 달하거나 소장이 대동의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 그 유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인수인이 없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³⁵⁾

행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759호, 2000. 3. 28. 일부개정)

제106조(임산부 등의 정의) 법 제30조에서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0일 미만의 자를, “노쇠자”라 함은 연령이 7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³⁶⁾

다. 관련 기사

“경향신문 1면 1958. 11. 26. 형무소 안에 고고(嗚咽)소리”

강도살인 사건의 여피고인이 높다란 형무소 벽돌담 안에서 첫딸을 낳았다. 서울형무소에서는 이 경사를 맞아 산모와 유아를 산실에 수용하고 쌀밥에 미역국으로 극진한 산후 조리를 베풀고, 특히 산파로 조산의 경험이 있는 간호원까지 붙이고 있는데, 유아는 1년 6개월이 되면 어머니에게서 떼게 되어 있다.³⁷⁾

3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InfoP.do?lsiSeq=33636&efYd=19620403#0000>, 2019.12.15. 최종검색)

3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InfoP.do?lsiSeq=33640&efYd=19950826#0000>, 2019.12.15. 최종검색)

3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InfoP.do?lsiSeq=33755&efYd=20000329#0000>, 2019.12.15. 최종검색)

37) 경향신문, “형무소 안에 고고(嗚咽)소리”, 1958.11.26,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811260032920301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58-11-26&officeId=00032&pageNo=3&printNo=4169&publishType=00020>,

“경향신문 1면 1960. 12. 8. 감방의 유아 양육기관의 설치 법무부서 인권옹호건지서 추진.”

법무부는 어머니가 저지른 죄의 유산을 받고 형무소에 수용중인 휴대유아의 양육을 맡을 수 있는 민간 단체의 설립을 구상 중이다. 7일 하오 법무부 당국은 죄없는 어린 유아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형무소에서 탄생하자마자 첫 시련을 받게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장래를 질 머질 어린이들 발육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인권옹호의 점에서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들 휴대유아를 양육할 수 있는 단체가 하루속히 설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형정국에 의하면 이날 현재 전국 각 형무소에 수감 중인 휴대유아는 남아 16명, 여아 21명으로 총 37명이며 부산형무소에 제일 많은 8명이 수감 중인데 각 형무소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서울 5, 대구 1, 광주 4, 대전 2, 부산 8, 인천 2, 목포 3, 공주 1, 춘천 3, 진주 3, 마산 3.³⁸⁾

“경향신문 3면 1961. 1. 3. 떡, 엿, 내의 등 법무부서 죄수들에게 새해 선물”.

법무부는 신축(辛丑) 새해 아침을 맞아 전국 형무소 전 재소자에게 따뜻한 쌀밥과 떡국을 급식하여 신정을 축하하였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떡, 엿, 사과, 과자도 충족하게 나누어 주었으며, 특히 조재천 법무장관은 노쇠자와 유아를 데리고 있는 죄수에게는 내복 1벌씩을 나누어 주는 온정을 베풀었다.³⁹⁾

“매일경제 3면 1968. 5. 6. 수감 한국여죄수의 실태”.

법무부 교정과 통계에 의하면 1967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는 총 30,484명이다. 이중 기결이 21,269명, 미결이 9,153명 그리고 대동유아가 62명이다. 이중에 여자만 뽑으면 기결이 656명, 미결 547명 대동유아가 31명 도합 1,234명이다.⁴⁰⁾

“동아일보 1면 1978. 12. 23 사면 5,378명 단행”.

초범자로 20세 미만, 60세 이상, 유아를 데리고 있거나 임신중인 여자, 치사를 제외한 과실범 중 형집행 중이거나 또는 가석방된 사람 가운데 78년 12월 27일 현재로 형기의 1/3을 경과한 사람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⁴¹⁾

2019.12.15. 최종검색)

- 38) 경향신문, “감방의 유아 양육기관의 설치 법무부서 인권옹호건지서 추진”, 1960.12.8.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0120800329103015&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60-12-08&officeId=00032&pageNo=3&printNo=4552&publishType=00010>, 2019.12.15. 최종검색)
- 39) 경향신문, “떡, 엿, 내의 등 법무부서 죄수들에게 새해 선물”, 1961.1.3.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1010300329203020&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1-01-03&officeId=00032&pageNo=3&printNo=4578&publishType=00020>, 2019.12.15. 최종검색)
- 40) 매일경제, “수감 한국여죄수의 실태”, 1968.5.6.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805060009920301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68-05-06&officeId=00009&pageNo=3&printNo=658&publishType=00020>, 2019.12.15. 최종검색)
- 41) 동아일보, “사면 5,378명 단행”, 1978.12.23.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8122300209201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8-12-23&officeId=00020&pageNo=1&printNo=17606&publishType=00020>, 2019.12.15. 최종검색)

5. 형집행법의 제정 및 관련 규정의 변화

행형법은 2008년까지 적용되었고, 2008년 12월부터는 형집행법이 시행되어 교정 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근거법으로 적용되었다.

가. 형집행법의 관련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8728호, 2007. 12. 21)

제7장 특별한 보호

제50조(여성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여성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 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소장은 생리 중인 여성 수용자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여성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 부상, 그 밖에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 부상, 그 밖에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⁴²⁾

4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81984&ancYd=20071221&ancNo=08728&efYd=2008122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2019.12.15. 최종 검색)

나. 형집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095호, 2008. 10. 29. 전 부개정)

제7장 특별한 보호

제78조(출산의 범위) 법 제53조 제1항에서 “출산(유산울 포함한다)한 경우”란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79조(유아의 양육) 소장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80조(유아의 인도) ①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다만, 적당한 법인 또는 개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유아를 해당 교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서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양육이 허가된 유아가 출생 후 18개월이 지나거나, 유아 양육의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때 또는 법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⁴³⁾

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655호, 2008. 12. 19. 제정)

제5장 특별한 보호

제1절 여성 수용자

제42조(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 소장은 임산부인 수용자 및 법 제53조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쌀밥,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으며, 양육유아에 대하여는 분유 등의 대체식품을 지급할 수 있다.(2014. 11. 17. 쌀밥 삭제)⁴⁴⁾

라. 개정 형집행법(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의 관련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5호, 2019. 4. 23)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

4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isInfoP.do?lsiSeq=89519&ancYd=20081029&ancNo=21095&efYd=2008122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2019.12.15. 최종검색)

4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isInfoP.do?lsiSeq=90229&ancYd=20081219&ancNo=00655&efYd=2008122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2019.12.15. 최종검색)

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⁴⁵⁾

마. 행형법과 형집행법의 관련 규정의 비교

1950년 제정되어 2008년까지 적용된 기존의 행형법은 2008년 이후 형집행법으로 바뀌었다. 이에 임신부와 양육 유아 관련 규정도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교정시설 내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최대 허용기간은 종래 행형법과 현재 형집행법 모두에서 아이의 생후 18개월까지로 동일하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래 행형법에서는 ‘신입의 여자’가 교도소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유아 양육을 신청하면, 소장이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형집행법에서는 여성 수용자가 유아 양육을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3개)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 각 호(3개)의 내용은, 1. 유아가 질병, 부상, 그 밖에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 부상, 그 밖에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이다.

또한, 종래 행형법 시행령에서는 임신부와 관련하여 치료상의 조치로 ‘조산사를 둘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형집행법으로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임신부인 수용자의 처우를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동법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는,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4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isInfoP.do?lsiSeq=208438&efYd=20191024#0000>, 2019.12.15. 최종검색)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행형법은 임신부 수용자를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형집행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서도 임신부 수용자를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형집행법은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조항 자체를 별도로 두어 임신부 수용자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종래 행형법 시행령은 유아 대동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당해 교도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형집행법 시행령은 유아의 양육이 허가되지 않을 시 유아 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유아를 보낼 수 있다고 하며, 적당한 법인 또는 개인이 없는 경우 그 유아를 해당 교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어 보호하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종래의 행형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으나, 형집행법에는 제50조(여성 수용자의 처우)에 여성 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고, 형집행법 시행령에는 제79조(유아의 양육)에서 육아거실을 지정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래 행형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으나, 형집행법 시행규칙에는 제42조(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가 있어, 임신부인 수용자 및 법 제53조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양의 쌀밥,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으며, 양육유아에 대하여는 분유 등의 대체식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4월 23일 개정되어 2019년 10월 24일부터 개정, 시행된 형집행법에는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가 신설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관련 법제도

1. 국내 법규

현행 형집행법은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8호로 기존의 ‘행형법’이 전부 개정된 것으로, ‘여성 수용자’, ‘임산부 수용자’ 및 ‘수용자 자녀’와 관련된 부분은 ‘제7장 특별한 보호’ 이하 조항으로 편제되어 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임산부 수용자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5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⁴⁶⁾

우리나라에서 교정관계법에 임산부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내용이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은 2008년 이후 종래의 행형법을 대체한 형집행법에 제7장 특별한 보호 이하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제1항과 제2항이 생기면서부터이다. 1950년부터 2008년까지 행형법이 적용될 시기 동안에는 행형법 시행령 제103조(치료상의 조치) 제2항에서 “소장은 여자수형자가 분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산사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규정한 유일한 예였다. 그리고 2019년 4월 23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기존에 출산과 유산만이 조치 대상이었던 것에서 출산과 유산, 사산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 통과되어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4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stInfoP.do?lsiSeq=208438&efYd=20191024#0000>, 2019. 12.15. 최종검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134호, 2019. 10. 22., 일 부개정)

제78조(출산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출산(유산을 포함한다)한 경우”란 출산(유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⁴⁷⁾.

또한, 형집행법 시행령 제78조에서는 형집행법 제52조 제1항에서의 “출산한 경우”를 출산(유산 포함)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사산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누락으로 보인다.

나. 급식

종래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제42조(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에서 임산부 수용자 및 유아를 양육하는 수용자에게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쌀밥이 항목에서 삭제되었는데, 이는 2014년 6월 25일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 제28조가 ‘수용자의 주식’을 기존의 쌀과 보리 혼합식에서 쌀밥으로만 제공하기로 하면서 나타난 변화로 보인다.⁴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655호, 2008. 12. 19. 제정)

제42조(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 소장은 임산부인 수용자 및 법 제53조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으며, 양육유아에 대하여는 분유 등의 대체식품을 지급할 수 있다.⁴⁹⁾

다만, 이러한 특칙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임산부 및 유아 양육 수용자, 그리고 양육 중인 유아를 위하여 강행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

4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854&efYd=20191024#0000>, 2019. 12.15. 최종검색)

48) 한국경제, “교도소 콩밥은 ‘옛말’…재소자 100% 쌀밥 먹는다”, 2014.2.20.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402207863g>, 2019.12.15. 최종검색)

4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sInfoP.do?lsiSeq=90229&ancYd=20081219&ancNo=00655&efYd=2008122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2019.12.15. 최종검색)

다. 유아 양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5호, 2019. 4. 23)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1. 유아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⁵⁰⁾

종래 행형법에서는 신입의 여자에 대하여, 소장이 생후 18개월까지의 유아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도소에서 양육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2008년 개정된 형집행법은 제53조(유아의 양육) 조항을 따로 두어, 여성 수용자가 신청할 경우 각 호(3개)의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소장은 교도소에서의 유아 양육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는 현행 형집행법이 이전의 행형법보다 여성 수용자의 교도소에서의 유아 양육 기회를 확장시켜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법 제53조 제2항은 소장이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에게 필요한 설비와 물품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라. 미성년 자녀 보호 지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5호, 2019. 4. 23)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⁵¹⁾ [본조신설 2019. 4. 23.]

5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InfoP.do?lsiSeq=208438&efYd=20191024#0000>, 2019.12.15. 최종검색)

5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InfoP.do?lsiSeq=208438&efYd=20191024#0000>, 2019.12.15.

아동복지법(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2.>

⑧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⑨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34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9. 1. 15.>

⑩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8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9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⁵²⁾ <개정 2016. 3. 22.>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된 형집행법에는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조항이 신설되었다. 종래 형집행법에는 여성 수용자, 임신부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유아의 양육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이 되는 경우 다른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가 그대로 방치된 채 보호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갑작스러운 부모와의 격리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 상태를 겪거나 접견 과정에서의 한계로 인하여 수용자와 자녀와의 관계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법에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가 신설되었다.⁵³⁾

5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676&efYd=20190716#0000>, 2019. 12.15. 최종검색)

53) 김경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27호, 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면.

마. 접견

1) 접견 장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5호, 2019. 4. 23)

제41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신설 2019. 4. 23.>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제4항에 따라 녹음·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⑥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55호, 2008. 12. 19. 제정)

제88조(접견 장소)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종래 형집행법 제50조(여성 수용자의 처우) 제4항은 “소장은 여성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있었는데, 2019년 4월 개정되면서 이 내용은 삭제되었다.⁵⁴⁾ 그 대신,

54) 연합뉴스, “교정시설 수용자, 칸막이 없이 미성년 자녀 면회 가능”, 2019.4.5.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5145100054>, 2019.12.15. 최종검색)

제41조의 접견 관련 조항에 제2항과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용자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거나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하되,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등의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⁵⁵⁾

따라서 이전에는 여성 수용자만 미성년 자녀와 접견 시에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 가능하였는데, 이제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된 형집행법 제3항에 의해 남성 수용자도 미성년 자녀와 접견 시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2017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사한 설계구조로 꾸민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구축하고 있다.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2017년에 6개, 2018년에 8개가 설치되었고, 2019년에도 서울동부구치소 등 9개 기관에 설치, 완공을 목표로 하였다.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삼각형의 출입구, 초록과 노란색을 활용한 벽체와 인형, 동화책 등의 소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전국 교정시설 내에 가족접견실이 설치되지 않은 11개 기관에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설치를 완료하고, 이후에는 일반 가족접견실을 운영 중인 17개 기관의 가족접견실도 아동친화형으로 개선할 예정이다.⁵⁶⁾ 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장소변경접견’으로 만날 경우, 이러한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이 설치되어 있는 교정기관에서는 교도소 직원들이 이들을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45호, 2019. 4. 23. 일부개정], 개정의 주요이유 참조,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9D%98%EC%A7%91%ED%96%89%EB%B0%8F%EC%88%98%EC%9A%A9%EC%9E%90%EC%9D%98%EC%B2%98%EC%9A%B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6345,20190423,2019.12.15.최종검색\)](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9D%98%EC%A7%91%ED%96%89%EB%B0%8F%EC%88%98%EC%9A%A9%EC%9E%90%EC%9D%98%EC%B2%98%EC%9A%B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6345,20190423,2019.12.15.최종검색)))

56) 법무부 보도자료, “교정시설에서도 엄마, 아버지를 반갑게 만나요”, 2019.7.16.

» [그림 2-2-1] 국내 교정시설의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청주여자교도소



여주교도소



안동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교정시설에서도 엄마, 아빠를 반갑게 만나요”, 2019.7.16.

이와 같이 법무부에서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구축한 것은 2019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기존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⁵⁷⁾

57)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접견에서는 아동중심적인 접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육아강좌나 아동 중심의 접견 프로그램 등은 적은 비용으로 여성수형자와 자녀의 관계개선에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조병준/이희정, “여성 수용자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44호, 한국교정학회, 2009, 237면.

2) 접견 시간 및 횟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134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58조(접견) 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

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6. 25.>

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④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6. 25.>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⑥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6.>

[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에 의하여 2013. 8.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8조제4항을 개정함]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2호에 의하여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8조제2항 중 '수형자'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을 신설된 제59조의2에 반영함]

제59조(접견의 예외) ① 소장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5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1. 19세 미만인 때
2.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
3.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⁵⁸⁾

1. 수형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854&efYd=20191024#0000>, 2019. 12.15. 최종검색)

형집행법 시행령에서는 수용자의 접견을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을 제외)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공휴일이 아닌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접견이 가능하다. 그리고 형집행법 시행령에서는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4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7조(접견)에서, 처우등급에 따라 접견 횟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⁵⁹⁾ 즉, 개방처우급인 S1(1급)은 1일 1회, 완화경비처우급인 S2(2급)은 월 6회, 일반경비처우급인 S3(3급)은 월 5회, 중경비처우급인 S4(4급)은 월 4회 접견 가능하다. 또한, 일반접견과 스마트접견, 장소변경접견, 가족접견 모두 미리 예약 신청을 하면 토요일에도 접견이 가능하다. 그리고 법무부 교정본부가 개정한 「수용관리 및 계획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서는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 사범의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스마트접견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현행법 하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처우등급에 관계없이 “차단막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위의 접견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처우등급과 각 교정시설의 적용방안에 따라 최대 접견횟수는 다를 수 있다.

3) 접견 복장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복장 등) ① 소장은 가족만남의 날, 가족접견실 등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형자의 복장은 모범수형자복 또는 평상복으로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자비구매 의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가족접견에 아동복지법상 아동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의사를 물어 귀가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⁶⁰⁾

59)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7조(접견)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5. 31., 2013. 4. 16.>

1. 개방처우급: 1일 1회
2. 완화경비처우급: 월 6회
3.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4. 중(重)경비처우급: 월 4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접견은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4. 16.>

③ 소장은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이하 "화상접견"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접견은 제1항의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3. 4. 16.>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 “가족관계회복 지원”으로서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접견실 이용, 가족사랑캠프 참여 등이 있다. 이 경우 수형자는 모범수형자복 또는 평상복을 착용할 수 있고,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하는 수형자는 자비구매 의류를 착용할 수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아동(18세 미만)이 참석하는 가족접견을 하는 수형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바. 스마트접견

스마트접견 예약(구. 인터넷화상접견)⁶¹⁾

가정에서 PC에 프로그램 설치 후 방문없이 접견이 가능하고 아래 기관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접견 사전등록안내〉

스마트접견은 반드시 최초 한번은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한 민원인만 접견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등록 방문 시 교정기관에 전화문의를 하시어 스마트접견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령, 건강문제로 직접방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6개월 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진이 있는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스마트접견 민원인으로 등록 시 반드시 사진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사진은 방문기관에서 즉시 촬영하여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도소에 수용된 부모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견의 또 다른 형태로 ‘스마트접견’(구. 인터넷화상접견)이 있다. 스마트접견은 가정에서 민원인의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기기) 또는 PC를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러한 스마트접견은, 기존에는 개방처우급인 S1(1급), 완화경비처우급인 S2(2급), 일반경비처우급인 S3(3급) 수형자의 가족만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었으나,⁶²⁾ 시범실시가 종료된 2019년 7월 15일부터는 전면 시행되어 처우급과 가족

60)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제1222호, 2019. 4. 2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7955>, 2019.12.15. 최종검색)

61)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스마트접견예약, (<http://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110/subview.do>, 2019.12.15. 최종검색),

62)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스마트접견예약, (<http://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110/>

한정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제 처우에 있어서 분류심사에 따른 처우등급별로 접견의 형태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⁶³⁾ 중경비처우급인 S4(4급)의 수형자도 미성년 자녀가 있어, 교정시설의 장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접견이 가능하다.

다만,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에 있어서, 스마트접견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사전등록을 위해 최초 한번은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가족여부를 증명하고 사진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다.⁶⁴⁾ 즉, 당사자인 자녀 본인이 직접 해당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본인의 사진을 제출하여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에게 정서적 충격을 줄까봐 본인의 수용사실을 알리지 않고 싶어 하는 수용자들은 이러한 스마트접견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스마트접견 사전등록 절차에 대한 현실적 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사. 가족관계회복 지원제도

그 밖에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2호에 따르면, “가족관계회복 지원”이란 수용자에게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접견실 이용, 가족사랑캠프 참여 등 교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수용자 가정의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동 지침에서는 가족관계회복 지원제도의 일종으로서 제2장 가족관계회복 지원 제2절에서는 ‘가족만남의 날 행사’, 제3절에서는 ‘가족만남의 집 이용’, 제4절에서는 ‘가족사랑캠프’, 제5절에서는 ‘가족접견’ 등에 대해 정의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와 시기, 장소, 관리 및 주의사항 등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가족관계회복 지원제도의 대상은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조(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

subview.do, 2019.12.15 최종검색)

63) 교정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현재 분류심사에 따른 처우등급에 따라 접견의 형태(스마트접견, 장소변경접견 등)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

64)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스마트접견예약, (<http://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110/subview.do>, 2019.12.15 최종검색)

42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계획회복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에 따른다. 그 내용은, 1. 어린 자녀 또는 연로한 부모가 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심적 안정이 필요한 자, 2. 소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서 가족으로부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자, 3. 학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성적이 우수하여 격려가 필요한 자, 4. 교도작업 능률향상, 교정사고 방지, 그 밖의 선행 등으로 수용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5. 소장이 교화상 특히 가족관계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며, 동조 제2항에서는 “소장은 가족이 있는 수형자로서 가족관계회복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형기 중 1회 이상 제2조 제2호 교화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절 가족만남의 날 행사

제10조(가족 등의 범위) ①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친족을 말한다)
2.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수형자와 자매결연을 맺은 교정위원 또는 특히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교정위원 및 가족에 준하는 사람
-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가족이 있으나 장기간 연락이 단절되어 가족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제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가족만남의 날 행사 시기)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설날, 중추절 등 명절
2. 가정의 달, 성년의 날, 장애인의 날 및 교정의 날 등 특정기념일 전후
3. 그 밖의 기관 실정에 따라 지정한 날

제12조(가족만남의 날 행사장소)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1. 교정시설 구내(정문 안)
2. 교화 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정시설 구외(정문 밖) 일정 장소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절 가족만남의 집 이용

제15조(가족의 범위 등) ①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수형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3. 수형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그 비속
4. 수형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비속
5. 수형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비속

②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가족 대표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다.

제16조(가족만남의 집 이용기간) ① 가족만남의 집 이용기간은 1박2일을 원칙으로 하며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 1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족만남의 집 이용 기간 단축을 희망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가족만남의 집 이용 중 주의사항) ① 가족만남의 집 이용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 밖 출입을 금지한다.

②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하는 수형자 및 그 가족은 외부인과 자유로이 통화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수형자와 사건 피해자 및 관계인 간 통화는 제한되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음성통화만을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절 가족사랑캠프

제22조(가족사랑캠프) ① “가족사랑캠프”란 수형자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교정시설내 또는 외부 연수기관 등에서 가족관계 전문가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가족사랑캠프 기간은 1일 또는 1박2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 연수기관 등 특별한 경우에는 늘릴 수 있다.

제23조(참여 가족의 범위) 가족사랑캠프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친족을 말한다)
2. 이혼 후 재결합 등을 위한 전 배우자
3.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수형자 또는 수형자의 직계존속·비속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족 이외의 자

「수용자 사회복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절 가족접견

제24조(가족접견실) ① “가족접견실”이란 수용자의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교정시설 구내에 일반 가정집 거실형태의 시설물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② 소장은 전향의 가족접견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 가족접견실이 설치되기 전까지 상담실, 장소변경접견실 등 기존의 시설 중 한 곳을 전향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가족접견의 대상자 선정) ① 가족접견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혼 위기, 양육 곤란, 경제적 곤궁 등으로 가족위기 관리가 필요하거나 기타 가족관계 해체의 징후가 현저하여 가족접견이 필요한 수용자
 2. 접견가족 중 장애인, 환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노약자, 다문화가족이 있거나 산간 및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방문 접견하여 가족접견이 필요한 수용자
 3.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아 수용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족접견이 필요한 수용자
- ② 소장은 가족접견 대상자 선정 시 수용자의 입소 전 경력과 직업, 가족의 구성 및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혜나 차별 시비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5조(접견인의 범위) 가족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친족을 말한다)
2. 이혼 후 재결합 등을 위한 전 배우자
3.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수형자 또는 수형자의 직계존속·비속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족 이외의 자

이상과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에서 참여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로 ‘수형자의 친족’을 들고 있으므로 수용자의 자녀도 여기에 해당되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수용자 사회복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절의 ‘가족접견’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접견실’의 일부는 2019년 현재 법무부의 개선작업으로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로 변화되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 밖에 자녀를 두고 있는 수용자의 경우, 가족접견을 신청했을 때 해당 교정시설이 아동친화형 접견실을 구비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일반 가족접견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다.

2. 국제 규칙 및 협약

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유엔(UN) 범죄 예방·형사사법위원회는 1955년에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후 60년만인 2015년 동 규칙이 전면 재정비되면서, 기존의 규칙은 (구)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으로 불리고, 개정된 규칙은 ‘수용자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Nelson Mandela Rules)으로 통용되게 되었다.⁶⁵⁾

기존의 (구)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서는 특별히 여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면서, 임산부 수감자와 그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 지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제23조).⁶⁶⁾ 이 규칙은 유엔(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된 권고(Recommendation)형식을 취한 국제규범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여러 나라가 이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⁶⁷⁾ 이는 교정 관련 국제규범으로서 가장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⁶⁸⁾

(구)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3조 ① 여자시설에서는 산전 및 산후의 모든 간호 및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시설 밖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이가 시설 내에서 태어난 경우 그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기재해서는 아니된다.

② 유아가 모친과 함께 시설 내에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에는 자격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유아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모가 보살필 수 없는 시간에는 이곳에서 유아를 보호하여야 한다.⁶⁹⁾

65)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은 27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한 고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새 수감 기준으로서, 수감자에 대한 고문과 잔혹하고 모멸적인 처우나 처벌을 완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인권 기본 원칙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한 것이다. KBS News, “유엔 수감자 처우 기준 60년 만에 개정…‘만델라 룰’ 적용”, 2015.5.2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81227>, 2019.12.15. 최종검색)

66) Barberet, Rosemary. “UN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Sanctions for Women Offenders(the Bangkok Rules): A Gendered Critique”, Papers 2017, 102/2, 2017, 참조, (<http://dx.doi.org/10.5565/rev/papers.2336>, 2019.12.15. 최종검색)

67) 이승호/윤옥경/금융명,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III) :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49면.

68) 이승호/윤옥경/금융명, 앞의 보고서, 2015, 47면.

69) (구)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번역본은 2012년 출판된 법무부 교정본부,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법무부, 2012, 12면의 내용을 근거로 함.

이후 2015년 개정된 수용자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에서는 수용자 자녀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수용자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

제29조 ① 피구금자의 자녀가 피구금자와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구금자의 자녀가 교도소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a) 피구금자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자녀가 생활하여야 할, 자격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내·외부 보육시설
- (b) 아동전문 보건의로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입소 시의 건강검진 및 발육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②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피구금자 자녀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구금자로 처우해서는 안 된다.

제60조 ① 교도소를 방문하는 접견자의 입장은 접견자가 보안검색에 동의함을 전제로 한다. 접견자는 언제든지 이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정당국은 접견자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접견자에 대한 보안검색 및 입장절차는 접견자에게 모욕감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적어도 본 규칙 제50조 내지 제52조에 명시된 기본원칙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체강검사는 피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아동에게 실시할 수 없다.⁷⁰⁾

여기서 자녀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은 ‘유엔(UN)아동권리조약’에서 온 것이다.⁷¹⁾ 만델라규칙도 기존의 (구)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개정된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교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국제규범으로서의 기준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나. 유엔 여성수감자 처우와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방콕규칙)

2010년 12월 제12차 유엔(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및 제19차 유엔(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에서 보고서 형태로 발표된 ‘유엔 여성 수감자 처우와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방콕규칙, Bangkok Rules)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⁷²⁾

70) 수용자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의 번역본은 2019년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개정판』의 내용에 근거함.

71) 矢野惠美, “犯罪者を親にもつ子どもについて考える—受刑者を親にもつ子どもを中心に”, 法律時報 第89卷 第6号, 日本評論社, 2017, 69頁.

72) 정부자료, 『제12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총회 및 제19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 참가보고서』, 2010, 229면 이하 참조.

여기에는 특수집단에 적용되는 규칙으로서, 제3절에 임신 여성, 모유 수유 중인 여성, 교도소 내에 자녀를 동반한 여성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 외에도 제2절에는 교도소 관리에서 여성 수용자와 임신 여성 등에 대한 교도소 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입소 시와 가석방 결정, 비구금 조치 등에도 자녀를 둔 여성 수용자에 대한 규정이 있다.

유엔 여성수감자 처우와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

규칙 2

1. 여성과 아동의 취약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새로 입소하는 여성에게는 친지와 면회하고 법률 관련 조언을 받으며 교도소 규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자국 언어를 통한 도움이나 영사관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아동 보육을 해야 하는 여성의 경우는 입소 전에 조정이 가능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규칙 3

1. 여성 입소 시 자녀의 신상정보(이름, 나이, 어머니와 동행하지 않을 경우는 거주지와 보호자)를 기록해야 한다.
2. 상기 아동 관련 정보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 정보의 사용은 아동의 복지 극대화 요건에 따라야 한다.

규칙 4

여성 재소자는 양육 문제, 개인적 선호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거주지 근방의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한다.

규칙 9

여성 재소자가 자녀를 동반한 경우, 자녀 또한 (가급적 아동보건 전문가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적절한 보건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규칙 22

임신 여성, 유아를 동반한 여성, 교도소 내에서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해 감금 또는 격리 방식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규칙 23

여성 재소자에 대해 가족(특히 그 자녀)면회 금지 제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규칙 24

48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노동 중인, 출산기의, 그리고 출산 직후의 여성에게 구속 장치를 적용하면 안 된다.

규칙 26

여성 재소자가 자녀를 포함한 가족 성원, 자녀의 보호자, 변호사와 면담하는 것이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에 구금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상응조치 또한 있어야 한다.

규칙 28

자녀의 방문은 긍정적 분위기(교도관의 태도 포함)에서 모자의 자유로운 접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규칙 33

1. 여성 재소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교도관은 여성 재소자의 특수한 요구와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여성 교도소 재직 교도관은 여성 보건 관련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응급처치 및 기초 의약품 등).
3. 자녀가 어머니와 교도소에 같이 있도록 허용된 곳에서는 교도관들에 대해 아동발달 및 보건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여 필요 및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규칙 42

1. 여성 재소자는 균형적이고 포괄적이며 젠더 요구를 적절히 반영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교도소 관리는 임신 여성, 유아양육 중인 어머니, 자녀를 동반한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교도소 내에 자녀양육 시설을 갖춰 여성 재소자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임신 여성, 유아양육 중인 어머니, 자녀를 동반한 여성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4. 심리치료가 필요한(특히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재소자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규칙 48

1. 임신 중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 재소자는 전문가를 통한 보건 및 식단조절 프로그램을 제공 받아야 한다.
2. 여성 재소자는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한 모유 수유를 금지당해서는 안 된다.
3. 출산 직후의, 그러나 자녀가 교도소에 같이 있지 않은 상태의 여성 재소자에 대한 의료 및 영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규칙 49

자녀를 교도소에 동반하도록 하는 결정은 아동의 복지 극대화라는 관점에 기초해야 한다. 교도소 내에 있는 아동이 재소자와 같은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규칙 50

자녀를 교도소 내에 동반한 여성 재소자는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최대한 갖도록 해야 한다.

규칙 51

1. 어머니와 교도소에 같이 있는 자녀는 지속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전문가가 발달과정을 관찰해야 한다.
2. 교도소 내의 자녀양육 환경은 교도소 외부와 최대한 유사해야 한다.

규칙 52

1. 자녀를 어머니와 격리하도록 하는 결정은 관련 법률에 따른 개별적 평가와 아동복지 극대화의 관점에 기초해야 한다.
2. 자녀를 (어머니와 격리시켜) 교도소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양육 대안이 명확한 경우에, 그리고 외국인 재소자의 경우는 영사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자녀가 어머니와 떨어져 가족, 친지 또는 기타 양육자와 있게 되는 경우, 여성 재소자는 아동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고 공공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자녀 방문 기회를 최대한 가져야 한다.

규칙 63

여성 재소자의 자녀양육 책임 및 사회재적응 요구가 가석방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규칙 64

가능하면 임신 여성 및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해서는 비구금형 선고가 내려져야 하며, 구금형은 범죄가 중대하고 위험성이 지속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규칙 68

어머니에 대한 형사사법 처분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동복지 극대화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⁷³⁾

이와 같이 유엔 여성수감자 처우와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방콕규칙)에는 임신부 또는 자녀를 둔 어머니 수용자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으며, 기타 다른 국제규범에

73) 유엔 여성수감자 처우와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은 국내에 발간 목적으로 배포된 형태의 번역본은 아직 없으며, 관련하여 정부자료, 『제12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총회 및 제19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 참가보고서』, 2010에 〈부록 3〉으로 동 규칙이 번역되어 있고 이외에는 이승호/윤옥경/금용명,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III):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에 제9장의 내용으로 서술된 ‘소년수용자와 여성 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규범(윤옥경)’ 350면에서 367면 사이에 동 규칙의 각 조항이 번역되어 분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의 정부 자료인 『제12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총회 및 제19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 참가보고서』 〈부록 3〉의 번역본을 기준으로 ‘유엔 여성수감자 처우와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을 서술하였다.

비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Resolution)으로 채택되었으므로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⁷⁴⁾ 일본 법무부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보고⁷⁵⁾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에서 아직 관련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수용자 자녀와 그 부모 수용자, 특히 어머니 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를 결정할 때 참고해야 할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 유엔(UN)아동권리협약 및 각 국가보고서

1989년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UN)아동권리협약’은 수형자뿐 아니라 범피자를 부모로 둔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으로서 세계적으로 기본이 된다.

유엔(UN)아동권리조약 제3조는 제1호에 “어린이에 관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공적 혹은 사적인 사회 복지 시설, 법원 행정 당국 또는 입법 기관 어디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도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이 주로 고려될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자녀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술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라규칙)과 유엔 여성수감자 처우와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방콕규칙)에서도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유엔(UN)아동권리협약에서 수형자의 아이에게 가장 관계되는 것은 제9조의 ‘부자(父子) 분리 금지의 원칙’이다. 이 조문을 근거로 하여 현재 많은 나라에서 부모의 수형생활로 인해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수형자의 자녀에 대하여 배려하고 있다.⁷⁶⁾

74) 유엔 총회의 결의안(Resolution)은 각 국가에서 법관들이 참고하고 있는 국제규범으로서, 비록 법적으로는 구속력(binding)이 없지만, 규범적(normative)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Öberg, Marko Divac. “The Legal Effects of Resolu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General Assembly in the Jurisprudence of the ICJ”,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6 no.5, EJIL 2006, 897면.

75) 矢野恵美, “犯罪者を親にもつ子どもについて考える—受刑者を親にもつ子どもを中心に”, 法律時報 第89巻 第6号, 日本評論社, 2017, 69頁.

76) 矢野恵美, “犯罪者を親にもつ子どもについて考える—受刑者を親にもつ子どもを中心に”, 法律時報 第89巻 第6号, 日本評論社, 2017, 69頁.

유엔(UN)아동권리협약**제 3 조**

1.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 보호의 책임을 지는 기관과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직원의 수와 자질, 관리와 감독의 기준을 지키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9 조

1. 당사국은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사법당국이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나 유기, 부모의 별거로 인한 아동의 거취 결정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절차에 있어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한쪽이나 양쪽 모두로부터 떨어진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관계를 갖고 만남을 유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4. 부모나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당사국이 억류하고 있는 동안 사망한 경우 포함)등과 같이 당사국이 취한 조치로 인해 아동과 부모가 분리된 경우, 당사국은 아동에게 해롭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때 부모나 아동, 다른 가족에게 부재중인 가족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 의뢰가 관련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유엔(UN)아동권리협약은 일종의 국제조약으로서, 체약국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규범이다.⁷⁷⁾ 따라서 수용자의 자녀도 ‘아동’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본 협약이 강조하고 있는 점, 즉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을 존중하여 교정처우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라. 2018년 유럽평의회 수용자 자녀 권리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권고안

수용자 자녀와 관련한 국제 규칙 및 협약으로 2018년 4월 4일 제1312차 유럽 평의회 대표자회의(Council of Europe)에서 채택된 ‘2018년 유럽평의회 수용자 자녀 권리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권고안’⁷⁸⁾(이하 ‘유럽평의회 권고안’이라 한다)이 있다.

77) 이승호/윤옥경/금융명, 앞의 보고서, 2015, 66면.

이 권고안에는 수용자 자녀의 권리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원칙(Principles)이 1번부터 56번까지 규정되어 있다. 유럽평의회 대표자회의는 “회원국 내에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자녀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 이러한 공통의 관심사에 관해 법률의 조화를 통해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해당 권고안의 원칙들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수감된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과 같은 권리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부모의 수감이 자녀와 부모의 역량에 미치는 회피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관점, 아동발달의 보호와 가족 간의 적절한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한 관점을 고려하였다”고 한다. 또한 “수감된 부모와 그들의 자녀 사이의 접촉은 그들 전부와 교도소 내 직원과 교도소 환경,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며, 특히 “각각의 개별 자녀의 권리와 요구, 수감된 부모와의 접촉의 정도가 교도소에서 의 안전, 보안 및 질서 보장과 양립(Compatible)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수용자 자녀와 그들의 부모에 대한 처우 개선이 교도소의 질서 보장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칙들이 정책으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유럽평의회의 각 회원국들의 독립적이고 독특한 법제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 권고안을 널리 배포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본 권고안에 나와있는 기본원리(Basic Principles)로서 1번부터 7번까지의 원칙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8년 유럽평의회 수용자 자녀 권리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권고안

기본 원리(Basic Principles)

1. 부모가 수감된 자녀는 자신의 인권과 특정한 상황 및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아이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아동의 보호를 보장하는 조치는 아이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을 포함하며, 가족생활과 사생활이 여기에 통합되어야 하고, 부모의 구금 생활 시작과 석방 이후의 단계에 이들 아이들을 지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징역형이 내려질 때에는, 이에 영향을 받는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구금의 대안이 가능한 한 모색되어야 하고, 특히 그 부모가 아이의 일차적 보호자(Primary Caregiver)일 때에는 특별

78) 이 권고안의 영문명은 다음과 같다. Recommendation CM/Rec(2018)5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concerning children with imprisoned parents.

히 더욱 그러하다.

3. 부모가 구금될 때에는 자녀와 가까운 시설에 배정하는 것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그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주(州)로 이송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이송의 재활적 목적과 함께 아이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도 고려해야 한다.
5. 교도소 관리청(교정본부)은 구금된 자의 자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데 힘써야 한다.
6. 국가 당국은 주 정부기관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수감된 부모 및 그 가족이 있는 어린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과, 그들의 특정한 상황 및 특정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포함된다.
7. 아동과 관련된 정책, 관행 및 절차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어린이와 수감된 부모와 관련한 모든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아니지만, 수용자 자녀와 관련하여 2019년 현재의 시점으로는 가장 가까운 때에 채택된 권고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 권고안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3. 수용자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기서는 2019년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수용자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6367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

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6.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③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⁷⁹⁾〈신설 2019. 4. 23.〉 [본조신설 2014. 12. 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24호, 2019. 10. 15. 일부개정)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개정 2015. 4. 20., 2015. 12. 31.〉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4. 20., 2016. 11. 29.〉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⁸⁰⁾ [전문개정 2011. 9. 8.]

79)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6367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460&efYd=20191024#0000>, 2019.12.15. 최종검색)

정부는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시행하였다. 그 내용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주요 급여별 수급자의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과 연동하여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것이었다.⁸¹⁾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가 각기 따로 구분되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수용자의 가정은 빈곤층이 많으며,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 혜택을 받고 있는 수용자의 비율도 일반인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제3장에서의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 대상으로 대답한 비율이 만12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수용자들 중 15.5%에 달했다.⁸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중에서 주요 급여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이다. 이때, 동법의 제8조의2(부양능력등) 제2항 제3호에서는 부양의무자가 형집행법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로서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수용자이고 미성년 자녀 본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할 때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의 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하면, 복역의 경우에는 수용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보고서를 구비하여 인정하되 동 사유의 소멸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도록 되어있다.⁸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수급권을 살펴보면, 2019년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8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24호, 2019. 10. 1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809&efYd=20191024#0000>, 2019.12.15. 최종검색)

81) 관계부처 합동,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2016.12.27., 4면.

82) 본 연구의 제3장, 제3절 조사결과, 나. 수용자 자녀 양육환경 관련 특성 참조.

83) 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8, 195면.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부에서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대상자가 된다.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때,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때, 교육급여의 수급권자는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대상자가 된다.⁸⁴⁾ 특히,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급자 가구원이 교도소 등에 수감되었을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해당되므로, 보장을 중지하고 교정시설 입소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급여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즉,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급자는 형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입소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수감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보장 여부를 결정한 후 급여를 지급한다. 수급자가 구속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수용증명서를 제출받아 입소일자를 기준으로 급여를 중지하며, 이 경우 과잉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조치하되,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 향후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하다. 또한 1인 단독가구인 수급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된 경우에도 보장을 중지하고 교정시설 입소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을 중지한다.⁸⁵⁾ 결국 본래부터 수급자였던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면 그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부모가 수급자였는데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나머지 가족은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된다.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5989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8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급여별 수급권자 선정기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2&cciNo=1&cnpClsNo=4>고, 2019.12.15. 최종검색)

85) 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8, 232면.

22., 2016. 12. 20.)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2016. 12. 20.>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2., 2014. 1. 21., 2016. 12. 20.> [전문개정 2007. 10. 17.]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족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연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12.]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식제 <2011. 4. 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 훈련비와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전문개정 2007. 10. 17.]

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자금의 한도, 대여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16조(시설 우선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전문개정 2007. 10. 17.]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제22조(수탁 의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⁸⁶⁾. [전문개정 2007. 10. 17.]

86)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5989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27&efYd=20190619#0000>, 2019.12.15. 최종검색)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777호, 2019. 5. 21. 일부개정)

제13조(복지 급여의 내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복지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는 입학금·수업료(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그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한다. <개정 2013. 3. 23.>

1. 입학금·수업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국립 고등학교: 교육부장관

나. 공립·사립 고등학교: 교육감

2.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여성가족부장관 [전문개정 2012. 1. 31.]

[제14조에서 이동 <2012. 7. 24.>]

제14조의2(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복지 급여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금전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미리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⁸⁷⁾.

[본조신설 2014. 7.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143호, 2019. 8. 28. 타법개정)

제6조(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자의 급여 수준, 지원대상자의 수, 물가 수준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⁸⁸⁾ <개정 2014. 7. 22.>

[본조신설 2012. 1. 2.] [중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2. 1. 2.>]

자녀가 있는 수용자 가정은 부모 중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수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 명이 수용되어 일시적으로 '한부모

8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777호, 2019. 5. 2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710&efYd=20190619#0000>, 2019.12.15. 최종검색)

88)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143호, 2019. 8. 2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453&efYd=20190828#0000>, 2019.12.15. 최종검색)

가정'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자녀를 가진 수용자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 혜택을 받거나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저소득층으로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용자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 혜택을 받지 않는 한부모가정일 수도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 혜택을 받는 한부모가정일 수도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동법 제4조(정의) 제1의 다목에서,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한부모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 중 일방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나머지 배우자가 아동(만 18세 미만의 자)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용자 가족의 경제적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조항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에도 동법에서 지칭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이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그 대상 가정에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참고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은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복지급여 중 ‘아동양육비’는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며, 그 액수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다. 또한, 복지급여 중 ‘추가 아동양육비’는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자녀 1명당 월 5만원씩 지급된다. 복지급여 중 ‘학용품비’는 개별가구

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자녀 1명당 월 5.41만원씩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생계비'는 생활보조금으로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가족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지급된다.⁸⁹⁾ 이와 같은 복지급여의 신청 방법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로 구분되는데, 신청주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가족구성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이고, 직권주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이다.⁹⁰⁾

다. 중복지급의 제한

결국, 배우자의 일방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는 수용자 가정은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 하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현실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수용자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한부모가족일 수 있다.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는 아니지만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는 대상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지급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대상자 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다.⁹¹⁾ 즉,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다.⁹²⁾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 발표한 『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에 따르면 중복지

8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6&ccfNo=3&cciNo=1&cnpClsNo=1>, 2019.12.15. 최종검색)

90) 태희원, 『충남지역 수용자 자녀 지원 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14, 17면.

91) 여성가족부, 『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19, 40면.

9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6&ccfNo=3&cciNo=1&cnpClsNo=1>, 2019.12.15. 최종검색)

급여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표 2-2-1]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복지급여)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지급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 고교교육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출처 : 여성가족부, 『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150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생계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이 가능함에 유의.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긴급복지지원대상자와 동시 선정되는 경우에는 복지급여액이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 복지급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

4. 관련 부처의 정책

가. 2011년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의 그동안의 노력을 살펴보면, 우선 2011년 10월 27일 법무부는 6개 기관과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표 2-2-2]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정부 부처	세부 협력내용
행정안전부	이하 각 정부 부처의 세부 협력내용에 대해 협조
법무부	• 수용자 가족지원 안내센터 설치 운영 - 수용자 가족이 직접 신청·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의 중재 또는 대행 및 배우자·자녀에 대한 정부 및 민간 지원프로그램 안내 • 사랑이음 영상편지 보내기 - 수용자와 어린 자녀간 유대감 강화를 위한 쌍방향 영상편지 교환(안부, 책임어주기, 가족사랑이야기 들려주기 등)
경찰청	• 부모 체포시 자녀배려지침 수립 - 부모 체포에 따른 자녀들의 심리적·정서적 충격 완화 및 부모(또는 보호자)로서의 명예유지를 고려한 체포시 행동수칙 수립 - 아동이 필요로 하는 지원유형에 따라 상담 등 관련기관 의뢰
보건복지부	• 요보호 위기가족 지원 체계구축(법무부와 협조) - 자녀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용자 요청 또는 면담을 통해 요보호 수용자 자녀를 발굴하여 보호조치 의뢰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녀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상담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입소, 가정위탁, 지역아동센터 편입, 드림스타트 지원 등)
여성가족부	• 수용자 위기 가족 상담 및 지원을 체계화(법무부와 협조) - 수용자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상담·보호·지원을 교정시설에 의뢰하면 해당 가족의 의사 확인 후 거주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 요청 - 수용자 가족을 상담하고 결과에 따라 적합한 상담프로그램을 설계·시행 * 방문상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센터 내방이 어려운 경우 방문상담 실시 • 장기수용자 가족캠프 운영(법무부와 협조) - 관계가 해체·훼손된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수용전반기 수용자는 교정시설 내, 석방 준비단계의 수용자는 외부 연수시설에서 시행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조하여 프로그램 공동 진행(1박 2일) - 경제적으로 어려운 원거리 거주 수용자 가족이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교통편 제공 * 경북북부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에게 시범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음 • 수용자 가족접견실 운영(법무부와 협조) - 교정시설 내에 일반 가정의 거실형태 접견실(10~15평)을 설치하여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수용 초기부터 접견실 이용기회 제공 - 가족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상담 전문가 입회·상담 제공(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교육과학부	• 수용자 자녀 상담 매뉴얼 개발·보급(법무부와 협조) - 수용자 자녀가 겪게 되는 문제의 내용 및 질문에 대한 답변요령 등을 정리한 안내서 발간·교육·배포 - 학교 또는 Wee센터(교육지원청 산하)의 위기학생 상담지원 매뉴얼에 “수용자 자녀 상담시 유의사항” 추가
서울대학교	• 수용자 자녀 대학생 멘토링 지원(법무부와 협조) - 수용자 자녀의 인생에 관한 조언과 모델링 제공을 위해 서울대 재학생 멘토와 수용자 자녀(중·고등학생) 멘티를 1:1로 연결

※ 2011년 법무부와 6개 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부, 서울대학교), 총 7개 기관이 체결한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내용

나. 평가

2011년의 위와 같은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지원에 대해 2017년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서는 “수용자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부처별 업무협약”은 부처별로 수용자자녀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부처별 협약사항들이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었고 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조직하지 않은 까닭에 현재까지 부처별 이행실태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라고 지적하였다.⁹³⁾

그리고 위 보고서에서는 각 부처별 이행실태와 관련하여, “먼저 법무부는 자녀 및 가족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수용자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등을 발전시켜 왔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족지원센터와 함께 201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던 ‘가족사랑캠프’, 가족접견실을 마련하여 아동친화적인 접견환경도 조성하였던 것이 있다. 그러나 가족상담의 부재, 자녀들의 접견권 보장, 위기에 처한 수용자 자녀 발굴 및 연계의 미흡 등 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라고 평가하였다.⁹⁴⁾

또한, 위 보고서는 “경찰청은 부모 체포과정에서 ‘체포시 행동수칙’을 수립하고 일선 경찰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실행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이러한 내용은 경찰의 직무상 권고사항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경찰의 직무규칙에 당연규정이 되도록 하는 일, 수용자 자녀 문제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한 경찰관 교육, 아동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 및 아동보호체계와의 연계시스템을 마련하는 일 등이 경찰의 역할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도 하였다.⁹⁵⁾

한편, 위 보고서는 “보건복지부는 당시 협약사항으로 수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상담, 가정위탁, 양육시설입소 등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요보호 위기자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지만, 법무부와 복지부의 연계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수용자 자녀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용시설과 연계하여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자녀들을 발굴하는 일, 이러한 아동들에

93) 신연희 외,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 232면.

94) 신연희 외, 앞의 보고서, 2017, 232면, 각주 119번 참조.

95) 신연희 외, 앞의 보고서, 2017, 232면, 각주 119번 참조.

대해 가정위탁, 시설위탁, 또는 입양 등을 통해 안정된 양육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였다.⁹⁶⁾

이에 더하여 위 보고서에서는 “교육과학부는 자녀들이 겪는 문제와 교사 등의 답변 요령 등을 담은 ‘수용자 자녀 상담매뉴얼’을 개발, 학교 등에 보급하기로 하였으나, 후속대처가 미흡하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임은 분명하다. 아이들의 학업지원, 학습 멘토링, 상담지원, 교육비지원, 상담교사를 위한 상담, 책자를 통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자녀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로의 선정됨으로 인한 낙인 방지, 서비스 제공자인 상담 교사, 일반교사 등에 대한 교육, 일반학생들의 인식 개선 등에 관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⁹⁷⁾

마지막으로 위 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 자원으로서 서울대학교는 재학생(멘토)과 수용자 자녀(멘티)를 1:1로 연결하는 ‘수용자 자녀 대학생 멘토링’을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수용자 자녀 멘토링 프로그램은 몇 개 대학으로 확산되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멘토들에 대한 사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멘토멘티 연계체계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안하였다.⁹⁸⁾

다. 2018년 수용자 자녀 보호 시스템

1) 수용자 자녀 보호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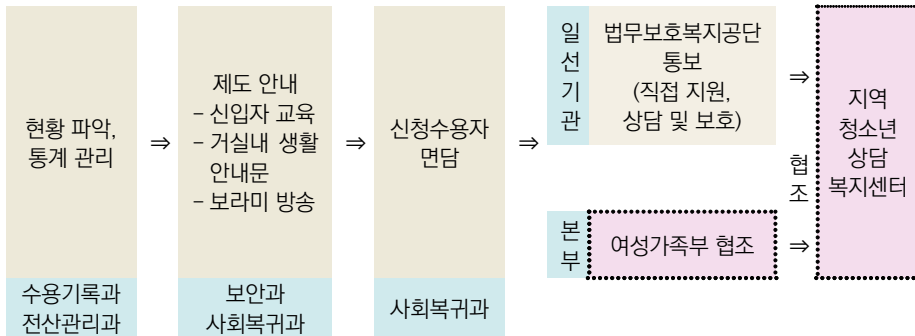
2011년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2018년 12월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 보호 시스템”을 발표하였다.

96) 신연희 외, 앞의 보고서, 2017, 232면, 각주 119번 참조.

97) 신연희 외, 앞의 보고서, 2017, 232면, 각주 119번 참조.

98) 신연희 외, 앞의 보고서, 2017, 232면, 각주 119번 참조.

» [그림 2-2-2] 수용자 자녀 지원체계 절차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수용자 자녀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 2018.12.12. 참조.

2018년 법무부가 발표한 ‘수용자 자녀 보호 시스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및 미성년 자녀 보호 사항을 상세히 파악·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2019년 4월까지 완비하여 체계적인 수용자 자녀 정보관리를 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는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방송, 수용생활 안내, 입소교육 등을 통해 밖에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자녀 보호신청을 하는 수용자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통보하여 공단에서 직접 또는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 상담 및 보호활동을 실시한다. 그리고 매년 여성가족부에 수용자 자녀 보호 협조를 요청하고, 여성가족부 유관시설인 전국 228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수용자 자녀 상담 및 보호활동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⁹⁹⁾

2) 시행 경과

수용자 자녀 보호 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라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사항 관리용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지방법고정청 전산관리과에서 2019년 3월 20일까지 보라미시스템으로 개발된 내역을 반영하여, 기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현황 파악 및 입력을 2019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였다.

그리고, 법무부의 2019년 7월 “형집행법 개정에 따른 수용자 자녀 보호지원제도

99) 법무부 보도자료, “수용자 자녀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 2018.12.12. 1면.

운영계획(안)”에 따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사이에 관련 협력체계 프로세스 시행계획이 마련되었다.¹⁰⁰⁾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안내되는 주요사업 중 “가족 지원”에 “보호대상자의 자녀 및 배우자 등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 항목이 있어, 이에 따라 수용자 가족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라.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최근 수용자 자녀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19년 5월 2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자료, 이하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 한다)이라고 할 수 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의 4가지이다. 첫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 둘째, 아동 권리 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 셋째, 생애 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 건강, 넷째, 창의성·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이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의 차원에서, ‘수용자 가정 아동’에 대해 부모와의 면접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다. 즉, 아동이 교정시설에 있는 부모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가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교정시설-지자체-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수용자가 자녀 보호신청을 하는 경우 지자체, 지역사회(아동양육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와 연계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다.¹⁰¹⁾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체계” 측면에서 기존의 아동보호에 대한 시스템과 인프라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 중이다. 즉, 아동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그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되며, 그 시기는 대략 2021년까지로 계획하고 있다.¹⁰²⁾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는 법원에서 아동의 지원에 대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지난 2017년의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는

100) 법무부 사회복귀과, “형집행법 개정에 따른 수용자 자녀 보호 지원제도 운영계획(안)”, 2019, 4면.

101) 관계부처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자료), 2019, 13면.

102) 관계부처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자료), 2019, 41면.

법원의 ‘수용자 자녀 지원’에 대한 역할이 나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원에서 판사들이 양형을 할 때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할 것’과 교육과 예방지원 차원에서 ‘법원 관계자들에게 수용자 자녀 문제 인식개선 교육’ 부분이 있다. 이외에는 법원에서의 재판 심리 단계에서 ‘가족노출과 인권침해 방지방안 마련’, 즉 미성년 자녀에게 피고인의 재판 심리 단계에서의 노출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 등을 방지하는 것이 요구되었다.¹⁰³⁾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해서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다음과 같이 수용자 가정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즉, 여기에는 수용자 자녀들의 부모와의 면접권을 보장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부모와 아동 간의 면접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이 교정시설에 있는 부모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형집행법 제41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이전에는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만 미성년자 자녀와 접견 시에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 가능하였는데,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된 형집행법 제41조 제3항에 의해 남성 수용자도 미성년자 자녀와 접견 시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수용자 자녀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가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교정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수용자가 자녀 보호신청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아동양육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와 연계하여 아동보호 및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¹⁰⁴⁾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시행에서 중요한데, 그 내용은 앞서 설명한 중앙-지자체-민간 아동보호 체계 예시(표)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아동보호체계는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관리 하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 군, 구 아동복지과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시, 군, 구 아동복지과에는 드림스타트팀과, (가칭) 아동보호팀이 있는데 드림스타트팀은 빈곤아동의 사례관리를 주로 사회복지사가 담당하고 (가칭) 아동보호팀에서는 요보호지원(초기상담, 사례관리, 원가정지원 등)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시설의 지도

103) 신연희 외, 앞의 보고서, 2017, 131면.

104) 관계부처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자료), 2019, 21면.

감독을 한다. 여기에는 공무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경찰, 법원, 학교, 병원 등과 협업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보호체계의 맨 하단에는 각 입양기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기타 민간기관 등이 있다.¹⁰⁵⁾

마. 정부 부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평가

1)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사업

2011년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법무부의 추진 과제였던 “수용자 가족지원 안내센터 설치 운영” 방안은 실제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 대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협약에 의해,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사업’¹⁰⁶⁾이 2019년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다.

2) 경찰청의 “피의자 체포 시 자녀 배려 등 유의사항” 지침 마련 및 범죄수사규칙 개정

2019년 현재 경찰청에 ‘피의자 체포 시 자녀 배려 등 유의사항’이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는 2011년 10월 27일 법무부가 6개 기관과 체결하였던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내용 중에 경찰청의 ‘부모 체포 시 자녀배려지침 수립’에 관한 세부조항이 있었던 데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 내용은 전술하였던 바와 같이, 부모 체포에 따른 자녀들의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완화하고 부모(또는 보호자)로서의 명예유지를 고려한 체포 시 행동수칙을 수립하는 한편, 아동이 필요로 하는 지원유형에 따라 상담 등 관련기관에 의뢰하는 것이었다.¹⁰⁷⁾ 다만, 이러한 경찰청의 “피의자 체포 시 자녀 배려 등 유의사항” 지침은 2019년 6월에 각 경찰서와 경찰교육기관에 전달되었다.

105) 관계부처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자료), 2019, 17면.

106) 전국 건강가족지원센터와 연계, 다음의 홈페이지 자료 참조, (<https://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otheragency/otheragency2.do>, 2019.12.15. 최종검색)

107) <표 2-2-2>, “수용자 위기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내용 참조.

▶▶▶ [표 2-2-3] 피의자 체포 시 자녀 배려 등 유의사항

- 피의자 체포 상황에서 자녀(또는 가족)가 있는 경우
 - 가능하다면 자녀(또는 가족)가 없는 상황에서 체포
 - 피의자의 자녀(또는 가족)에게 심리적인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체포 시간·장소·방법 선택
 - ※ 자녀 등이 함께 있는 경우 가급적 체포 장면을 보지 않도록 하고, 자녀 등의 연령을 감안하여 제반 상황을 설명
 - 피의자 체포 상황에서 자녀(또는 가족)가 없는 경우
 - 피의자에게 자녀 또는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 및 피의자 체포시 보호자 유무를 확인
 - 피의자 체포 후 자녀·노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한 조치 적극 강구
 - 피의자 체포로 인해 피의자가 보호 중인 노부모·자녀 등이 홀로 남겨지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안전 확보 수단을 강구하고 조치내용을 피의자에게도 안내
-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

 - 지자체의 아동보호 또는 노인복지 관련 공무원에 연락
 - ※ 지자체와 연계된 「아동일시보호소」, 「양육시설」, 「노인돌봄서비스」 등에 인계할 수 있도록 조치
 - 또는 이·통장 또는 주변 이웃에게 임시보호 협조 요청
 - 수사기록에 피보호 가족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편철
 - ※ 구속 등 신병처리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 전국 지방청장은, 피의자 체포시 자녀 배려 등 유의사항에 관해 쏠 직원 대상 교육 철저(지역경찰 등 쏠 기능에 전파)
 - 각 경찰교육기관장은, 피의자 체포·연행 및 인권교육 과정에서 자녀 배려 등에 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¹⁰⁸⁾

그러나 이에 대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는 이러한 경찰청의 협력조치가 직무상 권고수준에 머무르는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¹⁰⁹⁾ 또한, 2019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에게 발표한 “형사사법단계에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에서도 경찰청장은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 시 현장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에 2019년 11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제95조 제5항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제5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⑤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에 불필요한 침해가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고, 현장에 있는 자녀 등 가족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범죄수사규칙은 경찰청훈령 제954호로서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108) 경찰청 내부자료, 2019년 10월.

109) 신연희 외, 위의 보고서, 2017, 282면. 각주 119번 참조.

3) 수용자 자녀 정보 파악을 위한 노력

수용자 자녀의 정보 파악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각 정부부처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중 보건복지부가 담당한 역할 중에 ‘요보호 위기가족 지원체계 구축’이 있었는데, 이때 ‘요보호 아동’이란 현행 법상 아동복지법상의 보호대상아동¹¹⁰⁾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하여 국내 요보호 아동의 정보를 파악하기로 되어 있었다.¹¹¹⁾ 그러나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11년 위의 업무협약 시행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요보호 위기가족 지원체계’는 법무부와 연계가 미흡하였고,¹¹²⁾ 결과적으로 수용자 자녀를 포함하여 요보호 아동 자체의 정보 시스템 구축에는 실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 법무부의 “수용자 자녀 보호 시스템”에서는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사항 관리용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발표하였는데, 2019년 법무부 사회복지국과의 “형집법 개정에 따른 수용자 자녀 보호 지원제도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관련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서울지방교정청 전산관리과에서 2019년 3월 20일까지 보라미시스템으로 개발된 내역을 반영하고, 기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현황 파악 및 입력은 2019년 4월 30일까지 완료하였다.¹¹³⁾

이와 더불어 현 정부의 아동 복지 관련 정책인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함께 “위기아동전수조사”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만들 계

110)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호는 보호대상아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또한, 위에서의 “보호대상아동”은 입양특례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 나온 용어이다.

입양특례법 제2조(정의)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이상의 관련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법률 제16248호, 2019. 1. 15.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676&efYd=20190716#0000>, 2019.12.15. 최종 검색); 입양특례법(법률 제16248호, 2019. 1. 15.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680&efYd=20190716#0000>, 2019.12.15. 최종 검색)

111) 이상의 내용은 앞의 <표 2-2-2>, “수용자 위기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내용 참조.

112) 신연희 외, 앞의 보고서, 2017, 282면. 각주 119번 참조.

113) 법무부 사회복지과, “형집법 개정에 따른 수용자 자녀 보호 지원제도 운영계획(안)”, 2019, 4면.

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¹¹⁴⁾ 그러므로 ‘수용자 자녀의 정보 파악’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와 같이 ‘아동보호체계’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관리 하에 새롭게 개편되면서 이러한 체계의 시행과 함께 수용자 자녀의 정보 파악도 어떻게 그 관리 하에 들어가야 할지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관련 부처의 수용자 가정 지원 정책 현황에 대한 평가

2011년 여성가족부의 업무협약 내용이었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와 ‘장기수용자 가족캠프’ 운영은 2019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부속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에 ‘수용자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¹¹⁵⁾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족돌봄나눔사업,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어, 수용자 가족이 발굴되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은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수용자 가족 지원에 대해 “가족상담의 부재, 자녀들의 접견권 보장, 위기에 처한 수용자 자녀 발굴 및 연계의 미흡 등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한 바 있다.¹¹⁶⁾ 이와 같은 문제는 현재에도 참고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수용자 가족캠프’는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가족사랑캠프’가 규정되어 있어, 이와 비슷한 형태의 가족만남프로그램이 2019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용자 가정 지원의 측면에서 2018년 법무부의 “수용자 자녀 보호 시스템”에서는 여성가족부의 협조하에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보호센터가 수용자 자녀 상담 및 보호활동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 진행상황으로 법무부의 2019년 7월 “형집법 개정에 따른 수용자 자녀 보호 지원제도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사이에 관련 협력체계 프로세

114) 관계부처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자료), 2019, 21면.

115)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소개, 사업운영 및 사업영역, (<https://www.familynet.or.kr/index.jsp>, 2019.12.15. 최종검색)

116) 신연희 외, 앞의 보고서, 2017, 282면. 각주 119번 참조.

스 시행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별개로 2018년 법무부의 “수용자 자녀 보호 시스템” 하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가족지원’ 사업이 수용자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녀학업 직접지원으로는 급식비, 교복, 학용품 등 학업유지에 필요한 금품이 지원되고, 자녀학업 간접지원으로는 대학생보호위원 등의 자녀 학습지도 및 멘토링이 있다. 이 외에도 상담 및 가족교육과 가족캠프, 문화체험 등도 지원되며, 이때 직접지원은 1회 지원, 간접지원은 6월 이내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사교육비는 지원되지 않는다.¹¹⁷⁾

5) 수용자 가정 지원 정책 중 각 부처간 협력 시스템 구축

2018년 법무부의 “수용자 자녀 보호 시스템”에서는, ‘수용자 자녀 지원 체계 절차’를 이해하고 각 해당부서 간 소통과 교류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법무부 교정본부의 수용기록과 및 전산관리과에서 수용자 자녀의 현황파악과 통계관리를 하고, 보안과 및 사회복귀과에서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제도를 신입자 교육과 거실내 생활안내문과 보라미 방송 등을 통해 안내하며, 특히 사회복귀과에서는 신청수용자를 면담하는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도움이 필요하면 일선 기관인 법무보호복지공단에 통지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교정본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조하에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도 협조를 해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부속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보호센터를 통해 수용자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무부, 여성가족부의 ‘수용자 자녀 지원’을 2019년의 아동지원과 관련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어떻게 연결시켜 그 정책 효과를 증대시킬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에서 기존의 ‘요보호아동’에 수용자 자녀가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1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지원, (https://koreha.or.kr/sub/02_01_7.do?MN1=3&MN2=16&MN3=213&MN=213, 2019.12.15. 최종검색)

또한, ‘수용자 자녀’와 관련하여 아동보호담당공무원의 충원과 아동보호조치에 따른 연계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 수용자 자녀 양육 현황

1. 임신, 유아 양육 현황 및 처우

▶▶ [표 2-3-1] 교정시설 내 임신부 수용자 현황

(단위: 명)

교정 시설	수원 구치소	인천 구치소	화성 직업훈련소	의정부 교도소	부산 구치소	대구 구치소	상주 교도소	전주 교도소	합계
인원	1	2	1	1	1	2	1	1	10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 2019년 6월 30일 기준

여성 수용자 중 임신부는 2019년 6월 기준 수원구치소 1명, 인천구치소 2명, 화성직업훈련소 1명, 의정부교도소 1명, 부산구치소 1명, 대구구치소 2명, 상주교도소 1명, 전주교도소 1명으로 총 10명이다.¹¹⁸⁾

▶▶ [표 2-3-2] 교정시설 내 만 18개월 이하 유아 양육 현황

(단위: 명)

교정시설	청주여자교도소	군산교도소	합계
인원	4	1	5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 2019년 6월 30일 기준

한편, 2019년 6월 기준 교정시설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 18개월 이하 양육 유아는 청주여자교도소 4명, 군산교도소 1명으로 총 5명이다.¹¹⁹⁾

118)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 2019년 6월.

119)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 2019년 6월.

2. 수용자 미성년 자녀 양육 현황 및 처우

가.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2019년 4월,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을 전산화하여 수용자 자녀 현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관리 시스템을 완료하였다.¹²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수, 보호관계, 수용 중인 부모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내용, 처리결과를 교정정보시스템(보라미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정보시스템(보라미시스템)에 입력된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6월 30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072명이고, 그들의 미성년 자녀는 12,103명이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2-3-3]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령	0-6세	7-12세	13-15세	16-18세	합계
인원	2,748	4,408	2,254	2,693	12,103

출처: 법무부 교정정보 시스템(보라미시스템), 2019년 6월 30일 기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연령별로 0-6세 2,748명, 7-12세 4,408명, 13-15세 2,254명, 16-18세 2,693명으로 총 12,103명이다.¹²¹⁾

한편 법무부 교정정보 시스템(보라미시스템)에서의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관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0) 법무부 사회복귀과, “형집행법 개정에 따른 수용자자녀 보호지원제도 운영계획(안)”, 2019, 4면.

121) 이러한 수치는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타 기관에서 조사한 수치와 상이한데, 이는 현행법상 조사 당시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자율적 응답에 의한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 교정본부는 보다 정확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 자료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자료에 대한 행정정보 공유 등을 검토하고 있다.

▶▶▶ [표 2-3-4]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관계 현황

(단위: 명)

보호관계	부모	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위탁시설	혼자생활	지인	기타
인원	8,135	1,062	259	253	84	107	2,204

보호관계에 대한 무응답, 모름은 기타에 포함

출처: 법무부 교정정보 시스템(보라미시스템), 2019년 6월 30일 기준

한편, 2019년 6월 법무부 교정본부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기결수형자 환경조사 보고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기결수형자의 형기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3-5] 미성년 자녀를 둔 기결수형자 현황

(단위: 명)

구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이상	무기, 사형	전체
미성년 자녀를 둔 수형자	485 (9.1%)	1,891 (35.4%)	1,250 (23.4%)	1,116 (20.9%)	444 (8.3%)	84 (1.6%)	79 (1.5%)	5,349 (100%)
전체 수형자	6,082 (16.8%)	13,236 (36.6%)	6,740 (18.6%)	5,029 (13.9%)	3,071 (8.5%)	594 (1.6%)	1,415 (3.9%)	36,167 (100%)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자문회의 자료(2019년 6월 17일), 현황은 2019년 5월 21일 기준

미성년 자녀를 둔 기결수형자의 형기별 현황을 보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수형자 수가 1,891명(35.4%)으로 가장 많고, 형기 10년 미만이 89.6%에 이르러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전체 기결수형자와 비교해 보면, 미성년 자녀를 둔 기결수형자의 경우 형기 3년 이상 10년 미만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조사한 미성년 자녀를 둔 기결수형자의 자녀와의 관계유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2-3-6] 1년간 미성년 자녀와의 전화통화 횟수

(단위: 명)

없음	1회	2-3회	4-5회	6회 이상	합계
5,153 (94.0%)	125 (2.3%)	80 (1.5%)	44 (0.8%)	81 (1.5%)	5,483 (100%)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자문회의 자료(2019년 6월 17일), 현황은 2018년 기준

78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이에 따르면,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와의 전화통화를 1년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5,153명(94.0%)으로 거의 대부분의 수용자는 미성년 자녀와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3-7] 1년간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 횟수

(단위: 명)

없음	3회 이하	6회 이하	11회 이하	12회 이상	합계
4,523 (82.5%)	442 (8.1%)	142 (2.6%)	114 (2.1%)	262 (4.8%)	5,483 (100%)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자문회의 자료(2019년 6월 17일), 현황은 2018년 기준

이에 따르면,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을 1년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4,523명(82.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표 2-3-8] 1년간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현황

(단위: 명)

프로그램	없음	1회	2-3회	4회 이상	합계
가족만남의 날	4,675 (85.3%)	649 (11.8%)	156 (2.8%)	3 (0.1%)	5,483 (100%)
가족만남의 집	5,358 (97.7%)	121 (2.2%)	4 (0.1%)		5,483 (100%)
가족접견	4,851 (88.5%)	580 (10.6%)	52 (0.9%)		5,483 (100%)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자문회의 자료(2019년 6월 17일), 현황은 2018년 기준

2018년 수용자의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만남의 날 행사는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4,675명(85.3%), 1회 649명(11.8%), 2-3회 156명(2.8%), 4회 이상 3명(0.1%)으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 그리고 가족만남의 집은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5,358명(97.7%), 1회 121명(2.2%), 2-3회 4명(0.1%)으로 참여자가 매우 적다. 가족접견 역시 하지 않는 경우가 4,851명(88.5%), 1회 580명(10.6%), 2-3회 52명(0.9%)으로 참여율이 매우 낮다. 이는 수용자가 자신의 수용 사실을 미성년 자녀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일 것으로 분석된다.

나. 수용자 자녀 지원 현황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수용자 자녀를 위해 교정위원, 사회단체, 직원회 등을 통해 생계지원, 학자금 지원, 상담 및 멘토링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세한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2-3-9] 수용자 자녀 지원 현황

연도	가족생계지원 등	학자금 지원	상담 및 멘토링	기타
2017년	343가족 17,687만원	157명 12,038만원	188회 359명	3,000만원 상당
2018년	328가족 19,130만원	47명 7,472만원	44회 217명	1,500만원 상당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자문회의 자료(2019년 6월 17일), 현황은 2018년 10월 25일 기준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과 관련하여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지원체계의 부재이다. 수용자 자녀의 경우 근거법령상 교정기관 업무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요보호 미성년 자녀 현황 파악 및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까지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은 교정위원, 사회단체, 직원회 등 민간 주도의 1회성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수용자 가정’에 대한 지원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¹²²⁾ 여기에서도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매우 적거나 사실상 없어서 한계로 지적된다.

다. 지원체계 구축방안

1) 교정본부 내 지원체계 구축

2019년 현재 교정본부에서는 신입 수용자 입소 시 가족관계 및 미성년 자녀 보호사

122) 정부의 수용자 가정 지원 정책은 전술한 제2장, 제2절 수용자 자녀 양육지원 관련법제도, 4. 관련 부처의 정책 참조.

향을 파악하고 자녀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수용자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교정본부에서는 지속적인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관리를 위해 교정정보시스템(보라미시스템)상 관련 내용을 입력·관리하고, 신입 수용자 입소 시 뿐만 아니라 고충상담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요보호 상황 인지 시 관련 내용을 입력·관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교정위원, 직원회, 관련 법인 등에 긴급 보호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¹²³⁾

2) 부처간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우리나라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책은 주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된 형집행법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에 아동복지법 관련 내용이 들어온 바와 같이, 특히 수용자 자녀에 대해서는 향후 보건복지부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수용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교정본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자체와 여성가족부, 더 나아가서는 보건복지부 등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원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이들 각 부처에서 개별적인 수용자 가정 지원 정책은 있지만, 부처 간에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3. 민간단체의 수용자 자녀 지원 현황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로는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세진회’, ‘두루’ 등이 있다.

세움은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용돈·교통비(5~7만원씩 160명)를 지급하는 ‘세움 장학금’ 지원 사업과 의료비·주거비(50~500만원) 등 긴급생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세움은 수용자 가족면회 지원, 가족면회권 옹호활동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세움은 청주여자교도소를 포함하여 13개 교정시설에 아동친화적 가족접

123) 교정본부 자문회의 내용, 2019년 6월.

견실 조성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세움에서는 조사연구 사업으로서 수감자 자녀의 가족실태와 사례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감자 자녀지원 국제연대와 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¹²⁴⁾

세진회는 수용자 자녀 사역으로서 꿈나무 캠프와 엔젤스트리, 세진장학금, 세나문화사역 등을 하고 있다. 꿈나무캠프는 멘토가 참여하여 함께 2박3일의 시간을 보내는 캠프이며, 엔젤스트리는 어린이날과 성탄절에 진행되는 선물나누기로, 수감된 부모의 요청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과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동봉하여 보내는 사역이다. 그리고, 세진장학금은 수용자 자녀를 대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세나문화사역은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을 멘토로 이어주고, 관계를 기반으로 직업연계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역이다.¹²⁵⁾

사단법인 두루는 아동과 청소년 인권 증진의 차원에서 주로 법률적으로 수용자 자녀 문제에 주의와 관심을 두고 있다. 사단법인 두루는 2019년 “수용자 자녀와 아동 인권” 강연 등을 열기도 하였다.¹²⁶⁾

제4절 | 수용자 자녀 양육 관련 정책권고 및 판례

여기에서는 수용자 자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권고사항과 법원 판례, 헌법 재판소 판례에 대해 검토한다.

수용자 자녀의 권리와 관련하여, 우선 아동과 청소년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수용자의 자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수용자 자녀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면서, “심신상실자, 수형자 등을 포함하여 아동 또한 기본권을 향유할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¹²⁷⁾

124) 사단법인 세움, 『2018 애뉴얼리포트』, 2018, 5면 및 8면 참조.

125) 사단법인 세진회, 수용자 자녀 사역, (<http://sejin.org/chnet2/home/?type=sub&step1=8&sid=81>, 2019.12.15. 최종검색)

126) 사단법인 두루, 두루활동, (http://duroo.org/bbs/list.php?m_seqno=2, 2019.12.15. 최종검색)

127) 신연희 외, 앞의 보고서, 2017, 144면.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권고 사례

가. 민사집행과정의 아동보호지침 마련 관련 정책권고

형사절차는 아니지만, 최근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으로 “16진정0039100 집행관의 문서 송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민사집행과정에서의 아동인권 보호 지침 마련 권고)”가 있다. 2016년 1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법원 집행관의 민사집행 서류의 송달과 집행절차가 만 10세, 만 8세인 아동들만 있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해당 아동들이 심리적 상처를 받았다는 진정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집행관의 민사집행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과 대법원 판결(1995.8.16.선고95모20)에 의하면 당시 집행서류 송달 등 집행절차도 유효하여 진정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사집행이 아동들만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경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동의 이익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권고사항 중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표 2-3-10] 결정 이유 중 Ⅲ. 민사집행과정의 아동인권 보호방안 검토 ‘판단’ 내용

협약 당사국¹²⁸⁾은 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책무가 있으므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도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 적절한 공권력 집행이라 하더라도 집행에 강제력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고, 아동은 성인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므로 강제집행 과정에서 아동인권보호의 요구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아동을 조사할 때 신뢰관계인 동성 등 아동인권을 고려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등 14개 주는 부모가 형사집행의 대상인 경우 ‘수용자 자녀 권리장전’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권리장전에는 ‘부모 체포 시 안전과 정보 제공받을 권리’와 ‘부모에 관한 결정에 내가 고려될 권리’, ‘부모와 떨어져 있는 동안 보살핌을 받을 권리’ 등이 담겨 있다.
- 민사집행도 그 속성상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이고, 아동은 낯선 사람의 방문으로도 쉽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집행관이 법률규정을 준수하며 민사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 최우선의 이익’과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현재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에서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있지는 않으므로 그러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민사집행과정에서 아동만 있는 경우나 아동이 함께 있는 경우에 아동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이에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민사집행과정에서 아동인권을 고려하고 보호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법원에 보급함으로써 집행관이나 관련 사무종사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¹²⁹⁾

나.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2019년 5월 30일, 각 언론사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결정에 관한 내용이 배포되었다. 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2-3-11]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2019.5.7.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모의 체포, 사법절차, 법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1)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체포, 구속 시 현장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보호대상 아동 발견 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지침으로 하달한 〈피의자 체포 시 자녀 배려 등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피의자 체포 시 아동에 대한 유의사항 및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할 것.
- (2) 대법원장에게, 피고인에게 구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의 유무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3)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의 수용자 부모 접견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정시설 내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을 설치하며,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친화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접견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또한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현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할 것.¹³⁰⁾

2. 법원 판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2개월 된 유아가 있음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로서 “서울고등법원 2015.9.18. 선고 2015노1430 판결”이 있다. 피고인은 공모자와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후 매도하는 등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및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조치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의 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갓 태어난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부모와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인정

128) 여기에서의 ‘협약’이란 유엔(UN)아동권리협약을 말한다.

129)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결정 16진정0039100의 내용 참조.

130)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중 주문.

한 유엔(UN)아동권리협약을 양형판단 요소로 적용한 국내에서의 첫 판결¹³¹⁾이다.

» [표 2-3-12] 서울고등법원 2015.9.18. 선고 2015노1430판결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인 2015.7.16.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딸을 출산하였고, 이후 2015.8.27.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다시 수용되어 현재 생후 약2개월 남짓인 딸과 함께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혼이며 자신의 성을 따른 딸을 혼자 보호,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가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고(제34조 제4항),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제2항).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함을 기본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고(제2조 제2항), 국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5항).

또한, 우리나라에서 1991.12.20. 발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조 제1항은 법원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당사국이 위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법률 규정, 관련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갓 출산한 피고인의 딸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 및 피고인의 딸이 그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원조하여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를 집행유예에 관한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 삼고 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을 부과하고 이와 함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면서도 갓 출산한 피고인의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¹³²⁾

3. 헌법재판소 판례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결정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1) 법률신문, "[판결]마약사범 미혼모에 'UN 아동권리협약' 첫 적용 집행유예", 2015.9.18.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632&kind=AA03&key=>, 2019.12.15. 최종검색)

132) 서울고등법원 2015.9.18. 선고 2015노1430 판결의 판결 이유 중 참고.

» [표 2-3-13] 헌법재판소 2003.11.27. 선고 2002헌마193 결정요지 일부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인하여 완전히 단절되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는 성질상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도 그 보장의 한 근거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에 있어 접견교통권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시켜 이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권리가 기본권으로서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미결수용자에는 수용자 자녀를 가진 부모 수용자도 포함되므로, 수용자 자녀의 접견교통권 역시 인정되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수용자 자녀가 수용된 가족(부모)을 찾아 만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¹³³⁾

133) 신연희 외, 앞의 보고서, 2017, 145면.

제 3 장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수용자 자녀 양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신 연 희

제3장

수용자 자녀 양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제1절 | 조사목적과 조사내용

수용자 자녀들은 범죄를 초래하게 한 원인이나 범죄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무고한 피해자이다. 이를 주목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수용자 자녀들의 인권보호와 지원 장치 마련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지난 1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 특히 법무부에서는 수용자와 자녀와의 접견제도 개선 및 수용자 가족관계 강화를 위해 전국 교정시설별로 가족 접견실 및 아동친화접견실을 설치하는 등 접견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접견을 비롯하여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개발·운영해 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UN)아동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수용자 자녀들의 인권상황에 주목하여,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¹³⁴⁾ 조사결과를 근거로 “형사사법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를 경찰청, 대법원, 법무부와 같은 관련부처에 2019년 5월에 주문하였다.¹³⁵⁾ 이와 함께 법무부에서는 2019년 10월 24일 시행 예정으로 형집행법(법률 제16345호)을 개정하고, 2018년 12월에는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제도 운영계획(안)”을 마련하여 자녀접견 환경을 정비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³⁶⁾

134) 신연희 외, 위의 보고서, 2017, 참조.

135)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사법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2019.5.7. 전술한 제2장, 제4절 수용자 자녀 양육 관련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권고 참조.

136)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무부와 권고사항 중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형집행법

현 시점에서는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관련 정책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법무부 소관에 해당하는 형집행법의 개정에 따른 교정처우제도와 형사제재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계 및 실천가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수용자 자녀지원에 관한 교정처우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도 제도의 운영실태 파악은 시급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교정처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별히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 자녀들의 양육문제에 비중을 두었으며, 이들 자녀들이 직면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정시설에 있는 유아양육 여성 수용자와 임산부의 처우현황, 그리고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의 교정시설 내외의 성장환경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주요발견사항을 토대로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교정처우제도 및 형사제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조사는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의 문제에 집중하였음을 밝힌다. 유아 및 아동은 청소년들의 성장환경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의 문제도 연령 및 발달단계에 따른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보살핌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시기이므로 수용으로 인한 부모의 부재가 초래하는 영향에 더욱 민감하다는 Bilchik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지적 또한 어린 자녀들을 연구대상자로 설정한 이유이기도 하다.¹³⁷⁾

자료의 정확성 제고와 현상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조사와 대면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조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설문조사는 만 12세 이하 어린

에 포함된 내용은 미성년자녀와의 접견 시 남녀 수용자 모두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한, 제41조 제3항과 수용자에 의해 보호조치가 의뢰된 아동에 대해 교도소장이 지자체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 지원하는 제53조의2이다. 다만 수용자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현황파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은 개정법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2장, 제2절 수용자 자녀 양육지원 관련 법제도, 1. 국내법규 참조.

137) 본 조사는 연구대상자를 만 12세이하(초등학생까지)의 어린 자녀로 한정하였다. 연령에 따라 아동의 발달단계와 발달수준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관련 선행연구인 Bilchik의 2007년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수용에 대한 자녀들의 충격으로 청소년기(12세~18세) 자녀는 행동적 반응을 보이는데 비해 유아(0~2세)는 애착의 문제, 아동기(3~11세)는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발달상의 손상이 나타나므로 부모와 분리된 시기에 따라 자녀들의 충격이 다른 것으로 논의하였다. Bilchik, S. "Mentoring: A Promising Intervention for Children of Prisoners", *Research in Actions*, issue 10, Eric, 2007, p20.

자녀를 최소한 1명 이상 둔 남녀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국 8개 교정기관에서 754명의 남녀 수용자로부터 유효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편, 심층면접은 유아양육 및 임신부 여성 수용자, 어린 자녀를 둔 남녀 수용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 30명으로부터 개별적 경험들에 관한 과정 중심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제2절 | 조사방법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으로 구성된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수용자, 유아양육 및 임신부 여성, 그리고 관련 전문가이다. 조사기간은 2019년 7월 8일부터 9월 25일까지이며, 조사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집단조사 또는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추출은 설문조사는 2단계 집락표집으로 심층면접은 임의표집으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의 연구모집단과 조사대상자 선정과정 및 기본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연구모집단 일반현황

본 조사의 모집단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이며, 연구모집단은 초등학교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로 설정하였다. 연령대를 세분화하는 것은 자녀들의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함께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³⁸⁾ 부모의 수용에 따른 충격을

138) 본 조사는 어린 자녀들의 문제에 비중을 두었지만 청소년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부모의 수용이 청소년 자녀에게는 아동과는 다른 양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용자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문제행동의 유형도 다르므로 지원내용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경험적 연구의 일반적 견해이다. Bilchik, S. 2007, 위의 논문, p20.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논의한 연구결과도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구분한 발달단계와 자녀들의 문제행동 사이에 관련성이 적다고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부모가 교도소에 수용된 자녀들은 발달단계에서 특별히 취약한 시기가 있거나 특정한 시기에 특정 유형의 문제행동에 취약한 것은 아니며, 문제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은 수용자 자녀들의 전 연령에 걸쳐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논의하였다. 신연희, “부모의 교도소 수용에 따른 자녀들의 문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논의한 Bilchik의 2007년 연구¹³⁹⁾에 의하면, 연령을 기준으로 본 발달단계와 부모의 수용에 따른 자녀들의 충격의 양상은 다른데,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자녀들은 일탈, 비행과 같은 행동적 반응을 보이는데 비해 유아와 아동기의 자녀들은 애착의 문제나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조사에서는 유아 및 아동기 자녀들을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로 보고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어린 자녀들을 규정하는 연령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구분에 입각하여 초등학교 이하 연령(만 12세 이하)으로 하였다.¹⁴⁰⁾

〈표 3-2-1〉에 나타난 수용자 미성년 자녀 수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2019년 수용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통계자료를 연구자가 2차분석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수는 8,072명, 미성년 자녀 수는 12,103명이다. 이는 기존의 유사한 조사에 비하여 인구규모가 적게 집계된 것인데, 수용자 및 자녀들의 실명이 드러나도록 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⁴¹⁾ 연령별로 세분하면, 초등학교 이하(0세~만12세 이하)의 유아 및 아동들과 중고등학교 연령(만 13세~18세)의 청소년 자녀의 수는 각각 7,156명과 4,947명으로 구성비는 각각 59.1%와 40.9%이다. 이들 중에서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약 60%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이 본 조사의 연구모집단이다.

제행동 관련요인: 출소준비수형자 및 출소자대상 조사”, 한국아동복지학 제51호, 한국아동복지학회, 2015, 23면.

139) Bilchik, S. 위의 논문, 2007, p20.

140) 우리나라에서 미성년 자녀의 연령구분은 학교급별을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기준에 입각할 때 영아(만 2세 이하), 유아(만 6세 이하), 초등학생(만 7세~만 12세), 중학생(만 13세~만 15세), 고등학생(만 16세~만 18세)이다. 신연희, 위의 논문, 2015, 11면.

141) 이 자료는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수용자 및 수용자 자녀에 관한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상태에서 조사가 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이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료가 수집된 만큼 자녀에 대한 노출을 원하지 않는 수용자들의 경우 자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을 것이므로, 수용자 미성년 자녀 수가 실제 인구에 비하여 적게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 [표 3-2-1]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일반현황

(단위: 명)

	0-6세	7-12세	13-15세	16-18세
자녀 수	2,748	4,408	2,254	2,693
집단별 자녀 수 합계	7,156		4,947	
자녀 수 총합계	12,103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 합계	8,072			

※ 교정본부 내부 자료(2019년 6월 30일 기준)를 재구성함.

〈표 3-2-1〉에 나타난 법무부 교정본부의 통계(2019.6.30.기준)에 의하면,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전체 수용자의 14.7%(일일평균 수용인원 55,000명 기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수는 12,103명이므로 전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수 평균은 1.50명인 셈이다. 법무부 교정본부 집계를 기준으로 연간 수용자 미성년 자녀 수를 추산해 보면 교정시설의 연간 입출소 인원 85,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¹⁴²⁾ 연간 20,000명 가량의 수용자 미성년 자녀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¹⁴³⁾

그러나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인구 규모는 교정본부의 집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 되는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와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에서 2018년 실시한 조사, 그리고 기타 표본조사¹⁴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수용자 미성년 자녀 수는 일일평균 22,000명 일 것으로 추산하고(일일평균 수용자 인원 57,000명 기준) 이들 수용자들의 미성년 자녀 수 평균은 1.52명인 것으로 발표하였다.¹⁴⁵⁾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의 2018년 10월 25일 기준 조사에서는 수용자 미성년 자녀 수는 일일평균 21,765명(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 수 13,834명)인 것으로 보고하였다.¹⁴⁶⁾ 이들 두 조사는 모두 수용자

142) 법무연수원, 『2018 범죄백서』, 2019, 379면, 410~410면의 내용을 재구성함.

143) 일일 평균 12,103명이라면(일일 평균 수용인원 55,000명 기준), 연간 약 18,700명(연간 입출소 인원 85,000명 기준)의 수용자 미성년 자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연간 입출소 인원 85,000명 속에는 일 년 동안 2회 이상 입소한 수용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기하였듯이 교정본부의 2019년 통계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수가 적게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한 고려할 것이다.

144) 신연희, “부모 수용 후 자녀들의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제10권 제1호, (사)아시아교정포럼, 2016, 129~158면.

145)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발표한 수용자 자녀의 연령별 세부 구성을 보면 학령 전(만 6세까지) 25.8%, 초등학생 연령(만 7~12세) 33.7%, 중학생 연령(만 13~15세) 17.3%, 고등학생 연령(만 16~18세) 23.2%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신연희 외, 위의 보고서, 2017, 47~48면.

146) 교정본부 조사에서 자녀들의 연령 구성은 유아·유치원 24.7%(5,369), 초등생 27.5%(5,977명),

와 자녀의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료가 수집된 데 비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2019년 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에 비하여 수용자 자녀의 일일 평균 수가 1만 여명 정도 적었다.

▶▶▶ [표 3-2-2]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현황 파악 주요조사의 조사결과 비교

(단위: 명, %)

조사 구분 (실시일)	미성년 자녀 있는 수용자	일일 평균 미성년 자녀 수	미성년 자녀 연령 구분 (%)		주된 특징
			초등생 이하 연 령(유·아동)	중학생 이상 연 령(청소년)	
국가인권위 조사 (2017.7.)	13,970a	21,000b	59.5	40.5	무기명 조사, 수용자 전수조사, 추산 자녀 수
교정본부 사회복지과 (2017.10.)	13,834	21,765	52.2 (학교 밖 불포함)	36.1 (학교 밖 불포함)	무기명 조사, 수용자 전수조사, 집계 자녀 수
교정본부 (2019.6.)	8,072	12,103	59.1 (7,156명)	40.9 (4,947명)	실명조사, 수용자 전수조사, 집계 자녀 수

※ a, b 수용자 일일평균 수용인원 55,000명,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 25.4%, 미성년 자녀 수 평균 1.52명을 기준으로 함¹⁴⁷⁾

2. 조사대상자

가. 설문조사

수용자 설문조사 대상기관은 지역별 안배를 위해 지방교정청별로 2곳씩을 선정하여 총 8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기관별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수용자 전원 중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수용자를 조사대상자에 포함하였다. 선정한 8개 교정기관에 대해 연구진이 방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거나, 해당기관의 교정공무원이 연구진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집단조사를 원칙으로 하였고 질문지를 일시에 배포·수거하였는데 자기기입식 방식에 의해 수집된 773개의 설문지 중 답변이 부실한 19개를 제외한 754부를 유효한 자료로 채택하였다. 2019년 6월 30일 기준 조사대상 기관별 조사대상 인원과 설문조사 실시인원은 <표 3-2-3>와 같다.¹⁴⁸⁾

중학생 16.9%(3,676명), 고등학생 19.2%(4,168)명, 학교 밖 등 11.8%(2,575)명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2018.10.25. 기준,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

147) 신연희 외, 위의 보고서, 2017, 56면.

▶▶ [표 3-2-3] 조사대상 기관별 조사대상 인원과 설문조사 실시인원

(단위: 명)

지방교정청	서울지방 교정청		대전지방 교정청		대구지방 교정청		광주지방 교정청		합 계
기관명	수원 (구)	인천 (구)	청주 (교)	청주 여(교)	부산 (구)	대구 (구)	순천 (교)	군산 (교)	754 (1,512)
표본 수 (대상인원)	118 (283)	130 (306)	85 (165)	66 (133)	161 (281)	58 (88)	84 (143)	52 (113)	

※ 대상인원은 기관별로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수용자 수임(2019.6.30. 기준).

나. 심층면접

심층면접 대상자는 유아 양육 수용자 및 임신부 수용자 6명, 12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수용자 15명과 관련 전문가(교정공무원,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 민간 전문가) 9명으로 총 30명이다. 심층면접은 피면접자의 형편에 맞추어 교정기관 또는 외부장소에서 실시하였고 개별 또는 집단면접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1) 교정시설 내 유아 양육 및 임신부 수용자

먼저 유아 양육 수용자는 조사 당시 18개월 미만의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고 있는 여성 수용자 전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유아 양육 수용자는 청주여자교도소 3명, 수원구치소 1명, 군산교도소 1명이다. 한편 교정기관의 임신부 수용자는 조사설계 시점(2019년 6월)을 기준으로 4명이었으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형집행정지 출소 또는 출산한 상태였기 때문에 1명의 임신부 수용자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였다.¹⁴⁹⁾ 심층면접 대상자의 기본정보는 <표 3-2-4>와 같다.

148)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인구규모에 관한 정보는 법무부 교정본부에 의해 금년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이를 위해 2019년 상반기에 전국 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우리나라 교정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그 결과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현황(연령별 인구규모, 자녀양육자 유형)과 같은 기초정보가 체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용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파악이 가능해졌고 본 조사의 표본선정 과정에서도 교정본부의 수용자 자녀에 관해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라미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장, 제3절 수용자 자녀 양육현황, 2. 수용자 미성년 자녀 양육현황 및 처우, 참조.

149) 2019년 6월 30일 기준 조사설계 당시 유아 양육 및 임신 수용자는 각각 5명과 10명이었으며, 조사 당시 전국적으로 유아양육 5명(청주여자교도소 3명, 수원구치소 1명, 군산교도소 1명) 전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였고, 임신부 수용자는 당초 계획하였던 조사대상자의 다수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상태여서 면담에 응해 준 임신부 수용자 1명(서원구치소 수용)에 대해서만 면접을 실시하였다.

▶▶▶ [표 3-2-4] 유아 양육 및 임신부 수용자 심층면접 대상자

	청주여(교)	수원(구)	군산(교)	서울(구)
피면접자 유형 (인원수)	유아 양육 (3명)	유아 양육 (1명)	유아 양육 (1명)	임신 수용자 (1명)
사례번호	사례 1-1, 1-2, 1-3	사례 2-1	사례 5-1	사례 6-1
조사일	2019.8.20.	2019.8.22.	2019.7.8.	2019.9.17.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2) 12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남녀 수용자

개별상황 및 심층적인 정보파악이 어려운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수용자 중에서 면접참여를 희망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기관별로 2~4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참여에 대한 수용자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여 당초 계획인원을 초과하여 15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수행할 수 있었다. 기관별 면접대상자 구성은 <표 3-2-5>와 같다.

▶▶▶ [표 3-2-5] 어린 자녀를 둔 남녀 수용자 심층면접 대상자

기관명	청주여(교)	수원(구)	대구(구)	인천(구)
피면접자 인원	2명(여)	1명(여) 2명(남)	2명(여) 4명(남)	4명(남)
사례번호	사례 1-4, 1-5	사례 2-2, 2-3, 2-4	사례 3-1, 3-2, 3-3, 3-4, 3-5, 3-6	사례 4-1, 4-4, 4-3, 4-4
조사일	2019.8.20.	2019.8.22.	2019.8.27.	2019.8.30.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3) 관련 전문가

전문가 대상 면접은 수용자 자녀 지원정책에 관한 자문과 수용자 자녀들과 관련된 처우제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교정직원에 대해서는 기관방문을 통한 개별면접(교도소 교정직원 5명)과 집단면접(법무부 교정본부 2명)을 실시하였고, 민간 전문가(2명)에 대해서는 대면 및 전화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전문가는 기관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사례번호 대신 기관번호를 부여하였다.

▶▶▶ [표 3-2-6]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 대상자

교정직원 (대면면접 실시일)	수원(구) 1명 (2019.8.22)	인천(구) 1명 (2019. 8.30.)	청주여(교) 1명 (2019.8.20.)	대구(구) 2명 (2019.8.27.)	교정본부 사회복지과 2명 (2019.9.25.)
	기관 1	기관2	기관3	기관4	기관 5
민간 전문가 ¹⁵⁰⁾ (실시일)	수용자 및 출소자 가족지원기관 1명 (2019.9.24. 대면면접)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기관 1명 (2019.8.17. 전화면접)		
	기관 6		기관 7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다. 조사유형별 조사대상자 구성

본 조사의 조사유형 및 조사대상자별 구성을 종합하면 <표 3-2-7>과 같다.

▶▶▶ [표 3-2-7] 조사유형별 조사대상자 구성

(단위: 명)

기관명 조사유형		서울지방교정청			대전지방 교정청		대구지방 교정청		광주지방 교정청		합계
		수원 (구)	인천 (구)	서울 (구)	청주 (교)	청주여 (교)	부산 (구)	대구 (구)	순천 (교)	군산 (교)	
조사대상인원(754명)		118	130	-	85	66	161	58	84	52	754
심층 면접 (30명)	양육 유아		1			3				1	6
	임산부			1							
	어린 자녀를 둔 남녀 수용자		2 (남) 1 (여)	4 (남)			2 (여)		4 (남) 2 (여)		15
	관련 전문가	교정기 관직원	1	1			1		2		5
			법무부 교정본부 2명					2명			
		민간 전문가	수용자 및 출소자 가족지원기관(1명),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기관(1명)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150) 민간 전문가 중 수용자 및 출소자 가족지원기관은 (사)한국교정선교회이며,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기관은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다.

3. 자료 분석

가. 설문조사

SPS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의 범위 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발견한 주요 현상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나. 심층면접

심층면접은 유아 양육 및 임신부 수용자에 대한 심층적 이해(유아 양육 및 임신부 수용자 대상 심층면접 결과)와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의 개별상황에 대한 이해(어린 자녀를 둔 남녀 수용자 대상 심층면접 결과)로 구분하였다. 사례별로 수집된 심층면접 자료는 종합하여 주제별로 유형화한 다음 주제 유형별로 몇 가지의 주요이슈들로 세분화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주요이슈별로 해당하는 사례들을 제시하여 이슈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도록 하였다.

제3절 | 조사결과

1. 설문조사 결과

가. 수용자 자녀와 수용자의 인구학적 특성

1) 수용자 자녀의 일반적 사항

이하는 전국 8개 교정기관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 자녀(이하 수용자의 어린 자녀)를 둔 남녀 수용자로부터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해 수집한 754개의 유효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 [표 3-3-1] 수용자의 어린 자녀 수 및 연령별 현황

(단위: %)

자녀 연령		자녀 수(만 12세 이하)	
연령 구분		자녀 수	빈도(백분율)
1세 미만	48	1명	470(62.3)
1세	48		
2세	52		
3세	76	2명	232(30.8)
4세	74		
5세	88		
6세	86	3명	46(6.1)
7세	133		
8세	108		
9세	107	4명이상	6(0.8)
10세	91		
11세	112		
12세	79	합 계	754(10.0)
합 계	1,102		

〈표 3-3-1〉처럼 본 조사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총수는 1,102명으로 나타났다(수용자는 754명). 자녀들의 연령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학령 전 아동(만 6세 이하)에 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인 만 7세에서 만 9세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수용자 한명 당 어린 자녀의 수는 대다수가 한 명이고, 3명 이상인 다자녀 수용자는 7% 수준으로서 수용자 1인당 어린 자녀는 1.46명이다. 세부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만 6세 전후)로 구분할 때 학령전인 영유아(만 6세 이하)는 472명(42.8%), 초등학생은 630명(57.2%)으로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인구가 약 15% 정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만 7세-9세, 초등학교 1-3학년)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2) 수용된 부모의 일반적 사항

〈표 3-3-2〉는 어린 자녀를 둔 수용자들의 특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다. 먼저, 성별 구성을 보면 남성(아버지) 81.6%, 여성(어머니) 18.4%이다. 여성 수용자가 18.6%인 것은 교정시설 여성 수용자 구성비인 평균 6.8%보다 높은 편인데, 여성 수용자가

남성 수용자에 비하여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두고 온 자녀들의 양육환경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시사된다.¹⁵¹⁾

수용자의 연령은 30~40대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서 합하여 80.9%이다. 구체적으로 40대가 45.1%로 가장 많고, 30대(35.8%)가 다음을 차지하며, 50대 이상과 20대는 비슷한 수준인 9%대이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는 조사표본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¹⁵²⁾

결혼 상태는 절반에 가까운 수용자가 법적 혼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혼인은 54.9%로 절반보다 약간 높으며, 이혼과 이혼진행은 합하여 34.8%에 이른다. 한편 미혼 상태인 수용자도 3.9%인데 이들의 일부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말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해당한다.¹⁵³⁾ 비록 소수이지만 수용자 자녀의 일부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어린 자녀를 둔 수용자 부모는 30~40대가 다수인데, 주로 아버지가 수용되어 있으며, 미결인 상태가 상대적으로 많고, 부모가 법적 혼인이 아닌 상태가 절반에 가깝다.

151) 전체 수용자 중에서 여성 수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을 기준으로 미결은 7.9%(1,511명), 기결은 6.3%(2,262명)으로 평균 6.8%이다. 법무연수원, 위의 책, 2019, 361면 재분석. 전체 수용자 55,198명 기준.

152) 수형자의 연령별 구성은 가장 많은 연령대의 순서대로 40대, 50대, 30대의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법무연수원, 2019, 위의 책, 362면. 그러나 본 조사대상자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는 인구의 특성상 40대,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15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1의 2호에서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 “한부모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이거나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가 세대주이거나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부자가족을 일컫는다(동조 제2, 3, 4호).

» [표 3-3-2] 수용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 수	백분율
성별	남자 (아버지)	616	81.6
	여자 (어머니)	139	18.4
	합 계	754	100.0
나이 (평균나이 40.0세)	20대 이하	70	9.5
	30대	265	35.8
	40대	334	45.1
	50대 이상	71	9.6
	합 계	740	100.0
결혼상태	미혼	29	3.9
	법적 혼인	406	54.9
	동거	31	4.2
	이혼	200	27.0
	이혼 진행, 사실상 이혼	58	7.8
	사별	16	2.2
	합 계	740	100.0
수용상태	미결	403	53.4
	기결	347	46.0
	기타(노역장유치 등)	4	0.6
	합 계	754	100.0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나. 수용자 자녀 양육환경 관련 특성

1) 양육자 유형

한쪽 부모가 수용된 상황에서 누가 보호자인지, 누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는 자녀의 양육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표 3-3-3>은 자녀와 헤어지는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즉 수용자의 구속 전후로 수용자 자녀들의 보호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3-3-3>에서는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경찰연행 후 구속 전까지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받는 기간), 2단계(교정시설에 수용된 직후부터의 기간), 3단계(현재 시점)에 따라 양육자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수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의 일부는 2단계와 3단계가 인접한 기간일 수 있다. 해당 표에서 자녀 수는 해당 단계별로 첫째부터 넷째 자녀까지 자녀 수를 모두 합한 것이다.

먼저, 자녀 양육자 유형의 구성은 수용자의 배우자(자녀의 한쪽 부모)가 가장 많고 (72.1%), 자녀의 조부모가 19.0%(수용자의 부모가 12.2%, 그 배우자의 부모가 6.8%)로 다음을 차지하며, 시설에 있음(3.0%), 친인척 등 지인(2.5%), 자녀끼리 있음(1.3%)의 순이다. 이는 2019년 교정본부의 보호자 관계에 대한 집계와 유사한 결과로서 당시에는 부모(67.3%), 조부모(8.8%), 친인척(2.1%), 시설 (2.0%), 자녀끼리(0.6%)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⁵⁴⁾

둘째, 시계열적으로 볼 때 형사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양육자 유형의 구성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녀의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는 줄고 조부모 양육은 늘어간다는 사실이다. 자녀의 남아 있는 부모(수용자의 배우자)가 양육하는 경우는 경찰에 연행될 당시에는 74.9%이던 것이 구속 직후에는 71.0%, 현재 상태에는 70.5%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수용자의 부모, 즉 자녀들의 조부모가 양육하게 되는 경우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각 단계별로 수용자의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는 10.2%, 12.8%, 13.5%로 상승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역시 6.3%, 6.7%, 7.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수용자가 자녀와 헤어져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호자로서의 남아 있는 한쪽 부모의 역할은 감소하고 조부모의 역할은 증가한다. 이 경우 남아 있는 한쪽 부모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자녀를 조부모에게 맡겼을 수도 있지만, 가정해체 현상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자녀들에게 양육자의 변동(부모의 보호에서 조부모의 보호로 변경)은 큰 충격이 된다. 한쪽 부모(수용자)와 갑자기 헤어졌는데, 몇 달 사이에 나머지 부모와도 헤어지게 되는 상황은 어린 자녀들에게 고통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경찰에 연행된 후 구치소에 수용되기까지 대략 1주일 정도는 부모와 헤어지는 초기 단계인데

154) 2019년 6월 30일 기준 교정본부 자료를 재구성함.

(단위: 명 (%))

부모	조부모	친인척	위탁시설	자녀끼리	지인	기타	합 계
8135 (67.3)	1062 (8.8)	259 (2.1)	253 (2.0)	84 (0.6)	107 (0.9)	2203 (18.2)	12,103

이시기에 격동하는 환경을 맞게 되는 어린 자녀들이 많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가장 충격이 큰 시기인 초기 단계에서 특히 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며,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부모 및 주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는 자녀가 시설에 있는 경우(3.0%)와 어린 아이들만 남겨진 경우(1.3%)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어린 자녀들이 시설로 옮겨지거나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자녀들끼리만 방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표 3-3-3] 형사사건 진행 단계별 자녀 양육자 유형 현황

(단위: 빈도(%))

	경찰연행-구속전 자녀돌봄자 (1단계)	구속 직후 자녀돌봄자 (2단계)	현재 자녀돌봄자 (3단계)	합계 (백분율)
자녀 부모 (수용자의 배우자)	806 (74.9)	778(71.0)	771(70.5)	2,355(72.1)
자녀 조부모 (수용자 부모)	110(10.2)	141(12.8)	148(13.5)	399(12.2)
자녀 조부모 (수용자 배우자 부모)	68(6.3)	74(6.7)	81(7.4)	223(6.8)
친인척, 지인	24(2.2)	30(2.7)	27(2.5)	81(2.5)
시설에 있음	24(2.2)	40(3.6)	34(3.1)	98(3.0)
자녀끼리 있음	19(1.8)	13(1.2)	11(1.0)	44(1.3)
기타	24(2.2)	13(1.2)	12(1.1)	49(1.5)
잘 모르겠음	1(0.1)	7(0.6)	10(0.9)	18(0.6)
합 계	1,076 (100.0)	1,096 (100.0)	1,094 (100.0)	3,267 (100.0)

※ 문항별로 응답자의 수가 다름.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2) 가정의 경제적 형편

〈표 3-3-4〉에서 수용자 자녀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빈곤하며 상당수는 극빈가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빈곤하다는 응답(가난한 편 및 매우가난함)은 41.4%인데 비해 부유하다는 응답(매우부유 및 부유한편)은 7.0%로 매우 낮다. 두 고온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수용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고충 중에서 가장 주된 사항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지를 기준으로 극빈가정의 규모를 파악할 때 15.5%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인지 여부를 모르겠다는 응답이 19.5%임을 감안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조사와 비교하면, 2014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조사에서 출소자의 18.7%, 출소예정 수형자의 16.5%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¹⁵⁵⁾로 보고되었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자 자녀 양육자 대상조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1.9%,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수급자 5.3%, 긴급복지지원법상 수급자 4.5%로 나타나 조사대상의 21.7%가 빈곤자에 대한 국가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하였다.¹⁵⁶⁾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관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녀들의 대다수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의 지원이 없이는 기초생활이 어려운 극빈가구가 2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 다섯 명 중 한 명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극빈가정에 속해 있는 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 가구 비율이 3.4%(2018년 기준)인 것과 비교할 때 수용자 자녀 가정의 수급률은 우리나라 전체 수급율보다 5배 정도 높다고 할 수 있다.¹⁵⁷⁾

▶▶ [표 3-3-4] 가정의 경제적 상황

(단위: %)

가정의 경제적 수준	응답 수 (백분율)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응답 수 (백분율)
매우 부유	17(2.3)	수급자임 수급자 아님 모르겠음 합 계	111(15.5) 467(65.0) 140(19.5) 718(100.0)
부유한 편	35(4.7)		
보통	387(51.7)		
가난한 편	195(26.0)		
매우 가난함	115(15.4)		
합 계	749(100.0)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155) 이동훈 외,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방안 연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4, 37면, 48면.

156) 신연희 외, 위의 보고서, 2017, 77면.

15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2018년 1,165,175 가구로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4%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하였다.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 통계청,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 2019.12.15. 최종 검색)

다. 수용자와 자녀와의 관계 특성

1) 수용 전 자녀와의 동거 및 체포 당시 상황

〈표 3-3-5〉에 의하면, 수용 전에 자녀와 함께 살았다는 응답이 90.9%로 대다수의 수용자가 자녀와 함께 살다가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80.6%¹⁵⁸⁾로 나온 것보다 더 높은데, 어린 자녀들을 둔 수용자를 조사대상으로 한 본 조사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어린 자녀들일수록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체포현장에 자녀가 함께 있었다는 응답은 15.7%로서 이 역시 동일한 이유에서 기존의 유사한 조사에 비하여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6.3%,¹⁵⁹⁾ 또 다른 조사에서는 11.7%¹⁶⁰⁾의 자녀가 부모의 체포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요약하자면, 수용자의 어린 자녀 대다수가 함께 살던 부모와 갑자기 헤어지게 되며 (응답 수용자 자녀의 91% 가량), 일부는 부모가 경찰에 연행되는 현장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응답 수용자 자녀의 16% 가량).

▶▶▶ [표 3-3-5] 수용 전 자녀와 동거여부 및 체포현장 자녀 소재

(단위: 명, %)

	해당 질문에 응답한 수용자 수	백분율
수용 전에 함께 살았다는 응답	961	90.9% (해당 질문에 응답한 수용자의 전체 자녀 수 1,057명)
체포현장에 자녀가 있었다는 응답	123	15.7% (해당 질문에 응답한 수용자의 전체 자녀 수 782명)

* 해당 질문에 응답한 수용자의 전체 자녀 수는 해당질문에 응답한 수용자의 첫째 자녀부터 넷째 자녀까지의 모든 자녀 수를 합한 것임.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158) 신연희 외, 위의 보고서, 2017, 53면.

159) 신연희 외, 위의 보고서, 2017, 58면.

160) 신연희, “부모 수용 후 자녀들의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제10권 제1호, (사)아시아교정포럼, 2016, 141면.

2) 수용자의 가족과의 관계

〈표 3-3-6〉는 수용자와 자녀 및 양육자와의 관계를 질적인 면에서 측정한 결과이다. 수용자가 평가한 수용자 본인과 자녀와의 관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다는 응답은 88.8%(매우좋다 및 좋은편이다)로서 자녀 양육자와의 관계가 좋다는 응답(69.6%)보다 높은 편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응답(나쁜편이다 및 매우나쁘다)은 자녀는 1.3%, 자녀 양육자와는 9.4%로 나타났다. 수용자들은 어린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자녀 양육자와의 관계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만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양육자는 수용자와 자녀와의 관계 유지, 자녀들의 상황에 대한 긴밀한 정보제공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양육자와의 상호협조가 원활해야 하는 만큼 수용자와 자녀 양육자와의 관계 개선에 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 [표 3-3-6] 수용자와 자녀 및 양육자와의 관계

(단위: 명, %)

수용자와 자녀와의 관계	빈도(백분율)	수용자와 자녀 양육자와 관계	빈도(백분율)
매우 좋다	494(65.8)	매우 좋다	339(45.2)
좋은 편이다	173(23.0)	좋은편이다	183(24.4)
보통이다	74(9.9)	보통이다	158(21.1)
나쁜 편이다	6(0.8)	나쁜 편이다	59(7.9)
매우 나쁘다	4(0.5)	매우 나쁘다	11(1.5)
합 계	751(100.0)	합 계	750(100.0)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3) 수용사실에 대한 자녀의 인지

〈표 3-3-7〉과 〈표 3-3-8〉는 부모의 수용사실을 자녀들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와 관련된 사항이다. 주된 특징으로는 어린자녀들의 70% 이상이 부모가 수용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수용된 부모도 향후 자녀에게 수용사실을 알릴 의사가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수용된 동안 또는 출소한 후에도 수용사실을 모른 채 지내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수용사실에 대한 자녀의 인지 여부를 볼 때, 응답에 포함된 자녀의 26.7%(217명) 만이 수용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70% 이상의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수용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련연구에서 부모의

수용사실 여부를 자녀가 알고 있는 경우가 30.1%¹⁶¹⁾로 보고된 것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데 연구대상자가 어린 자녀들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향후에라도 수용사실을 알려줬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는 응답은 14.7%에 지나지 않았다. 수용자들의 대다수가 출소할 때까지 수용사실을 숨기고 지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용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않는 이유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3-3-8>과 같다. 응답한 전체 내용을 몇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세부유형과 세부유형별 주된 내용을 제시하였다.

▶▶ [표 3-3-7] 수용사실에 대한 자녀의 인지

(단위: 명, %)

	빈도	백분율
수용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 (응답자의 자녀 수 합계)	217	26.7% (전체응답자 812명 기준)
향후 수용사실을 알릴 의사(수용자 수)		
알리겠다	109	14.7
알리지 않겠다	528	71.1
이미 알고 있다	106	14.3
합 계	743	100.0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표 3-3-8>에서는 수용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않는 이유를 요약하면, “자녀를 위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수용사실을 감추고 차라리 내가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 아이에게 낫다”라고 할 수 있다. 자녀를 위해 수용사실을 출소할 때까지 알리지 않겠다는 수용자가 대다수라는 점은 자녀지원에 관한 교정처우제도에서 주목해야 할 일이다. 정책과 제도의 수요자인 그들의 욕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용자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자녀들이 부모의 수용사실을 모르는 상태로도 원활한 만남이 유지되도록 하여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61) 신연희 외, 위의 보고서, 2017, 57면.

▶▶▶ [표 3-3-8] 수용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유

유형구분	순위	세부유형	주된 내용	빈도
자녀 관련 사항	1	자녀의 심리정서적 문제	- 상처받게 됨, 충격 입음 - 아이가 걱정하게 됨, 상심, 슬퍼할 것임 - 스트레스, 범죄자 자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됨	149
	2	도움이 안됨	- 알아서 득이 될 게 없다 - 모르는 게 낫다 - 좋은 일이 아니니까	77
	3	이해 못함	- 아직 어리다 -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56
	4	교육상 나쁨	- 아이 교육에 해로움, 성장에 부정적 영향, 아이 미래 위해 - 나쁜 기억을 남기게 됨, 나쁜 기억을 줄 필요 없음	33
	5	탈선, 방황	-방황, 반항 우려됨, 뺨뺨떨어질까 봐 -아빠처럼 살게 될까 봐	9
수용자 부모 관련 사항	1	뒤통수 못한 일	-부끄럽다, 수치스러움, 창피함, 죄책감, 미안함 -아이에게 실망감 줌, 신뢰 상실 -이해시킬 자신이 없음	70
	2	좋지 않은 모습	-나쁜 모습 보이기 싫음 -자랑할 일 아님, 좋은 곳 아님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부모 모습이 아님	35
기타	1	주변에 알려지는 것 우려	-전과자 자식으로 알려짐 -친구관계에서 위축 -범죄자라는 사실이 알려질 수 있음	9
	2	형기가 짧아	-형기가 짧아 곧 나가게 되므로	5
합 계		자녀를 위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수용사실을 감추고 이로 인한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 차라리 아이에게 낫다.		443

※ 순위번호는 개방형 질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항목의 순서임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알리지 않는 이유가 수용자 자신보다는 자녀가 입을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이 절대다수이다. 수용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자녀가 받게 될 자녀의 심리·정서적 문제(상처, 충격, 걱정, 상심, 슬픔, 스트레스, 범죄자 자식이라는 자기비하)를 우려하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알게 된다고 해서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알게 될 경우 교육상 나쁘며, 더 나아가 탈선하거나 방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편 수용된 부모 자신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뒤통수 못한 일(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창피함, 죄책감, 미안함, 실망감, 신뢰 상실 등)이니 알리지 않을 것이고, 자녀에게 좋지 않은 모습(나쁜 모습, 모범이 되는 부모 모습이 아님 등)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수용사실을 자녀에게 알렸을 때 주변에 알려질 수도 있고, 특히 친구관계에서 자녀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과 형기가 짧아 곧 출소할 것인데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는 의견 등이다.

라. 접견 및 교류 현황

1) 자녀접견 처우제도 이용현황

〈표 3-3-9〉는 교정처우제도 중 접견제도별로 이용경험, 향후 이용욕구, 그리고 1순위 선호에 관한 응답내용을 요약하였다. 주된 특징으로는 접견 처우제도의 수요자육구에 대한 제도의 커버리지는 전반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자녀와의 접촉방법인 10개의 프로그램에서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용경험이 절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용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서신(50.8%)으로서 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아서 일반접견(33.3%), 전화(25.1%), 가족접견(20.6%), 화상접견(17.3%), 스마트접견(13.3%), 가족만남의 날(7.8%), 가족사랑캠프(4.7%), 이메일(3.5%), 가족만남의 집(3.4%)의 순이다. 특별히 이용률이 10% 미만의 프로그램은 순서대로 가족만남의 집, 이메일, 가족사랑캠프, 가족만남의 날이다.

▶▶ [표 3-3-9] 자녀와 교류제도 이용현황 및 이용욕구

(단위: 명, %)

처우 유형	이용 여부	빈도 (백분율)	향후 이용의사	빈도 (백분율)	선호 1순위 (빈도)
서신	있음	349(50.8)	적극 이용	287(45.3)	62
	없음	338(49.2)	보통	162(25.6)	
	합계	687(100.0)	이용 안 할 것임	184(29.1)	
			합계	633(100.0)	
전화	있음	168(25.1)	적극 이용	354(59.2)	90
	없음	500(74.9)	보통	109(17.7)	
	합계	668(100.0)	이용 안 할 것임	138(23.1)	
			합계	598(100.0)	
이메일	있음	22(3.5)	적극 이용	162(30.0)	9

110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처우 유형	이용 여부	빈도 (백분율)	향후 이용의사	빈도 (백분율)	선호 1순위 (빈도)
	없음	601(96.5)	보통	112(20.7)	
	합계	623(100.0)	이용 안 할 것임	266(49.3)	
			합계	540(100.0)	
일반접견	있음	216(33.0)	적극 이용	219(37.2)	15
	없음	439(70.0)	보통	101(17.2)	
	합계	655(100.0)	이용 안 할 것임	268(49.3)	
			합계	588(100.0)	
가족접견	있음	133(20.6)	적극 이용	291(51.0)	40
	없음	514(79.4)	보통	81(14.2)	
	합계	647(100.0)	이용 안 할 것임	199(34.9)	
			합계	571(100.0)	
화상접견	있음	111(17.3)	적극 이용	233(41.1)	12
	없음	529(82.7)	보통	112(19.8)	
	합계	640(100.0)	이용 안 할 것임	222(39.2)	
			합계	567(100.0)	
스마트접견	있음	86(13.3)	적극 이용	279(49.3)	41
	없음	559(86.7)	보통	89(15.8)	
	합계	645(100.0)	이용 안 할 것임	197(34.9)	
			합계	577(100.0)	
가족사랑 캠프	있음	30(4.7)	적극 이용	274(48.8)	29
	없음	612(95.3)	보통	79(14.1)	
	합계	642(100.0)	이용 안 할 것임	209(37.2)	
			합계	562(100.0)	
가족만남의 날	있음	50(7.8)	적극 이용	298(52.8)	25
	없음	592(92.2)	보통	73(12.9)	
	합계	642(100.0)	이용 안 할 것임	193(34.2)	
			합계	562(100.0)	
가족만남의 집	있음	22(3.4)	적극 이용	320(56.7)	145
	없음	620(96.6)	보통	60(10.6)	
	합계	642(100.0)	이용 안 할 것임	186(32.6)	
			합계	564(100.0)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향후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높았는데, 욕구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전화(59.2%), 가족만남의 집(56.7%), 가족만남의 날(52.8%), 가족접견(51.0%), 스마트 접견(49.3%), 가족사랑캠프(48.8%), 서신(45.3%), 화상접견(41.1%), 일반접견(37.2%),

이메일(30.0%)로 나타난다.

한편, 선호 1순위에 관한 응답자 수를 볼 때 가족만남의 집(145명)이 가장 많고, 전화(90명), 서신(62명), 스마트 접견(41명), 가족만남의 날(40명)의 순으로 상위를 점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이용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욕구 정도가 낮은 것은 일반접견(37.2%)과 서신(45.3%)인데 반해, 이용경험은 적는데 욕구 정도가 높은 대표적인 제도는 가족만남의 집(56.7%), 가족만남의 날(52.8%), 전화(59.2%), 가족접견(51.0%), 스마트접견(49.3%)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경험에 비해 욕구가 낮은 프로그램인 일반접견과 서신은 수용자 욕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반면에 이용경험은 적지만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족만남의 집과 가족만남의 날, 가족접견, 그리고 전화와 스마트접견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수용자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제도의 수혜자를 늘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선호 1순위에서도 높은 호응도를 보인 가족만남의 집, 전화, 스마트접견, 가족만남의 날의 확대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녀와의 접견에 관한 욕구

자녀 접견에 관한 수용자들의 욕구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3-3-10>에 의하면, 절반이 넘는 수용자(56.3%)가 자녀와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접견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보다 더 자주 하고 싶다는 응답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28.1%). 자녀에게 수용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수용자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표 3-3-7> 참조).

» [표 3-3-10] 자녀 접견 빈도에 관한 의견

(단위: %)

	빈도	백분율
현재보다 더 자주 희망	207	28.1
현재정도에 만족	115	15.6
자녀와의 접견을 원하지 않음	415	56.3
합 계	737	100.0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자녀와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개방형 질문의 응답내용은 <표 3-3-11>과 같다. 자녀와 접견을 하지 않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가 입을 상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부모의 나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것, 접견을 한다면 비밀로 하고 있던 수용사실을 자녀가 알게 된다는 것, 자녀교육상 부적절하다는 것, 교도소라는 부정적인 장소에 자녀가 오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 등의 이유가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접견으로 인하여 수용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이가 마음의 상처(충격, 슬픔, 트라우마, 심리적 동요와 불안정 등)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부모의 나쁜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도록 부모의 나쁜 모습(죄수복, 수용자 번호 있는 옷, 수용된 모습, 나쁜 기억)은 보여주지 않고 아빠(엄마)의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다는 것이다. 나아가 수용사실에 대한 비밀이 접견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는 것도 접견을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의 대부분(70% 이상)이 부모의 수용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직업상 해외나 지방에 있거나 건강상 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자녀교육상 좋지 않다는 것과 교도소라는 좋지 않은 장소와 접촉하게 되는 것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응답도 상당하였다.

요약하자면 자녀와 접견을 하지 않겠다는 수용자들의 생각은, “접견을 하면 아이가 죄짓고 수용되어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교육에도 나쁘므로 교도소처럼 좋지 않은 곳에는 오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과 좋지 않은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기 싫은 것, 그리고 수용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주된 이유이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자녀와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 수용자 다수의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접견을 통해 자녀가 입을 상처를 치유 내지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접견장소가 교도소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접견방법(장소, 공간, 복장 등)의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면 수용자와 자녀들과의 접견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표 3-3-11] 접견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단위: 빈도 수)

순위	유형 구분	욕구 요약	유사어	빈도
1	자녀가 입을 상처 예방	접견으로 수용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다.	- 아이가 받을 마음의 상처, 슬퍼할 것임 - 충격이 클 것임,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 - 심리적 동요, 혼란, 불안정 - 사춘기라 예민함	104
2	부모의 나쁜 이미지 방지	부모의 나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 나쁜 모습 보이기 싫음, 부끄러운 모습, 창피함, 못난 모습 - 죄수복 보이기 싫음, 수용된 모습 - 아빠에 대한 환상 깨기 싫음, 아빠의 좋은 이미지 유지 - 죄인 아버지 이미지 남기기 싫음, 기억에 남기기 싫음	96
3	수용사실 비밀유지	수용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	- 수용사실 모르고 있음 - 돈 벌러 갔다는 거짓말 드러남 - 모르는 게 나음	76
4	자녀 교육	교육상 좋지 않다.	- 교육상 안 좋음 - 성장에 나쁜 영향, 나쁜 환경	30
5	교도소 방문 차단	좋지 않은 곳에는 오지 않아야 한다.	- 교도소는 부정적인 곳(창살, 차단막 접견 등) - 교도소를 기억에 남게 하고 싶지 않음 - 교도소를 접하게 하고 싶지 않음	21
합 계		접견을 하면 아이가 죄짓고 수용되어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교육에도 나쁘므로 교도소처럼 좋지 않은 곳에는 오게 하고 싶지 않다		327

※ 순위번호는 개방형 질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항목의 순서임.

※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총수는 219명임.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3) 자녀와의 교류제도 개선에 관한 욕구

“내 아이를 만날 때, 수용복이 아닌 일반옷을 입고 차단막이 없는 장소에서 아이를 안아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수용자들의 욕구를 요약할 수 있다. 자녀와의 원만한 교류를 위한 개선사항에 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합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그 세부유형별 주요 내용을 욕구순위별로 정리한 결과는 <표 3-3-12>와 같다.

가장 많이 언급된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운영시간과 횟수, 접견장소 및 환경개선, 접견 시 복장교체, 접견 시 안아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운영절차와 기술적 측면, 별도 접견장소 마련, 그리고 이용자격조건의 완화 등으로 나타난다. 먼저 개선에 관한

가장 높은 욕구를 보인 접견 운영시간과 횟수에 관한 세부내용을 보면 접견시간을 늘이고, 자녀들의 상황을 반영하여 시간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녀와의 접견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오기 때문에 접견시간이 촉박하다는 점과 일반접견을 비롯하여 스마트접견, 전화접견도 아이들과의 실질적인 접촉이 가능하도록 아이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주말, 방과 후 실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접견장소와 접견공간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주된 사항은 차단막이 없는 곳에서의 접견이었는데 아크릴 차단막 때문에 자녀들이 겁을 먹고 신체접촉도 어려워지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접견복장에 대해서는 번호표가 있는 수용복은 자녀들을 놀라게 하고 본인도 부끄러운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게 되어 창피함을 유발시키고 있으니 자녀 접견에는 일반복을 입게 해 달라는 요구이다.

아울러 자녀와 만날 때 애정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원하고 있었다. 안아볼 수 있게, 얼굴이라도 만질 수 있게, 손이라도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을 희망하는 응답이 많았다. 아이와의 신체접촉은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직접 표현하는 방법인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안아주지도 않는 부모에 대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운영절차와 기술적인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교정 시설이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교도관의 모습이 아이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접견, 화상접견에서 교도관의 모습이 안보이게, 장소변경 접견장에서도 교도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구치소, 교도소, 법무부와 같은 표식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한편 이별시간에 아이들의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 자연스러운 이별상황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도관들이 융통성을 보여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또한 접견 시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하는 규정이 때로는 접견을 원하는 자녀의 방문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초등학교 정도면 혼자서도 가까운 거리는 방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스마트접견에서 전화 수취인 등록 요건으로 방문을 통해 사진등록을 요구하는 신청절차는 자녀를 전화대상자로 등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게 한다는 지적

이 있다. 한편 기술적으로는 스마트접견시설의 장비 연결 상태가 나쁘고, 화상접견에서 음성, 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제기되었다.

접견장소의 변경에 대해 교도소 외의 장소를 희망하는 소수의견이 조심스럽게 피력되기도 하였다. 수용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녀와 만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접견장소가 아니라 교정기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제3의 장소, 나아가 별도의 시설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처럼 주말에 어린 자녀들을 방문하는 제도에 관한 건의도 제기되었다.

▶▶▶ [표 3-3-12] 자녀와의 접촉제도 개선에 관한 수용자 욕구

(단위: 빈도 수)

순위	구분	욕구 요약	주요내용	빈도
1	접견 운영시간과 횟수	접견 시간은 늘리고, 자녀가 가능한 시간에 실시	- 접견시간이 촉박, 시간 연장. - 스마트접견은 주말에도 실시하고 시간은 아이들이 가 능한 주말이나 방과 후로 조정 - 접견 횟수 늘어 주기	64
2	접견장소 환경 개선	아동친화적인 접견실	- 차단막 제거: 칸막이 없는 곳, 아르클, 철창 제거, 개방 공간 - 접견환경이 삭막함,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겁을 먹음, 충격을 줌, 아이들 정서에 나쁨	57
3	접견복장	수용자 옷이 아닌 일반옷 착용하고 접견	- 수용복, 죄수복, 번호표 없는 옷 - 아이들이 놀라고 충격 - 수용사실을 알게 됨 -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됨	36
4	자녀에게 애정표현	아이와의 신체접촉	- 아이를 안아볼 수 있게 - 아이의 손이라도 잡을 수 있게 - 얼굴이라고 만질 수 있게	24
5	운영절차와 기술적 측면	절차는 알려주고 기술적 문제는 보완	- 교도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스마트접견, 화상접견 시 교도관의 모습이 안 보이게, 모습이 보이면 아이들이 물 음, 장소변경 접견장에서도 교도관이 보이지 않게) - 구치소, 교도소, 법무부 표식이 보이지 않게 - 이별시간에 아이들 마음 상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 초등생 정도면 혼자서도 접견할 수 있도록 - 신청절차에 대해 수용자와 가족에게 이해시킴 - 스마트접견 자녀 신청 절차가 복잡(교도소 방문) - 스마트접견 연결 상태 나쁨 - 화상접견에서 음성, 영상의 개선	17

순위	구분	요구 요약	주요내용	빈도
6	별도의 자녀 접견장소 마련	교도소 같지 않은 장소	- 수용사실을 알려지지 않고 접견할 수 있는 장소 혹은 전화, 스마트접견 확대(수용사실 모르게 할 수 있음) - 장소 변경, 별도의 시설과 공간 - 교도소 모습이 아이에게 각인됨 - 교도소 외의 장소에서 접견	12
7	대상자 자격조건	대상자 자격조건 완화 (금수 등)	- 금수 제한 완화, 미결에게 기회제공(전화, 스마트접견, 가족만남의 날 등) - 특정 범죄자(조직폭력, 마약사범)에 대한 제한 없애기 - 이용 대상자 늘려주기	9
합 계		수용복을 입지 않고 칸막이 없는 개방공간에서 아이를 안아볼 수 있는 접견 을 하고 싶다.		219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마. 자녀문제 및 자녀 지원에 관한 수용자 욕구

〈표 3-3-13〉에 의하면, 현재 자녀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보호자의 건강문제, 자녀 보호자와의 갈등, 자녀의 학교부적응, 질병문제, 자녀의 비행·일탈 행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빈곤은 자녀들의 다수가 겪게 되는 문제이며, 자녀의 보호자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 역시 양육환경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항목이다.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소수 의견으로 자녀의 심리적 문제(충격, 불안, 우울, 아빠의 부재로 인한 불안과 그리움, 정서적 불안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3-13] 자녀문제 유형별 동조율

(단위: %)

순위	자녀문제 유형	사례수	백분율 (응답자 705명 기준)
1	경제적 어려움	432	61.3%
2	보호자 건강문제	134	19.0%
3	보호자와 갈등	99	14.0%
4	학교부적응	66	9.4%
5	질병문제	65	9.2%
6	비행, 일탈행동	45	6.3%

※ 사례수는 각 문항별로 “해당된다”고 응답한 경우, 총 사례 수의 합은 841건, 복수응답(가능)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한편, 자녀 지원에 관한 수용자들의 욕구를 볼 때(표 3-3-14) 모든 항목에서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욕구가 높은 항목들(매우필요함 및 조금필요함)은 가정의 경제적 지원(80.6%), 학교생활·학업 지원(71.1%), 자녀와의 원활한 만남 지원(71.0%), 자녀의 심리적 안정 지원(66.4%), 건강관련 지원(65.9%)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들 역시 절반 이상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표 3-3-14] 자녀 지원에 관한 수용자 욕구

(단위: 빈도 수, %)

	매우 필요함	조금 필요함	보통임	거의 필요치 않음	전혀 필요 없음
(1) 적절한 보호자 연계·선정	282 (42.7)	74 (11.2)	145 (21.9)	49 (7.4)	111 (16.8)
(2) 자녀가정 경제적 지원	483 (68.4)	86 (12.2)	77 (10.9)	24 (3.4)	36 (5.1)
(3) 자녀 심리안정 지원	352 (50.4)	112 (16.0)	141 (20.2)	33 (4.7)	61 (8.7)
(4) 학교생활·학업 지원	386 (56.0)	104 (15.1)	109 (15.8)	28 (4.1)	62 (9.0)
(5) 자녀 양육자 교육·심리적 지원	320 (46.4)	118 (17.1)	142 (20.6)	42 (6.1)	68 (9.9)
(6) 귀하와 원활한 만남 지원	427 (61.6)	65 (9.4)	112 (16.2)	34 (4.9)	55 (7.9)
(7) 건강관련 지원(수술연계, 병원비)	373 (54.0)	82 (11.9)	135 (19.5)	40 (5.8)	61 (8.8)
(8) 문제행동 교정을 위한 상담 등	259 (38.0)	102 (15.0)	175 (25.7)	58 (8.5)	87 (12.8)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 및 지원에 관한 욕구를 종합하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녀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고 이러한 까닭에 자녀가 사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원하는 욕구가 가장 높다. 한편 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업지원에 관한 욕구도 높은 수준인 만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수용자 자녀 지원은 학교체계와의 연계가 중요할 것이다. 자녀와의 원활한 만남 역시 다수의 수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인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자녀접견 제도의 개선 및 보완도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보호자의 건강문제는 자녀양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신체적으로 자녀를 적절

히 양육하기 어려운 보호자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양육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양육지원과 관련하여 수용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이용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수용자 대상 조사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를 이루었다. 교도소 내부 또는 인근에 어린이집을 둔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85.3%가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반면에 14.7%는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수용사실을 자녀가 알게 하지 않겠다는 것과 자녀를 교정시설과는 접촉하지 않게 하겠다는 수용자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수용자의 어린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수용자의 욕구에 부응하지 않으며, 설치·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참여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 출소 후 관련 사항

1) 출소 후 자녀와 함께 살 계획

수용자가 출소 후에 자녀와 함께 살겠다는 것은 자녀의 보호자 내지는 자녀의 부양자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소 후 자녀와 살 것인지에 대해 94.4%가 그렇다고 하였다(〈표 3-3-15〉). 이는 입소 전에 자녀와 함께 살았다는 응답(90.9%) 보다 높은 수준이다(〈표 3-3-5〉 참조). 어린 자녀를 둔 거의 모든 수용자가 출소 후에는 자녀를 부양하면서 함께 살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 3-3-15] 출소 후 자녀 부양 의사

	(단위: 빈도 수, %)	
	빈도	백분율
자녀와 함께 살 것임	697	94.4
자녀와 함께 살지 않을 것임	41	5.6
합 계	738	100.0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2) 출소 후 걱정되는 사항

출소 후 자녀와 생활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우려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3-17)). 가장 높은 순서대로 생활비 마련, 자녀와의 관계회복, 자녀와 함께 살 집 마련, 배우자와 관계회복 등이 우려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73.6%의 높은 응답률을 보인 생활비 마련은 자녀 양육비와 직결되는 사항이며, 자녀와 함께 살 집(62.6%) 마련은 자녀와의 재결합을 위한 선행요건이라는 점에서 양자 모두 자녀와의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와의 관계회복 역시 동조율이 매우 높아 응답자의 66%가량이 걱정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배우자와의 관계회복도 60%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출소 후를 대비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에서 가족관계 회복(자녀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표 3-3-16] 출소 후 걱정되는 사항

(단위: %)

	사례수	백분율 (전체응답자 730명 기준)
자녀와 함께 살 집 마련	457	62.6
생활비 마련	537	73.6
자녀와 관계회복	481	65.9
배우자와 관계회복	437	59.9

※ 사례수: 각 문항별로 “해당된다”고 응답한 경우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2. 심층면접 결과

가. 조사대상자와 조사내용

1) 조사대상자의 기본정보

먼저 유아양육 및 임신부 수용자는 4개 기관에서 6명의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표 3-3-17)). 만 12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남녀 수용자를 대상으로 4개 교정기관에서 1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의 성별은 여성 5명과 남성 10명이다(표 3-3-18)).

» [표 3-3-17] 심층면접자 구성(유아 양육 및 임신부 수용자)

사례번호 (기관명)	수용자유형	나이	형관련 사항	자녀 관련사항	특이 사항
1-1 (청주여)	유아 양육 여성	40세	기결 10월 (잔여 4월)	양육유아 생후 6개월	혼인한 남편의 지원이 적극적
1-2 (청주여)	유아 양육 여성	33세	기결 1년6월 (잔여 11월)	양육유아 생후 5개월	사실혼 상태
1-3 (청주여)	유아 양육 여성	31세	기결 3년 (잔여 1년4월)	양육유아 생후 18개월	18개월이 되어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보낼 예정
2-1 (수원구)	유아 양육 여성	37세	1심재판 중	양육유아 생후 80일 첫째 4살(보육원)	사실혼 상태
5-1 (군산교)	유아 양육 여성	20대	기결 10월 (잔여1월 미만)	양육유아 생후 12개월	출소 임박
6-1 (서울구)	임산부	30세	1심재판 중	임산 14주, 첫째 4살	태아상태 건강함. 첫째 아이가 복지시설에 있음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 [표 3-3-18] 심층면접자 구성(어린 자녀를 둔 남녀 수용자)

사례번호 (기관명)	성별	나이	형관련 사항	자녀 관련사항	특이 사항
1-4 (청주여)	여	31세	기결 4년 (잔여 1년6월)	10살 수용사실 모름	친정부모님이 자녀 양육, 아빠도 일부 지원
1-5 (청주여)	여	30세	기결 4년 (잔여 3년 4월)	12살, 10살 수용사실 모름	친정엄마가 자녀 양육, 남편과 이혼상태
2-2 (수원구)	여	37세	기결 3년 4월 (잔여 1년 2월)	7살, 5살 수용사실 모름	친정엄마가 자녀 양육, 남편이 일부 지원
2-3 (수원구)	남	26세	항소심 재판중	18개월	배우자가 간혹 접견 수용자의 정신적 문제 큼
2-4 (수원구)	남	40세	항소심 재판중	14개월	배우자가 자녀와 매일 접견 음. 자녀는 배우자가 안정적 양육
3-1 (대구구)	남	29세	1심 재판중	9세 수용사실 알고 있음	부모님 양육 미혼 부자가정
3-2 (대구구)	남	45세	1심 재판중	16개월	배우자 양육, 처갓집에서 거주
3-3 (대구구)	남	35세	기결 2년 (잔여 10월)	11살 수용사실 눈치챈	부모님이 자녀 양육 부자가정
3-4 (대구구)	남	37세	1심 재판중	11살, 9살 수용사실 모름	배우자가 두 자녀 양육
3-5 (대구구)	여	40세	1심 재판중	15살, 5살 수용사실 알고 있음(큰 애)	친정엄마가 자녀 양육, 출소 후 본인이 양육

사례번호 (기관명)	성별	나이	형관련 사항	자녀 관련사항	특이 사항
3-6 (대구구)	여	32세	기결 10월 (잔여 2월)	8살, 6살 수용사실 모름	첫째 아이는 아빠가 부양, 둘째는 희귀질환자이고 친정엄마가 부양
4-1 (인천구)	남	44세	기결 1년 (잔여 3월)	16살, 13살 수용사실 모름	배우자가 자녀 부양 및 직업활동, 처갓집에 거주
4-2 (인천구)	남	43세	기결 8월 (잔여 1월)	10살, 7살 수용사실 모름	배우자가 양육, 처갓집에서 생활, 첫째 아이가 ADHD
4-3 (인천구)	남	33세	기결 2년 (잔여 1년)	7개월	배우자 양육, 처갓집에서 거주. 처가 가끔 접견 옴
4-4 (인천구)	남	43세	기결 4년 (잔여 2년 6월)	6세 수용사실 눈치챈	배우자 양육, 처갓집에서 거주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 한편, 관련 전문가 면접은 수용자 자녀 지원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관점과 의견을 반영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인 교정직원(7명)에 대해서는 개별대면면접(교정직원 5명), 집단대면면접(법무부 교정본부 2명)을 실시하였고, 민간 전문가(2명)에 대해서는 전화 및 대면면접을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주요이슈별 논의에서 해당내용을 기관번호와 함께 제시하였다. 관련 전문가로부터 수집한 자료는 개별적인 의견이기 보다는 기관차원의 의견이므로 기관번호를 부여하였다(〈표 3-3-19〉).

▶▶▶ [표 3-3-19]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 대상자

교정직원	수원(구)	인천(구)	청주여(교)	대구(구)	교정본부
	기관 1	기관2	기관3	기관4	기관 5
민간 전문가	수용자 및 출소자 가족지원기관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기관		
	기관 6		기관 7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2) 조사대상자 유형별 조사내용

심층면접대상자 유형별 주요 면접내용은 〈표 3-3-20〉과 같다.

▶▶▶ [표 3-3-20] 심층면접 조사내용

조사대상자 구분		면접 내용
유아 양육 여성		유아 양육 시설 내외 양육환경, 처우 실태와 욕구
임산부		임산부의 처우 실태와 욕구
어린 자녀를 둔 남녀 수용자		자녀들의 양육환경 실태, 자녀들의 문제와 지원 욕구, 자녀와의 관계 실태와 욕구, 출소 후 자녀양육 관련 욕구
관련 전문가	교정기관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의 실시 현황
	교정본부	수용자 자녀 지원 관련 정책현황과 향후 전망
	민간 전문가	수용자 자녀 지원 현장 실태와 개선방안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나. 유아 양육 및 임신부에 관한 심층적 이해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제도의 당사자가 되는 여성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아울러 임신부에 대한 교정기관의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현황 및 개선 욕구에 관한 면접결과는 <표 3-3-21>와 같으며, 주요이슈별 구체적인 사례는 유아 양육 및 임신부 면접결과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병행하여 제시하였다.

▶▶▶ **【표 3-3-21】 양육유아 및 임신부의 시설 내외 환경과 처우욕구**

	주요이슈	세부 내용
양육유아	시설 내 양육환경	아이 건강관리, 목욕 등 일상생활, 식사 및 영양, 거실생활
	시설 외 양육환경	배우자의 양육능력, 대리양육자
	처우관련 욕구	양육유아제도 만족, 거실 공기, 거실 크기, 양육기간 연장, 이유식, 거실생활자 구성
임산부	처우제도 실태	시설 내 생활, 병원 및 의료
	처우관련 욕구	임산부 건강관리, 대안적 형사제재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1) 시설 내 유아 양육 환경

(1) 양육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등

양육유아의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교정시설 내에 설치된 의무과에서 무료지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예방접종은 대개는 출산을 한 외부병원에서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¹⁶²⁾에 실시한 후에 재입소하고 있었다. 기관 내의 의무과로부터 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아기수첩¹⁶³⁾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에서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일에 따라 예방주사도 제공하고 있어서 유아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기관별로 의무과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2) 출산 시 형집행정지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그러나 이는 교정기관이 아닌 검사가 정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다를 수 있다.

163) 아기수첩은 수용자가 출산한 병원에서 받아 입소 시 의료과에 제출 및 보관한다. 외부의료시설 예방접종 시에는 의료과에 보관중인 수첩을 받아 사용한다.

“제 경우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기본적인 것은 의무과에서 무료로 해 주세요. 예방접종은 외부 병원에서 맞았어요. 소 내에 있는 의무과를 통해 아기수첩도 받았어요.” (사례 5-1)

“의무과에서 아기수첩을 받았는데, 법정 예방주사 맞을 기일이 되면 가까이 있는 동수원 병원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아기가 아프면 외부병원을 이용하게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사례 2-1)

(2) 목욕, 운동 등 일상생활

양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해서는 교정처우 차원에서 특별한 불편함이 없도록 기본생활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욕은 날마다 할 수 있고 운동도 다른 일반 수용자들에 비하여 융통성 있게 시간이 부여되고 있다고 한다.

“유아 방에서 80일 된 아이와 둘이서 생활하고 있어요. 아기를 위한 생활필수용품(기저귀, 분유 등)은 부족함 없이 지급되고 있으며, 목욕도 날마다 시킬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씩 따뜻한 물이 든 욕조가 방으로 들어옵니다.”(사례 2-1)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운동시간에 유모차를 끌고 나가서 아이와 함께 운동장을 산책하고 있어요.”(사례 5-1)

(3) 식사 및 영양, 생활용품

어린 아이를 위한 분유가 제공되고 있고 기저귀 등 아기에게 필요한 용품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유식에 대해서는 품질 개선 및 아이의 발달단계에 적절한 이유식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현재는 모유수유를 하고 있고 관에서 제공하는 분유로 충분해요. 그렇지만 이유식 시기가 되면 애기에게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말하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좋은 이유식을 특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난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어요.”(사례 1-2)

“교도소마다 지원되는 물품의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송을 가면 이유식이 달라져서 아이에게 안 좋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18개월 다 되어 가는데 이유식이 좋지 않아서 아직까지 분유를 먹고 있어요. 관에서 주는 이유식은 아이의 단계에 맞지 않아요.”(사례 1-3)

“저는 여자사동 내에 있는 거실에서 아기랑 둘만 있습니다. 출산 후 아기와 함께 들어올 때 기저귀나 분유를 많이 가지고 왔지만, 기저귀나 분유는 관에서 지급되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사례 2-1)

(4) 거실 생활

기관에 따라 양육에 경험이 많은 수용자가 도우미로 함께 거실 생활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유아가 1명인 곳에서는 도우미가 함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하고(사례 2-1), 반면에 유아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거실에서 생활하는 유아 양육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는 공간 활용상 도우미가 불필요하다고 하였다(사례 1-1).

“아이를 돌 본 경험이 있는 분이 도우미로 거실에 함께 계세요. 제가 아이 돌보는 것이 서툰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사례 2-1)

“한 방에 세 명의 유아와 엄마들이 있어서 공간이 비좁아요. 같은 방의 애기들이라도 다들 출생 후 개월 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도우미가 불필요합니다. 더구나 좁은 공간에 다른 사람이 추가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사례 1-1)

2) 교정시설 외 대안적 양육환경

(1) 배우자의 양육능력 부족

유아 양육 여성 수용자들은 임신부 상태에서 입소하여 수용기간 동안에 출산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출산 직후 갓 태어난 아기를 떼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아울러 어린 아기의 경우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유아 양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볼 때 갓 태어난 영아를 남편이 돌보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조사대상 유아 양육 여성 수용자들의 다수가 남편의 경제적 능력 및 양육자로서의 자질이 양호하지 못하였다.

“구치소에서 임신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형집행정지로 나가 있던 출산 전후기간 동안에는 친정엄마가 수발을 들었지만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길 형편도 되지 않았고, 저 또한 떼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6살 연하인 남편과는 사실혼 관계이고 시댁 부모님은 저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사례 1-2)

“남편은 저보다 연하여서 아직 어리고 군대를 공익으로 갈 예정이고 직업도 없어요. 도저히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요. 큰 애는 4살인데 지금 보육원에 맡겼어요. 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사례 2-1)

(2) 대리양육자

교정기관에 있는 유아들의 경우 시설 밖에서 양육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임신 및 출산과정에서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 실정이다.

“일단 저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요, 친정아버지는 해외에 계세요. 남자친구와는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고 시댁부모님은 둘 다 일을 하고 계셔서 아이를 맡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례 2-1)

3) 양육유아 처우 관련 욕구

(1) 양육유아 제도 및 위탁양육

유아 양육 여성들은 대부분 시설 내에서 영아를 양육할 수 있게 한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다만 아이의 인지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아기랑 같이 있어서 좋았어요. 만약에 중간에 헤어질 입장이면 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중략). 그래도 3세나 5세까지 아이와 같이 수용된다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아기가 식구통을 기억하거든요.” (사례 5-1)

“아기에게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엄마가 한 번이라도 더 쳐다봐 주는 것이 아기에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례 1-2)

“저희들이 볼 때는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인지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공간이 좁아 활동하기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사례 1-1, 1-2 및 1-3)

“양육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의 18개월에서 더 길게 연장하는 것이 수용자들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것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문가 기관 7)

한편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대신 대리가정에 맡기는 위탁양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보호기관에 맡긴 사례를 볼 때,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기관과 수용된 부모와의 연락체계가 긴밀하였으며 자녀도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맡아주는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이 아이도 보육원에 데려다 줄 생각을 했었는데 마땅치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볼 때에도 화가 나는데 보육 도우미들이 어떻게 하는 생각에...” (사례 1-1)

“큰 아이는 지금 아동복지센터에 있어요. 제 편지가 전달되고 있고요 아동복지센터 담당 선생님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례 1-2)

“일본의 경우 교도소에서 양육하는 유아는 없으며 지역사회 내의 보호시설에서 양육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교도소 환경보다는 전문적인 아동보호기관이 아이 양육에 더 낫기 때문이겠지요.” (전문가 기관 7).

(2) 거실 공기 개선

기관에 따라 외부환경이 트인 곳이 있고, 막혀있을 뿐 아니라 거실 창문도 환기기능이 부족한 곳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육유아 거실 지정에 있어 이러한 점이 우선적으로 배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으로 이송오기 전 시설에서는 거실에 창문이 없어서 불편했고, 공기가 탁해서 애기 건강에 나쁠 것 같아 걱정이 되었어요.” (사례 5-1)

(3) 거실 크기

보행기를 탈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걸음마를 시작하는 12개월 정도의 유아에게는 장애물 없이 걸을 수 있는 거실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이 작아서 아이가 보행기를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걸음마가 늦을까 봐 걱정이 되었고, 사람들이 이곳 환경이 좋다고 하여 이송 신청을 하여 왔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사례 5-1)

(4) 양육 기간

교정시설 내에서의 양육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아이들이 수용생활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과 교도소임을 인지하게 되어 기억에 남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개별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아이와 엄마가 함께 출소할 수 있도록 양육기간을 현행보다 2-6개월 연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이가 18개월인데 어느 순간부터 수용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정복을 입은 분이 오면 놀이방에 가는 것으로 알고 좋아라고 하고, 식구통도 기억합니다. 저 같은 경우 곧 아이를 내보내야 하지만 더 오래 데리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사례 1-3)

“저는 다행스럽게 아이가 18개월 되기 전에 출소하게 되므로 아이를 먼저 내보내야 하는 걱정은 없지만, 혹시라도 두어 달 정도의 간격이 있다면 아이를 더 데리고 있다가 함께 출소하기를 바라겠지요. 그렇지만 그 간격이 길어진다면 마음은 아프겠지만 아이를 먼저 내보내겠어요. 이곳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기에는 좋지 않은 곳이잖아요.(사례 1-2)”

(5) 이유식

기관에서 제공하는 혼합이유식은 아이의 체질에 맞지 않을 수 있고 품질 또한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유식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자비로라도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아이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유식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어요. 혼합이유식은 아이에 따라서 거부반응이 일 수 있거든요. 다음 수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자비로 이유식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례 1-1)

“아기가 아직 어려서 모유를 수유하고 있지만 이유식이 걱정이 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유식을 양육 유아 특별구매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사례 1-2)

(6) 거실생활

영아 때는 신체적 성장이 급등하는 시기여서 아이에 따라 발달상의 차이가 크므로 거실에 여러 명의 아이가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경우 아이들의 발달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놀이공간의 제한성도 어느 정도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달단계가 다른 아이들이 한방에 지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걸음마 단계의 아이가 누워 있는 아이를 밟기도 하고, 어린 아이의 울음 때문에 큰 아이는 잠을 깨기도 해서 여간 힘들게 아니었어요.”(사례 1-3)

“아이들이 원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별도의 놀이방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걸음마를 시작하면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인데 거실에만 주로 있어야 하니 아이 발달에 지장이 될 것 같아요.”(사례 1-1)

4) 임산부 처우제도 실태

(1) 시설 내 생활

임산부 수용자는 별도의 거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되고 있었다. 운동, 목욕, 식사 등은 다른 수용자와 특별한 구별 없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서 약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관에 따라서는 임산부에 대해 운동이나 거실생활 전반에 걸쳐 우선적으로 배려하거나 융통성 있게 규칙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6인실에 4인이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서 편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입덧이 심할 때는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십니다. 운동, 목욕, 음식은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처우 받고 있지만 특별한 불만은 없어요. 여사 직원들이 사소한 일이라도 신경을 써주고 있어서 감사하지요.”(사례 6-1)

“저희 기관에 수용되어 있던 임신부가 출산을 위해 형집행정지로 며칠 전에 출소를 한 상태입니다. 임신부를 위한 별도의 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 임신부 2인과 간병인 1명이 생활하게 됩니다. 현재는 비어 있지요.”(전문가 기관 6)

(2) 병원 및 의료

시설 내의 의무과에서 수시로 검진이 가능하며 임신단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외부 병원에 통원검진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임신부에 대한 의료적 관리는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월 7일 입소(40여 일 정도 경과)한 이후 두 번 외부병원진료 받았습시다(평촌 한림대 병원). 그 때 초음파검사 및 입덧 약 처방을 받았고, 처방받은 입덧 약 덕분에 입덧을 잘 넘기고 있어요. 소 내에 의사가 있어서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사례 6-1)

“임산부를 위한 의료처우로는 시설 내 의사에 의한 수시 검진이 가능하고, 임신단계에 따라 1달에 1회 내지는 1달에 2회 외부 정기검진(외부병원)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달에는 사람에 따라 주 1회 외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사비 부담도 있습니다.”(전문가 기관 6)

5) 임신부 수용자 처우 관련 욕구

(1) 임신부 수용자에 대한 건강관리 체계

임산부는 영양이 충분히 필요한 만큼 관에서 제공하는 음식과는 구분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⁶⁴⁾ 아울러 영양제 구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필요한 영양을 적절히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산부는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음식방송이 나오면 먹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집니다. 물품 구매가 쉬워졌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임신부에 대한 특별 영양을 위한 배려는 없으니 영양을 고려하여 식단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임신 기간 동안 먹고 싶은 음식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신부에게 필요한 영양제 구입도 쉬워졌으면 좋겠어요. 엽산과 철분 영양제 구매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임신 여성에게 필요한 영양제 또는 기타 약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사례 6-1)

164) 2019년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 임신부에 대해 관비로 지급되는 물품은 없으며, 필요시 수용자가 특별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2) 대안적 형사제재

임산부 수용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수용을 피할 수 있는 대안적인 형사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 내에서 아기가 양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산한 아이를 엄마가 키울 수 있도록 가능한 구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출소한 후에 출산하기 때문에 함께 생활할 수 있겠지만, 저희 큰 아이는 현재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보육원에 가게 될 형편에 있습니다. 두고 온 아이의 아버지는 친권자이지만 아이를 키울 능력도 원하지도 않아요.”(사례 6-1)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는 구속되지 않도록 검찰단계에서 고려해 주기 때문에 임산부 수용자는 교정시설에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양육이 필요한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을 가능한 피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낫지요.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동보호기관과 연계하여 대리 양육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겠지요.”(전문가 기관 6)

다.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에 관한 심층적 이해

만 12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남녀 수용자에 대한 면접결과는 <표 3-3-22>와 같으며, 주요이슈별로 해당하는 수용자 사례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다.

▶▶▶ [표 3-3-22] 수용자 어린 자녀들의 양육환경 실태와 처우요구

주요이슈	세부 내용
수용에 따른 자녀의 충격	헤어지는 충격, 경찰의 역할과 초기단계의 아동보호, 수용사실을 모르고 있음, 자녀 소식을 알고 싶음, 대안적 형사제재
자녀의 양육환경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보 부족, 여성 수용자의 자녀양육권
접견제도 개선	접견장소, 자격조건, 서신제도, 스마트접견 등 접견제도
출소 후 자녀와 재결합	자녀와 관계회복, 취업(양육능력)

※ 본 조사(2019.7.8.~2019.9.25. 실시)

1) 수용에 따른 자녀들의 충격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 자녀에게 설명할 겨를 없이 급작스럽게 경찰에 연행된 경우가 수용자의 다수였다. 수용된 사실을 자녀에게 숨기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진 부모로 인한 자녀들의 심리적 충격은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육자가 자녀의 소식을 전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들은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걱정이 컸다. 체포 및 조사단계에서 아이의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이었다.

“경찰이 압수수색할 때 아이를 강제로 떼놓아서 인사도 못했어요. 경찰의 처우는 정말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어떻게 되었냐고 묻자 아이의 거처를 궁금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출소하면 OO 경찰서의 당시 형사를 찾아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진정서라도 낼 생각입니다”(사례 6-1)

“저는 갑자기 그냥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평소에 출장이 잦았기 때문에 친정엄마가 출장 갔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고 제가 출소를 하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됩니다. 그동안 없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지 걱정입니다”(사례 1-5)

“저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갑자기 연행되었어요. 적어도 경찰조사를 진행할 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처지를 감안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사례 6-1)

2) 자녀의 양육환경

(1)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공통적인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남편과는 이혼상태입니다. 현재 10살 된 딸은 친정엄마와 함께 제주도에 있는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된 사회복지사가 신청해 주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매달 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사례 1-5)

“아이가 7살, 5살입니다. 현재 외할머니가 돌보고 있는데, 최근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매달 급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속 전에도 제가 식구들을 부양하였기 때문에 남편이 밖에 있어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사례 2-2)

“부자가정으로 아이와 함께 살다가 제가 들어왔으니 11살 된 아이는 부모님이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매달 4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고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도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다행이지요.”(사례 3-3)

(2) 건강문제

“6살 된 둘째 아들이 심장판막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치레가 잦았고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과는 이혼상태이고 제가 수용된 사실도 모르며 둘째 아이의 상태도 모릅니다. 현재 한부모가정이라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정부모님이 매달 23만원씩을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애가 탑니다.”(사례 306)

“아들이 치아가 약해서 잇몸에서 치아가 흐르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료를 해야 할 텐데 출소하려면 앞으로도 10개월이나 남아있어 걱정이 됩니다.”(사례 3-3)

자녀들이 난치병 또는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 중에 있지만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3)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보 부족

지역사회 및 관련기관에서 수용자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현재 3학년인 큰 애가 ADHD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비와 상담비가 너무 비싸서 치료를 계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사례 4-2)

“출소하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것인데, 그때 아이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지 걱정입니다. 교도소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한 채 부자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례 4-4)

(4) 수용된 엄마의 양육권

여성 수용자들의 경우 수용사실이 양육권 유지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양육권 소송이 제기되면 양육권을 박탈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혼 후 두 아이를 모두 내가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몰래 큰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아이를 찾아오지 못하고 수용되어 버렸는데, 출소 후에 다시 아이를 찾아오고 싶은데 수용된 기록이 있으면 아이의 양육권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사례 3-6)

(5) 방치 또는 부적절한 양육자

자녀들끼리 있거나 양육자가 있더라도 건강상 또는 연로하여 적절한 양육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친정 엄마가 두 아이들을(7살, 5살)을 돌보고 있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서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요.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조손가정에 대한 아이 돌봄 지원이 있으면 좋겠어요.”(사례2-2)

“방치된 아이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사회에서는 몰라서 못 도와주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자란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사는 것을 원한다면 가까운 교회나 아동보호기관에 연계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전문가 기관 6)

(6) 수용사실을 알리는 것에 관한 사항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수용사실을 자녀에게 숨기고 있다는 것은 심층면접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가 사실을 숨기는 경우 아이들은 불안감과 부모에 대한 서운함을 가지게 되는 반면, 비록 극소수이지만 자녀들이 수용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의외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관계도 유지하고 있었다.

“큰 애는 중3이에요. 엄마가 건설업을 하다가 교도소에 오게 되었다고 설명하자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었어요. 집이 경북 영천인데 이곳 대구까지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집견도 오고, 인터넷 서신도 자주 하고, 책도 넣어 주어요.”(사례 3-5)

“미혼 부자가정으로 아들과 둘이 살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이가 알 수밖에 없지요. 아이가 9살인데 수용사실에 대해 이해를 해 줍니다. 아빠가 힘들게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사례 3-1)

3) 접견제도 개선

(1) 접견장소

아이를 안아보고 싶다는 것과 수용사실을 모르게 한 채 접견할 수 있는 장소를 원하고 있기도 하였다.¹⁶⁵⁾

“처가 매일 14개월 된 아이와 함께 매일 접견을 옵니다. 처가 천사이고 처 때문에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아보고 손도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사례 2-3)

“수용사실을 자녀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가 아닌 곳에서 접견을 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와 같이 교도소 내에서 유니폼을 입은 교도관이 동행된 상태에서 접견을 할 때 지켜보면 아이들이 겁을 먹는 눈치예요.”(전문가 기관 2)

“자녀와의 접견은 가족친화적인 공간에서 해야 합니다. 쾌적성, 편안함, 친화성을 갖춘 장소를 선정 또는 환경을 정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색하거나 거리감이 들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거나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접견공간의 물리적 환경변화도 필요합니다.”(전문가 기관 7)

(2) 자격조건

급수 제한과 특정 범죄자(조직폭력, 마약사범 등)를 배제하고 있는 현재의 접견규정

165) 현재 차단막 없는 접견실(아동친화형접견실), 가족접견실이 연내로 26곳 추가 완성될 것이며, 내년에 11개를 추가로 설치하면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아동친화형 접견실이 완비될 것이라고 한다(전문가 기관 5). 아동친화형접견실 및 가족접견실이 완비되면 미성년 자녀를 둔 남녀 수용자들은 차단막 없는 공간에서 자녀와의 자유로운 접견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특히 전화의 경우 S2(2급)부터 자격이 부여되고 있어서 미결과 일부 수형자는 이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처가 매일 접견을 오고 있지만 가족접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직폭력사범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만날 수 있는 제도가 이렇게 많은지 오늘 질문지 보고 알았습니다. 저 같은 조직폭력이나 마약사범들은 대상이 아니니까요.”(사례 2-3)

“저는 S3이라 전화를 못합니다. 아이와 갑작스럽게 헤어져서 전화라도 해서 사정을 말하고 아이를 안심시키고 싶지만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사례2-2)

“화상접견이나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다면 아이의 얼굴도 볼 수 있어서 좋겠어요. 스마트접견은 일종의 영상통화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미결인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사례 3-2)

(3) 서신제도

서신은 자녀와 교류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절반 이상의 수용자가 자녀와 사신을 교환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용사실을 숨긴 채 주고받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서신 때문에 수용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보완해 달라는 요구에 다수가 동조하였다.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면 처가 속지만 전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편함에 있는 편지를 아이들이 가져간 날 사서함 표기가 된 것을 보고 발신지를 알아낸 것 같습니다. 수용사실에 대해 제대로 해명도 안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어설프게 알아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사례 3-4)

(4) 선호하는 접견제도

수용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의 교도소 방문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등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다만 이용기회의 확대, 절차와 시간 등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가족사랑캠프,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습니다.”(사례 3-1)

“아이들 모두 아빠가 수용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접견은 얼굴도 볼 수 있고, 교도소라는 것을 감출 수도 있다고 하니 꼭 해보고 싶습니다.”(사례 3-4)

“중학생인 큰 애가 토요일 마다 접견을 오고 있지만, 이메일 서신교환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딸이 쓴 이메일 서신을 매일 배달받고 있는데, 자녀가 수용사실을 알고 있거나 장거리에 있어서 접견이 쉽지 않은 경우에 유용합니다.”(사례 3-5)

“아이들은 제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저희 방의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접견을 한 적이 있는데 친정엄마 핸드폰 번호로 하고 아이를 바꿔주었습니다. 아이 핸드폰으로 하려면 아이가 직접 교도소에 와서 사진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용사실이 드러버리게 되어 못하고 있습니다.”(사례 1-4)

“청주여자교도소는 교도소 전체에 스마트접견 폰이 2대라서 너무 적고, 그것도 오후 4시 이전에만 가능해서 중·고등학생은 사실상 스마트 접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사례 1-4)

“스마트접견은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아이와 통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말에는 예약이 안 되고 평일만 가능한데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평일에도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사례 1-5)

(5) 자녀에 대한 지원

수용자들은 가족의 생계부양자였던 만큼 수용된 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대부분의 수용자가정에 해당되는 일이다. 이런 까닭에 수용자들은 가정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현행 제도 내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돈을 보내고 싶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돈이든 다른 방법으로든 보상하여 자녀에게 주면 좋잖아요.”(사례 3-1)

“아이가 아픈데 치료비가 많이 드는 병이에요. 제가 이곳에서 일한 것으로 받은 작업장려금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11살 아들이 제가 수용된 것을 눈치로 알고 있는 것 같으니 숨길 것도 없습니다.”(사례 3-3)

(6) 대안적 접견제도에 관한 욕구

교도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의 접견에 관한 욕구도 표출되었다. 수용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두렵지만 교도소 환경에서는 자녀들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여 접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경찰서에 있을 때 접견 온 아이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서 이곳으로는 절대 못 오게 합니다. 수용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요. 가족만남의 날이든 장소변경 접견이든 간에 어차피 이곳이 구치소라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교도소가 아닌 평범한 장소에서 아이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사례 4-4)

“자녀와의 접견방법으로 부모가 주말에 자녀를 방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보완과 행정적인 사항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른 수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게호인력의 동반문제 등이 확보되어야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입니다.” (전문가 기관 5)

4) 출소 후에 관한 사항

(1) 자녀와 관계회복에 대한 우려

수용자들의 대부분은 출소 후 자녀와 함께 살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출소 후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와 자녀들의 성장에 필요한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을 저 혼자서 키웠습니다. 미혼 부자가정이었습니다. 저나 애 엄마나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고, 애 엄마는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앞으로 3개월 쯤 후에 출소하여 옛날로 돌아갈 것인데 아들과 옛날처럼 친한 사이가 될 수 있을지 서먹함을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이 됩니다. 출소 후에 아이와 관계회복,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큰 걱정입니다.” (사례 3-1)

“내년에 출소하면 아이가 12살이 됩니다. 사춘기에 접어드는 예민한 시기인데 2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사례 3-3)

“어릴 때 아이의 기본 성품이 만들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출소할 때면 아이가 4살이 되는데 이미 성격이 만들어지게 되지는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 3-2)

“이곳에 있는 수용자들의 대부분이 어릴 적 사랑이 부족한 결손가정 출신들이에요. 소년수형자들을 보면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수용자들의 자녀에게 범죄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들이 어떻게든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 기관 1)

(2) 취업(양육능력)

출소는 가족의 생계부양자로서의 복귀를 의미한다. 수용된 동안 수용자 가정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지만, 출소한 후에도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취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수용자들의 걱정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전에 가족부양을 제가 전적으로 맡았습니다. 현재는 11살, 9살이 된 아이들을 처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국민가정이라고 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소 후에 가장으로서 생활비를 버는 것과 가족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사례 3-4)

(3) 가정생활의 회복

가족은 수용생활을 견디게 하는 힘이고 출소 후 성공적 사회복귀의 자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이 고생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자녀들을 잘 키워주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 고생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 등의 마음을 수용자

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감정은 동시에 출소 후에 가장 또는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싶은 동인이 되고 있었다.

“아내가 헌신적이에요.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14개월 된 아이를 혼자 키우고 매일 접견을 옵니다. 구속된 것도 마약을 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아내가 신고를 해서 들어 온 것입니다. 아내와 애기를 생각하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요.”(사례 2-4)

“가족과 자녀를 지원하면 재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를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출소자의 사회 적응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범죄의 폐해 중의 하나는 가해자의 가족이 해체된다는 것입니다. 출소자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돕는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요.”(전문가 기관 4)

제4절 | 소결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서 발견한 주된 사항을 요약하고 교정처우제도와 형사제재제도에 함의하는 바를 기술하였다.

1. 주요 발견사항 요약

가.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 설문조사결과

1) 인구학적 특성

본 조사표본의 만 12세 이하 어린 자녀 총수는 1,102명으로 나타났다(수용자는 754명). 자녀들의 연령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학령 전인 영유아에 비하여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초등학교 중에서도 저학년에 해당하는 7세에서 9세가 가장 많았다.

수용된 부모의 성별을 기준으로 볼 때 여성이 수용된 경우 어린 자녀를 둘 가능성이 남성에 비하여 더 높았는데, 자녀를 둔 수용자의 성별구성에서 여성 수용자 구성비 18.6%는 교정시설 전체 여성 수용자 구성비 6.8%보다 높기 때문이다. 여성 수용자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 깊게 자녀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호아동이 있는지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한편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부모들의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 수용자들은 절반에 가깝게(45%가량) 이혼, 미혼, 사별 등과 같이 법적인 혼인 상태에 있지 않아 수용자 자녀들의 상당수가 안정적이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이들 자녀들은 양육자의 부재 내지는 안정성이 결여된 양육환경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수용자 자녀의 양육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할 때에는 지역 사회의 아동보호체계에 연계하는 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양육환경 특성

첫째, 양육자의 유형을 볼 때 남아 있는 한쪽 부모가 자녀의 양육자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형사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른 시계열적 변화를 볼 때 자녀 양육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감소하고 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이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조손가정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양쪽 부모 모두와 헤어져 살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녀들의 심리적인 문제와 늘어나는 조손가정의 상황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에 연행된 후 구치소에 수용되기까지 1주일 정도에 해당하는 초기 단계에서 모든 자녀들은 양육환경에 변화를 맞게 되므로 가장 충격이 큰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보호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 단계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적절한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시설에 있거나 자녀끼리 방치된 어린 자녀들이 적지 않다. 시설에 있는 경우는 3.0%이고, 어린 아이들만 남겨진 경우도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또는 가까운 친인척에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시설로 옮겨지거나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함을 의미한다.

셋째, 수용자 가정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극빈가구가 2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 자녀들은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극빈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전체 수급가구 비율인 3.4%¹⁶⁶⁾보다 5배 정도 높은 셈이다. 수용자의

166)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 통계청,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 2019.12.15. 최종검색)

어린 자녀가 성장하고 있는 가구단위의 경제적인 지원방안 역시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넷째,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의 대다수(91%)는 부모와 함께 살았고, 일부는 부모가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16%). 부모와 헤어지는 것도 충격적인데 부모가 체포되는 현장에서 헤어지는 것은 어린 자녀에게 심각한 트라우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별에 대한 준비나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이 급작스럽게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의 70% 이상이 수용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수용된 부모가 향후에도 수용사실을 알릴 의사가 적기 때문에 부모가 수용된 동안 사실을 모른 채 지내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위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수용사실을 감추고 이로 인한 아픔을 감수하는 것이 차라리 아이에게 낫다”고 수용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자녀와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 수용자가 절반을 넘는 것 또한 수용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자녀와 접견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접견을 하면 아이가 죄인 된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교육에도 나쁘므로 교도소처럼 좋지 않은 곳에는 오게 하고 싶지 않다.”로 요약되었다.

3) 접견처우제도 관련 사항

첫째, 자녀와 교류할 수 있는 교정처우제도의 이용경험은 전반적으로 낮아서 서신(50.8%)을 제외하고는 모두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족만남의 집(3.4%), 이메일(3.5%), 가족사랑캠프(4.7%), 가족만남의 날(7.8%)은 이용한 적이 있다는 수용자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높은 이용경험에 비해 이용욕구가 낮은 일반접견과 서신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고, 이용경험은 낮는데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날, 전화, 가족접견, 스마트접견에 대해서는 확대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접견제도 개선에 관한 수용자들의 세부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선에 관한 욕구가 가장 높은 사항은 일반접견시간을 늘이는 것이었고 스마트접견과 전화접견은 아이들의 형편에 맞추어 주말이나 방과 후에도 가능하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번호표가 있는 수용복 대신 일반복을 입게 해 달라는 요구도 강했다. 아울러 차단막이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접견을 하고 싶다는 것과 자녀와 만날 때에는 신체접촉과 같은 애정표현이 가능할 수 있기를 수용자들은 원하고 있었다.¹⁶⁷⁾

한편, 운영절차와 기술적인 개선에 관해서는 교정시설이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스마트접견이나 화상접견에 교도관의 모습이나 구치소, 교도소, 법무부 등과 같은 표지가 보이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다. 접견 종료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이별이 될 수 있게 교도관의 태도에 있어 융통성을 보여 달라는 것과 보호자 동반이 자녀의 접견방문을 어렵게 하므로 보호자 동반 없이도 자녀접견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한편 접견절차와 관련하여 스마트접견은 자녀 신청 절차가 복잡하므로 방문하는 대신 사진파일을 보내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도 제안되었다.

4) 자녀 지원 및 출소 후를 대비한 수용자 욕구

첫째,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 및 자녀 지원에 관한 수용자들의 욕구를 볼 때, 수용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녀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면서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욕구를 표출하였다. 한편 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업 지원에 관한 욕구도 높아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수용자 자녀 지원은 학교 체계와의 연계가 중요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자녀와의 만남이 보다 원활하기를 희망하는 것 역시 다수의 수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인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자녀접견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을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출소 후에 자녀와의 결합에 관한 욕구는 매우 높지만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될 사항들에 대한 우려도 역시 컸다.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로는 생활비 마련, 자녀와의 관계회복, 자녀와 함께 살 집 마련, 배우자와 관계회복의 등이 순서대로 제시되었다. 출소 후를 대비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할 것임을 함의하고 있다.

167) 차단막 없는 접견은 형집행법의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아동친화접견실에서 접견이 가능하게 된다. 아동친화접견실은 현재 리모델링 중이어서 내년에 11개가 완성되면 전국 교정기관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들은 차단막이 없는 가족접견실 또는 아동친화형접견실에서 접견을 하게 되므로, 일반 접견실과는 다른 부드러운 환경의 공간에서 신체접촉도 가능하게 될 것인데, 형집행법의 개정에 따라 남녀 수용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심층면접 결과

1) 유아 양육 관련 처우제도

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유아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음식,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아의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교정시설 내에 설치된 의무과에서 무료지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예방접종은 출산을 한 외부병원에서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에 접종을 마치고 재입소하고 있었다. 외부에서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기일에 따라 예방주사도 제공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시설에서의 유아 양육에 대한 유아 양육 수용자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에 엄마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는데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도소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점과 신체활동이 활발해지면 교도소의 좁은 공간에서는 위험성이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현행 18개월을 유연성 있게 유지하되 여성 수용자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적 개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유식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욕구는 명확하였다. 어린 아이를 위한 분유가 제공되고 있고 기저귀 등 아기에게 필요한 용품은 충분히 제공되고 있었다. 다만 이유식의 품질 개선 및 아이의 발달단계에 적절한 이유식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셋째, 대리가정 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반되었다. 가정위탁 및 시설보호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여성 수용자들의 경우 양육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해 남편이 돌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능력 및 양육자로서의 자질이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영유아에 대한 한시적인 대리가정(가정위탁 및 보육시설) 제도를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유아가 생활하는 거실환경에 대한 부분적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양육 여성 수용자들은 어린 자녀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확보하여 유아의 복지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발달단계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한 거실에 있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2) 임신부 수용자 처우실태와 욕구

첫째, 임신부 수용자에 대한 교정기관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수용자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부에 대해 운동이나 거실생활에 있어 우선적으로 배려되는 점은 있으나 운동, 목욕, 식사 등은 다른 수용자와 특별한 구분 없이 제공되고 있어서 약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의료적 측면에서는 시설 내의 의무과에서 수시로 검진이 가능하고 임신단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외부 병원에 통원검진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임신부에 대한 의료적 관리는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임신부는 영양이 충분히 필요로 하는 만큼 임신부에 대한 별도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는 현재의 식사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과 영양제 구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신 단계에 따라 필요한 영양보충제를 적절한 시기에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임신부 수용자의 주된 욕구로 나타났다.

3) 어린 자녀를 둔 남녀 수용자 실태와 욕구

첫째, 수용에 따른 자녀들의 충격과 보호아동의 조기발견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아동의 조기발견과 부모와의 분리 및 수용에 따른 자녀의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자녀와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 자녀에게 설명할 겨를 없이 급작스럽게 경찰에 연행된 경우가 다수였고, 수용사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충격은 클 뿐 아니라, 양육자가 자녀의 소식을 전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들은 아이들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과 함께 걱정이 컸다. 체포 및 조사단계에서 어린아이들의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특히 부정적이었다. 경찰의 직무태도에 따라 남겨진 아이들의 상처를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조기에 가능해 질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둘째, 대안적 형사제재를 통해 구속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이 방치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수용된 부모가 아이의 유일한 양육자인 경우 구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특히 여성 수용자의 경우 한부모이거나 실질적인 한부모인 경우가 많고 죄질에서도 비폭력사범이 다수로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구금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셋째, 현행 접견제도에서 수용자들의 선호 및 비선호 프로그램들에 대한 구분이 비교적 뚜렷하였다. 선호하는 접견제도로는 스마트접견, 화상접견, 전화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수용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이 교도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다만 이용기회의 확대, 절차와 시간 등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개선이 요구되었다.

넷째, 접견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수용자들의 욕구는 구체적이었다. 접견과정에서 교정시설이라는 것이 자녀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교도관의 모습이나 구치소, 교도소, 법무부 표지가 보이지 않게 해 달라는 것과 이별시간에 아이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교도관들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접견시 보호자 동반이 자녀 접견을 어렵게 하므로 혼자서도 교도소 방문이 가능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한편 절차와 관련하여 스마트접견에 대해서는 교도소방문을 신청절차를 제한한 현행규정은 자녀의 등록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과 기술적인 면에서는 연결 상태가 나쁘다는 점, 아울러 화상접견에서 음성, 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다섯째, 대안적 접견제도에 관한 욕구도 표출되었다.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가족사랑캠프,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등을 선호하지만 일부는 수용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접견을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현재의 접견환경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접견장소를 마련하거나 외국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용자가 주말에 자녀들을 방문하도록 하는 주말 방문제도에 대한 욕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지역사회에는 방치 및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자녀들이 적지 않았다.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이 자녀들끼리만 있거나 양육자가 있더라도 건강상 또는 연로하여

적절한 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발견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양육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함을 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 정책함의

가. 유아 양육 수용자 및 임산부 수용자 처우제도

1) 양육유아 제도의 발전적 개선

양육유아 제도에 대한 여성 수용자들의 호의적 평가와 유아와 모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목할 때 제도의 지속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자와 교정직원 모두 동일하게 회의적이어서 현행 18개월을 유지하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의 여지는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이유식의 개선

기관에서 제공하는 혼합이유식은 아이의 체질에 맞지 않을 수 있고 품질 또한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식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자비로라도 구매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다수의 의견이었다.¹⁶⁸⁾ 양육 유아의 식사로 관에서 제공하는 이유식의 품질 개선 및 아이의 발달단계에 따른 이유식의 개선 필요성은 유아 양육 여성 수용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유식에 관한 구매품목을 다양화하거나 주문 판매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거실환경의 개선 등

어린 자녀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놀이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발달단계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한 거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4) 대리가정 위탁의 신중한 고려

유아 양육 여성 수용자들은 가정위탁 및 시설보호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168) 2019년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는 유아 양육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정해두고 있는데, 이 중에 단계별 이유식은 없다.

있지만, 실제로 보호기관에 맡겨진 경우 교도소 양육이나 부적절한 양육자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에 비하여 수용된 부모와의 연락체계가 긴밀하였으며, 자녀도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수용 전에 한부모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한 상태에서 부모가 수용되었거나 양부모가정이었지만 수용된 후에 남아 있는 한쪽 부모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대리가정에서의 보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모가 수용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아동보호기관 및 시설에 위탁하면 위탁기관장과 수용자와의 긴밀한 연락체계의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수용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완책을 통해 현행 대리가정(가정위탁 등) 제도를 수용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수용자 자녀를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요구된다.

5) 임신부 수용자의 건강관리 보완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의료, 거실생활 등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은 잘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집행법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¹⁶⁹⁾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적절히 시행되고 있음을 해당 수용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산부는 특별한 영양공급이 필요한 만큼 관에서 제공하는 식사에서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식단이 필요할 것이며, 식사 외의 방법으로 영양보충이 필요한 영양제에 대해서는 구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필요한 영양을 적절한 시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제도

1) 수용에 따른 자녀들의 충격 완화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부모와 헤어지게 된다. 부모가 수용된 몇 개월 때로는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부모가 자기 곁을 떠난 이유에 대한 의문은 불안감으로 때로는 부모에 대한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 시작은 형사제재 위주의 체포

169) 형집행법 제52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및 조사과정에서 보호아동을 고려하지 못한 법집행에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상처를 완화하기 위한 경찰의 직무역량 강화와 직무수칙 수행에 대한 강제성 부과 및 경찰에 대한 관련 교육이 요청된다. 아울러 경찰청과 지역사회 아동보호기관들의 협력적 역할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2) 보호아동의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강화

부모의 구속으로 인해 보호자를 잃거나 이를 대행할 양육자가 부적절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 경찰에 연행 후 구치소에 수용되기까지 보통 1주일 정도의 기간은 부모와 헤어지는 초기 단계로서 이때에 자녀들은 생활의 변곡점을 맞게 된다. 보호아동에 대한 조기발견·지원체계 연계에 대한 경찰청의 역할이 중요한 일임을 본 조사를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청과 아동보호기관 직원과의 연계체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¹⁷⁰⁾ 실제로 보호아동에 대한 경찰단계에서의 조치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두고 온 아이들에 대한 걱정으로 수용자들이 애를 태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정책권고에서도 아동보호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나, 경찰업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제재의 다음 단계에서 보호아동의 발견은 교정기관장의 역할이다. 교정시설 기관장에게 부과된 임무인 수용자로부터 보호를 의뢰받은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역할도 실효성 있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¹⁷¹⁾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해 개정 형집행법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¹⁷²⁾의 규정이 적극

170) 신연희 외, 위의 보고서, 2017, 130면. 최경옥/신연희, “텔파이 조사를 통해 본 수용자자녀 권리보장 및 지원방안”, 교정담론 제12권 제3호, (사)아시아교정포럼, 2018, 22~23면.

171) 현재 기결수형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수행자로부터의 보호요청이 있을 때 교정기관에서 이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하고 공단에서 수행자를 면담한 후 자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장학금 등이며 2019년 290건을 공단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기결수형자의 자녀에 해당하는 만큼 수용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 지원된다는 점에서 조기발견 및 지원의 신속성에서는 한계가 있다.(전문가 기관 5).

172) 형집행법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의 시행시점인 2019년 10월24일에 이르기까지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의 의뢰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조항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3) 여성 수용자 자녀에 대한 가정위탁제도 마련

여성 수용자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는 양육환경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가 수용된 경우 자녀들은 대개는 살던 곳을 떠나 조부모에게로 옮겨지거나 시설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친인척위탁을 포함한 가정위탁을 양육자가 불안정한 여성 수용자 자녀들을 중심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자 수용자들의 경우 대부분 수용기간이 짧고, 양형과정에서도 자녀 요인이 반영되는 만큼 한시적으로 친인척 또는 일반가정에 위탁하고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형사제재 제도의 개선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및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돌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제재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린 자녀들의 방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수용된 부모가 아이의 유일한 양육자인 경우 구금을 대체하는 형사제재가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여성 수용자의 경우 한부모이거나 실질적인 한부모인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죄질 면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구금형의 대안적인 형사제재 방안이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장에 대한 정책 권고에서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 기준에 양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동의 주된 양육자이고 아동과 피고인의 결합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양형조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된 내용이 형사실무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 접견제도의 개선과 대안 모색

1) 접견제도의 이용률 제고 및 자녀와의 신속한 접촉 보장

본 조사에서 현존 접견제도들에 대한 이용경험은 낮은 반면에 이용욕구는 매우 높았다. 교정처우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접견제도에 관한 수용자들의 욕구가 함의하는 바를 종합할 때 우선, 수용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녀와의 접촉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녀 및 수용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수용사실을 숨기고 자녀들에게 직업상 해외 또는 지방에 출장 갔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해외통화가 어디든 가능한 시대에 전화조차 안 되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의심과 불안감을 키우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수용자들 역시 갑작스럽게 자녀와 헤어진 상황이어서 자녀 양육자가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한 자녀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신입수용단계에서부터 전화 등을 통해 자녀와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자녀와 관련된 접견처우제도에서 이용경험에 비해 욕구가 낮은 일반접견과 서신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고, 이용경험은 적지만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족만남의 집과 가족만남의 날, 가족접견, 그리고 전화와 스마트 접견 제도에 대해서는 수혜자를 늘려야 할 것인데, 특히 선호 1순위에서도 높은 호응도를 보인 가족만남의 집, 전화, 스마트접견, 가족만남의 날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다 많은 어린 자녀들과 수용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상자에 대한 커버리지를 높인다면 좋은 제도를 바르게 정착시키고 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장소변경 및 접견환경의 개선

접견장소의 개선 및 대안에 관한 욕구도 수용자들은 가지고 있었다. 변경된 장소 내지는 교도소 외의 장소에서 접견한다면 자녀에게 수용사실을 알리지 않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별도의 시설과 공간에 대한 욕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획기적인 방법으로는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으나 어렵다면 교도소 외정문 인근에 자녀접견실을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주말을 이용한 자녀방문도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국내에서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행정적인 사항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수용자와의 형평성 문제, 계호인력의 동반문제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친화적 접견환경의 강화

접견제도는 아동의 욕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이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접견장소에서, 부모가 수용자임을 굳이 인지시켜 아동이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다면, 비록 짧은 접견시간이지만 부모와 자녀 간에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이 되어 자녀들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수용자의 욕구에 대응한 접견 프로그램의 운영

한국적인 상황에서 수용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수용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수용자 자녀 지원제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자녀들에게 수용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상태로도 자녀와의 원활한 만남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접견을 통해 자녀가 입을 상처를 치유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거나, 접견장소가 교도소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장소, 공간 환경, 복장 등이 개선된다면 수용자와 자녀들과의 접견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클 것으로 예측된다.

6) 자녀 및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수용자와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통해 가족이 해체되는 일을 예방하는 것은 수용자 관리 및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정처우에서 수용자의 가족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으로 부모가 수용된 동안 자녀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과 좋은 부모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성격형성의 적기인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적절하게 형성된 애착은 아동이 건강한 성격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아동의 건강한 인격은 장기적으로 비행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용된 부모와 자녀와의 접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출소 후 자녀와의 결합에 대한 수용자들의 욕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용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인 생활비 마련, 자녀와의 관계회복, 자녀와 함께 살 집 마련, 배우자와 관계회복에 관한 내용이 출소 후를 대비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출소 후에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교정처우의 목적이 라면, 사회정착의 토대가 되는 자녀 관계 및 가정의 성공적 회복은 처우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좋은 접근이기 때문이다.

마. 접견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1) 이용시간과 자격조건의 개선

자녀와의 접촉시간은 자녀의 일상생활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들이 접견 가능한 시간에 맞춘다면 방과 후, 주말, 방학기간 등의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 및 시기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개별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수용자로서의 조건들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소중한 엄마 또는 아빠일 따름이라는 사실이다. 수용자와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처우프로그램에서는 부모의 상황과는 별개로 모든 수용자 자녀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용기회의 확대를 위한 자격조건 완화

수용자들이 선호하는 접견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용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화상접견, 전화, 스마트접견은 수용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자녀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으나 제도의 수혜자는 적은 실정이다. 활성화 방안으로 교도소별로 스마트접견 시설을 늘리고, 급수별 제한 조건도 완화해야 할 것이다.

3) 접견절차의 개선

스마트접견에서 사진등록을 위해 자녀의 방문을 요구하는 규정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녀들의 교정시설 방문을 대신한다면 스마트접견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의 접견에서 보호자 동반 규정도 자녀의 개별상황에 따라 적용의 유연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자 동반이 자녀의 방문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정 연령 이상의 자녀(예: 보호자의 동반이 어렵다는 것이 증명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호자 동반 없는 자녀접견도 가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기술상의 문제 개선

기술적 면에서 스마트접견의 연결 상태가 나쁘고, 화상접견 영상화면에 교도관이 보이거나 법무부(구치소, 교도소) 등의 표지가 보이는 것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바. 수용자 자녀 성장환경 지원

1) 조손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수용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녀의 보호자로 조부모가 증가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보호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감소하고 조부모의 역할은 커져가는 것이다.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경제적 열악함과 양육자의 건강상의 문제도 취약하다. 부모들의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볼 때 절반정도의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가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가정이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일부는 미혼의 청소년 한부모가 수용되어 있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한쪽 부모가 수용된 동안 조손가정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조손가정의 비중이 커져가는 만큼 수용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일환으로 공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아동센터와 돌봄 사업, 드림스타트 등을 통한 양육지원이 절실하다. 그리하여 부모의 부재로 인해 손상을 입은 자녀들의 양육환경이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보완될 수 있도록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2) 가정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강화

사회적으로 마련된 가정지원제도에 관한 안내 및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제도(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긴급복지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 돌봄 지원에 관한 정보가 수용자 가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접견실에 자료를 비치하고 관련 영상을 만들어 접견대기 동안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사. 자녀에 대한 가정단위의 지원

1) 수용자를 통한 가정경제 지원

빈곤문제는 다수의 수용자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심층면접을 통해 적지 않은 수용자 가정이 현행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급여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의 지원이 없이는 최저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극빈가정이 수용자 자녀 다섯 명 중 한 명 수준이었다.

빈곤취약계층 아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 자녀들이 없도록 보호아동에 대한 발견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형집행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부과된 보호아동에 대한 교정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두고 온 가정과 자녀에 대한 수용자의 책임감 강화 차원에서 작업장려금을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현행 형집행법상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하고,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형집행법 제73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방치된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본 조사에서 자녀들끼리만 남겨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녀들끼리 있거나 양육자가 있더라도 건강상 또는 연로하여 적절한 양육이 어려운 경우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이 필요할 것이다. 남겨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자녀들끼리도 기본적인 가정 생활이 가능하며, 살던 거주지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생활환경의 변화를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거주지 변경이 없다는 것은 기존의 생활권(학교, 친구관계 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교회나 아동보호기관이 가정생활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지역사회도 범죄문제의 직간접적인 당사자이므로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자녀들을 돕는다면 수용자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고 자녀들은 환경의 변화를 예방하여 피해를 완화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지역사회가 사회자본을 활용하여 범죄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출소 후 자녀와의 재결합을 위한 지원

1) 수용자 부모교육 강화

부모교육을 통해 수용된 부모의 자질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용자의 95%가 출소 후 자녀와 함께 살겠다고 하지만 다수가 자녀와의 관계회복을 우려하고 있었다. 단절된 기간이 초래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수용된 동안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자질과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부모교육에는 아버지 학교, 양육기술교육, 자녀와 대화법,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시켜서 출소 후에 수용자들이 적절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한편 수용된 동안 자녀와의 소통이 원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병행되어야 할 일이다.

2) 지역사회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제공

자녀와의 관계 회복은 재결합을 앞둔 수용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소 후에는 부모교육을 통한 관계개선을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출소예비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가족관계 회복은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만약 수용사실을 자녀들이 알고 있는 경우라면 한국법무복지공단의 가족희망복원사업과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주거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 강화

수용된 후 자녀들은 거처를 조부모집 등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출소 후 가족과의 재결합을 위해서는 함께 살 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일이지만 주거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⁷³⁾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출소자의 재범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재범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출소자 주거지원 확대에 사용된다면 범죄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는 일이 될 것이다.

자. 수용자 자녀 현황파악의 정확성 제고 및 근거법령 마련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은 인구규모 및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2019년 4월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용자 자녀의 현황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다.¹⁷⁴⁾ 그런데 당시에 파악된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규모는 타 연구에 비해 현격하게 적은 수준으로 집계되었다.¹⁷⁵⁾ 추측컨대, 질문지에는 자녀지원을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사회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또한, 질문문항에는 자녀의 성명, 성별, 나이, 보호관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정시설에 자녀의 이름이 남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의 심정에 비추어 볼 때 자녀에 대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자녀수가 축소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나아가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익명성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및 조사윤리

173) 이동훈 외, 위의 보고서, 2014, 75면. 2019년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에는, 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10년임(2년씩 4회 연장, 2년 계약만료 시 마다 연장 심사), (https://koreha.or.kr/sub/02_01_6.do?MN1=3&MN2=16&MN3=212&MN=212, 2019.12.15. 최종검색)

174) 이는 2018년 12월 법무부가 발표한 “수용자 자녀 보호시스템”의 일환에 따라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사항 관리용 전산정보시스템을 보라미시스템에 반영한 것이다.

175) 수용자 미성년 자녀 인구규모에 대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22,000명으로 추산하였고, 2018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조사에서는 21,765명이었는데, 이들 조사는 모두 수용자와 자녀의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에 비해 2019년 교정본부는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수를 12,103명(6월 30일 기준)으로 집계하였는데 수용자와 자녀의 실명이 개방된 상태였으며, 기존의 두 조사에 비하여 1만여 명이나 적은 수준이다.

154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질문지의 수정이 필요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조사목적을 수정하고 자녀의 익명성 보장과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려면,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 자녀 현황파악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정책 권고를 수용하여 형집행법에 관련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장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외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권 수 진

외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제1절 | 미국

1. 임신부 수용자 처우

가. 교도소 임신 통계(Pregnancy in Prison Statistics)

미국에서는 2015년 말 기준, 약 210,595명의 여성이 연방 또는 주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약 28,240명의 여성이 수감되어 있었던 1980년과 비교하면 645% 증가한 것이다.¹⁷⁶⁾ 더욱이 수감된 여성의 거의 4분의 3 정도가 주된 가임 연령대라 할 수 있는 18~44세에 해당하며, 수감된 여성의 3분의 2는 자녀를 둔 어머니이자 미성년 아동을 돌봐야 하는 주요 양육자이다.¹⁷⁷⁾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징들로 미루어 볼 때, 임신 중이나 출산 전후 기간에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여성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바, 미국은 연방과 주 차원에서 이러한 여성 수용자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176) Bronson, Jennifer/Sufrin, Carolyn. "Pregnant Women in Prison and Jail Don't Count: Data Gaps on Maternal Health and Incarceration", *Public Health Reports* vol. 134, SAGE journals, 2019, p. 57S. (<https://journals.sagepub.com/doi/full/10.1177/0033354918812088>, 2019.12.15. 최종검색) 2016년 말, 미국 전역의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인구는 111,616명으로, 이는 교도소 수감 여성 인구가 13,258명이었던 1980년도와 비교할 때 742% 증가한 수치이다. Sufrin, Carolyn/Beal, Lauren/Clarke, Jennifer/Jones, Rachel/Mosher, William D., "Pregnancy Outcomes in US Prisons, 2016-2017",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109 issue 5,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019, (<https://ajph.aphapublications.org/doi/10.2105/AJPH.2019.305006>, 2019.12.15. 최종검색)

177) Bronson, Jennifer/Sufrin, Carolyn, *ibid.*, p. 57S.

임산부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연구한 브론손(Bronson)과 서프린(Sufrin)은 미국 내 여성 수용자의 75%가 가임기에 해당하는 18세~44세라는 데 주목하며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의 열악함을 지적하고 처우 강화를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미국의 여성 수용자는 일반 여성에 비해 만성 질환, 전염성 질환, 장애, 인지장애, 정신장애, 약물중독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금 중에 임신과 관련하여 보다 집중적인 의료처우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임산부 수용자들을 방치하는 것은 임산부의 건강, 태아의 건강, 출산 후 임산부 회복, 더 나아가 여성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¹⁷⁸⁾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감된 임산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임산부 수용자의 낙태, 사산, 조산이나 신생아 및 임산부의 사망 실태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매년 미국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이러한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있지만, 대상 여성의 구금 여부를 별도로 특정하여 조사하지는 않고 있다. 수용자의 의료기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전자 시스템을 이용하는 교정시설이 있는가 하면 서류 시스템을 이용하는 교정시설도 있는 등, 각 교정시설의 의료기록 시스템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정시설들이 수용자의 임신 관련 자료 수집을 우선사항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까닭에 임산부 수용자에 관하여 이용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연구자들과 민간단체는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그들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¹⁷⁹⁾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도소 임신 통계 프로젝트(Pregnancy in Prison Statistics(PIPS) project)”가 시작되었다¹⁸⁰⁾. 본 프로젝트는 존스홉킨스 대학의 “수용자의 재생산 건강에 관한 옹호 및 연구(Advocacy and Research on Reproductive Wellness of Incarcerated People, ARRWIP)” 기관이 주도하였으며 여성 수용자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임산부 수용자를 지원하는 것을

178) Bronson, Jennifer/Sufrin, Carolyn, *ibid.*, p. 57S.

179) Bronson, Jennifer/Sufrin, Carolyn, *ibid.*, p. 58S.

180) ARRWIP(Advocacy and Research on Reproductive Wellness of Incarcerated People) 홈페이지, PIPS project 참조, (<https://www.arrwip.org/the-project>, 2019.12.15. 최종검색)

목표로 시작되었다.¹⁸¹⁾

» [그림 4-1-1] 교도소 임신 통계 프로젝트 참가 지역



출처: ARRWIP(Advocacy and Research on Reproductive Wellness of Incarcerated People 홈페이지, PIPS project 참조. (<https://www.arrwip.org/the-project>, 2019.12.15. 최종검색)

〈그림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연방교정국(Federal Bureau of Prisons), 22개 주립 교도소, 6개 구치소(규모가 가장 큰 5개 구치소 포함), 3개 청소년 교정시설이 참여하는 본 프로젝트는 매년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임신부 수와 출산, 유산, 사산 및 낙태 등의 임신 종료 현황 및 임신부와 신생아의 사망 등에 관한 자료를 구축한다. 그 밖에 조산, 제왕절개, 의료적 및 정신적 상태(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HIV 감염, 약물 사용 장애 등)와 같은 보다 상세한 임신 관련 자료를 조사한다.¹⁸²⁾ 참여 기관에서 매달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추가 자금지원으로 참여 시설을 확대하고 있고, 데이터 관리자 및 교정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성 수용자의 필요에 맞는 의료처우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¹⁸³⁾

181) 박선영, “미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2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0.4., 3면.

182) Bronson, Jennifer/Sufrin, Carolyn, *ibid.*, p. 60S 참조.

나. 임신 도우미 둘라(Doula)의 활용

미국의 여러 주에서 임신부 수용자를 돕는 둘라(Doula) 제도가 실행되고 있으며 제도 운영을 법령으로 제정한 주도 있다. 둘라(doula)는 사전적으로 “의학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는으나 임신 기간 및 출산 전후로 산모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통은 여성이 이 역할을 맡는다(a person, usually a woman, who is not medically trained but who gives help and support to a woman during pregnancy and during and after the birth of her baby)”고 정의되고 있다.¹⁸⁴⁾ 둘라를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단체인 DONA International(Doula Training and Doula Certification)은 둘라에 대해서 “여성의 출산 전, 출산 중, 출산 직후에 지속적인 신체적, 정서적, 정보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산모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성취하도록 돕는 훈련받은 전문가(a trained professional who provides continuous physical, emotional and informational support to a mother before, during and shortly after childbirth to help her achieve the healthiest, most satisfying experience possible)”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⁸⁵⁾

미네소타 주의 교도소 둘라 프로젝트(Minnesota Prison Doula Project, MnPDP)는 수감된 부모 수용자들에게 임신 및 육아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미네소타 주 유일의 주립 여자교도소인 새코피 교정시설(Shakopee Correctional Facility)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들과 미네소타 주 전역의 카운티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¹⁸⁶⁾ 2003년, 새코피 여자교도소의 수감자들로부터 임신 및 육아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고충을 듣게 된 사회복지사이자 둘라인 에리카 게리티(Erica Gerrity)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재소자들을 위한 임신 및 육아 관련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미네소타 주 교도소 둘라 프로젝

183) 박선영, “미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2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0.4., 3면.

184) Cambridge Dictionary 홈페이지, doula 참조,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EC%82%AC%EC%A0%84/%EC%98%81%EC%96%B4/doula>, 2019.12.15. 최종검색)

185) DONA International 홈페이지, What is a doula? 참조, (<https://www.dona.org/what-is-a-doula/>, 2019.12.15. 최종검색)

186) Minnesota Prison Doula Project 홈페이지, (<https://www.mnprisondoulaproject.org/about>, 2019.12.15. 최종검색)

트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Isis Rising을 설립하게 되었다.¹⁸⁷⁾ 현재 미네소타 주 교도소 둘라 프로젝트는 미네소타 대학의 “도시 및 지역 문제 센터(Center for Urban and Regional Affairs)”에서 운영하고 있다.¹⁸⁸⁾

새코피 여자교도소에 구금된 모든 재소자들은 입소 시 임신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그 결과 임신한 상태이거나 복역 중에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네소타 교도소 둘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임신 기간 전반에 걸쳐 여성 수용자를 지도하고 돌봐 줄 둘라가 지원된다. 둘라는 출산 전 2회의 교정시설 방문을 통해 출산 계획, 태아의 발육 및 건강 기타 산모의 여러 의문사항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임신부와 논의를 한다.¹⁸⁹⁾ 산통이 시작되면 산모는 외부의 지역병원으로 이송되어 둘라를 만나게 되는데, 출산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의 입회는 허락되지 않으므로 둘라만이 산모를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신체적 고통 및 스트레스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¹⁹⁰⁾ 출산 후 산모는 아기를 병원에 두고 교도소로 복귀해야 하는데,¹⁹¹⁾ 이때 자녀와 떨어지면서 느끼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도 둘라가 산모에게 정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즉, 출산에 따른 호르몬 및 감정적 변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자녀와 교도소 담을 경계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여성 수용자가 산후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둘라는 건강 및 복지 측면에서 출산한 여성 수용자를 지원하는데, 여성 수용자는 둘라와 일대일 산후 면담을 통해서 자신이 느끼는 슬픔, 상실감, 건강 문제 및 이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된다.¹⁹²⁾

187) CURA(Center for Urban and Regional Affairs) 홈페이지, (<http://www.cura.umn.edu/news/minnesota-prison-doula-project-supporting-incarcerated-pregnant-and-parenting-women>, 2019.12.15. 최종검색)

188) CURA(Center for Urban and Regional Affairs) 홈페이지, (<http://www.cura.umn.edu/news/minnesota-prison-doula-project-supporting-incarcerated-pregnant-and-parenting-women>, 2019.12.15. 최종검색)

189) CURA(Center for Urban and Regional Affairs) 홈페이지, (<http://www.cura.umn.edu/news/minnesota-prison-doula-project-supporting-incarcerated-pregnant-and-parenting-women>, 2019.12.15. 최종검색)

190) CURA(Center for Urban and Regional Affairs) 홈페이지, (<http://www.cura.umn.edu/news/minnesota-prison-doula-project-supporting-incarcerated-pregnant-and-parenting-women>, 2019.12.15. 최종검색)

191) 산모는 통상적으로는 48시간, 제왕절개수술 후에는 72시간 동안 아기와 함께 있을 수 있다. Star Tribune, “State takes a gentler approach to pregnant women behind bars”, 2014.8.22. (<http://www.startribune.com/state-takes-a-gentler-approach-to-pregnant-women-behind-bars/272243761/>, 2019.12.15. 최종검색)

192) CURA(Center for Urban and Regional Affairs) 홈페이지, (<http://www.cura.umn.edu/news/>

둘라는 임신부 수용자에 대한 출산 지원 외에도 모성 및 돌봄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네소타 교도소 둘라 프로젝트는 모성 및 돌봄과 관련된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2개의 커리큘럼을 개발하였다. 둘라와 의료 사회복지사가 주축이 된 이 12주 과정 교육들은 양육 지식을 함양하고 교정시설에서의 양육 관련 계획 및 지원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새로 엄마가 되는 사람들의 모임(New Moms Group)”이라는 12주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성 수용자들은 건강한 출산에 관한 생리학·심리학적 요소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구금 중 출산 과정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러한 유형의 동료집단 모임은 여성 수용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겪은 경험을 나누면서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미네소타 교도소 둘라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 엄마가 되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여성 수용자들의 수가 상당한 정도로 늘어났으며, 이로써 보다 많은 어머니 수감자들에게 그룹 기반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교도소 내 돌봄 모임(Mothering Inside Group)”은 어머니와 자녀, 그리고 돌보미들 사이에 강력하고 건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술과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 간에 상호 경험과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¹⁹³⁾

미네소타 주 교도소 둘라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이후, 동 프로젝트는 헤너핀 카운티 성인 교정시설(Hennepin County Adult Correctional Facility)과 램지 카운티 구치소(Ramsey County Jail) 등 미네소타 주의 다른 교정시설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확대되었으며,¹⁹⁴⁾ 앨라배마 주립 교도소에서도 둘라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¹⁹⁵⁾

둘라 서비스는 미네소타 주의 경우와 같이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공하고 있다.

minnesota-prison-doula-project-supporting-incarcerated-pregnant-and-parenting-women, 2019.12.15. 최종검색)

193) CURA(Center for Urban and Regional Affairs) 홈페이지, (<http://www.cura.umn.edu/news/minnesota-prison-doula-project-supporting-incarcerated-pregnant-and-parenting-women>, 2019.12.15. 최종검색)

194) University of St. Thomas 홈페이지, “The Power of Restorative Love: Supporting Moms in Prison”, 2015. (<https://news.stthomas.edu/power-restorative-love-supporting-moms-prison/>, 2019.12.15. 최종검색)

195) Alabama Prison Birth Project 홈페이지, (<https://www.prisonbirth.org/why-we-do-this>, 2019.12.15. 최종검색)

전문적으로 돌라를 훈련하는 기관인 DONA International은 1992년에 설립된 기관으로서¹⁹⁶⁾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돌라 외에도 수용자를 위한 돌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킨다. 특히 수용자라는 신분을 감안하여 의료기록과 돌봄에 관한 비밀유지 훈련에 참여하고 서약서와 윤리강령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¹⁹⁷⁾ 이외에도 미시건 주의 “미시건 교도소 돌라 이니셔티브(Michigan Prison Doula Initiative)”,¹⁹⁸⁾ 일리노이 주의 “일리노이 출산 공평성(Illinois Birth Justice)”¹⁹⁹⁾ 등도 돌라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 교도소 돌라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미네소타 대학의 “도시 및 지역 문제 센터(Center for Urban and Regional Affairs)”는 미국 각 주와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 온 교도소 돌라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 있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교도소 돌라 훈련(National Prison Doula Training)”을 실시하고 있다.

교도소 돌라의 활용은 2014년 미네소타 주에서,²⁰⁰⁾ 2018년 워싱턴 주²⁰¹⁾와 오클라호마 주²⁰²⁾에서 입법화되었다. 다만, 돌라 서비스 비용은 자비부담이다.²⁰³⁾

196) DONA International 홈페이지, About DONA International 참조, (<https://www.dona.org/the-dona-advantage/about/>, 2019.12.15. 최종검색)

197) 박선영, “미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2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0.4., 6면.

198) Michigan Prison Doula Initiative 홈페이지, Our doula program 참조, (<https://momsbeyondbars.org/ourprogram>, 2019.12.15. 최종검색)

199) Illinois Birth Justice 홈페이지, (<https://www.illinoisbirthjustice.org/overview>, 2019.12.15. 최종검색) 일리노이 출산 공평성(IBJ)의 강령은 “수감된 임신부 및 새로 어머니가 된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출산 전, 출산 과정, 출산 후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데 헌신하는 것”이며, 수감된 임신부들에게 돌라를 제공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200) Minnesota Legislature 홈페이지, SF 2423(A bill for an act relating to public safety; addressing the needs of incarcerated women related to pregnancy and childbirth; authorizing an advisory committee; proposing coding for new law in Minnesota Statutes, chapter 241), (https://www.revisor.mn.gov/bills/text.php?number=SF2423&version=latest&session=ls88&session_year=2014&session_number=0, 2019.12.15. 최종검색)

201) Washington State Legislature 홈페이지, HB 2016(Concerning midwifery and doula services for incarcerated women), (<https://app.leg.wa.gov/bills/summary?BillNumber=2016&Initiative=false&Year=2017>, 2019.12.15. 최종검색)

202) Oklahoma State Legislature 홈페이지, HB 3393(An Act relating to prisons and reformatories; directing penal institutions, detention centers and jails to use least restrictive restraints on pregnant inmates; prohibiting use of restraints on inmates during labor and delivery; providing an exception; providing for publication of certain notice; directing penal institutions, detention centers and county jails to allow access to family member, friend or doula services for pregnant inmates; making certain acts unlawful; providing penalties; defining terms; providing for codification; and providing an effective date),

다. 임신부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금지

수용자들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외부로 이동할 경우에는 수용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수갑, 사슬 등의 보호장비가 사용된다. 그러나 임신부 수용자가 외부로 진료를 나가거나 출산을 할 때조차 이러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관행에 대하여 꾸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²⁰⁴⁾

이와 관련하여 미국 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이하 “ACLU”라 함)은 임신부 수용자에게 쇠고랑을 채우는 것은 위험하고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데,²⁰⁵⁾ ACLU의 조사에 따르면 여러 교정기관과 의학 협회들이 임신부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산부인과 의대 협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ACOG)”는 보호장비의 사용은 산모와 태아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며, 의료인이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²⁰⁶⁾ “미국 의학 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http://www.oklegislature.gov/BillInfo.aspx?Bill=hb3393&Session=1800>, 2019.12.15. 최종 검색)

- 203) 미네소타 주는 공인된 둘라(certified doula)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서비스가 교정시설의 비용 부담 없이 또는 수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임신부 수용자가 둘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Minnesota Statutes § 241.89 Subdivision 2. (a)(4)). Minnesota Legislature 홈페이지, (<https://www.revisor.mn.gov/statutes/cite/241.89>, 2019.12.15. 최종 검색). 오클라호마 주 또한 교정시설의 비용 부담 없이 공인된 둘라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임신부 수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Oklahoma Statutes § 57-4.2. E.3). Oklahoma Statutes 홈페이지, Title. 57 참조, (<http://www.oklegislature.gov/osstatuestitle.html>, 2019.12.15. 최종검색). 워싱턴 주는 임신부 수용자에게 둘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적절한 시설을 만들도록 하고 있으나, 둘라 서비스에 소요되는 자금 제공을 위한 운영 기구 등의 창설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RCW 70.48.135 (1), (3)). Washington State Legislature 홈페이지,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70.48.135>, 2019.12.15. 최종검색).
- 204) 박선영, “미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2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0.4., 8면.
- 205)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홈페이지, ACLU Briefing Paper: The Shackling of Pregnant Women & Girls in U.S. Prisons, Jails & Youth Detention Centers, (<https://www.aclu.org/other/aclu-briefing-paper-shackling-pregnant-women-girls-us-prisons-jails-youth-detention-centers>, 2019.12.15. 최종검색)
- 206)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홈페이지, Committee Opinion 511: Health Care for Pregnant and Postpartum Incarcerated Women and Adolescent Females (2013), (<https://www.acog.org/Clinical-Guidance-and-Publications/Committee-Opinions/Committee-on-Health-Care-for-Underserved-Women/Health-Care-for-Pregnant-and-Postpartum-Incarcerated-Women-and-Adolescent-Females>, 2019.12.15. 최종검색)

는 산모에게 직접적이면서 심각한 자타해의 위험성이 있거나 실질적인 도주 위험이 있지 않는 한, 출산 및 출산 회복 중에 있는 여성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²⁰⁷⁾ 미국 공중보건학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APHA)는 “분만 및 출산 중에 있는 여성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²⁰⁸⁾ 또한, 연방 교정국(Federal Bureau of Prisons), 미국 이민관세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미국 연방 보안관실(U.S. Marshals Services) 및 미국 교정협회(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도 임신부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들을 채택하고 있다.²⁰⁹⁾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부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관행에 관하여 그 위험 여부를 논의한 바는 없으나, 연방 법원들은 출산 시 임신부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²¹⁰⁾ 즉, 2009년 연방 제8 순회항소법원은 Nelson v. Correctional Medical Services 판결에서, 임신부 수용자는 그녀가 보안상 위험하다거나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명백하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분만 중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명확하게 확립된(clearly established)”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하였고,²¹¹⁾ 2010년에 연방 지방법원은 “출산 중인 재소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배되는 것”임을

207) Prison Legal News 홈페이지,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House of Delegates Resolution 203 (A-10) Shackling of Pregnant Women in Labor 2010, (<https://www.prisonlegalnews.org/news/publications/american-medical-association-house-of-delegates-resolution-203-a-10-shackling-of-pregnant-women-in-labor-2010/>, 2019.12.15. 최종검색)

208)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홈페이지, ACLU Briefing Paper: The Shackling of Pregnant Women & Girls in U.S. Prisons, Jails & Youth Detention Centers, (<https://www.aclu.org/other/aclu-briefing-paper-shackling-pregnant-women-girls-us-prisons-jails-youth-detention-centers>, 2019.12.15. 최종검색)

209)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홈페이지, ACLU Briefing Paper: The Shackling of Pregnant Women & Girls in U.S. Prisons, Jails & Youth Detention Centers, (<https://www.aclu.org/other/aclu-briefing-paper-shackling-pregnant-women-girls-us-prisons-jails-youth-detention-centers>, 2019.12.15. 최종검색)

210) Laufer, Samantha. "Reproductive Healthcare for Incarcerated Women: from 'Rights' to 'Dignity'",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vol.56,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2019, p.1796.

211) Butler, Roya/Dam, Andrew/Eberspacher, Sarah/Kelley, Charlotte/Pastor-Chermak, Alina, "Correctional Facilities", *The Georgetown Journal of Gender and the Law* vol. 20,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2019, p. 377; Nelson v. Corr. Med. Servs., 583 F.3d 522, 531 (8th Cir. 2009).

원고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으며, “일반 상식과 교정국의 정책 등은 출산 시에 임산부 수용자를 병원 침대에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억류하는 것이 좋은 관행이 아님을 말해 준다”고 결론내렸다.²¹²⁾

이와 같이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의 금지 및 제한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특히 연방 교정국은 2008년에 출산 과정 중에 임산부 수용자에게 즉각적인 자해 및 타해의 위협이나 도주의 위험이 드러나지 않는 한 보호장비 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제정하였으나,²¹³⁾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말에 ‘퍼스트 스텝 법(First Step Act)’에 서명하기 전까지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금지가 연방 법률로 입법화되지는 않았다.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의 금지 및 제한을 입법화하려는 시도는 연방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시작되었는바, 일리노이 주가 2000년에 처음으로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금지를 법제화한 이후²¹⁴⁾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의 금지 및 제한을 입법화하는 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입법화가 이루어진 곳은 조지아 주로 2019년 10월에 조지아 주 존엄법(Georgia Dignity Act, House Bill 345)이 발효되었다.²¹⁵⁾ 조지아 주는 법 제정을 통해 임산부 수용자가 ① 임신 중기 또는 임신 후기에 알몸

212) Brawley v. Washington, 712 F. Supp. 2d 1208, 1219 (W.D. Wash. 2010).

213) Federal Bureau of Prisons 홈페이지, Program Statement: Escorted Trip. No. 5538.07, 2015. (https://www.bop.gov/policy/progstat/5538_07.pdf, 2019.12.15. 최종검색) 등 규정에서 연방 교정국은 “임신, 출산, 분만, 산후 회복 중에 있거나 출산, 분만, 산후 회복과 관련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외부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는 재소자의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자타해의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있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는 합리적으로 저지할 수 없는 즉각적이고 신뢰성 있는 도주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억류되어서는 안 된다(An inmate who is pregnant, in labor, delivering her baby, or in post-delivery recuperation, or who is being transported or housed in an outside medical facility for treating labor symptoms, delivering her baby, or post-delivery recuperation, should not be placed in restraints unless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e inmate presents an immediate, serious threat of hurting herself, staff, or others, or that she presents an immediate, credible risk of escape that cannot be reasonably contained through other methods)”고 하고 있다.

214) Griggs, L.Claire, "Birthing Barbarism: The Unconstitutionality of Shackling Pregnant Prisoners", *Journal of Gender, Social Policy and the Law* vol. 22 issue 1,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2011, p. 253.

215) The Root, "Yesterday in Georgia, Women in Prison Regained Some of Their Dignity", 2019.10.2. (<https://www.theroot.com/yesterday-in-georgia-women-in-prison-regained-some-of-1838715676>, 2019.12.15. 최종검색)

Person Act, First Step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즉각적이고도 심각한 자해 및 타해의 위협이 있거나 도주의 위험성이 있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연방 교정시설에 수감된 임신부 수용자 일반에 대해서는 보호장비 사용이 금지된다.²¹⁷⁾

라. 임신부 수용자 의료처우

미국의 인권단체인 ACLU는 각 주 교정국의 임신부 관련 규정을 조사하였으며, 각 주와 연방정부가 규정을 마련해 두고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였다.²¹⁸⁾

즉, 각 주 교정국은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를 제시하며 그 일환으로 임신부는 상담, 의료지원, 기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은 이러한 각 주 교정국의 규정보다 한 단계 높은 의료지원을 요구하고 있다.²¹⁹⁾ 대표적인 관련 기관으로는 “교정 보건에 관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Correctional Health Care, NCHC)”, “미국 산부인과 의사협회(American Congress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ACOG)”, “미국 공중보건학회(APHA)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수용자 의료처우에 관한 규정들을 만들었으며, 특히 임신부 수용자에 대한 처우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²²⁰⁾

교정 보건에 관한 국가위원회(NCHC)는 교정 환경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련의 모범 실무로서 의료서비스 기준을 공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임신부 수용자와 관련된 기준들도 포함되어 있다. 먼저 “P-G-07: 임신부 수용자 케어(Care of the

217) NPR, “Federal Legislation Seeks Ban On Shackling Of Pregnant Inmates”, 2018.12.5.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8/12/05/673757680/federal-legislation-seeks-ban-on-shackling-of-pregnant-inmates>, 2019.12.15. 최종검색)

218) 박선영, “미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2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0.4., 10면; ACLU 홈페이지, State Standards for Pregnancy-Related Health Care and Abortion for Women in Prison, (<https://www.aclu.org/state-standards-pregnancy-related-health-care-and-abortion-women-prison-0>, 2019.12.15. 최종검색)

219) 박선영, “미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2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0.4., 10면.

220) 박선영, “미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2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0.4., 10면.

Pregnant Inmate)”라는 제목의 교정 보건에 관한 국가위원회(NCCHC) 기준은 “임산부 수용자는 시기에 맞게 적절한 출산 전 건강관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산 서비스, 그리고 출산 후 건강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또한 이 기준은 구금된 여성들 사이에 성행하는 고위험 임신에 교정시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며 일반적으로 임신과 관련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준수해야 할 지표들을 제시하는데, 그 지표들에는 ① 출산 전 진료, ② HIV 테스트 및 필요한 경우 예방적 조치들을 포함한 각종 출산 전 실험 및 진단 테스트, ③ 임신 기간 중 활동 정도와 안전 예방책에 관하여 재소자에게 조언하기, ④ 임신 기간 중 출산 전 영양 지도와 상담, ⑤ 전문적인 조산 서비스 목록의 유지 및 관리, ⑥ 출산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시설과 서면 협약 체결, ⑦ 문서화되고 적절한 출산 후 건강관리, ⑧ 모든 임신 및 임신결과 목록 작성, ⑨ 당 기준을 준수할 것을 언명하는 서면 정책 및 규정된 절차 보유 등이 있다.²²¹⁾ 다음으로 “P-G-09: 임신 상담(Pregnancy Counseling)”이라는 제목의 교정 보건에 관한 국가위원회(NCCHC) 기준은 임산부 수용자가 임신을 계속하여 태아를 성장시킬 것인지 그 뒤로 아이를 양육할 것인지 또는 입양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낙태를 할 것인지 등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상담과 지원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²²²⁾

한편, 연방 차원에서도 교정시설에서의 규정들을 의무화하고자 노력하여, 2018년 9월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의무화하는 “구금 중에 있는 임신한 여성에 관한 법(Protecting the Health and Wellness of Babies and Pregnant Women in Custody Act, Pregnant Women in Custody Act)”이 발의된 바 있다.²²³⁾ 이 법안은 임산부 수용자가 출산 전과 출산 후 지원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ACLU 홈페이지, State Standards for Pregnancy-Related Health Care and Abortion for Women in Prison, (<https://www.aclu.org/state-standards-pregnancy-related-health-care-and-abortion-women-prison-0>, 2019.12.15. 최종검색)

222) ACLU 홈페이지, State Standards for Pregnancy-Related Health Care and Abortion for Women in Prison, (<https://www.aclu.org/state-standards-pregnancy-related-health-care-and-abortion-women-prison-0>, 2019.12.15. 최종검색)

223) 다만, 동 법안은 115대 의회 회기 만료로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Congres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홈페이지,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6805>, 2019. 12.15. 최종검색)

- ① 임신부에 대한 데이터 수집(Data collection on pregnant inmates): 법무부는 임신부 수용자의 임신 및 산후 기간에 초점을 두면서 연방, 주 및 지방 교정시설에서의 여성의 정신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 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구금 중에 있는 여성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관리(Addressing the pregnancy and childbirth-related needs of incarcerated women): 임신 중이거나 최근 8주 내 출산한 여성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및 독거구금(restrictive housing)을 금지하고, 연방 교정시설에 구금된 임신한 여성과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의료 전문가와 협의하여 교정시설 관리직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며, 위 임신부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및 독거구금에 관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그 요약본을 하원 및 상원의 사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훈련 및 기술 지원(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법무부 사법지원국장(Director of the Bureau of Justice Assistance)은 보건복지부 장관(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과 협의하여, 보호장비 사용 및 독거구금이 각 주의 법률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주 및 지역 교정시설과 법률집행기관들에게 훈련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재정을 지원한다.
- ④ 불필요한 보호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임신부 수용자들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인센티브(State incentives to prohibit unnecessary restraints and provide services and programs for pregnant and postpartum inmates): 임신부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주, 임신부 수용자의 필요사항들에 관한 서비스 또는 시범 프로그램 등을 입법하거나 시행하는 주에게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한다.²²⁴⁾

224) Representative Karen Bass 홈페이지, "Women Members of Congress Introduce Legislation To Protect Pregnant Women In Custody", 2018, (<https://bass.house.gov/media-center/press-releases/women-members-congress-introduce-legislation-protect-pregnant-women>, 2019.12.15. 최종검색)

마. 민간단체의 활동

민간단체들은 임신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인식 강화 캠페인, 둘라 지원, 처우 현황 조사, 보호장비 사용 금지 운동 등을 통해 임신부 수용자 처우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고 있다.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ACLU는 수용자 처우 전반에 관한 캠페인과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면서 임신부 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ACLU 외에도 레베카 인권 프로젝트(Rebecca Project for Human Rights)와 미국 여성법 센터(National Women's Law Center) 역시 임신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조사를 통해 교정기관들이 임신부 수용자와 관련된 규정을 따르지 않음을 지적하고, 보호장비 사용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임신부 수용자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와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²²⁵⁾

비영리 언론매체인 마셜 프로젝트(The Marshall Project)는 웹사이트를 통해 형사 사법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뉴스, 논문, 기고문 등을 게시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인식 개선을 하고자 하며, 임신부 수용자 처우에 관한 이슈들도 다루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ONA International, Illinois Birth Justice, Isis Rising, Michigan Prison Doula Initiative 역시 임신부 수용자들에게 둘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 교정시설 내 임신부 전용 특별 공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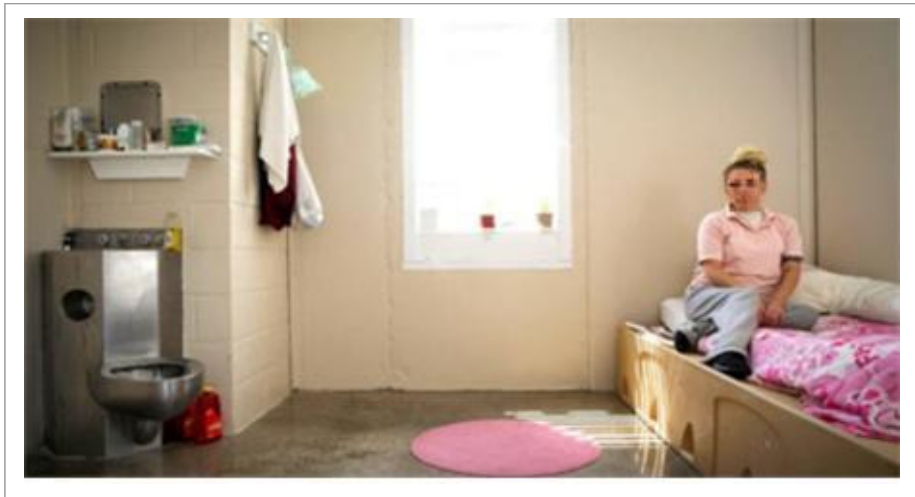
미국 일부 주는 출산한 여성 수용자가 신생아와 함께 지낼 수 있는 특별한 주거 공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출산 전 임신부를 위해 특별한 시설을 운영하는 교정시설은 없었다.²²⁶⁾ 일리노이 주는 2019년 9월에 여성 범죄자들을 위한 로건 교정센터(Logan Correctional Center)에 임신부가 생활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special wing)을 마련하여, 출산 전은 물론 출산 후에도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여성 수용자가 이곳에 머물

225) Rebecca Project for Human Rights/National Women's Law Center, Mothers behind Bars, National Women's Law Center, 2010, (<https://www.nwlc.org/sites/default/files/pdfs/mothersbehindbars2010.pdf>, 2019.12.15. 최종검색)

226) 박선영, "미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2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0.4., 15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여성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서 출산 시에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일리노이 주는 가족 1명을 ‘출산지원인(birthing support person)’으로 지정하여 분만 및 출산 중, 그리고 출산 후 1시간까지 여성 수용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²²⁷⁾

» [그림 4-1-3] 일리노이 주 로건 교정센터 임신부 특별 시설



출처: SaukValley, "Pregnant behind bars: prison opens a special wing for mothers-to-be and postpartum inmates", 2019.9.9. (<https://www.saukvalley.com/2019/09/08/pregnant-behind-bars-prison-opens-a-special-wing-for-mothers-to-be-and-postpartum-inmates/auczn3/>, 2019.12.15. 최종검색)

2. 교정시설 내 유아 양육 지원

가. 유아 양육 시설

2019년 현재 미국 전역에 여자교도소는 100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지만, 11개 주에서만 출산한 여성 수용자가 아기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²²⁸⁾

227) SaukValley, "Pregnant behind bars: prison opens a special wing for mothers-to-be and postpartum inmates", 2019.9.9. (<https://www.saukvalley.com/2019/09/08/pregnant-behind-bars-prison-opens-a-special-wing-for-mothers-to-be-and-postpartum-inmates/auczn3/>, 2019.12.15. 최종검색)

228) 박선영, "미국 교정시설의 출산한 여성 수형자와 아기 거주 프로그램 현황",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1면;

임신한 수용자를 특별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규정 여부는 주마다 다르며, 이에 대한 연방 규정은 없는 상태여서,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의 출산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어떤 처우가 어떻게 제공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미국 내 대부분의 교도소에서는 여성이 출산하면 2일~3일 이내에 아기를 가족, 친척, 국가 위탁돌봄 시스템으로 보낸다.²²⁹⁾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가 여성 수용자가 출산을 하면 엄마와 아기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2019년 현재 연방 교도소와 11개 주에서만 프로그램의 형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지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²³⁰⁾

가장 먼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 주는 뉴욕 주로 1901년에 베드포드 힐스 여자교도소(Bedford Hills Correctional Facility for Women)에서는 여성 수용자와 아기가 독립된 별채(wing)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였으며, 여성 수용자 인구가 급증한 캘리포니아 주도 1985년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²³¹⁾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전략으로 여성 수용자 인구가 급증하자 1992년에 국가 교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은 여성 수용자 관리에 대한 특별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뉴욕 주 베드포드 힐스 교도소 소장이 출산한 여성 수용자와 아기를 위한 “탁아 프로그램(nursery program)”을 발표하며, 많은 여자교도소에서 이러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³²⁾ 이 자리에 참석한 네브라스카 교도소장이 2년 후인 1994년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어 전국에서 3번째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주가 되었다. 이후 사우스 다코다 주(1998년), 워싱턴 주(1999년), 오키오 주(2001년), 일리노이 주(2007년), 인디애나 주(2008년), 웨스트 버지니아 주(2009년), 텍사스 주(2010년), 델라웨어 주(2014년)까지 확대되어 총 11개 주에서

Quartz, “Should a pregnant person ever go to prison?”, 2019.4.6. (<https://qz.com/1587102/what-its-like-to-give-birth-in-a-us-prison/>, 2019.12.15. 최종검색)

229) Byrne, Mary/enning, Sara. “Prison Nursery Co-residence and Re-entry: New York Studies”, *Healthy Generations*, University of Minnesota, 2015, p.17.

230) Quartz, “Should a pregnant person ever go to prison?”, 2019.4.6. (<https://qz.com/1587102/what-its-like-to-give-birth-in-a-us-prison/>, 2019.12.15. 최종검색)

231) Byrne, Mary W., “Interventions within Prison Nurseries”, in Poehlmann, Julie/Eddy, J. Mark (Eds.),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 Handbook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0, pp. 161~187.

232) Byrne, Mary/Benning, Sara, *ibid.*, p. 19.

출산한 여성 수용자와 아기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²³³⁾

연방 교정국과 11개 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기준이 없다. 자격이나 기간, 환경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나 아동방임 전력이 없는 비폭력 사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수형자 등으로 엄격한 선발조건을 두고 있다. 최소 30일에서 최장 36개월까지 그 기간은 다양하며, 연방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는 부모와 아기가 함께 시설을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²³⁴⁾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지지와 반대의 입장이 있다. 지지자들은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아동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유대감이 증진될 수 있으며, 여성 수용자의 재범이 감소하고, 국가의 위탁돌봄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³⁵⁾ 번(Byrne)의 뉴욕 주 프로그램 평가 연구(2010년)에서도 여성 수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민감성(sensitivity), 대응성(responsiveness), 아동 돌봄에 대한 이해력, 양육기술 등이 모두 상승했으며, 재범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출산 여성 수용자에 비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²³⁶⁾ 또한, 영유아의 경우에도 교도소에서 엄마와 함께 살았던 아이들은 일반 가정 아이들과 유사한 정도의 안정감과 유대감을 보였다.²³⁷⁾

번(Byrne)과 베닝(Benning)은 탁아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약물 치료, 정신건강 치료, 부모교육, 사회복귀 지원 등이 양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³⁸⁾

233) Cleveland.com, "Growing up behind bars: How 11 states handle prison nurseries", 2018.3.4., (https://www.cleveland.com/metro/2018/03/growing_up_behind_bars_how_states.html, 2019.12.15. 최종검색).

234) 박선영, "미국 교정시설의 출산한 여성 수형자와 아기 거주 프로그램 현황",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2면.

235) Carlson, J. R., "Prison nurseries: A pathway to crime-free futures", *Corrections Compendium* vol. 34 no. 1,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2009, pp. 17~22; Division of Program Planning, Research and Evaluation, "Profile of participants: The Bedford Hills and Taconic Nursery Program in 1992", State of New York, 1993; Fearn, NE/Parker, K., "Washington State's residential parenting program: An integrated public health, education, and social service resource for pregnant inmates and prison mothers", *California Journal of Health Promotion* vol. 2 no. 4, California State University, 2004, pp. 34~48.

236) Byrne, Mary W., *ibid.*, p. 181. Table 13.2. Parenting programs for incarcerated mothers 참조.

237) Byrne, Mary W., *Id.*

238) Byrne, Mary/Benning, Sara, *ibid.*, p. 17.

반면에 드와이어(Dwyer)는 교도소 내에서 출산한 여성 수용자와 아기가 함께 거주하는 프로그램에 반대하는데, 그 주된 이유로 죄 없는 아기가 교도소에 있는 것은 적법절차에 관한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배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²³⁹⁾

나. 유아 양육 지원 프로그램

연방 교정국과 11개 주에서 지원하는 엄마 수형자와 아기 거주 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뉴욕 주 “베드포드 힐스 탁아소 프로그램”²⁴⁰⁾

1901년부터 여자교도소 내에 탁아소(nursery)을 제공한 뉴욕 주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오랜 기간 탁아소를 제공한 기관이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도 검증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재범률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즉, 동일한 조건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의 재범률은 30%인 반면 프로그램 참여자의 재범률은 3%에 그쳤다. 베드포드 힐스 여자교도소의 “베드폴드 힐스 탁아소(Bedford Hills Nursery)”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격조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뉴욕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신청자는 임신한 상태여야 하며, 신청자의 범죄의 심각성, 형량, 아동복지기관과의 과거 전력 등을 조사한다. 신청자인 여성은 8주간의 태아기 수업(prenatal class), 9주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부모교육은 선발된 동료 수용자가 담당한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도 점검하여 교도소 의료와 정신건강 담당자가 적합

239) Elmalak, Seham, "Babies Behind Bars: An Evaluation of Prison Nurseries in American Female Prisons and Their Potential Constitutional Challenges", *Pace Law Review* vol. 35 issue 3, Pace Law School, 2015, p. 1105.

240) 박선영, “미국 교정시설의 출산한 여성 수형자와 아기 거주 프로그램 현황”,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3면; NBC News, “Prison nurseries give incarcerated mothers a chance to raise their babies — behind bars”, 2018.8.4. (<https://www.nbcnews.com/news/us-news/prison-nurseries-give-incarcerated-mothers-chance-raise-their-babies-behind-n894171>, 2019.12.15. 최종검색)

성을 결정한다. 산모는 한 달에 2회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재정적인 이유로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유아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기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12개월이지만, 프로그램 참여자가 18개월 내에 출소하거나, 가석방되거나, 노동 석방(work release)된다면 1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3) 프로그램 운영과 구성

이 프로그램은 엄마와 아기를 포함한 최대 26명 정원으로 운영되며, 민간 사업자인 비영리 재단인 “아워 칠드런(Hour Children)”이 사업을 맡고 있다. 주의 교도국은 재단과 연 17만 달러로 계약했는데, 15~16명의 아기를 위탁돌봄(forster care)에 맡길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연 48만 달러의 경비가 들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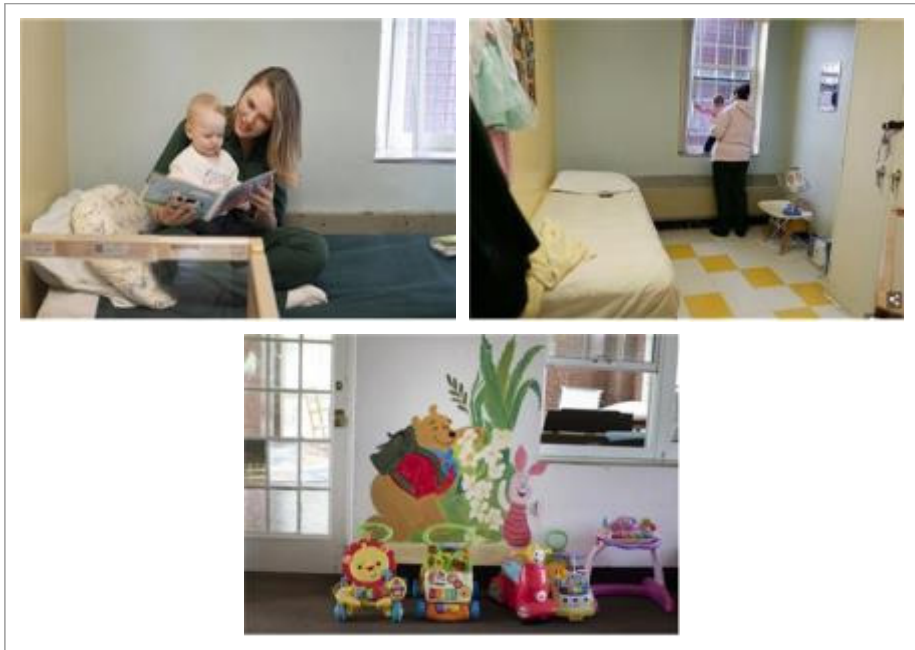
엄마들이 교정교육, 직업교육, 부모교육, 작업 등 필수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그 동안 아기들은 선별되고 훈련받은 수용자에 의해 돌봄을 받는다. 저녁시간에는 엄마와 아기가 자유시간을 가지게 되며, 주로 다른 아기 엄마들과 아기들이 놀이방에 모여 육아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한다. 아이와 함께 지내다가 노동 석방(work release)을 받은 수용자의 경우에는 낮에는 사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교도소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때 아기는 재단이 외부에서 운영하는 탁아소에 보내지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출소한 여성 수용자들은 뉴욕시가 “아워 칠드런(Hour children)”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입주 사회복귀 훈련시설에 들어가 아기 돌봄과 일자리 지원을 받으며 사회적응을 시작한다. 여성 수용자들은 이곳에 입주하는 것을 ‘골든 티켓’이라고 부르며 프로그램 참여를 기뻐한다.

(4) 환경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탁아소는 교도소 건물과 분리된 별채(wing)에 있으며, 각 여성 수용자에게는 독립된 작은 방(cell)이 주어지며 아기와 엄마는 반드시 분리된 침대에서 자야 한다. 벽마다 무지개와 문계구름, 밀림과 농가의 평화로운 풍경을 담아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곳이 교도소라는 사실은 끊임없이 상기된다. 유아시설에도 무장 교도관들의 순찰이 실시되고 엄마끼리 싸우는 것은 물론 아기가 자는 동안 아기침대에 장난감을 방치하는 사소한 잘못도 허용되지 않는다. 엄마들은 작은 규정위반에도 아기들과 분리될 수 있다.

» [그림 4-1-4] 뉴욕 주 베드포드 힐스 탁아소 시설



출처: NBC News, "Prison nurseries give incarcerated mothers a chance to raise their babies — behind bars", 2018.8.4. (<https://www.nbcnews.com/news/us-news/prison-nurseries-give-incarcerated-mothers-chance-raise-their-babies-behind-n894171>, 2019.12.15. 최종검색)

2) 일리노이 주 “엄마와 아기 프로그램”²⁴¹⁾

일리노이 주에서는 2007년부터 디케이터 교정센터(Decatur Correctional Center)에 여성 수용자와 아기가 거주하는 “엄마와 아기(Moms and Babies)” 프로그램을 제공

241) The Washington Post, "Raising babies behind bars", 2018.5.18.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local/wp/2018/05/11/feature/prisons-are-allowing-mothers-to-raise-their-babies-behind-bars-but-is-the-radical-experiment-in-parenting-and-punishment-a-good-idea/?utm_term=.5c9c5f568c76, 2019.12.15. 최종검색)

하고 있다. 2018년 조사 당시, 11년 동안 90명의 여성 수용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단 2명 만이 3년 내에 재복역을 하게 되어서 재범 억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1) 자격조건

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엄마 수용자는 비폭력 범죄자여야 하며, 성범죄자는 참여할 수 없다. 범죄기록, 정신건강, 신체건강 등이 조사되며 부모교육을 이수했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 진행 중 아기와 엄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엄마 수용자의 형량은 2년 이하 이어야 한다. 다만, 형량이 2년이 넘어가더라도 초과되는 기간이 사회 내 처우(가석방 등)에 해당되면 참여가 가능하다.

(2) 기간

24개월까지 머물 수 있다.

(3) 프로그램 운영과 구성

상담사와 양육 도우미들이 있어 엄마들이 검정고시, 약물과 알코올 남용 예방 교육, 작업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이끄는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감 강화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출소 후에도 유대감이 지속될 있도록 가족 상담과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4) 환경

교도소 건물과 분리된 별채(wing)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각 아기 침대 주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기의 안전이 관리되고 있다. 운동장도 있어서 영유아들이 함께 놀 수도 있다. 아기들이 탁아 유닛에서 나가게 되면, 모든 엄마 수용자들은 움직임이 통제되고 자신이 있던 곳에 있어야 한다.

» [그림 4-1-5] 일리노이 주 디케이터 교정센터 시설



출처: The Washington Post, "Raising babies behind bars", 2018.5.18.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local/wp/2018/05/11/feature/prisons-are-allowing-mothers-to-raise-their-babies-behind-bars-but-is-the-radical-experiment-in-parenting-and-punishment-a-good-idea/?utm_term=.5c9c5f568c76, 2019.12.15. 최종검색)

3) 캘리포니아 주 “지역사회 수용자 엄마 프로그램”²⁴²⁾

캘리포니아 교정교화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은 1985년부터 캘리포니아 주 형법 제3410조에 의거해서 출산한 여성 수용자와 그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수용자 엄마 프로그램(Community Prisoner Mother Program, CPMP)”을 제공하고 있다.

(1) 자격조건

여성 수용자의 행동과 정신건강에 대해 정밀한 진단을 통해 선별작업이 이루어진다. 폭력범죄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과 파트너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폭행은 허용된다.

(2) 기간

90일에서 6년까지 이 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3) 프로그램 운영과 구성

정원은 24명으로 민간 계약자가 기숙사형 시설로 운영한다. 참여자들은 약물남용 및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고등학교 대학과정,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이때 영유아들은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신부, 양육하는 부모, 6세 이하의 아동 순기능 가정에 필요한 기술 학습
- ② 엄마와 아동을 위한 개별처우 계획이 수립되어 트라우마 중심 약물남용 예방, 부모교육
- ③ 대중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최소한의 제약을 통한 아동과 부모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
- ④ 부모와 자녀의 유대, 가족 재결합, 지역사회 통합, 독립적인 삶, 자존감 강화, 범죄의 대물림 깨기

242) 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홈페이지, (<https://www.cdcr.ca.gov/adult-operations/fops/community-prisoner-mother-program/>, 2019.12.15. 최종검색)

(4) 환경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 위치한 기숙사형 시설에서 제공된다.

4) 워싱턴 주 “양육주거 프로그램”²⁴³⁾

워싱턴 주는 1999년부터 워싱턴 여자교도소에서 “양육주거 프로그램(Parenting Residential Program, PRR)”을 제공하고 있다.²⁴⁴⁾ 이 프로그램 역시 재범 억제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여성 수형자의 재범률이 30%인 반면, 프로그램 참여자의 재범률은 3~5%였다.

(1) 자격조건

아기가 태어난 후 형량이 3년 미만인 수용자로, 정신건강 진단, 전과기록과 행동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선별이 이루어진다. 신청자는 부모기술, 아동발달, 영양, 가족관계 등을 다루는 출산 전-후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2) 기간

프로그램 기간은 30개월이다. 여성 수용자가 출소 때까지 영유아와 함께 있어야 한다. 다만, 형량이 60개월이라 할지라도 36개월이 초과되는 기간을 가석방 받거나 약물 재활 치료를 받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3) 프로그램 운영과 구성

석방 전 센터에 있는 별도의 아기 유닛(unit)으로 이동한다. 이 프로그램은 “어얼리 헤드 스타트(Early Head Start)” 프로그램과 협력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발달과정, 아동돌봄, 아동을 위한 활동, 건강한 음식, 가족서비스 등이 엄마 수용자에게 제공된다. 범죄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유대감 강화가 주된 목표이다. 낮에 엄마가 일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 영유아는 방치되지 않고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243) People, “Inside the Washington State Prison Nursery Where Inmate Moms Raise Their Babies Behind Bars”, 2018.4.1. (<https://people.com/human-interest/washington-state-prison-nursery-inmate-moms/>, 2019.12.15. 최종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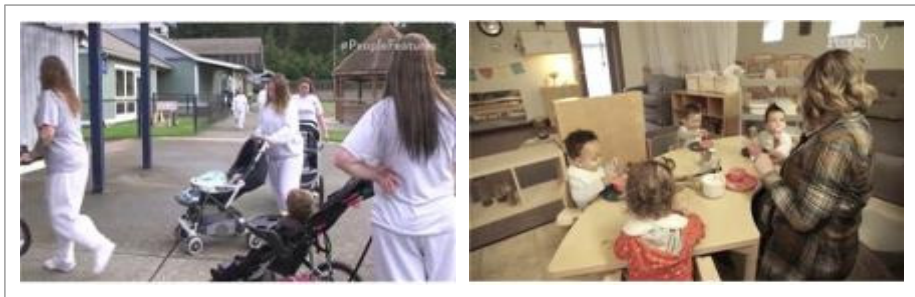
244) Department of Corrections Washington State, “Residential Parenting Program”, Fact Sheet, 2017, (<https://www.doc.wa.gov/docs/publications/fact-sheets/400-FS003.pdf>, 2019.12.15. 최종검색)

출소 전에 각 여성 수용자는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석방 후 자녀양육에 관한 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

(4) 환경

교도소 내의 별도의 유닛에서 거주한다. 공동공간도 있으며, 각각 독립된 방에서 자녀와 거주한다.

》》 [그림 4-1-6] 워싱턴 여자교도소 “양육주거 프로그램” 시설



출처: People, “Inside the Washington State Prison Nursery Where Inmate Moms Raise Their Babies Behind Bars”, 2018.4.1. (박선영, “미국 교정시설의 출산한 여성 수형자와 아기 거주 프로그램 현황”,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12면에서 재인용).

5) 오하이오 주 “성공적 아기돌봄 성취 프로그램”²⁴⁵⁾

오하이오 주는 2001년부터 여자교도소인 “오하이오 여자 교정시설(Ohio Reformatory for Women)”에서 “성공적 아기돌봄 성취(Achieving Baby Care Success)”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7년 3월까지 289명의 여성 수용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²⁴⁶⁾ 오하이오 주의 경우 매년 임신부 수용자가 130~140명에 육박함에 따라 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다. 재범과 관련해서도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전체 재범률이 33%인 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의

245) NPR, “In Ohio, Inmate Mothers Care For Babies In Prison”, 2008.8.13. (<https://www.npr.org/templates/story/story.php?storyId=93548405>, 2019.12.15. 최종검색)

246) Daytondaily News, “Mom feels blessed to have child with her in prison”, 2017.5.15. (박선영, “미국 교정시설의 출산한 여성 수형자와 아기 거주 프로그램 현황”,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13면에서 재인용).

재범은 3% 내외이다.

(1) 자격조건

위험성이 낮은 비폭력 범죄자여야 하며, 아동 대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참여할 수 없다. 엄마와 태아가 모두 건강해야 하며, 해당 수용자가 속한 직업 및 가족서비스부(Department of Jobs and Family Services)에서 승인 후, 교도소장이 최종승인을 한다. 마약중독인 엄마 수용자의 경우, 아기 치료를 위한 추가 비용으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2) 기간

기간은 36개월로 엄마와 아기가 반드시 함께 시설을 떠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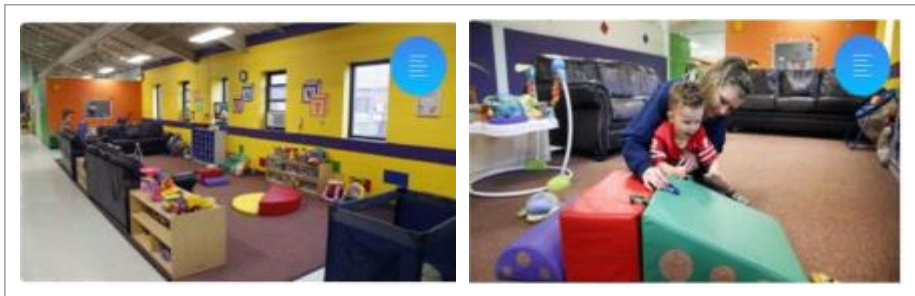
(3) 프로그램 운영과 구성

엄마 수용자 20명 정원으로 운영되며, 일과시간 동안에는 훈련받은 동료 수용자가 아기를 돌본다. 선발된 동료 수용자의 경우에도 엄마 수용자와 동일한 엄격한 자격조건을 갖춘 단기형의 비폭력 사범이어야 한다. 각 여성 수용자를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개별 맞춤형 처우 계획서가 수립된다.

(4) 환경

교도소 내 별도의 유닛에 공동 육아시설과 개인실이 구비되어 있다.

》》 [그림 4-1-7] 오하이오 여자 교정시설(Ohio Reformatory for Women)의 탁아시설



출처: Daytondaily News, "Mom feels blessed to have child with her in prison", 2017.5.15.
(<https://www.daytondailynews.com/news/crime-law/mom-feels-blessed-have-child-with-her-prison/QkK1qBcOsiZkIVue427Ljl/>, 2019.12.15. 최종검색)

5) 인디애나 주 “위 원즈 탁아 프로그램”²⁴⁷⁾

인디애나 주는 오하이오 주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2008년부터 인디애나 여자교도소에 “위 원즈 탁아(Wee Ones Nursery, WON)”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까지 175명의 아기가 참여했다. 전체 재범률은 35%인 반면, 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재범률은 19%로 재범억제 효과가 있었다.

(1) 자격조건

폭력 범죄자나 아동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프로그램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8학년 정도의 읽기능력을 갖춰야 하고, 부모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교도소 내에서 규칙위반 행동이 없어야 하며, 의료 및 정신건강이 검사되고 선별된다.

(2) 기간

기간은 18개월부터 24개월이다.

(3) 프로그램 운영과 구성

프로그램은 10명 정원으로 운영되며, 안전하고 경쾌한 환경에서 아이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여기서는 부모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며, 선발되고 훈련받은 수용자 도우미들이 함께 거주하며 육아를 돕는다. 동료 수용자 역시 부모와 동일한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된다. 4가지 기본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치료(Family Healing) 프로그램, 건강한 시작(Healthy Starts) 프로그램, 클라리안 건강 네트워크 프로그램(Clarian Health Network),²⁴⁸⁾ 릴리발달센터(Riley Development Center) 프로그램²⁴⁹⁾이 그것이다.

(4) 환경

교도소 내 별도의 유닛에서 생활한다.

247) Indiana Department of Correction 홈페이지. (<https://www.in.gov/idoc/2857.htm>, 2019.12.15. 최종검색); Wifi News, “Program Allows Incarcerated Mothers Care For Newborns In Prison”, 2017.8.31. (<https://www.wfyi.org/news/articles/program-allows-incarcerated-mothers-care-for-newborns-in-prison>, 2019.12.15. 최종검색)

248) 1:1로 엄마와 아기도 도움을 주는 그룹이며, 아동발달, 음식 먹이기, 안전하게 재우기, 적절한 훈육, 가족 강화와 지원, 스트레스 관리 등의 이슈를 도와준다.

249) 아동발달에 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그룹 프로그램이다.

3. 수용자 자녀 지원

가. 정부 청소년 정책의 주요 이슈

미국에서는 수용자 자녀라는 특정 아동청소년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수용자 자녀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1) 미국 정부 웹사이트 Youth.gov

수용자 자녀 문제는 청소년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미국 정부 웹사이트 youth.gov에서도 주요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부모가 구금된 아이들(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이라는 주제는 youth.gov에서 주요 주제로 설정한 데이트 폭력, 고용, 사회봉사, 학교폭력 예방, 소년사범, 임신, 가출, 자살예방, 건강한 발달 등 청소년과 관련된 29개 주제 중 하나로서, youth.gov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부모가 구금된 아이들”이라는 주제 아래 세부적으로 트라우마, 폭력에의 노출, 마약알코올 남용 노출, 아동복지, 서비스와 지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²⁵⁰⁾

Youth.gov에서는 수용자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로 트라우마에 주목하고 있는데, 부모의 체포와 구금을 아동청소년이 겪는 주된 트라우마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 자녀들은 가정 내 폭력, 알코올, 약물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부모의 구금으로 가족의 붕괴와 해체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수용자 자녀는 위탁부모와 위탁시설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²⁵¹⁾

250) Youth.gov 홈페이지, (<https://youth.gov/youth-topics/children-of-incarcerated-parents>, 2019. 12.15. 최종검색)

251) Youth.gov 홈페이지, (<https://youth.gov/youth-topics/children-of-incarcerated-parents>, 2019. 12.15. 최종검색)

2) 오클라호마 아동청소년 위원회의 수용자 자녀 태스크포스(Task Force)²⁵²⁾

2011년 오클라호마 아동청소년 위원회(Oklahoma Commission on Children and Youth, OCCY)는 수용자 자녀에게 필요한 사안들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축하였다. OCCY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 검토와 개발을 위해 소년사법, 판결 후 검토, 위탁돌봄, 수형자 자녀 등을 정한 바 있다. 태스크포스팀은 “수형자 자녀 자문위원회(Oklahoma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dvisory Committee, OCIP)”를 발족시켰으며, “수형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목표 하에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 ① 수형자 자녀에 관한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모으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낼 것
- ② 대중의 인식을 강화할 것
- ③ 관련 기관, 지역사회, 종교단체와 협력할 것
- ④ 리소스 툴킷을 개발할 것
- ⑤ 자문위원회에서 획득된 정보들을 보고하고 입법부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것

2014년에 OCCY는 사회복지부와 협력하여 수용자 자녀 툴킷을 발행했다. 수형자 자녀가 겪는 어려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와 함께 수용자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단체,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OCCY는 2015년부터 매년 6회의 회의를 열고 있으며, 수형자 자녀 자문위원회(OCIP)는 2015년에 6회, 2016년에 2회의 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연례보고를 통해 해당 연도의 수형자 자녀 현황, 프로그램 지원 현황, 예산 사용 등을 보고하고 있다.

252) 박선영, “미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2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0.4., 19~20면.

나. 정부기관의 수용자 자녀 지원

1) 미국 보건복지부의 수용자 자녀 지원과 가이드북 발행²⁵³⁾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국(Children's Bureau)의 아동복지 인포메이션 게이트웨이(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는 홈페이지에 “부모의 구금으로 영향을 받는 자녀와 가족 지원(Supporting Children and Families Affected by Parental Incarceration)”을 명시하고, 수용자 자녀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관해 논하면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 및 가족 관리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은 수용자 자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부모의 구금으로 인해 자녀들이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되는 경우를 위해 가이드북도 발행하였다. 이 가이드북은 본인의 구금으로 남겨진 자녀들이 어떠한 위탁돌봄을 받게 되는지, 자녀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출소 후 부모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뉴욕 주 아동가족지원국의 수용자 자녀 지원

뉴욕 주의 가족지원부(Department of Family Assistance, DFA) 산하 아동가족지원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은 7개 하위 영역 가운데 아동복지(child welfare) 부문의 위탁돌봄(foster care)에서 수형자 자녀(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를 명시하고 현황과 함께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4개 단체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① **민단단체 오스본 협회(Osborne Association)**의 수용자 자녀를 위한 뉴욕 이니셔티브(New York Initiative for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NYCIP): 오스본 협회가 주도하는 수용자 자녀를 위한 뉴욕 이니셔티브(NYCIP)는 정부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수용자 자녀의 권리를 옹호하고, 중요한 관계들을 지원

253)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홈페이지,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supporting/support-services/incarceration/#state>, 2019.12.15. 최종검색)

하며 이들의 가능성을 복돋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 이니셔티브의 활동은 2005년에 샌프란시스코 수용자 자녀 파트너십(San Francisco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Partnership)에서 공표한 “수용자 자녀 권리장전(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Bill of Rights in San Francisco)”을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권리장전 상의 내용들이 뉴욕 주 수용자 자녀들에게 현실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자료를 발표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²⁵⁴⁾

- ② 뉴욕 시, 약속의 아이들(Children of Promise, NYC): CPNYC은 지역사회 비영리 기관으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후 프로그램, 여름 캠프를 실시한다.²⁵⁵⁾
- ③ 구금의 메아리(Echoes of Incarceration): 구금의 메아리는 수용자 자녀들에 의해 제작되는 다큐멘터리 이니셔티브(documentary initiative)로, 16~23세의 청소년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수용자 자녀들이 형사사법 시스템과 접촉하면서 체험한 바를 영상에 담도록 함으로써 수용자 자녀의 창의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범죄와 처벌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²⁵⁶⁾
- ④ 세서미 스트리트 워크숍(The Sesame Street Workshop): 세서미 스트리트 워크숍은 3~8세 아동을 대상으로 고안된 “작은 아이들, 큰 도전: 구금(Little Children, Big Challenges: Incarceration)”이라 불리는 회복 이니셔티브(resiliency initiative)를 창설하였는데, 여기에는 아동 도서, 부모와 양육자를 위한 지침, 부모를 위한 정보(tip sheet) 등이 포함되어 있다.²⁵⁷⁾

254) The Osborne Association 홈페이지, New York Initiative for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NYCIP) 참조, (<http://www.osborneny.org/about/osborne-center-for-justice-across-generations/nycip/>, 2019.12.15. 최종검색)

255)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in New York States 홈페이지, (https://ocfs.ny.gov/main/incarcerated_parents/, 2019.12.15. 최종검색)

256) Echoes of Incarceration 홈페이지, (<http://www.echoesofincarceration.org/Home.html>, 2019.12.15. 최종검색).

257)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in New York States 홈페이지, (https://ocfs.ny.gov/main/incarcerated_parents/, 2019.12.15. 최종검색)

다. 수용자 자녀 지원 법 제정

1) 펜실베이니아 주의 퍼스트 찬스 신용 기금(First Chance Trust Fund)

2017년 펜실베이니아 주는 수용자 자녀들을 지원하는 특수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재정법(Fiscal Code)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특수한 목적의 기금은 “퍼스트 찬스 신용 기금(First Chance Trust Fund)”이라 불린다.²⁵⁸⁾ 퍼스트 찬스 신용 기금은 학업 중단률, 범죄율, 구금률이 높은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지원과 장학금 지원에 활용된다. 이 자금은 “펜실베이니아 범죄와 비행 위원회(Pennsylvania Commission on Crime and Delinquency)”가 관할하며 수용자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다.²⁵⁹⁾

2) 오클라호마 주의 법률안(House Bill 2300과 Senate Bill 1991)

오클라호마 주가 2012년 수용자 자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원과 상원의 법률안(House Bill 2300, Senate Bill 1991)을 통과시켰는데,²⁶⁰⁾ 동 법률안에 의하면 “수용자 자녀 자문위원회(Oklahoma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dvisory Committee, OCIP)”는 ① 수형자 자녀에 대한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모으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② 대중의 인식을 강화하며, ③ 관련 기관, 지역사회, 종교단체와 협력하고, ④ 리소스 툴킷을 개발하며, ⑤ 자문위원회에서 획득된 정보들을 보고하고 입법부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²⁶¹⁾

라. 학교의 수용자 자녀 지원

학교는 아동청소년이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따라서

258) Pennsylvania General Assembly 홈페이지, (<https://www.legis.state.pa.us/cfdocs/billInfo/billInfo.cfm?sYear=2017&sInd=0&body=S&type=B&bn=0790>, 2019.12.15. 최종검색).

259) Pennsylva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홈페이지, (<https://www.cor.pa.gov/family-and-friends/Pages/First-Chance-Trust-Fund.aspx>, 2019.12.15. 최종검색)

260) Oklahoma State Legislature 홈페이지, Bill Information for HB 2300 (2011-2012). (<http://www.oklegislature.gov/BillInfo.aspx?Bill=hb2300&Session=1200>, 2019.12.15. 최종검색); Oklahoma State Legislature 홈페이지, Bill Information for SB 1991 (2011-2012), (<http://www.oklegislature.gov/BillInfo.aspx?Bill=sb1991&Session=1200>, 2019.12.15. 최종검색).

261) 박선영, “미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2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0.4., 27면.

부모의 구금으로 가정에 문제가 생긴 아동청소년들은 학교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한 학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²⁶²⁾

1) 미국 교사 연합

미국 교사연합(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은 1916년에 설립되었으며, 3천 개 학교의 170만 교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연합에서 발행하는 미국 교사(American Educator) 2019년 여름호에 수록된 한 논문은 수용자 자녀의 지원 필요성과 함께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수용자 자녀들이 겪는 우울,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결석, 부적절한 특별교육 배정, 유급, 정학, 퇴학, 낮은 성적, 저조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률 등 연구자들이 지적한 학교와 관련된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 교사와 학교 당국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상당한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는 개입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²⁶³⁾

① 교사와 학교직원, 행정가들이 부모의 구금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교사들이 수용자 자녀들을 판단하고 낙인을 찍을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③ 교사들은 수용자 자녀를 돌보는 부모, 보호자, 조부모에게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 ④ 교사와 도서관 사서는 아동청소년들이 이러한 자료를 읽도록 독려함으로써 수용자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우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부모와의 관계성을 지속하기 위해 자녀에게 편지를 쓰거나 미술품을 만들도록 한다. ⑥ 학교 상담사가 수용자 자녀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교도소에 있는 부모들이 다른 학부모와 같이 학교와 학생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²⁶⁴⁾

262) 박선영, “미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2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0.4., 27~27면.

263)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홈페이지, (<https://www.aft.org/about>, 2019.12.15. 최종 검색)

264) Turney, Kristin. “Understanding the Needs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What Educators Should Know”, American Educator, 2019, (<https://www.aft.org/ae/summer2019/>

2) 학교 기반 프로그램 팝 더 클럽(POPS the Club)

민간단체인 팝 더 클럽(POPS the Club)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용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베니스(Venice)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이후 인근 고등학교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펜실베이니아 주의 스틸톤 하이스파이어(Steelton HighSpire) 고등학교 등 4개 주의 10개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동 프로그램에서는 부모 및 형제가 구금되었거나 과거 구금을 경험한 학생들, 자신이 구금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주중 미팅을 가지며, 부모의 구금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공유하고, 쓰기, 그리기, 사진 찍기, 퍼포먼스 등 자기표현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한다. 그리고 활동 결과물을 웹사이트에 전시한다.²⁶⁵⁾

마. 연구기관의 수용자 자녀 연구

1) 교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NIC)

미국 법무부 산하 교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NIC)는 1974년 교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한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evidence-based policy making)을 목표로 세워진 연구기관이다. 연구소 웹사이트에서는 수용자 자녀에 관한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수용자 자녀 관련 자료, 지원 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²⁶⁶⁾

2) 러트거스(Rutgers) 대학 수용자 자녀와 가족에 대한 전국 자원 센터

2013년 러트거스(Rutgers) 대학 내에 설립된 “수용자 자녀와 가족에 대한 전국 자원 센터(National Resource Center on Children and Families of the Incarcerated (NRCCFI)”는 수용자 자녀와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자 한다. 동 센터는 1983년 미국 내 최초로 수용자 가족 이슈에 관심을 가진 가족 및 교정기관 네트워크(Family and Corrections Network, FCN)로 시작되어 2006년에 수용자 자녀에 관한 연방 자원

turney, 2019.12.15. 최종검색)

265) Pops the Club 홈페이지, (<https://popsclubs.org/>, 2019.12.15. 최종검색)

266)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홈페이지, (<https://nicic.gov/>, 2019.12.15. 최종검색)

센터(Federal Resource Center on Children of Prisoners)와 합병하였다. 이 센터의 목표는 ① 정확한 관련 정보와 연구를 전파하고, ② 가족강화 정책과 실행을 개발하는 것을 가이드하며, ③ 현장에 있는 인력들을 훈련 및 준비시키고, ④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가족들과 협력하는 것이다.²⁶⁷⁾

3)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건강한 정신 센터(Center for Healthy Mind)

미국 위스콘신 주의 위스콘신-매디슨(Wisconsin-Madison) 대학의 건강한 정신 센터(Center for Healthy Mind)는 수용자 자녀들이 겪는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어려움을 분석하여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²⁶⁸⁾

4) 센트럴 코네티컷 대학 도시 및 지역 정책 연구소(Institute for Municipal & Regional Policy)의 수용자 자녀 이니셔티브

센트럴 코네티컷 주립 대학(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ersity)의 도시 및 지역 정책 연구소(Institute for Municipal & Regional Policy, IMRP)는 2008년부터 주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수용자 자녀 이니셔티브(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Initiative)”를 실행하고 있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수용자 자녀들을 지원하는 올바른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²⁶⁹⁾

바. 교정국의 수용자 자녀 지원

과거 교정국은 수용자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관련 이슈나 정보를 제공해 왔지만, 최근에는 수용자 “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표명하고 있다.

267) The National Resource Center on Children and Families of Incarcerated 홈페이지, (<https://nrccfi.camden.rutgers.edu/>, 2019.12.15. 최종검색)

268) Center for Healthy Mind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홈페이지, (<https://centerhealthyminds.org/join-the-movement/supporting-kids-of-incarcerated-parents>, 2019.12.15. 최종검색)

269)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Initiative 홈페이지, (<http://ctcip.org/>, 2019.12.15. 최종검색)

1) 펜실베이니아 주 교정국

펜실베이니아 주 교정국은 홈페이지에 수용자 자녀를 명시하고 교정국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수용자 자녀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 주 교정국은 2017년에 제정된 “퍼스트 찬스 법(The First Chance Act)”을 통해 수용자 자녀들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첫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① 보모 가정 파트너십 확대(Expansion of nurse family partnerships), ② 조기 아동학습에의 접근(Access early childhood learning), ③ 개인적 멘토링의 촉진(Promotion of personal mentoring), ④ 정기적인 가족 방문 독려(Encouraging regular family visits)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에 이 법이 지원하는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²⁷⁰⁾

또한, 수용자 자녀와 부모의 유대감 강화를 통한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펜실베이니아 주 교정국이 주립 교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²⁷¹⁾

- ① 세서미 프로젝트(Sesame Project): 펜실베이니아 주의 모든 교도소의 방문 룸에 컬러링 북, 책, 비디오 등 수용자 자녀와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표로 개발된 자료를 비치하여 무료로 제공한다.
- ② 자녀에게 읽어 주기(Read to Your Children): 수용자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용자가 책을 읽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한 뒤에 책과 그 동영상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수용자와 자녀와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수용자가 석방된 뒤에도 원활한 가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펜실베이니아 주 교정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다.
- ③ 피닉스 주립 교정시설(State Correctional Institution at Phoenix)과 여성 수용

270) Pennsylva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홈페이지,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참조. (<https://www.cor.pa.gov/family-and-friends/Pages/Children-of-Incarcerated-Parents.aspx>, 2019.12.15. 최종검색)

271) Pennsylva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홈페이지, For Family and Friends 참조, (<https://www.cor.pa.gov/family-and-friends/Pages/default.aspx>, 2019.12.15. 최종검색)

자 과도 유닛(Female Transitional Unit): 펜실베이니아 주 교정국은 몽고메리 카운티(Montgomery County)에 소재한 남자교도소인 피닉스 주립 교정시설과 연계하여 2018년에 처음으로 여성 수용자 과도 유닛(female transitional unit)을 개설하였다. 형기 종료가 가까운 여성 수용자들이 이 과도 유닛에 이송될 경우, 펜실베이니아 주 남동쪽에 거주하는 수용자 가족들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된다.

- ④ 인사이드 아웃 대드(Inside Out Dad®): 모든 남자교도소에서 12세전(2시간)으로 구성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 ⑤ SCI Cambridge Springs와 SCI Muncy에서 제공되는 부모 교육(Parenting skills classes offered at SCI Cambridge Springs and SCI Muncy)
- ⑥ 먼시 주립 교정시설 내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기(Inside Muncy Parents and Children Together, Project IMPACT): Project IMPACT는 여성 수용자와 아동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매 분기별 자녀와의 사진 찍기, 생일 선물주기, 봄에 운동장에서 농구하기 등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등을 실시한다.
- ⑦ 특수 공간(Special Spaces): 교도소 방문 룸을 아동이 좋아하는 것으로 장식하는 등 특수 공간을 마련한다.
- ⑧ 가족의 날(Family Days): 다양한 가족 만남의 날을 마련한다.

2) 뉴햄프셔 주 교정국의 가족 결속 센터

뉴햄프셔 주 교정국은 1998년 뉴햄프셔 대학과 함께 부모 수용자와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서 최초로 가족 연결 센터(Family Connections Center)를 열었다. 지금은 2개의 남자교도소와 1개의 여자교도소에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교정국은 수용자 자녀가 겪는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과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 주목하여, 가족관계를 강화하고, 자녀와 분리된 부모를 교육시키고 지원하고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4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를 제외한 부모 수형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센터에서 부모교육을 받고, 매주 양육지원 그룹 교육에 참여한다.²⁷²⁾

272) Concord Monitor, "Family Connections Center celebrates 20 years in NH corrections", 2018.9.29. (<https://www.concordmonitor.com/Family-Connections-Center-marks-20-years-in-NH-20443635>, 2019.12.15. 최종검색)

센터는 뉴스레터 발행, 수용자 자녀,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와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부모교육, 지지그룹의 멘토링, 오디오북 제작, 아버지 캠프, 자녀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수용자 부모와 자녀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노력도 하고 있다. 가족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용자 자녀, 폭력을 목격하였거나 트라우마 및 상실감과 슬픔을 겪은 아동, 부모와 같이 살 수 없거나 분리를 겪은 아동, 중독을 가진 부모의 자녀 등을 위한 도서 목록도 제시하고 있다.²⁷³⁾

사. 경찰의 아동을 고려한 체포

1) 경찰의 아동을 고려한 부모 체포 정책 모델 제시

세계경찰청장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는 미국 법무부 사법지원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과 함께 부모의 체포가 아동에게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과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이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2014년에 “체포된 부모의 자녀를 위한 안전조치(Safeguarding Children of Arrested Parents)”를 발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수용자 자녀들이 겪는 고통에 주목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아동의 안정과 안녕을 고려한 부모 체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모델 정책으로는 ① 정책에 관한 경찰 교육훈련 실시, ② 체포 전 아동을 고려한 체포계획 수립, ③ 체포 실시(아동이 있는 경우와 아동이 없는 경우), ④ 아동 격리, 아동과의 접촉, 관련 기관과의 협력, ⑤ 사후 관리: 아동의 안전 확인, ⑥ 기록: 아동의 돌봄과 상황에 관한 기록 등이 있다.²⁷⁴⁾

2) 경찰의 아동을 고려한 체포 시범 운영

2012년 비영리 단체인 코네티컷 아동 건강 및 발달 연구소(Child Health and Development Institute of Connecticut, CHDI)는 체포 단계에서 자녀들이 느끼게

273) Concord Monitor, “Family Connections Center celebrates 20 years in NH corrections”, 2018.9.29. (<https://www.concordmonitor.com/Family-Connections-Center-marks-20-years-in-NH-20443635>, 2019.12.15. 최종검색)

274)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홈페이지, (<https://www.theiacp.org/>, 2019. 12.15. 최종검색)

되는 충격과 트라우마에 주목하고, 이 시기에 아동의 필요를 채워주고 정서적인 안정을 확인하지 못하면 향후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체포 단계에서 경찰과 아동복지국의 협력에 대해 조사를 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CHDI가 발행한 “보호자의 체포에 따른 아동 지원을 위한 협력적 모델(A Collaborative Model to Support Children Following a Caregiver’s Arrest)”이라는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서 CHDI는 아동복지국과 협력하여 실시된 아동을 고려한 체포에 관해 여러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된 사례 및 성공적인 결과들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시범 운영의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국이 아동의 보호와 권리에 대해 경찰 교육을 실시하고, 체포 후 아동복지국과의 연락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새너제이(San Jose),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펜실베이니아 주의 피츠버그(Pittsburgh)와 앨러게니 카운티(Allegheny County), 코네티컷 주의 뉴 헤이븐(New Haven) 등의 경찰서에서 아동복지국과 협력하여 실시된 아동을 고려한 체포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다고 보고하고 있다.²⁷⁵⁾

아. 법원에서의 부모 수용자 및 수용자 자녀 지원

1) 법원에서 부모를 위한 책자 발간

오레곤 주의 멀트노머 카운티 가정법원(Multnomah County Family Court)에서는 자녀와 분리되었던 부모가 자녀와 결합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담은 “두번째 기회(Second Chances)”를 발행하였다. 이 가이드북에서는 분리의 유형으로서 구금으로 인한 분리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같은 경우 부모는 자신의 구금에 대해서 자녀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녀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출소한 부모와 자녀의 성공적인 재결합을 돕고자 한다.²⁷⁶⁾

275) 다음에 나오는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Lang, Jason/Bory, Christopher. A Collaborative Model to Support Children Following a Caregiver’s Arrest: Responding to Children of Arrested Caregivers Together, Connecticut Center for Effective Practice(CCEP)/Child Health and Development Institute of Connecticut(CHDI), 2012, (https://www.cga.ct.gov/ph/bhpoc/caq/related/20140101_2014/20140117/Presentation%202.pdf, 2019.12.15. 최종 검색)

276) Multnomah County Family Court Services, “Second Chances-A Guidebook for Parents

2)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아동 대기실 서비스 및 구치소 부모 방문 지원

샌프란시스코의 법원에서는 1991년부터 법정에 출두한 부모를 위한 아동 대기실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대기실은 민간단체인 캘리포니아 북부 서비스 연맹(Northern California Service League)과 여성 변호사 연합(Women's Lawyers Alliance)이 운영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일정액의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무료로 운영되는 대기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부모를 기다리는 아동청소년을 돌본다. 만약 부모가 구금 되면, 이 단체는 아동들이 구금된 부모들이 있는 구치소 방문을 원할 경우 동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²⁷⁷⁾

자. 그 외 민간단체의 접견지원 프로그램

미국 내 수용자 가족을 돕는 민간단체인 Friend Outside는 캘리포니아 주에 본부를 두고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29개의 교정기관에 접견대기실(Visitor Cente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지역에는 총 29개의 Friends Outside Visitors Centers가 있으며, 방문 온 가족들에 대한 교통편 지원, 특히 자녀가 접견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스낵과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아울러 수용자 사례관리, 갈등해결 워크숍, 수용자 접견지원(의상, 수송 등) 등과 함께 주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부모교육, 갈등해결 워크숍 프로그램도 진행한다.²⁷⁸⁾

Wishing to Reunite with their Children", 2017, (<https://multco.us/file/66573/download>, 2019.12.15. 최종검색)

277) Center on Juvenile and Criminal Justice 홈페이지, (<http://www.cjcj.org/Direct-services/Children-s-Waiting-Rooms.html>, 2019.12.15. 최종검색)

278) 박선영/신연희,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81면.

제2절 | 영국

1. 임신부 수용자 처우

가. 관련 현황

교도소 개혁 트러스트(Prison Reform Trust)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교정시설 수용인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로 7,745명의 여성이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교정시설에는 매년 약 600명의 임신부가 수용되고 있으며, 해마다 약 100명의 아이가 교정시설에서 태어나고 있다.²⁷⁹⁾

영국 교정보호관찰국(HM Prison and Probation Service)은 임신부 수용자와 그 자녀를 위해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언론, 시민단체, 연구자들은 임신부 수용자와 그 자녀의 처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정기관 내에 엄마와 아기 유닛(Mother and Baby Unit, MBU)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임신부 수용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고 출산 후에도 엄마와 아기 유닛(MBU)에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법무부나 관련기관이 임신부 수용자와 그 자녀에 대해 명확한 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훈련된 조산원이 부족한 점,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이 임신부 수용자와 그 자녀의 처우에 무관심하다는 점 등이 계속 지적되는 사안이다.²⁸⁰⁾

2019년 10월에는 영국은 물론 유럽에서 가장 큰 여자교도소인 브론즈필드 교도소(HM Prison Bronzefield)에서 여성 수용자가 한밤중에 혼자 아기를 출산하고 다음 날 아침에 아기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는 중이

279) The Guardian, "Baby dies in UK prison after inmate 'gives birth alone in cell' : Police investigate unexplained death at Bronzefield women's prison in Surrey", 2018.10.4.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oct/04/baby-dies-in-uk-prison-after-inmate-gives-birth-alone-in-cell>, 2019.12.15. 최종검색)

280) Abbott, Laura, "The Incarcerated Pregnancy: an Ethnographic Study of Perinatal Women in English Prisons", Docto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Hertfordshire, 2018, (<https://uhra.herts.ac.uk/bitstream/handle/2299/20283/01013818%20Abbott%20Laura%20final%20version%20of%20submission.pdf?sequence=3&isAllowed=y>, 2019.12.15. 최종검색)

다.²⁸¹⁾ 이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영국 사회에서는 임신부 수용자와 그 자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²⁸²⁾

나. 출산 동행(Birth Companions)

1996년부터 1,500명 이상의 임신부 수용자와 아기를 지원해 온 출산 동행(Birth Companions)은 교정시설은 물론 사회 내 처우를 받는 여성과 아기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산 동행(Birth Companions)은 런던의 홀로웨이 교도소(HM Prison Holloway) 자원봉사를 통해 여성 수용자가 혼자 아기를 낳지 않도록 도움을 준 것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캠페인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여성 수용자 처우에 관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 보고서를 발행하며, 임신부 수용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하고, 여성 수용자의 출산 경험에 대한 스토리를 홈페이지에 공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출산동행(Birth Companions)은 현재 잉글랜드의 4개 교도소²⁸³⁾에 수용된 임신부, 출산한 여성, 아기와 분리된 산모에게 정서적 지원과 실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동료 수용자가 임신부 수용자를 돌볼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²⁸⁴⁾

지역사회에서도 임신부 교실과 그룹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도소에서 진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은 크게 ① 교도소 내 그룹활동(Groups in Prison)과 ② 출산 지원이 있다. 출산 동행(Birth Companions)은 교도소 내 그룹활동을 통해서 건강과 복지, 분만 시 유의사항, 고통 경감, 출산 후 유의사항 등 출산과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281) 브론즈필드 여자교도소는 민영 교도소로 2019년 10월 현재 557명을 수용하고 있다. The Guardian, "Baby dies in UK prison after inmate 'gives birth alone in cell': Police investigate unexplained death at Bronzefield women's prison in Surrey", 2018.10.4.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oct/04/baby-dies-in-uk-prison-after-inmate-gives-birth-alone-in-cell>, 2019.12.15. 최종검색)

282) 박선영, "영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제3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1.1., 2면.

283) 홀로웨이 교도소(HM Prison Holloway)가 2016년 문을 닫음에 따라, 현재 출산 동행(Birth Companions)은 브론즈필드 교도소(HM Prison Bronzefield), 피터버러 교도소(HM Prison Peterborough), 포스톤 홀 교도소(HM Prison Foston Hall), 로 뉴튼 교도소(HM Prison Low Newton) 등 4개 교도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Birth Companions 홈페이지, Prison Services 참조, (<https://www.birthcompanions.org.uk/pages/20-prison-services>, 2019.12.15. 최종검색).

284) Birth Companion 홈페이지, (<https://www.birthcompanions.org.uk/>, 2019.12.15. 최종검색)

고 임신부 수용자가 분만을 위해 외부병원으로 이송될 때 자원봉사자가 동행하면서 정서적 및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며, 자녀와 분리된 여성 수용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녀와 분리된 여성 수용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모유 전달 조력활동 등은 엄마와 아기 유닛(MBU)이 없는 로 뉴튼 교도소(HM Prison Low Newton)와 포스톤 홀 교도소(HM Prison Foston Hall)에 수용된 여성 수용자들에게 매우 소중한 도움이 되고 있다.²⁸⁵⁾

출산 동행(Birth Companions)은 2016년에 여성 수용자, 왕립조산사학회(Royal College of Midwives), 국제연합아동기금(UICEF)과 협력하여 정부에게 임신부 수용자와 초보 엄마 수용자의 돌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출산 헌장(Birth Charter)”을 마련하였는 바, 취약한 집단인 임신부 수용자와 그 자녀의 돌봄과 처우, 출산 전 건강관리, 모유 수유, 가족방문과 상담, 임신부와 아기의 권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임신부에게 인도적인 처우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15개 조항을 제시하였다.²⁸⁶⁾

교도소의 임신부 수용자는

1. 일반 사회의 임신부와 동일한 수준의 출산 전 건강관리(antenatal care)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출산 전 교육(antenatal classes)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아기의 탄생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3. 산모와 아기의 복지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거처가 마련되고, 음식이 제공되며, 이동되어야 한다.
4. 교도소에 들어가는 대로 가능한 빨리 엄마와 아기 유닛(MBU)에 배치될 수 있는지 여부를 들어야 한다.
5. 임신부 수용자가 임신 중절을 선택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출산 시 임신부 수용자는

6. 자신이 선택한 출산 지원자(birth supporter)와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7. 적절한 훈련을 받았으며 명확한 지침을 갖고 있는 교도관을 동반하여야 한다.
8. 분만 및 출산 후 초기 동안에 필수적인 물품을 제공받아야 한다.
9. 교도소와 병원 간 이동 시 적절한 돌봄을 받아야 한다.

285) 박선영, “영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제3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1.1., 8면.

286) 박선영, 앞의 워크숍 발표자료, 8면.

교도소에 아기와 함께 있는 임신부 수용자는

10. 유아 급식(infant feeding)에 있어서 임신부 수용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장려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11. 아기와 분리될 경우, 임신부 수용자의 모유가 안전하게 날유(express), 저장(store), 전달(transport)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한다.
12. 일반 사회의 임신부와 마찬가지로 엄마와 아기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아기를 양육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13. 추가적인 가족 방문을 받을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모든 임신부와 초보 엄마들은

14. 필요한 경우에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5. 교도소 출소 후 적절한 재정착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2. 교정시설 내 유아 양육 지원

가. 엄마와 아기 유닛(Mother and Baby Unit, MBU)

영국의 6개 여자교도소는 엄마와 아기 유닛(MBU)을 운영하고 있다.²⁸⁷⁾ 교도소에서 아기를 출산할 예정인 여성과 18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 수용자는 엄마와 아기 유닛(MBU) 거주 신청을 하고 입소가 허락되면 아기가 18개월이 될 때까지 함께 거주할 수 있다. 자녀의 나이가 18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사회복지국은 여성 수용자와 의논해서 아기를 수용자의 부모에게 맡기거나 위탁가정으로 보내는 등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여 교정시설 외부에서 아이의 양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²⁸⁸⁾

영국 교정보호관찰국(HM Prison and Probation Service)의 전신인 범죄자관리국(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이 2014년도에 제시한 엄마와 아기 유닛(MBU)에 관한 입소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⁸⁹⁾

287) Government of UK, Prison Life-Pregnancy and childcare in prison 참조, (<https://www.gov.uk/life-in-prison/pregnancy-and-childcare-in-prison>, 2019.12.15. 최종검색)

288) 박선영, “영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제3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1.1., 2면.

289)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Mother & Baby Units, 2014, (<https://www.justice.gov.uk/downloads/offenders/psipso/psi-2014/psi-49-2014-mother-and-baby-units>).

- ① 교도소장은 여성 수용자에게 입소 시 임신 여부 및 18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엄마와 아기 유닛에 관한 모든 것(All about MBUs)”이라는 안내책자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여자교도소의 소장은 여성 수용자가 정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엄마와 아기 유닛 담당관(MBU Liaison Officer, 이하 MBU 담당관”이라 함)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엄마와 아기 유닛(MBU) 입소를 희망하는 여성 수용자는 입소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MBU 담당관에게 보내지게 되며, MBU 담당관은 어떤 엄마와 아기 유닛(MBU)이 가장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 조언하여야 한다.²⁹⁰⁾
- ③ 여성 수용자가 1명 이상의 아이와 함께 엄마와 아기 유닛(MBU)에 입소할 것을 신청할 경우(예를 들어, 교도소 밖에 두고 온 18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고 본인은 임신 중인 경우), 각각의 아이에 대한 신청을 별개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나, 형제자매 사이의 애착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입소위원회(Admission Board)가 지원서를 검토하여 결정을 내린다. 위원회는 다기관으로 구성되며, 독립적인 의장, 엄마와 아기 유닛(MBU) 관리자, 지역사회 교정 관리자, 아동복지국(Children's Service)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다.
- ⑤ 입소위원회는 여성 수용자의 형량, 범죄 유형 등을 검토한다.
- ⑥ 입소위원회는 지원자가 참여하는 심리(hearing)를 개최한다. 지원자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 연결 혹은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 ⑦ 입소위원회는 심리(hearing) 이후 2일 내에 아기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 ⑧ 입소위원회는 “임시 입소(Temporary admission)”, “긴급 임시 입소(Emergency temporary admission)”, “완전한 입소(Full admission)”, “조건부 거절(Conditional

pdf, 2019.12.15. 최종검색)

290) 여성 수용자는 본인이 선택한 엄마와 아기 유닛(MBU)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고 다른 엄마와 아기 유닛(MBU)에 별도의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데, 한 곳의 엄마와 아기 유닛(MBU)에 대한 입소 허용 또는 거절 결정은 모든 엄마와 아기 유닛(MBU)의 결정을 구속한다.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Mother & Baby Units, 2014, p. 6(§ 2.3) 참조, (<https://www.justice.gov.uk/downloads/offenders/psipso/psi-2014/psi-49-2014-mother-and-baby-units.pdf>, 2019.12.15. 최종검색)

- refusal)", "완전한 거절(Full refusal)" 등 5가지 유형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⑨ 입소위원회 위원장은 입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뒤 24시간 이내에 엄마와 아기 유닛(MBU)을 갖춘 교도소의 소장에게 권고사항을 전달하여야 하며, 교도소장이 엄마와 아기 유닛(MBU)의 입소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⑩ 해당 결정이 지원자에게 통보되면, 지원이 거절된 수용자는 항소할 수 있다.²⁹¹⁾

입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입소위원회는 여성 수용자의 형량이 18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어머니와 자녀의 동반 출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며, 여성 수용자의 형량이 1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정시설 외부에서 그 자녀가 양육되도록 조정한다. 따라서 여성 수용자의 형기가 끝나기 전에 자녀의 나이가 18개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여성 수용자는 엄마와 아기 유닛(MBU) 입소 시에 어머니와 자녀의 분리 계획(Separation Plan)을 수립하여야 한다.²⁹²⁾

입소가 결정되면 대부분 출산 6주 전에 엄마와 아기 유닛(MBU)에 배치되며, 엄마와 아기 유닛(MBU)에서 아기를 키우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아동수당(Child Benefit)을 신청해서 사용한다.²⁹³⁾ 교도소와 분리된 공간에 마련된 엄마와 아기 유닛(MBU)에는 훈련받은 간호사와 교도관이 있으며, 엄마와 아기 유닛(MBU)은 영국의 모든 학교를 평가하는 기관인 "교육기준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에 등록되어야 한다. 아기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데 아기가 밖에 나갈 때는 교정 보육사가 아기와 함께 동행하며, 엄마가 지명한 두 명을 외부에서 만날 수 있다. 지명된 두 명은 아동복지국이 검토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 엄마와 아기 유닛(MBU)에서는 엄격한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고, 매 8주마다 입소위원회는 입소한 여성 수용자의 행동 보고서를 검토하여 엄마와 아기 유닛(MBU)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엄마와 아기 유닛(MBU)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동법(Children Act 2004)에 의한 책임을 가지고 아기를 보호하고 아기가 방문을 받을

291) 박선영, "영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제3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1.1., 2~3면.

292) 박선영, 앞의 워크숍 발표자료, 3면.

293) 박선영, 앞의 워크숍 발표자료, 3면;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Mother & Baby Units, 2014, (<https://www.justice.gov.uk/downloads/offenders/psipso/psi-2014/psi-49-2014-mother-and-baby-units.pdf>, 2019.12.15. 최종검색)

때도 보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²⁹⁴⁾

》》 [그림 4-2-1] 영국 엄마와 아기 유닛(MBU) 방 내부



출처: Medium, "Pregnant in Prison: Available Care for Pregnant Persons in Incarceration Facilities in the US and UK", 2018.12.12. (<https://medium.com/midwifery-around-the-world/pregnant-in-prison-3db18bf109e3>, 2019.12.15 최종검색)

2016년 법무부가 발행한 “교도소 엄마와 아기 유닛(MBU) 지원 및 입소에 관한 운영 정보 공고(Management Information Notice: applications and admissions to prison mother and baby units)”는 엄마와 아기 유닛(MBU) 운영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는데, 2015년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소재한 6개 교도소에 여성 수용자와 그 자녀를 위해서 각각 64개의 방실과 70개의 방실을 두고 있다.²⁹⁵⁾ 한 교도소마다 엄마와 아기 유닛(MBU)에 머물 수 있는 엄마의 숫자는 약 9~12명, 아기는 10~13명 정도이다. 실제로는 2015년에 69명의 어머니, 61명의 아기가 거주하고 있다. 지원자는 173명이었으며, 65%가 승인 받았으며 35%가 승인을 거부당해서 전년도에 비해 승인율이 낮아졌다고 보고하고 있다.²⁹⁶⁾

294) 박선영, “영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제3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1.1., 4면.

295) Ministry of Justice, Management information notice: applications and admissions to prison mother and baby units, 2016,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mother-and-baby-units-applications-and-admissions>, 2019.12.15. 최종검색)

296) 박선영, “영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제3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1.1., 5면.

▶▶ [표 4-2-1] 영국 엄마와 아기 유닛(MBU) 운영 현황(2013~2015년)

	2013	2014	2015
엄마와 아기 유닛(MBU) 입소 지원	191	204	173
입소위원회에서 승인한 지원	73	81	73
입소위원회에서 거절한 지원	23	31	40
엄마와 아기 유닛(MBU)에 입소한 여성 수용자	72	78	69
엄마와 아기 유닛(MBU)에 입소한 아기	60	65	61
해당년도 말에 엄마와 아기 유닛(MBU)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수용자	33	38	37
해당년도 말에 엄마와 아기 유닛(MBU)에 거주하고 있는 아기	31	39	39

출처: Ministry of Justice, Management information notice: applications and admissions to prison mother and baby units, 2016.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mother-and-baby-units-applications-and-admissions>, 2019.12.15. 최종검색)

2018년 11월 국회 보고서인 “교도소 보건(Prison Health)”은 엄마와 아기 유닛(MBU)의 운영을 모범 사례 중 하나로 보고하고 있는데, 브론즈필드 교도소는 위기 임신(crisis pregnancy) 중에 있거나 자녀를 잃은 여성 수용자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피터버러 교도소는 조산사와의 24시간 전화 연결, 임신한 여성 수용자와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 수용자를 위해 표준화된 음식에 더하여 음식 포장까지 지원하고 있다.²⁹⁷⁾

나. 민간단체의 활동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수용자 지원과 가족지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하게 임신부 수형자와 그 자녀에 대해서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활동이 행해지고 있다.

1) 몬테소리 재단(Maria Montessori Institute)의 본 인사이드(Born Inside) 프로젝트

교육교재 개발로 유명한 몬테소리 재단(Maria Montessori Institute)은 브론즈필드 교도소 내 엄마와 아기 유닛(MBU) 거주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본 인사이드(Born Inside)를 파일럿 프로젝트로 운영하고 있다. 몬테소리 기술과 훈련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기와 엄마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진행되는 프로그

297) House of Commons Health and Social Care Committee, Prison Health, Twelfth Report of Session 2017-19, 2018, p. 36,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719/cmselect/cmhealth/963/963.pdf>, 2019.12.15. 최종검색)

램이다.²⁹⁸⁾

2) 쉼터(Shelter)의 출소자 주거지원

1966년부터 활동하는 민간단체 쉼터(Shelter)는 사회 내 빈곤층은 물론, 출소하는 수용자들을 위한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교도소 출소 후 갈 곳이 없는 사람은 8주 전부터 온라인이나 전화로 쉼터 상담원에게 연락하면 된다. 긴급 지원의 경우에는 쉼터 위원회가 자격 유무를 진단하고 호스텔이나 쉼터를 제공하는데, 어머니인 수용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긴급 주거지원의 우선적 대상이 되는 출소자는 함께 살 아동이 있는 여성 출소자, 임산부 출소자, 임산부 출소자와 함께 사는 사람, 18~20세의 출소자이다.²⁹⁹⁾

3) 체인지(CHAGE)의 학습장애자용 자료

민간단체 체인지(CHANGE)는 학습장애 수형자를 위해 엄마와 아기 유닛(MBU)에 관한 안내지를 쉽게 그림으로 된 자료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³⁰⁰⁾

3. 수용자 자녀 지원

가. 관련 현황

영국에서는 수용자 자녀의 숫자와 현황에 대한 국가 공식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수용자 자녀와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추정치를 내놓고 있다. 정부의 위탁을 받아 “범죄인 자녀에 관한 국가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on Centre on Children of Offenders, NICCO)”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바날도(Barnardo)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교도소에 부모가 수감된 아동이 매년 310,000명에 이른다고 추정하며, 아동의 교도소 방문 매주 10,000건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³⁰¹⁾ 수용자 자녀

298) Maria Montessori Institute 홈페이지, (<https://www.mariamontessori.org/outreach/born-inside/>, 2019.12.15. 최종검색)

299) Shelter 홈페이지, (<https://england.shelter.org.uk/>, 2019.12.15. 최종검색)

300) 박선영, “영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제3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1.1., 11면.

301) National Information Centre on Children of Offenders(NICCO) 홈페이지, (<https://www.nicco.org.uk/>, 2019.12.15. 최종검색)

지원단체인 패밀리즈 아웃사이드(Families Outside)는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교도소에 부모가 수감된 아동이 매년 약 20,000명에 달한다고 추정하며, 이 숫자는 매년 부모의 이혼을 겪는 아동의 숫자보다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⁰²⁾

이처럼 부모의 구금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이 많지만, 아직 정부 차원의 대응은 미비하다. 다만, 범죄인 자녀에 관한 국가정보센터(NICCO)를 통해 수용자 자녀와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민간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교도소 정문 앞에 아동 친화적 방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용자 지원과 동일하게 다양한 민간단체가 수용자 자녀 지원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³⁰³⁾

나. 교도소 방문 경비 지원

영국 교정보호관찰국은 가족들의 교도소 방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원 하는 “교도소 방문 지원 계획(Assisted Prison Visits Scheme)”을 운영하고 있다.³⁰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저소득층 가정이며, 가족구성원, 파트너, 다른 방문객이 없는 수용자 방문 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보조받을 수 있는 항목은 교통(travel to the prison), 숙박(somewhere to stay overnight), 식사(meals) 비용이다. 방문 후 28일 이내 또는 방문 전 28일 이내에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에 경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교도소 방문 경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증명할 수 있는 특정한 사회보장혜택 혹은 건강보험증이 있어야 한다. 아동이나 (장애로 인한) 보조인을 동반 할 경우 그들에 대한 지원금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³⁰⁵⁾

다. 아동 친화적 방문자 센터

모든 교도소는 수용자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아동 친화적, 가족 친화적 교도소 방문자 센터(Prison Visitor Centre)를 운영하는데, 민간단체와 계약을 통해 민간단

302) Families Outside 홈페이지, (<https://www.familiesoutside.org.uk/>, 2019.12.15. 최종검색)

303) 박선영, “영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제3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1.1., 12면.

304) Government of UK 홈페이지, (<https://www.gov.uk/help-with-prison-visits>, 2019.12.15. 최종검색)

305) 박선영, 앞의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1.1., 13면.

체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팝스(POPS)가 운영하는 방문자 센터의 방문자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센터의 운영과 상황을 알 수 있다.³⁰⁶⁾ 센터는 교도소 밖, 정문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객은 이곳에서 예약을 확인하고, 나이 및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 받는다. 방문자는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음료수와 음식을 구입할 수 있으며, 그곳에 있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조언을 받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동들을 위한 놀이 공간 및 활동도 제공된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센터가 운영되며 방문이 시작되기 45분 전부터 센터는 문을 연다.³⁰⁷⁾

» [그림 4-2-2] 아동 친화적 교도소 방문자 센터



출처: (위) Families Outside 홈페이지. (<https://www.familiesoutside.org.uk/families/visiting-prison/>, 2019.10.30. 최종검색); (아래) POPS 홈페이지. (<http://www.partnersofprisoners.co.uk/what-pops-do/prison-visitor-centres/>, 2019.12.15. 최종검색)

방문자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민간단체는 오랜 시간 수용자와 수용자 가족을 지원해 온 단체들로, 퍼슨 셰이프드 서포트(Person Shaped Support, PSS)는 알트코스 교도소(HMP Altcourse), 팝스(POPS)는 버클리 홀 교도소(HM Prison Buckley Hall)

306) POPS, Visitor's Information: HMP BUCKLEY HALL, 2018, (<http://www.partnersofprisoners.co.uk/wp-content/uploads/2013/01/VISITOR-INFORMATION-BUCKLEY-HALL-v4.pdf>, 2019.12.15. 최종검색)

307) 박선영, “영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제3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1.1., 13면.

등 10군데 교도소, 네팍스(Nepacs)는 더럼 교도소(HM Prison Durham), 로 뉴튼 교도소(HM Prison Low Newton), 커크레빙톤 그레이지 교도소(HM Prison Kirklevington Grange) 등 3개의 교도소에서 방문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각 단체별로 방문자 센터에 각 단체가 제공하는 지원들을 소개하는 소책자를 비치해 두고 있으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더럼 교도소에서 방문자 센터를 운영하는 130년 전통의 네팍스(Nepacs)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특별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로 뉴튼 교도소에서 엄마와 아기 세션, 더럼 교도소와 커크레빙톤 그레이지 교도소에서 가족 학습 방문 등을 진행하고 있다.³⁰⁸⁾

라. 도움의 전화

영국 교정보호관찰국은 민간단체인 PACT(Prison Advice and Care Trust)와 계약을 맺고 “국가 수용자 가족 도움의 전화(National Prisoners’ Families Helpline)”를 운영하고 있다.³⁰⁹⁾ 이 전화는 체포에서 출소까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상담하고 도움을 연결해 주고 있다.³¹⁰⁾

» [그림 4-2-3] 수용자 가족 도움의 전화 안내서



출처: Prisoners' Families Helpline 홈페이지 참조. (<https://www.prisonersfamilies.org/>, 2019.12.15. 최종검색)

308) Justice on GOV.UK 홈페이지, (<https://www.justice.gov.uk/contacts/prison-finder/durham/visiting-information>, 2019.12.15. 최종검색)

309) PACT 홈페이지, (<http://www.pact.co.uk/>, 2019.12.15. 최종검색)

310) 박선영, “영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제3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1.1., 16면.

마. 범죄인 자녀에 관한 국가 정보 센터(NICCO)

영국의 교정보호관찰국은 민간단체인 바날도(Banardo)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범죄인 자녀에 관한 국가정보센터(NICCO)”를 운영하고 있다.³¹¹⁾ 바날도는 150년 전통의 아동 및 청소년 지원단체이며,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사업 중의 하나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고 있다.³¹²⁾ 범죄인 자녀에 관한 국가정보센터(NICCO)는 수용자의 가족 및 자녀와 접촉하는 모든 전문가, 단체, 전략 개발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문가와 관련자를 위한 교육훈련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용자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정보, 관련 단체 정보, 관련 연구와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³¹³⁾

바. 민간단체의 지원

1) 니아크로(NIACRO)의 수용자 자녀 지원 칩(CHIP) 프로그램

니아크로(NIACRO)는 50년 전통의 수용자와 수용자 가족 지원단체이다. 수용자 가족을 위해서 교도소 방문 시 차량 지원, 경제적 문제해결 지원, 가족관계 강화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수용자의 자녀와 관련해서는 칩(Children with Imprisoned Parents, CHI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³¹⁴⁾

칩(CHIP) 프로그램을 통해 0세~18세의 아동·청소년 중에서 부모나 형제가 현재 교도소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³¹⁵⁾

- ① 각 아동·청소년의 필요에 맞춘 1:1 지원
- ② 재판, 교도소 구금, 가석방과 석방 준비 등 각 단계에서 가족을 위해 지속적인

311) National Information Centre on Children of Offenders(NICCO) 홈페이지, (<https://www.nicco.org.uk/>, 2019.12.15. 최종검색)

312) Banardo 홈페이지, (<https://www.barnardos.org.uk/what-we-do/helping-families/children-with-a-parent-in-prison>, 2019.12.15. 최종검색)

313) 박선영, “영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제3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1.1., 17면.

314) NIACRO 홈페이지, (<https://www.niacro.co.uk/chip-children-imprisoned-parents>, 2019.12.15. 최종검색)

315) 박선영, “영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제3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1.1., 18면.

접촉자 역할을 수행

- ③ 수용자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줌
- ④ 수감 중인 수용자 개인의 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줌
- ⑤ 교정직원이 수용자 가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

2) PACT의 비지팅 맘(Visiting Mum) 프로그램

PACT(Prison Advice and Care Trust)는 정부와의 계약으로 수용자 가족 도움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방문자 센터도 운영하고 캠페인, 멘토링, 부모교육 등을 통해 수용자와 수용자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방문자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함께 PACT는 교정보호관찰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스트우드 파크 교도소(HM Prison Eastwood Park)에서 2014년부터 3년간 비지팅 맘(Visiting Mum)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구금기간 동안 자녀와 엄마와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는 교도소에 수용된 어머니를 방문할 아동과 그 보호자를 준비시키고 교도소로 데려 온다.³¹⁶⁾ 이 프로젝트를 위해 PACT는 자원봉사자를 모으고 훈련시켰다.

어머니와 분리됨으로써 아동이 받는 충격을 경감하고, 여성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감소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3년간 총 12개 지역에 있는 197명의 보호자와 아동, 97명의 여성 수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아동의 걱정과 불안이 완화되고 여성 수용자가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방문이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안내 책자나 동영상 개발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더 확대하며, 좀 더 양질의 음식이 제공되고, 사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이 보완 및 개선책으로 제시되었다.³¹⁷⁾

316) PACT 홈페이지, (<https://www.prisonadvice.org.uk/>, 2019.12.15. 최종검색)

317) 박선영, “영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제3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1.1., 19면.

3) 팝스(POPS)의 수용자 자녀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코핑(COPING)³¹⁸⁾

1988년부터 수용자와 수용자 가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팝스(POPS)는 10개의 교도소에서 가족 친화적, 아동 친화적인 방문자 센터(Prison Visitor Centre)를 운영하고 있다.³¹⁹⁾ 실제적인 활동과 더불어 팝스(POPS)는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독일, 루마니아, 스웨덴, 영국 등 4개의 EU 국가가 참여한 수용자 자녀 연구에서 영국의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코핑 프로젝트(COPING project)라고 명명된 이 연구를 위해 수용자, 수용자 자녀, 수용자 자녀의 양육자 등 실제 경험을 가진 대상자 25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40명에 대한 심층면접이 실시되었다. 경찰, 교도소, 학교 등의 대표적인 기관에서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해야 할 구체적인 활동은 물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다섯 가지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아동 친화적인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 ② 아동과 교도소에 있는 자녀와의 접촉 유지
- ③ 부모, 아동 양육자 및 아동에 대한 지원과 권고
- ④ 학교의 역할 강화
- ⑤ 대중의 인식과 정책적 인식 강화

4) 패밀리즈 아웃사이드(Families Outside)의 학교 교사 교육

수용자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인 패밀리즈 아웃사이드(Families Outside)는 도움의 전화, 1:1 지원, 수용자 자녀 지원, 아동 친화적 교도소 방문자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를 방문할 때도 사전에 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교도소 방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정직원과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인 “계속적 전문성 개발 세션(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318) 박선영, “영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제3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1.1., 21면.

319) PACT 홈페이지, (<https://www.prisonadvice.org.uk/>) (2019.12.15. 최종검색)

Session)”을 마련하였다. 어려운 상황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교사는 가장 가깝고 믿을 수 있는 어른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교사들이 수용자 자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스코틀랜드 지역의 교사 1천명이 해당 교육을 받았다.³²⁰⁾

5) 교도소 개혁 트러스트(Prison Reform Trust)의 보고서

교도소 개혁 트러스트(Prison Reform Trust)는 수용자와 수용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캠페인, 보고서 발행, 법률안 개발 등의 활동을 해왔다. 2018년 수용자 가족 지원단체인 패밀리즈 아웃사이드(Families Outside)와 함께 수용자 자녀의 경험을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권고안을 제시하고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What about me?): 어머니가 형사사법시스템에 연루되었을 때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The impact on children when mothers are involved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을 발행하였다. 여성 수용자, 출소한 어머니인 수용자, 어머니가 교도소에 있는 아동 등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경찰, 관련 정부기관, 교도소, 사회복지기관, 학교 등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³²¹⁾

제3절 | 독일

1. 임신부 수용자 처우

가. 관련 현황

독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전체 수용인구에서 여성 수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진적으로 늘어나 2000년도에 4.4%였던 것이 2018년 11월 현재 6.9%까지 증가하였다.

320) Families Outside 홈페이지, (<https://www.familiesoutside.org.uk/> 2019.12.15. 최종검색)

321) Prison Reform Trust 홈페이지, (<http://www.prisonreformtrust.org.uk/>, 2019.12.15. 최종검색)

» [표 4-3-1] 독일 여성 수용자 현황

	여성 수용자 수	전체 수용인구에서 여성 수용자가 차지하는 비율	인구 100,000명 당 여성 수용자가 차지하는 비율
2000	3,515	4.4%	4.3
2005	4,037	5.0%	4.9
2010	3,794	5.3%	4.6
2015	3,753	5.9%	4.6
2018. 11. 30.	4,397	6.9%	5.3

출처: World Prison Brief 홈페이지, Germany-Female prisoners 참조. (<https://www.prisonstudies.org/country/germany>, 2019.12.15. 최종검색)

» [표 4-3-2] 독일 여성 기결수 현황

	기결수 총인원	남자 기결수	여자 기결수
2015	52,412	49,307(94.1%)	3,105(5.9%)
2016	50,858	47,733(93.9%)	3,125(6.1%)
2017	51,643	48,609(94.1%)	3,034(5.9%)
2018	50,957	48,026(94.2%)	2,931(5.8%)

※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됨.

출처: 독일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홈페이지, Strafvollzug-Strafgefangene nach Geschlecht 참조. (<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Justiz-Rechtspflege/Tabellen/strafgefangene.html>, 2019.12.15. 최종검색)

다만, 독일 여성 수용자의 수와 비율은 증가한 반면, 독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여성 기결수형자는 수적으로는 2015년 3,105명에서 2018년 2,931명으로 감소하였고, 비율면에서는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나. 관련 규정

독일 연방 및 각 주의 행형법은 임신, 출산, 분만과 교도소 내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어머니는 누구든지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Jede Mutter hat Anspruch auf den Schutz und die Fürsorge der Gemeinschaft)”고 천명한 독일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제6조 제4항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된 어머니에게 모성보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 자녀에 대해서도 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생명과 신체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 모성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Müttern bei der Arbeit, in der Ausbildung und im Studium, MuSchG) 상의 중요 규정이 준용되며, 교정시설에 수용된 임신부 수용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시민 여성에 대한 지원과 상응하도록 하고 있다.³²²⁾

독일 연방 행형법(Gesetz über den Vollzug der Freiheitsstrafe und der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StVollzG) 제76조 및 각 주 행형법에서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자녀가 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일반 병원에서 수용자의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니더작센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 정부 교정국은 외부병원으로 이송 및 감시가 불가능하거나 이송 등의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만 계획이 있는 시설에서의 출산을 허용하고 있다.³²³⁾ 또한, 독일 행형법 제79조에 의거하여 출생장소로 교정시설이 기록되거나 어머니가 구금 중에 출산했다는 사실과 관련된 사항 등이 자녀의 출생기록에 기재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³²⁴⁾

2. 교정시설 내 유아 양육 지원

가. 양육 대상 및 조건

독일 연방 행형법은 어머니가 수용된 교정시설에서 양육 가능한 자녀의 나이를 취학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동법 제80조 제1항), 프랑크푸르트 주는 3세 이하, 함부르크 주는 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³²⁵⁾

그 밖에 ① 수용 결정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② 교정시설에서의 양육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녀가 어머니와 분리되어 성장함으로써 겪게 될 정서적 불안 등의 해악이 자녀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의 해악보다 클 것으로 사료되는 등 자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③ 자녀의 교정시설 수용을 결정하기 전에 아동복지기관(Jugendamt)의 심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³²⁶⁾

322) Laubenthal, Klaus/신양균 외 2인(역), 『독일행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395면.

323) Laubenthal, Klaus/신양균 외 2인(역), 앞의 책, 395면.

324) 김영식, “독일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1면.

325) Laubenthal, Klaus/신양균 외 2인(역), 앞의 책, 396면.

326) 독일 연방 행형법 제80조 제1항 참조. “그 심리에서 관찰 아동복지기관이 아동을 사회교육적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행형기관은 수용자 자녀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되지만, 수용자 자녀의 수용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교정시설에 아동을 수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독일 연방 행형법 제80조 제2항 제1문). 다만, 비용보상의 청구가 수용자인 어머니와 그 자녀가 함께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동조 제2항 제2문).³²⁷⁾

나. 유아 양육 시설

1) 모자(母子)를 위한 설비의 법적 근거

독일 연방 행형법 제142조³²⁸⁾와 각 주 행형법은 여자 교정시설에 수용된 어머니가 그 자녀와 함께 수용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박탈형의 해로운 결과를 방지해야 한다(독일 연방 행형법 제3조 제2항)는 이른바 ‘해악방지의 원칙(Gegensteuerungsgrundsatz)’에 따라 수용자의 자녀가 자신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자와 분리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화에 대한 장애를 피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기본법 제3조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녀 양육을 담당할 어머니가 부재한 경우에 수용 중인 부(父)와 그 아이를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바이에른 행형법 등 다수 행형법에서 문헌상 아이의 수용을 그 어머니의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³²⁹⁾

교정시설 내 모자(母子)를 위한 설비는 일반 행형의 건축설비로서 시설 내 또는 시설 외의 독립한 건물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행형의료시설에 인접해 있다. 그리고 모자를 위한 설비는 사회복지법(Sozialgesetzbuch, SGB) 제8편에서 말하는 아동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설비이므로 아동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설비 규정이 준수되어야

으로 보살피기 위한 인적, 장소적, 조직적인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Laubenthal, Klaus/신양균 외 2인(역), 앞의 책, 397면.

327) Laubenthal, Klaus/신양균 외 2인(역), 앞의 책, 397면.

328) 독일 연방 행형법 제142조 어머니와 자녀를 위한 시설(Einrichtungen für Mütter mit Kindern) 여성을 위한 시설에 어머니와 그 자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In Anstalten für Frauen sollen Einrichtungen vorgesehen werden, in denen Mütter mit ihren Kindern untergebracht werden können).

329) Laubenthal, Klaus/신양균 외 2인(역), 앞의 책, 396~398면.

한다.³³⁰⁾ 이에 더하여 사회복지법(SGB) 제8편 제27조에 따른 교육 지원 및 제39조에 따른 양육비용 보조도 포함된다.³³¹⁾

2) 어머니-자녀-수용시설(Mutter-Kind-Heim)

수용자인 어머니가 교정시설 내에서 그 자녀와 함께 지내면서 양육하는 ‘어머니-자녀-행형(Mutter-Kind-Vollzug)’ 제도는 1947년 프랑크푸르트-프로인게스하임 여자 교도소에서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당시 이곳의 책임을 맡고 있던 법률 전문가 헬가 아인젤레(Helga Einsele)는 형 집행에서 인권을 강조하고 쪼그라들고 어머니와 함께 수용하는 것이 분리하는 것보다 훨씬 덜 해롭다는 견해를 밝히며 ‘어머니-자녀-행형’제도를 이끌었다.³³²⁾ 독일에서는 교정시설 개혁정책에 따라 1970년대 어머니-자녀-수용시설이 설립되었고, 1980년대 말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누어졌다.³³³⁾ 두 시설 모두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보육교사를 갖추고 있었다. 개방형 시설은 교도소가 행하는 감독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폐쇄형 시설은 인적 그리고 조직적인 면에서 교도소의 강한 통제 하에 놓여 있다. 현재 독일에는 9개 주의 교도소에 어머니-자녀-수용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개방형 교도소에 69개, 폐쇄형 교도소에 37개의 공간이 있지만, 여전히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며 특히 폐쇄형 교도소의 경우에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³³⁴⁾

330) Laubenthal, Klaus/신양균 외 2인(역), 앞의 책, 39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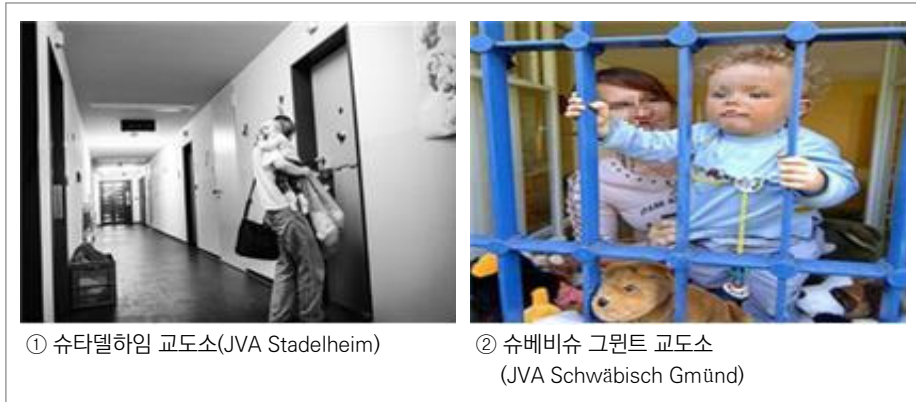
331) BVerwG, "Jugendhilfe in Mutter-und-Kind-Einrichtungen des Strafvollzugs", NJW 2003, S. 2399.

332) Süddeutsche Zeitung, "Wenn eine Mutter hinter Gittern sitzt", 2018.8.11. (<https://www.sueddeutsche.de/leben/strafvollzug-und-familie-wenn-eine-mutter-hinter-gittern-sitzt-1.4085975-2>, 2019.12.15. 최종검색).

333) Ott, Marion, Klein(st)kinder mit ihren Müttern in Haft. Eine ethnographische Studie zu Entwicklungsbedingungen im (offenen und geschlossenen) Strafvollzug. Forschungsbericht einer Pilotstudie in Mutter-Kind-Heimen des offenen und geschlossenen Vollzugs einer Justizvollzugsanstalt, 2012, S. 8, (https://www.pedocs.de/volltexte/2012/5768/pdf/Ott_2012_Kleinstkinder_mit_ihren_Muettern_in_Haft_D_A.pdf, 2019.12.15. 최종검색)

334) 김영식, "독일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5면.

» [그림 4-3-1] 어머니-자녀-수용시설



- ① 출처: 김영식, “독일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5면.
- ② 출처: 슈베비슈 그윈트 교도소 - Bild, "Hinter Gittern: Der große BILD-Report aus deutschen Knästen, KINDER IM KNAST", 2013.11.12. (<https://www.bild.de/news/inland/gefaengnis/der-grosse-bild-report-aus-deutschen-knaesten-33798392.bild.html>, 2019.12.15. 최종검색)

개방형 어머니-자녀-수용시설은 교도소 밖에 위치하며 독자적 출입문을 가지고 있다. 이 시설에는 일반 교도관이 상주하며 재소자들의 출입과 작업시간을 감시한다. 이곳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갖춰져 있는데 작은 체육관 그리고 놀이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커다란 마당이 있다.³³⁵⁾

다.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대리인

수용 중인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할 대리인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보육교사가 담당한다. 즉, 보육교사는 외출과 소풍을 통해 아이가 교도소 밖의 세상을 경험하고 사회적 삶에 참여하게 한다.³³⁶⁾

보육교사는 아이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인물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육교사는 아이의 외출 및 유치원 통원 등에 동행하며 아이의 건강과 영양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이가 병이 났을 경우 의사에게 데려가며, 약을 준비하고, 아이

335) Ott, Marion, a.a.O., S. 8.

336) 김영식, “독일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6면.

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관리한다. 예컨대, 아침식사 자리에 함께하며, 점심식사로 함께 한다. 또한,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파악해 공급한다. 또한 보육교사는 어머니가 법정에 출두하거나 그 밖의 교도소 내 활동으로 아이와 함께 있지 못할 경우, 아이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낸다.³³⁷⁾

라. 아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

수용 중인 어머니가 아이에 대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교정 관련 법규에 지정되어 있다. 어머니-자녀-수용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아동복지과에서 하루에 필요한 금액을 환산해서 매달 수용시설 측에 지불한다. 그러면 수용 교정시설은 이 금액을 규정에 따라 아이의 숙식과 필요한 물품 공급에 사용한다.³³⁸⁾

그밖에 어머니는 아이를 위한 물품을 별도로 아동복지과에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의류, 아이의 용돈, 신생아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 등을 들 수 있다.³³⁹⁾

마. 교정시설 내 유아 양육 실태³⁴⁰⁾

독일 뮌헨의 유력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의 저널리스트 야스민 지베르트(Jasmin Siebert)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임산부가 출산 후 자녀와 분리되는 독일의 현실태에 대해서 탐사보도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지베르트는 수용자인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교정기관 내 시설(Mutter-Kind-Zellen)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어머니와 자녀가 분리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는 어머니와 자녀에 대한 2차 처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쥐트도이체 차이퉁의 동 탐사보도에 따르면, 13개 독일 구금시설은 수용자

337) Ott, Marion, a.a.O., S. 13.

338) 김영식, “독일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6면.

339) Ott, Marion, a.a.O., S. 16.

340) Süddeutsche Zeitung, "Mütter im Gefängnis: Das Wohl der Kinder hat keiner im Blick", 2018.8.11. (<https://www.sueddeutsche.de/panorama/sz-werkstatt-mutter-kind-gefaengnis-1.4087792>, 2019.12.15. 최종검색); Süddeutsche Zeitung, "Wenn eine Mutter hinter Gittern sitzt", 2018.8.11. (<https://www.sueddeutsche.de/leben/strafvollzug-und-familie-wenn-eine-mutter-hinter-gittern-sitzt-1.4085975>, 2019.12.15. 최종검색)

인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를란트(Saarland) 주의 경우에는 여자 구금시설마저 없어 여성 수용자를 인근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주의 츠바이브뤼켄 교도소(Justizvollzugsanstalt (JVA) Zweibrücken)에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츠바이브뤼켄 교도소는 남성 수용자와 여성 수용자를 위해서 각각 300개와 130개의 방실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성 수용자의 자녀를 위한 방실은 두고 있지 않아서 여성 수용자와 그 자녀의 모성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동 탐사보도에 의하면, 츠바이브뤼켄 교도소에서는 2016년에 3명의 임신부 수용자가 자녀를 출산하였고, 2017년에는 그 숫자가 8명으로 늘어났으며, 2018년 상반기에는 4건의 출산이 이루어졌고 2명의 여성 수용자가 임신 중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츠바이브뤼켄 교도소장 유르겐 부흐홀츠(Jürgen Buchholz)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여성 수용자의 출산 및 그 자녀의 양육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관련 사례를 소개하면, 지베르트가 인터뷰한 크리스티나 질버슈타인(Kristina Silberstein)은 자를란트 주에 거주하다가 강도 및 절도 교사로 유죄판결을 받고 라인란트팔츠 주의 츠바이브뤼켄 교도소에 수용되었으며, 수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임신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자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질버슈타인은 모자를 위한 시설을 갖춘 헤센(Hessen) 주의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교도소(JVA Frankfurt am Main)로의 이감을 신청하였는데,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교도소는 개방형 교도소로 헤센 주는 암페타민 양성 반응을 보여 폐쇄형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질버슈타인의 이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9월 아침 질버슈타인은 츠바이브뤼켄 교도소직원의 감독 하에 외부병원에서 출산한 뒤, 자녀와 분리되어 다시 츠바이브뤼켄 교도소로 돌아갔다. 츠바이브뤼켄 교도소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비네 루벨-크로이엘스(Sabine Rubel-Kreuels)도 부모 중 한 명이 교도소에 수용되는 아이들의 수가 독일에서 매년 십만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들 중에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아 어머니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더 좋은 아이들도 있지만, 어머니와 헤어짐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아이들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 교도소에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집(Mutter-Kind-Haus)을 마련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라이프스발트 대학(Universität Greifswald)의 크리스토프 티엘(Christoph Thiele) 박사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자녀가 분리되는 것은 독일 기본법 제6조의 모성보호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도외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접견시간을 늘이거나 개방형 교도소로 이감하는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어머니와 아이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국제앰네스티에서 여성인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마야 리빙(Maja Liebang)은 국제인권협정에 따라 정부가 어머니를 위한 충분한 수용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 평가

여성 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자녀양육에 대해 모자관계를 유지시킴으로써 아동에게는 부모와의 별거에 따른 사회화에 대한 장애를 방지하고 그 어머니에게는 재사회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있다. 반면, 교정시설에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극단적 생활조건에 주목하여 궁극적으로 교정시설 내 자녀 양육이 아동의 수감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며, 어머니와 자녀의 분리를 피함으로써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자녀가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화와 발육의 저하라는 부정적 효과에 의해 감퇴되거나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³⁴¹⁾

3. 수용자 자녀 지원

현재 독일에는 2018년 기준 약 5만명 이상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⁴²⁾ 해당 자녀의 수는 십만여 명에 달한다. 이 아이들은 이미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 밑에서 성장해 교육적으로나 신체발육 상태 등 모든 면에서 일반 아이들보다 취약한데, 여기에 더하여 부모의 교도소 수용으로 더욱 고통을 받는 등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다행히

341) Laubenthal, Klaus/신양균 외 2인(역), 앞의 책, 397면.

342) 김영식, “독일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7면.

독일에서는 “디아코니(Diakonie)”와 “기회 프로젝트(Project Chance)”와 같은 민간단체가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가. 민간단체 디아코니(Diakonie Deutschland)³⁴³⁾

비영리 민간복지재단인 독일 디아코니³⁴⁴⁾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부모의 자녀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이들을 위해 “자유공간(Freiräume)”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자유공간”은 부모가 교도소에 수용되었거나 출소한 가정의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돕고 있다.

》》 [그림 4-3-2] 디아코니 “자유공간” 팸플릿



- ◎ 제공되는 프로그램
 - ▶ 교도소 외부에서의 상담(전화, 면담, E-mail)
 - ▶ 아이들과 부모가 관계를 맺는 방법
 - ▶ 여름캠프
- ◎ 폐쇄형 교도소에 수용된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 ▶ 아버지-자녀, 어머니-자녀 모임
 - ▶ 가족 만남
 - ▶ 아버지 및 어머니 교실
 - ▶ 부모 및 가족상담, 교육상담
 - ▶ 부모훈련교실
- ◎ 개방형 교도소에 수용된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 ▶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주말
 - ▶ 부모 및 가정상담, 교육상담
 - ▶ 부모학교
 - ▶ 아이들과 부모가 관계를 맺는 방법
- ◎ 기타 프로그램
 - ▶ 교도소 안에서의 부모 및 교육상담
 - ▶ 폐쇄형 교도소에서 개방형 교도소로의 이송에 대한 답변
 - ▶ 출소준비에서 출소 후까지 동행

출처: 김영식, “독일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8면.

343) ‘디아코니’에 대한 아래의 서술은 김영식, “독일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7~8면을 참조하였다.

344) 독일 디아코니는 전국적 비영리 민간재단으로 “자유공간”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빌레펠트에만 약 400여 명의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아동, 청소년, 가정 그리고 노인문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유공간”에 소요되는 재정의 80%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정부의 아동, 청소년, 가족을 관할하는 부서에 지불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이 단체에서 수용자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사회교육자 멜라니 모메(Melanie Mohme)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는 아버지-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처벌을 받는 것은 부모이지만, 아이들도 간접적으로 벌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교도소에 가는 일로 아이들은 종종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여러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아이들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낙인이 찍히고, 차별을 받으며, 불이익을 당한다. 그 결과 아이들은 사회적 관계와 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고,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이며, 사회에서 뒤처지게 된다.”

“자유공간”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 때로는 부모들을 돕고, 가족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아이들이 수치와 불안을 극복하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아버지(또는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하는 모임, 아버지(또는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하는 주말, 가족모임 및 다양한 상담과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빌렌펠트 지역에 국한해서, 지금까지 교도소에 수용된 243명의 아버지, 79명의 어머니 그리고 269명의 아이들이 여러 형태로 이 프로젝트에 연결되어 도움을 받았다.

나. 기회 프로젝트(Project Chance)³⁴⁵⁾

민간단체 “기회 프로젝트(Project Chance)”는 “부모-아이-프로젝트(Eltern-Kind-Projekt)”를 통해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 Württemberg) 주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과 그 가정을 돕고 있다. 이 단체는 집중 상담과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상담과 개별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돕고 있다.

345) “기회 프로젝트”(Projekt Chance)에 대한 아래의 서술은 Horst, Belz, “Hilfen für Kinder von Inhaftierten -Eltern-Kind-Projekt-Chance”, 2014의 내용을 참조함. Der Deutsche Präventionstag (DPT) 홈페이지, (<https://www.praeventionstag.de/nano.cms/vortraege/id/2712>, 2019.12.15. 최종검색) 이와 함께 김영식, “독일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9~10면도 참조함.

이 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도움 프로젝트는 독일 울름 대학병원 아동 및 청소년 심리-정신과와 범죄예방지원단체(Straffälligenhilfe)의 공동작업으로 개발되었고,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 단체는 부모가 교도소에 수용 중인 가정, 특히 그 가정의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5년간 418곳의 가정을 상담하여 지원했다. 2011년 이래 “부모-아이-기회 프로젝트”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범죄예방지원단체의 실무적 활동과 바덴뷔르템베르크 재단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법무부에서 일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2016년 독일 울름 대학병원 아동-청소년 심리과에서 실시한 “부모-아이-기회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평가서가 제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 부모와 아이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드는 비용은 아동 및 청소년복지과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비영리단체 “기회 프로젝트”의 수장이자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법무부 교정국 인사과장이기도 했던 하랄드 에거러(Harald Egerer)는 “부모가 교도소에 가게 되면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지만, 누구보다 아이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며, 심리적 불안이 형성됩니다. 가족 모임은 교도소 면회시간으로 제한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양쪽 부모와의 견고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비록 부모가 교도소에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확신과 안전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은 수용중인 엄마와 아빠와의 유대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독일 울름 대학병원 아동-청소년 정신의학과 교수인 요르크 페커트(Jörg Fegert)는 “부모가 교도소에 수용된 아이들은 정서적 스트레스와 장애를 보이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것이 아동 및 청소년 심리 전문가들에게는 수년 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여러 단체가 협력해서 일찍부터 이런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 단체가 협력해서 돕는 모델 프로젝트의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다. 카리타스(German Caritas Association)

독일 카리타스협회와 카톨릭연합공동체 주관의 ‘수용자 도움처’는 2012년 1월 1일부터 하나의 프로젝트를 출범하였으며, 그 내용은 수용자 가족을 위한 온라인 상담과 수용자 아이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었다.³⁴⁶⁾

제4절 | 일본

1. 임산부 수용자 처우

가. 관련 현황

일본 전역에는 여성 수용자 교정시설로 형무소 6개, 형무지소 4개, 사회복귀센터 1개 총 11개의 시설이 있다.

일본의 교정시설은 종래 교정시설 입소 시 여성 수용자가 자녀의 대동을 신청하는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 1세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대동 및 양육을 허가하는 대동유아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러다가 1996년부터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1년에는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100%를 넘어가는 과잉수용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여성 수용자는 2000년에 3,302명, 2003년에 4,288명, 2006년 5,157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여 여성 수용자의 과잉수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6년 (구) 감옥법의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에 수용자의 자녀를 위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교정시설 내에서 자녀의 양육을 허가하지 않는 추세이다. 그러나 수용인원이 다시 감소하면서 2017년 말에는 수용률이 60%까지 내려갔다(2019년 7월 말 현재 일본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49,406명으로 그 중 여성 수용자는 총 4,056명(기결 3,540명과 미결 516명)으로 전체 수용인원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346) Caritas Deutschland 홈페이지, (<https://www.caritas.de/hilfeundberatung/onlineberatung/straffaelligkeit/>, 2019.12.15. 최종검색).

상황 하에서 일본 교정국에서는 여성 수용자 자녀의 인성발달과 정서 등을 고려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자녀양육을 허가하는것을 검토하고 있다.³⁴⁷⁾

» [표 4-4-1] 일본 형사시설의 수용율 추이

연도	전체			기결			미결		
	수용정원	수용인원	수용률	수용정원	수용인원	수용률	수용정원	수용인원	수용률
1989	63,423	50,481	79.6	47,645	42,736	89.7	15,778	7,745	49.1
1990	63,613	46,858	73.7	47,753	39,968	83.7	15,860	6,890	43.4
1991	63,833	45,193	70.8	47,955	37,837	78.9	15,878	7,356	46.3
1992	63,773	45,082	70.7	47,989	37,333	77.8	15,784	7,749	49.1
1993	64,151	45,525	71.0	48,306	37,282	77.2	15,845	8,243	52.0
1994	64,571	46,120	71.4	48,524	37,588	77.5	16,047	8,532	53.2
1995	65,273	47,398	72.6	49,076	38,769	79.0	16,197	8,629	53.3
1996	64,770	49,414	76.3	48,577	40,515	83.4	16,193	8,899	55.0
1997	64,404	50,897	79.0	48,575	41,868	86.2	15,829	9,029	57.0
1998	63,625	52,713	82.8	47,791	43,464	90.9	15,834	9,249	58.4
1999	64,164	56,133	87.5	48,256	45,606	94.5	15,908	10,527	66.2
2000	64,194	61,242	95.4	48,393	50,126	103.6	15,801	11,116	70.3
2001	64,727	65,508	101.2	48,911	53,647	109.7	15,816	11,861	75.0
2002	65,264	69,502	106.5	49,309	57,451	116.5	15,955	12,051	75.5
2003	69,694	73,734	105.8	52,783	61,534	116.6	16,911	12,200	72.1
2004	72,182	76,413	105.9	55,220	64,931	117.6	16,962	11,482	67.7
2005	76,043	79,055	104.0	58,906	68,319	116.0	17,137	10,736	62.6
2006	79,375	81,255	102.4	62,077	71,408	115.0	17,298	9,847	56.9
2007	85,214	79,809	93.7	67,996	70,989	104.4	17,218	8,820	51.2
2008	87,754	76,881	87.6	70,292	68,637	97.6	17,462	8,244	47.2
2009	90,354	75,250	83.3	72,311	67,083	92.8	18,043	8,167	45.3
2010	90,182	72,975	80.9	72,129	64,883	90.0	18,053	8,092	44.8
2011	90,547	69,876	77.2	72,434	62,080	85.7	18,113	7,796	43.0
2012	90,681	67,008	73.9	72,562	59,672	82.2	18,119	7,336	40.5
2013	90,536	62,971	69.6	72,381	56,106	77.5	18,155	6,865	37.8
2014	90,146	60,486	67.1	71,994	53,532	74.4	18,152	6,954	38.3
2015	89,807	58,497	65.1	71,690	51,906	72.4	18,117	6,591	36.4
2016	89,389	55,967	62.6	71,419	49,697	69.6	17,970	6,270	34.9
2017	88,670	53,233	60.0	70,709	47,331	66.9	17,961	5,902	32.9

주 1. 법무성 교정국 자료에 의한다

2. 수용인원은 각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수용인원이다.
3. 수용율은 각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수용정원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4. 기결은 노역장유치자 및 피감치자를 포함한다.
5. 미결은 사형확정자, 구인장에 의한 유치자 및 관호조치의 가수용자를 포함한다.

출처: 금융명, “일본의 임신부 및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제도”, 「제3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1.1., 7~8면.

347) 금융명, “일본의 임신부 및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제도”, 「제3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1.1., 4면.

▶▶▶ [표 4-4-2] 일본 형사시설 남녀 수용인원 추이

연도	총수		
	계	남성	여성
1989	50,481	48,270	2,211
1990	46,858	44,745	2,113
1991	45,193	43,171	2,022
1992	45,082	43,085	1,997
1993	45,525	43,439	2,086
1994	46,120	43,985	2,135
1995	47,398	45,122	2,276
1996	49,414	46,974	2,440
1997	50,897	48,277	2,620
1998	52,713	49,905	2,808
1999	56,133	53,141	2,992
2000	61,242	57,940	3,302
2001	65,508	61,926	3,582
2002	69,502	65,561	3,941
2003	73,734	69,446	4,288
2004	76,413	71,868	4,545
2005	79,055	74,216	4,839
2006	81,255	76,098	5,157
2007	79,809	74,569	5,240
2008	76,881	71,662	5,219
2009	75,250	70,038	5,212
2010	72,975	67,632	5,343
2011	69,876	64,531	5,345
2012	67,008	61,726	5,282
2013	62,971	57,912	5,059
2014	60,486	55,440	5,046
2015	58,497	53,622	4,875
2016	55,967	51,284	4,683
2017	53,233	48,788	4,445

주 1. 교통통계연보의 자료에 의한다.

2. 연말수용인원은 각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수용인원이다.

출처: 금융명, “일본의 임신부 및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제도”, 「제3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1.1., 9면.

나. 관련 규정

일본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刑事收容施設及び被收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이하 ‘형사수용시설법’이라 한다) 제65조는 “양호를 위한 조치 등(養護のための措置等)”이라는 제호 아래 제1항에서 “형사시설의 장은 노인, 임산부, 신체허약자, 그 밖에 양호를 필요로 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그 양호를 필요로 하는 사정에 따라 부상과 질병자를 위한 조치에 준한 조치를 취한다”³⁴⁸⁾고 하여 임산부를 부상자 또는 질병자 외에 양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³⁴⁹⁾

여기서 ‘임산부’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상당기간 내의 사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피수용자의 보건위생 및 의료에 관한 훈령(被收容者の保健衛生及び医療に関する訓令)”은 제18조 제2항에서 그 범위를 “수태 후 5개월 이상을 경과하거나 출산 후 2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라고 하고 있으나,³⁵⁰⁾ 이는 수태 후 150일 이상 경과한 사람 또는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형의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일본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3호와 제4호³⁵¹⁾와 결합한 감옥법 시행규칙(監獄法施行規則) 제119조³⁵²⁾를 답습한 것이다.³⁵³⁾ 그러나 예를 들어 임신 3개월의 임산부와 같이 법률 및 훈령에 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심한 입덧 등 그 임신의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처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348) 일본 전자정보 종합창구(e-Gov) 홈페이지, 법령검색, 刑事收容施設及び被收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7AC0000000050, 2019.12.15. 최종검색)

349) 하야시 마코토(林 眞琴) 외 2인(저)/안성훈·금융명(역), 『축조해설 일본행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255~256면.

350)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刑事施設で適用される主な訓令・通達(平成 31年 2月 1日 現在), (<http://www.moj.go.jp/content/001174862.pdf>, 2019.12.15. 최종검색)

351) 일본 형사소송법 제482조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 “수태 후 150일 이상인 때(受胎後百五十日以上であるとき)” (제3호)거나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出産後六十日を経過しないとき)” (제4호)인 경우에, 형의 선고를 한 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찰관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찰관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전자정보 종합창구(e-Gov) 홈페이지, 법령검색, 刑事訴訟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3AC00000000131, 2019.12.15. 최종검색)

352) 일본 감옥법은 2005년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는데, 감옥법 시행규칙 제119조는 “수태 후 5개월 이상의 임부와 분만 후 2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산부에 한하여 질병자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妊婦は受胎後5月以上の者産婦は分娩後2月を経過せざる者に限り之を病者に準することを得)”고 규정하고 있었다.

353) 하야시 마코토(林 眞琴) 외 2인(저)/안성훈·금융명(역), 앞의 책, 256면.

형사수용시설법 제65조 상의 “그 밖에 양호를 필요로 하는 피수용자”로서 처우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상자와 질병자를 위한 조치에 준하는 조치’란 형사수용시설법 제6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양보급의 처치를 포함한) 진료, 그 밖에 필요한 의료상의 조치”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구체적으로는 ① 임신부 등의 건강상태(태아의 상태 포함) 진찰, ② 영양보급, ③ 병실 수용, ④ 안정, ⑤ 특별한 의류, 침구, 일용품 그 밖의 물품 사용 허용, ⑥ 신체상태에 적합한 식사 지급 및 신체상태를 악화시키는 식료품 등의 섭취를 불허 등이 포함된다.³⁵⁴⁾

원칙적으로 형사시설은 임신과 출산을 돕는 시설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형사시설에서 출산을 위한 설비 및 조치가 완벽하게 갖춰지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며 형사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출산은 아이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본에서는 형사시설 내에서의 출산을 가능한 한 피하고 있다.³⁵⁵⁾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시설 밖의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에 임신부 수용자를 입원시켜 그곳에서 출산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취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형사수용시설법 제65조 제2항에서 “형사시설의 장은 피수용자가 출산하는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시설 외의 병원, 진료소 또는 조산소에 입원시킨다”³⁵⁶⁾고 하고 있다. 즉, 통상의 진료 등에 있어서는 수용자를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지만(동법 제62조 제3항), 출산에 관해서는 형사시설 밖의 병원 등에 입원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수용시설법 제65조 제2항은 ‘수용자가 출산하는 때’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출산 전과 출산 후에 행해지는 검진 등은 부상자 또는 질병자를 위한 조치에 준한 조치로서, 형사시설 내에서 형사시설의 직원인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³⁵⁷⁾

형사수용시설법 제6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병원 등에 입원시켜 출산하게 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양수가 터졌다거나 재해 등 급박한 사정으

354) 하야시 마코토(林 眞琴) 외 2인(저)/안성훈·금융명(역), 앞의 책, 256~257면.

355) 하야시 마코토(林 眞琴) 외 2인(저)/안성훈·금융명(역), 앞의 책, 257면.

356) 일본 전자정보 종합창구(e-Gov) 홈페이지, 법령검색,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7AC0000000050, 2019.12.15. 최종검색)

357) 하야시 마코토(林 眞琴) 외 2인(저)/안성훈·금융명(역), 앞의 책, 258면.

로 인해 외부병원으로의 이송이 어려운 경우나 인근에 적당한 병원이 없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형사시설 외부에서의 출산을 원칙으로 하는 데에는 아이의 출생기록에 출생지로 형사시설이 기록되는 등 아이의 앞날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는 취지도 내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임산부 수용자가 형사시설 내에서의 출산을 희망하거나 외부병원 입원을 거부한다고 해도 그 의사에 따를 필요는 없으며, 형사시설의 장으로서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외부병원 등에 입원시켜야 한다.³⁵⁸⁾

출산의 경우 입원기간은 매우 단기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산을 위한 입원 및 의료적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³⁵⁹⁾

2. 교정시설 내 유아 양육 지원

가. 관련 규정

일본 형사수용시설법 제66조는 “자녀의 양육(子の養育)”이라는 제호 아래, 형사시설의 장은 “여성 수용자가 자녀를 형사시설 내에서 양육하기를 원하는 뜻을 신청한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자녀가 1세에 이르기까지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제1항) “수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육되어 1세에 달한 자녀에 대하여 계속하여 형사시설 내에서 양육을 원하는 뜻을 신청한 경우 수용자의 심신의 상황에 비추거나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속하여 6개월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또한, 이와 같이 자녀의 양육을 허용하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대여하거나 또는 지급”하고(제3항), 수용자가 “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자비로 구매한 물품을 사용하거나 섭취하거나 또는 그 자녀에게 사용시키거나 또는 섭취시키기를 원하는 뜻을 신청한 경우에는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그 밖에 관리운영상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고 있다(제4항). 이에 더하여 수용자가 형사시설 내에서 양육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수용자의 예에 의하여 건강진단, 진료,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제5항).³⁶⁰⁾

358) 하야시 마코토(林 眞琴) 외 2인(지)/안성훈·금융명(역), 앞의 책, 258면.

359) 하야시 마코토(林 眞琴) 외 2인(지)/안성훈·금융명(역), 앞의 책, 258면.

360) 일본 전자정보 종합창구(e-Gov) 홈페이지, 법령검색,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

여기서 ‘자녀’는 입소 시 데리고 있는 자녀 및 수용 중 출산한 자녀에 한하지 아니하고 입소 시에는 데리고 오지 아니한 자녀에 대해서도 입소 후에 인수하여 양육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입소 시 자녀의 양육을 위탁하였던 양육자의 사망 등 상황의 변화로 인해 자녀의 위탁양육이 어려워지는 경우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으므로, 형사시설 내에서의 양육이 인정되는 자녀의 범위를 입소 시 데리고 있던 자녀 및 수용 중 출산한 자녀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친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수용자의 양자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³⁶¹⁾

나. 유아 양육 허가

1) 양육을 원한다는 취지의 신청

자녀의 양육은 여성 수용자가 그 자녀를 형사시설 내에서 양육하기를 원하는 뜻을 신청한 경우, 형사시설의 장의 재량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허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용자로부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자녀의 복지상의 관점 또는 어머니인 수용자의 처우상의 관점에서 형사시설 내에서의 양육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도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를 양육하도록 할 수 없다.³⁶²⁾

2)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형사시설 내에서의 자녀의 양육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녀의 양육을 인정할지 여부는 형사시설의 장의 재량에 따르고 있다는 취지이다.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있는 가족 등의 유무, 아동복지시설 등의 입소 상황, 경제적 이유, 자녀의 발육상황 등 객관적인 가정 사정에 더하여 수용자의 심신의 상황에 따르는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형사수용시설법 제66조 제2항에서도 명시적으로 ‘피수용자의 심신의 상황(被收容者の心身の状況)’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³⁶³⁾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수용자가 자녀를

417AC0000000050, 2019.12.15. 최종검색)

361) 하야시 마코토(林 眞琴)외 2인(저)/안성훈·금융명(역), 앞의 책, 261면.

362) 하야시 마코토(林 眞琴)외 2인(저)/안성훈·금융명(역), 앞의 책, 261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애정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이 어머니인 수용자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것인지 여부라 하겠다.³⁶⁴⁾

3) 양육 기간

양육기간은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세에 달하기까지이다(형사시설수용법 제66조 제1항). 이와 같이 양육기간을 한정하는 이유는 형사시설에서의 영유아 양육을 위한 인적·물적 조건의 한계, 형사시설에서의 생활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수용자에게 교정처우를 실시함에 있어서 초래될 지장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육기간 이후에 특별히 계속하여 양육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형사시설의 장은 6개월에 한하여 수용자 자녀의 양육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시설수용법 제66조 제1항).³⁶⁵⁾

양육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은 “수용자가 계속하여 형사시설 내에서 양육을 원하는 뜻을 신청한 경우 수용자의 심신의 상황에 비추거나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필요가 있는 때”이다. 그리고 ‘수용자의 심신의 상황에 비추어서 … 특히 필요가 있는 때’란 자녀와의 분리가 어머니인 수용자의 심신상황을 현저하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우려가 있어 처우의 관점에서 볼 때 어머니인 수용자에게 계속하여 자녀의 양육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를 말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필요가 있는 때’란 자녀의 심신발육에 있어서 수용자인 어머니가 계속해서 자녀를 양육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나 친족, 아동복지시설 등 자녀의 양육을 위탁할 만한 대상 또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³⁶⁶⁾

다. 양육 물품의 급여 및 대여

형사시설의 장이 형사시설 내에서 유아 양육을 허가할 경우, 유아 양육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물품’으로는 우유, 이유식,

363) 일본 전자정보 종합창구(e-Gov) 홈페이지, 법령검색, 刑事収容施設及び被収容者等の処遇に関する法律,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7AC0000000050, 2019.12.15. 최종검색)

364) 하야시 마코토(林 眞琴) 외 2인(저)/안성훈·금융명(역), 앞의 책, 262면.

365) 하야시 마코토(林 眞琴) 외 2인(저)/안성훈·금융명(역), 앞의 책, 262면.

366) 하야시 마코토(林 眞琴) 외 2인(저)/안성훈·금융명(역), 앞의 책, 262~263면.

내의·유아복 등의 의복, 아기침대·이불·베개 등의 침구, 장난감, 착유기 등을 들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형사시설(국가)이 대여 또는 급여하게 되지만, 어머니인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물품의 사용·섭취를 신청한 때에는 형사시설의 규율 및 질서유지 그 밖의 관리운영상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³⁶⁷⁾

일본 여자교도소 중 하나인 가코가와형무소³⁶⁸⁾의 유아 양육을 위한 보육실 및 비품은 다음과 같다.

▶▶ [그림 4-4-1] 가코가와형무소 보육실 시설



출처: 권수진, “일본 수용자 자녀양육 현황 등 자료회의 및 시설참관”, 국외출장복명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0.4, 13면.

367) 하야시 마코토(林 眞琴) 외 2인(저)/안성훈·금융명(역), 앞의 책, 263~264면.

368) 여성 수용자의 과잉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코가와(加古川)형무소는 2010년 12월에 여자수용시설 공사에 착수하여 2012년 3월 공사를 완료하고 여성 수용자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2019년 9월 4일 기준으로 가코가와형무소에 수용된 임신부는 없고, 2019년 6월에 출산한 여성 수용자의 자녀는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졌다. 권수진, “일본 수용자 자녀양육 현황 등 자료회의 및 시설참관”, 국외출장복명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0.4. 12면.

라. 자녀에 대한 조치

형사시설 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건강진단, 진료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에 대한 조치에는 건강진단과 진료뿐만 아니라 목욕, 전염병 예방상의 조치 등이 포함된다. 형사수용시설법 제66조 제5항에서 말하는 ‘수용자의 예에 따라’란 형사시설 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수용자에 대한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건강진단과 목욕의 빈도, 원칙적으로 어머니인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료를 강제할 수 없는 점 등도 수용자의 경우에 준하게 된다. 또한 지명 의사에 의한 진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수용시설법 제63조에 대해서도 수용자의 경우에 준하여 어머니인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지명하는 의사에 의한 진료를 신청한 경우, 동조의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이것을 허가할 수 있다.³⁶⁹⁾

마. 유아 양육제도 의의

형사시설은 본래 영유아를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그 환경이 영유아의 발육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입소 시에 영유아가 있는 여성 수용자, 수용 중에 출산하였으나 외부에 자녀의 양육을 맡길 적당한 자가 없는 여성 수용자가 있을 수 있고, 이같은 경우까지 형사시설에서의 자녀 양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성 수용자와 그 자녀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여성 수용자가 형사시설에서의 양육을 희망하는 경우 그 상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형사시설 내에서의 자녀 양육을 인정하는 것이다.³⁷⁰⁾

현재 일본에서는 아동복지를 위한 제도와 시설 등이 정비되어 있어서 어머니가 형사시설에 수용되어 그 자녀를 양육할 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자녀의 양육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필요성만 놓고 본다면 형사시설 내에서의 자녀 양육을 인정하는 제도의 의의는 반감될 것이다. 그렇지만 형사시설 내에서의 유아 양육제도는 생후 일정 시기 동안에 어머니와 자녀가 직접 접촉하여 상호 교감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양육에 있어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369) 하야시 마코토(林 眞琴) 외 2인(저)/안성훈·금융명(역), 앞의 책, 264면.

370) 하야시 마코토(林 眞琴) 외 2인(저)/안성훈·금융명(역), 앞의 책, 260면.

출산 후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쉬운 임신부 수용자의 심신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관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임신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라고 할 수 있다.³⁷¹⁾

3. 수용자 자녀 지원

일본에서는 미성년 수용자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하여 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모가 수형 중인 경우 친권 행사의 여부이다. 일본 아동복지법은 아동상담소장이나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친권(親權)을 행사하는 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이 있을 때까지 친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33조의 2 제1항³⁷²⁾ 및 제47조 제1항³⁷³⁾).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사망, 친권상실, 친권정지 등 외에, ‘친권자가 친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후생노동성 각종 문서에서 ‘친권자의 장기 부재’ 등 외에 ‘복역 등’이라고 추가 설명하고 있다.³⁷⁴⁾

수형 중의 부모를 둔 자녀가 아동 양육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양육 하에 있는 경우, 민법상 미성년 후견제도가 실시된다. 민법상 미성년 후견제도는 미성년자의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사망, 실종 등으로 없어졌을 때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신상감호(身上監護)나 재산관리(財産管理)를 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면 법률에 의해 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371) 하야시 마코토(林 真琴) 외 2인(지)/안성훈·김용명(역), 앞의 책, 260면.

372)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 제33조의 2 제1항에서는 “아동상담소장은 일시보호하고 있는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이 생길 때까지 친권을 행사한다(児童相談所長は、一時保護が行われた児童で親権を行う者又は未成年後見人のないものに対し、親権を行う者又は未成年後見人があるに至るまでの間、親権を行う)”고 규정하고 있다.

373) 아동복지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입소한 아동 등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이 생길 때까지 친권을 행사한다(児童福祉施設の長は、入所中の児童等で親権を行う者又は未成年後見人のないものに対し、親権を行う者又は未成年後見人があるに至るまでの間、親権を行う)”고 규정하고 있다.

374) 立石直子, “受刑中の親を持つ子どもの問題: 子どもの困難と親との法的関係(小特集 犯罪者を親にもつ子どもについて考える)”, 法律時報 第89巻 第6号, 日本評論社, 2017, 83頁.

도 친권자에 의한 친권행사를 기대할 수 없다.³⁷⁵⁾

일본 민법 제838조 제1호 규정은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없을 때’에 미성년 후견인의 선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없을 때’란, 친권자가 해외 등의 원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등 장기 부재 상태에 있는 경우와, “친권자가 범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 중에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널리 알려진 사례로는 미토(水戸) 가정재판소 쓰치우라(土浦) 지부의 1960년(昭和 35年) 7월 19일자 심판에서 아버지가 존재하지만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에 있어서 할아버지에 의한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신청이 인용되어, 할아버지가 후견인이 된 예가 있다.³⁷⁶⁾ 또한, 사회적 양육을 받고 있는 아이에 관한 미성년 후견제도의 이용 실태로서, 전국적으로 부모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아동 약 5000명에 대해 아동상담소 소장이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한 사례가 1989년부터 2008년까지 179건 있었으며 이에 대해 134건의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³⁷⁷⁾ 일본에서 수용자 자녀에 대해 이와 같이 미성년 후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이용될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5절 | 대만

1. 임산부 수용자 처우

가. 관련 현황

대만 법무부 교정서(矯正署)는 2011년에 법무부 내 독립관청이 되었는데,³⁷⁸⁾ 교정

375) 立石直子, 前掲論文, 83頁.

376) 동 판결의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宮崎幹朗, “未成年後見と親権との関係: 審判例にみる「親権を行う者がいないとき」の意義(岩間徹教授古稀記念号)”, 西南学院大学法学論集 第48巻 第3・4号, 西南学院大学学術研究所, 2016, 64~65頁 참조.

377) 立石直子, 前掲論文, 83~84頁.

378) 대만은 예수 탄생을 원년으로 하는 서력기원 대신에 중화민국이 건국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민국기년을 사용한다. 교정서(矯正署) 설립을 위한 논의는 학계와 실무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그 성과로 민국 99년(서력 2010년) 4월 22일 대만 행정원은 제

서 조직은 서장, 부서장, 주임비서 아래 종합계획조(綜合規劃組), 교화보도조(教化輔導組), 안전감독조(安全督導組), 후근자원조(後勤資源組), 교정의료조(矯正醫療組) 등 5개 조와 비서실(祕書室), 인사실(人事室), 정풍실(政風室), 회계실(會計室), 통계실(統計室) 등 5개실을 두고 있고, 24개 감옥, 12개 간수소, 3개 기능훈련소, 4개 제치소, 2개 소년교정학교 등 51개 교정기관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여자감옥은 도원여자감옥(桃園女子監獄), 대중여자감옥(臺中女子監獄), 고웅여자감옥(高雄女子監獄) 3개소가 있다.³⁷⁹⁾

교정시설 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월 기준으로 수용정원 57,573명에 수용현원은 62,704명으로 5,131명(9%)을 초과 수용하고 있다. 미결수는 2,535명(4%), 여성수용자는 5,019명(8%)이며, 이 중 마약수용자가 30,481명(48.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양육유아는 2018년 41명이었다.³⁸⁰⁾

》》 [표 4-5-1] 대만 수용자 현황

	수용인원	기결수	미결수	여자 수형자	가출옥
2015년	62,899	57,458	2,285	4,775	11,054
2016년	62,398	56,551	2,671	4,733	11,426
2017년	62,315	57,184	2,497	4,892	11,560
2018년	63,317	58,734	2,536	5,074	
2019년 5월	62,704	58,402	2,535	5,019	

출처: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1면; 대만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통계-교정통계 참조. (https://www.rjtd.moj.gov.tw/rjtdweb/common/WebList3_Report.aspx?list_id=1216, 2019.12.15. 최종검색)

3192차 원회결의로 법무부조직법(法務部組織法) 수정초안과 법무부 교정서 조직법(法務部矯正署組織法) 초안을 통과시켰고 입법원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동년 8월 19일 대만 입법원이 위법안 초안들을 통과시켰으며, 동년 9월에 대만 총통이 화충일의자(華總一義字) 제 09900224451호를 발하여, 제정법무부교정서조직법(制定法務部矯正署組織法)을 공포하였다. 대만 법무부 교정서 홈페이지, 연혁 참조. (<https://www.mjac.moj.gov.tw/4786/4788/4790/92471/post>, 2019.10.30. 최종검색) 법무부조직법은 민국 100년(서력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홈페이지, 법무부조직법 연혁 참조. (<https://law.moj.gov.tw/LawClass/LawHistory.aspx?pcode=I0000001>, 2019.12.15. 최종검색)

379) 대만 법무부 교정서 고웅여자감옥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sw.moj.gov.tw/>, 2019.12.15. 최종검색)

380)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1면.

» [표 4-5-2] 대만 여자감옥 3개소의 수용자 현황

	계	고용여자감옥	대중여자감옥	도원여자감옥
2015년	3,740	1,191	1,240	1,309
2016년	3,826	1,200	1,344	1,282
2017년	3,921	1,332	1,306	1,283
2018년	4,034	1,365	1,352	1,317
2019년 5월	3,996	1,327	1,364	1,305

출처: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2면.

고용, 대중, 도원 여자감옥 3개소의 수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월 현재 고용여자감옥에 1,327명, 대중여자감옥에 1,364명, 도원여자감옥에 1,305명 등 총 3,996명의 여성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다. 또한 2019년 5월 현재, 도원여자감옥 여성 수용자 중 마약사범은 912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여자감옥도 상황은 비슷하다.³⁸¹⁾

나. 임신부 수용자 처우

수용자가 감옥에 입소할 때에는 건강검사가 행해지게 되는데, 이때 임신 5개월 이상 또는 출산 후 2개월 미만으로 판명된 수용자는 대만 감옥행형법(監獄行刑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감옥 입소가 거절된다.³⁸²⁾ 그 밖의 임신부 수용자가 감옥에 입소하게 되면, 교정기관은 수용자로 하여금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함으로써 임신 개월수와 태아의 건강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³⁸³⁾

임산부 또는 산후 6개월 이내 여성 수용자에게는 독감 예방 접종이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금연교육을 실시하며, 임신부가 우량아를 임신하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어 출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적정한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술한다.³⁸⁴⁾

381)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2면.

382)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홈페이지, 감옥행형법,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I0040001>, 2019.12.15. 최종검색)

383) 대만 법무부 교정서 홈페이지, 矯正機關常見收容問題 Q&A, 法務部矯正署(107年1月), 2018, 問 7. 請問女性懷孕中, 一定要入監服刑嗎? 참조, (<https://www.mjac.moj.gov.tw/4786/4812/4822/92495/post>, 2019.12.15. 최종검색)

384)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 [그림 4-5-1] 임신부 수용자 의료처우



출처: 대만 법무부 교정서 도원여자감옥 홈페이지, 위생의료 참조. (<https://www.tyw.moj.gov.tw/6031/6065/6075/124947/>, 2019.12.15. 최종검색)

임산부 수용자는 임신 30주차에 들어서면 작업을 중지하고 요양실에서 출산 준비를 한다. 출산은 외부병원에서 하며, 외부병원에서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 초빙 의사가 방문하여 출산을 지원한다. 여성 수용자는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 및 유방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의사에게 보고되어 조치된다.³⁸⁵⁾

다. 출산 후 처우

교정시설에서는 출산하는 수용자와 아기를 위하여 모자(母子) 단지를 만들어 아이 양육에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며, 수용자 출산 후에는 산모를 위한 특별식으로 마유계(麻油鷄)를 급여하고, 의료인으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형자에게 양육방법을 지도한다. 그리고, 영유아에게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한다.³⁸⁶⁾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3면.

385)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3면.

386)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3면.

» [그림 4-5-2] 임신부 특별식 및 영유아 건강검진



특별식(마유계)

영유아 건강검진

출처: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4면; 대만 법무부 교정서 도원여자감옥 홈페이지, 위생 의료 참조. (<https://www.tyw.moj.gov.tw/6031/6065/6075/124947/>, 2019.12.15. 최종검색)

임산부 및 출산 후 아이는 주로 외부 초빙진료 의사에 의해 의료처우를 받고 있다. 2019년 5월 도원여자감옥의 외부 초빙의사 진료 시간표를 살펴보면, 화요일 오전과 수요일 오후에 소아과 진료가 2회 있고, 산부인과는 금요일 오후에 1회 있다. 수용자는 초빙진료에서 자비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영치금이 없는 외국인 등은 공익진료를 받는다.³⁸⁷⁾

» [표 4-5-3] 도원여자감옥 진료 시간표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 전 09:00~12:00		정신과			
	내과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정신과
	치과	치과	치과	피부과	치과
		공익진료		치과	
오 후 14:00~17:00	신경정신과	치과	소아과	심장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감염내과	신경정신과	신경정신과	산부인과
			치과	치과	치과

※ 감염과 : 매월 2회, 피부과 매월 2회

출처: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3면.

387)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3~4면.

2. 교정시설 내 유아 양육 지원

가. 관련 규정

대만 감옥행형법 제10조 제1항은 입감 여성이 자녀를 동반할 것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자녀의 나이를 3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³⁸⁸⁾ 동법 제46조는 자녀를 동반한 수용자의 경우 그 자녀의 음식, 의류 및 필수 용품 등을 모두 스스로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⁸⁹⁾ 또한, 대만 감옥행형법시행세칙(監獄行刑法施行細則) 제13조에 따르면, 아이를 동반한 수용자가 감옥에 있는 경우 해당 여자감옥은 보육실을 설치하여 자녀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³⁹⁰⁾

나. 유아 양육 시설

도원여자감옥의 경우 2018년 1월 4일 여성 수용자와 양육유아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친자원지(親子園地)를 조성하여, 조리대, 좌식 소변기, 어린이 수도꼭지, 아기침대, 소파, 음수시설, 냉장고, TV 등을 설치하였다. 양육유아는 보육실 또는 수용거실에서 여성 수용자와 같이 생활하며 유아용 침대가 지급된다. 2019년 4월 3일부터는 수용자 양육유아의 야외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외 놀이터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또한, 양육유아를 보살피기 위해 유아교육 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여 보육실을 관리하고 있고, 양육유아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도우미 여성 수용자도 양육유아의 인원만큼 배치되었다.³⁹¹⁾

388)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홈페이지, 감옥행형법,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I0040001>, 2019.12.15. 최종검색) 감옥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도 대만 감옥행형법 제10조 제1항이 적용된다(동법 제10조 제3항).

389) 그러나 자녀의 음식, 의류 및 필수 용품 등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이를 급여받거나 공급받는 것이 가능하다(대만 감옥행형법 제46조 단서).

390)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홈페이지, 감옥행형법시행세칙,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I0040002>, 2019.12.15. 최종검색)

391)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5면.

» [그림 4-5-3] 양육유아 수용거실



수용거실 입구



양육유아 수용거실 내부



영유아 교육 1



영유아 교육 2

출처: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7면.

» [그림 4-5-4] 교정기관 내 보육실 및 시설물



보육실 입구



보육실 내부



세면대



조리대



출처: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5면.

법무부는 수용자의 가정 지원을 증시하여 유아가 외부의 고위험 가정에 있는 경우에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가 유아를 돌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양육유아에 대하여 예방백신 및 계절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³⁹²⁾

다. 외부 유아원(幼兒園) 통학

도원, 대중, 고용 여자감옥의 2세 이상 양육유아를 대상으로 교정서와 재단법인 중국신탁반마약교육기금회이 협력하여 「교정기관 양육유아 처우 협력 강화방안」을 추진하였다. 재단법인은 약 379만 대만달러(약 1억4천2백만원)를 기부하여 교정기관의 보육인력을 확보하였고, 2019년에는 약 467만 대만달러(약 1억7천5백만원)가 기부되어 2세 이상 양육유아 8명에 대하여 매일 외부 유아원에 통학하도록 하였다. 유아원 통학은 오전 8시경에 교정기관 보육교사가 양육유아를 인솔하여 정문 밖에 있는 유아원 버스에 태우고, 오후 4시경 보육교사가 유아원 버스에서 내리는 양육유아를 맞이하여 교정기관 내로 데리고 온다.³⁹³⁾

392)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6면.

393)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7면.

» [그림 4-5-5] 유아원 통학 및 유아원 통학 버스



출처: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7면.

라. 야외수업

2018년 9월부터 대만 여자감옥에서는 여성 수용자 양육유아의 사회연계 및 아동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야외수업을 실시하고 있다.³⁹⁴⁾

» [그림 4-5-6] 야외수업



출처: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8면.

마. 여성 수용자 작업 및 직업훈련

양육유아가 2세 이상이 되기까지 여성 수용자는 육아를 하기 때문에 작업 또는 직업훈련을 할 수 없다. 2세 이상 양육유아의 유아원 통학에 따라 감옥 내 여성 수용자

394)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8면.

는 교도작업 또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게 된다.³⁹⁵⁾

》》 [그림 4-5-7]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출처: 대만 법무부 교정서 도원여자감옥 홈페이지, 작업 참조. (<https://www.tyw.moj.gov.tw/6031/6065/6069/124916/>, 2019.12.15. 최종검색)

3. 수용자 자녀 지원

가. 자녀 상황 파악 및 생필품 등 지원

교정시설에서는 신규 입소 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직원은 수용자와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지원 여부를 다시 파악하여 지원한다. 수감 기간 중 가정형편에 이상이 있거나 외부에 있는 미성년 자녀가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기타 배려가 필요한 경우, 수용자는 담당 교도관 또는 담당 직원에게 알려서 서신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회국의 협조를 요청한다. 이러한 상황 파악을 요청받은 사회국은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지원을 요청하거나 경제인 지원, 취업 및 취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교정기관은 매 분기마다 저소득 가구 수형자를 조사하여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데, 그 예산은 작업기금에서 지급한다.³⁹⁶⁾

395)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7면.

396)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9면.

나. 접견

대만도 한국과 유사한 가족접견 및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수형자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림 4-5-8] 미성년 자녀 접견 관련 사진자료



출처: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9면.

다. 자녀 취학보조

법무부에서는 6세 이상 25세 이하의 수용자 자녀 중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학부생까지를 보조금 대상으로 한다. 예산은 개별 교정기관 작업기금에서 지급되고 부족한 경우에는 법무부 작업기금관리회에서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은 수형자가 학기 개학 후 1달 내에 하고, 정부의 감면 또는 보조를 받지 않는 중저소득 또는 저소득 가구 수형자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에게 1천 대만달러(약 37,600원), 중학생은 2천 대만달러(약 75,200원), 고교생은 5천 대만달러(약 188,100원), 대학생은 2만 대만달러(약 752,500원)를 1년에 2회 지급한다.³⁹⁷⁾

397) 신청서류는 신청서, 수형자 자녀 증명서, 중저소득 또는 저소득 가구 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수형자 자녀 또는 학부모 통장 사본 등이며, 신청서를 접수한 교정기관은 20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신청서 내용 및 서류미비는 20일 내에 신청인이 보정하여야 하며, 정부기관 또는 학교와 함께 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중복 여부를 확인한다. 교정기관의 보조금 승인을 받게 되면 보조금은 수형자의 자녀 또는 학부모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9면.

수형자 자녀 취학 보조금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대중여자감옥의 경우, 2016년 2학기 2만 대만달러, 2017년 1학기 2만 대만달러, 2017년 2학기 6만2천 대만달러, 2018년 1학기 6만2천 대만달러, 2018년 2학기 6만 대만달러(약 2,257,000원)가 지급되었다.³⁹⁸⁾

제6절 | 국가별 교정기관 유아 양육 관련 규정

미국의 국회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s)에서는 2015년도 97개 국가의 교정기관에서의 양육유아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40개 국가를 선별하여 각 국가의 교정시설 양육유아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검토하여 표³⁹⁹⁾로 정리하였다.

» [표 4-6-1] 국가별 교정기관 유아 양육 관련 주요 사항

	양육유아 가능한 최대 연령	교정시설 내(內) 육아를 위한 특수유닛(Unit) 이나 탁아소 유무	기타 특이사항
알제리	3세 이하	없음	수용자가 임신부이거나, 여성 수용자이면서 24개월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징역형 유예가 허용됨
아르헨티나	4세 미만	훈련된 직원(Specially Trainde Staff)과 함께 보육서비스 제공됨	2011년 기준 아르헨티나에서는 1개의 여자교도소에만 아이를 위한 보육시설 있음
호주	각 지역마다 다름(호주 수도 특별 자치구: 4세 이하, 뉴사우스웨일즈: 6세 미만, 노던 테리토리아: 5세 미만, 퀸즐랜드: 취학 전 아동, 남호주: 3세 이하, 태즈메이니아: 알려진 바 없음, 빅토리아: 취학	대부분의 지역에 어머니와 아이를 위한 특수유닛(Unit) 있음	아동의 주거지 결정과정에 외부기관의 적절한 참여 요구됨

398)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10면.

399) Library of Congress, United States of America, Last Updated 2015.7.2. (<https://www.loc.gov/law/help/children-residing-with-parents-in-prison/foreign.php>, 2019.12.15. 최종 검색)

	양육유아 가능한 최대 연령	교정시설 내(內) 육아를 위한 특수유닛(Unit) 이나 탁아소 유무	기타 특이사항
	전 아동, 서호주: 4세 이하)		
벨기에	3세 이하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 수용자를 위해 디자인된 특 별한 시설이 제공됨	
브라질	6개월까지는 의무양육, 7세 이하	탁아소와 아동보호시설 제 공됨	자녀가 18개월이 되면 어머니 수용자로부터 점진적인 분리 를 시작함
캄보디아	3세 이하	없음	원래는 양육유아 최대 가능 연령이 6세 이하였음
캐나다	6세 이하	엄마-자녀 프로그램(Mother- Child Program, MCP)이 적 용되는 교도소에는 관련 시 설 제공됨	4세 이하 아동에게는 풀타임 MCP 프로그램, 6세 이하 아 동에게는 파트타임 MCP 프 로그램 적용됨 이외에도 구금된 부모들이 자녀 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임시 가석방 (temporary absence), 가정방문 등이 허용됨
중국	교정시설 내 양육유아 허가 안 됨	없음	임산부이거나 수유중일때는 일시적으로 교도소 밖에서 복 역 가능
콜롬비아	3세 이하	교육과 레크레이션 프로그 램에 필요한 시설 제공됨	가족복지부(Colombian Institute of Family Welfare) 가 교정시설과 협조하여 수용 자의 미성년 자녀를 돌봄
덴마크	양육유아가 허용되기는 하 지만 정확한 가능 연령은 알 려지지 않음	여성만을 위한 교도소가 없 으나, 개방형 교도소 (Open Prison)가 대부분이므로 육 아시설이 굳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교도소가 개방형 교 도소임, 어머니 수용자는 상대 적으로 짧은 형기를 선고받고, 대체복역으로서 전자감시를 받을 수 있음
잉글랜드와 웨일즈	18개월 이하	어머니와 아이를 위한 특수 유닛(Unit) 있음	
에티오피아	18개월 이하		어머니와 머무는 것이 아동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친척(Relative)에게 맡겨야 함 추가적인 음식과 예방접종, 필 수품 등이 제공됨
핀란드	2세 이하, 특수한 경우 3세 까지 연장 가능	가족 유닛(Family Unit) 있음	핀란드에서는 대체 복역이 많 고, 징역형은 거의 없음
프랑스	18개월 이하	있음	교정시설 내에서의 양육유아 가능 여부를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가 결정함
홍콩	9개월 이하가 원칙, 경우에	특 별 양 육 구 역(Special	6세 이상의 아동은 수용된 어

	양육유아 가능한 최대 연령	교정시설 내(內) 육아를 위한 특수유닛(Unit) 이나 탁아소 유무	기타 특이사항
	따라 3세까지 가능	Nursery Area) 있음	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 방문 가능
아이슬란드	18개월 이하	여성 수용자가 거의 없어, 특수한 시설은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임산부에게는 형의 집행유예 가능
인도	6세 이하	인도교도소는 반드시 3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놀이방(Crèches), 3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을 위한 탁아시설(Nursery)을 갖추어야 함	케랄라(Kerala) 주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구금자들의 자녀에게 한 달에 한 번 급료를 주고 있음
인도네시아	2세 이하	알려진 바 없음	
이라크	3세 이하	없음	아동이 7세가 될 때까지 남아 있는 예도 있었음
아일랜드	1세(12개월) 이하	알려진 바 없음	여성을 위한 교도소 수용능력이 부족한 편임
이스라엘	2세 이하	'동물을 만질 수 있는 동물원(Petting Zoo)'이 네베 티르자(Neve Tirtza) 여자교도소에 있음	2016년에 새로운 여자 교도소가 육아시설과 함께 건축 예정임
이탈리아	3세 이하의 아이를 가진 어머니 수용자는 대체형벌로서 그들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돌보며 복역할 수 있음		
일본	1세 이하 원칙, 6개월 연장 가능	알려진 바 없음	
케냐	4세 이하	있음	
말레이시아	3세 이하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모든 아이는 4살 이후에는 교도소를 떠나야 함 교도소 규정에 아이를 위한 음식이 특정(Specify)되어 있음
멕시코	6세 이하	알려진 바 없음	약 2,000명의 아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살고 있음
네팔	2세 이하	알려진 바 없음	아이가 2살이 되면, 아이의 친권(Custody)을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원칙임
뉴질랜드	24개월 이하	어머니와 아이를 위한 특수 유닛(Unit) 있음	양육유아와 관련하여, 어머니 수용자와 교도소 당국이 양육 계약(Parenting Agreement)을 맺어야 함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양육유아를 허가하지 않고, 어머니의 구금 중에 태어난 아이는 교정시설 밖에서 양어머니(New Mother)와 함께 '어머니를 위한 집(Mødrehjem)'에서 분리하기에 충분한 월령(일반적으로 약 9개월 정도)이 될 때까지 머무름. 이후에는 위탁양육에 맡겨짐.		

250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양육유아 가능한 최대 연령	교정시설 내(內) 육아를 위한 특수유닛(Unit) 이나 탁아소 유무	기타 특이사항
파키스탄	3세 이하	알려진 바 없음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교도소에 머무른 사례 있음
포르투갈	3세 이하, 상황에 따라 5세 이하까지 가능	의료처우와 교육 등이 제공됨	
러시아	3세 이하	아동관리센터 있음	수유를 위해 어머니들은 아이를 하루에 6번 방문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은 작업 후 2시간 동안 아이를 방문할 수 있음
싱가포르	3세 이하	알려진 바 없음	의료과장이 양육유아 연장 가능 여부를 판단함
남아프리카 공화국	2세 이하	어머니와 아이를 위한 특수 유닛(Unit) 있음	
스페인	3세 이하	다른 시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속건물(Pavilion) 있음	
스리랑카	5세 이하	알려진 바 없음	아이들이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 혜택 못 받음
스웨덴	1세~3세 이하	양육유아 수용자는 필요한 물품에 접근할 권리 보장됨	양육유아 규정이 젠더중립적임, 임신부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유예 가능
스위스	3세 이하	스위스 연방의 각 주는 특수한 '어머니·아이수감장소(Mother-Child Prison Location)'를 두고 있음	소규모 교도소는 양육유아 환경 제공에 어려움 있음
대만	3세 이하, 이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있음	6개월의 연장 기간 만료시 아이는 복지시설에 맡겨짐
터키	6세 이하	낮 동안에 아이들은 외부에 있는 유치원에 감	3세에서 5세 사이의 수용자 자녀들은 유치원 입학에 우선권 받음

제7절 | 시사점

미국은 임신부 수용자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임신부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의 금지를 비롯하여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미국은 임신부 도우미 둘라(doula) 제도를 활용하여 임신, 출산 전후 여성 수용자들을 지원하고, 모성 및 돌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교정시설에서는 임신부 특별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의 캠페인과 홍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경찰, 보건복지부, 법원, 교정본부 등 관련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지원이 있으며, 청소년 정책 수립 시에도 수용자 자녀들을 주요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관심과 대학의 연구센터 설립, 민간단체와 관련 정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방면에서 수용자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출산 동행(Birth Companions)을 통해 임신부와 아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에 엄마와 아기 유닛(MBU)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방문자 센터 운영, 프로그램 지원, 도움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민간단체에 의해 실증연구 및 보고서, 정책제언, 권고안이 제시되고 있고, 교사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 및 각 주의 행형법에서 임신부 수용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시민여성에 대한 지원과 상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 규정에 의하면 교정시설에서 취학 전까지 유아를 양육할 수 있다. 특히 독일 여자 교정시설에는 어머니 수용자와 아이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인 어머니-자녀-수용시설(Mutter-Kind-Heim)을 설치하고, 보육교사가 채용되어 어머니 수용자가 함께하지 못하는 아이와의 외출, 유치원 통원, 외부병원 진료 등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법령에서 임신부를 부상자 또는 질병자와 함께 양호가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임신 및 출산 등과 관련하여 의료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수용자의 유아 양육과 관련하여서는 대동유아 양육제도가 있으나 1996년부터 교정시설 수용률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들어 과밀수용이 심각하게 되어, 수용자의 자녀를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아동 복지를 위한 제도와 시설 등이 잘 정비되어 있고, 아동시설 및 관계자에 대한 불신이 적어서 교정시설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만은 수용자 자녀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보다 발전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대만에는 다수의 여자교도소가 있으며, 교정시설에 유아 수용거실, 보육실, 야외 놀이터 등 유아 양육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유아 수만명의 전문 보육교사가 도우미 여성 수용자와 함께 수용자의 유아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 자녀 중 2세 이상 유아는 외부 유아원 통학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대만 교정시설은 여성 수용자 유아 보육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아이가 충분한 돌봄을 받는 동안에 수용자가 작업 및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상황 및 지원 필요 여부 등을 파악하여, 사회국에 가정방문을 요청하거나 작업기금으로 취학보조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만 교정처우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에게 잘 소개되지 않았는데,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제도, 처우, 시설, 인력 등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용자의 자녀는 수형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교정시설 임신부 수용자, 교정시설에서 양육 중인 유아, 그리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수용자 자녀들에 대하여 각국의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여러 방면에서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예를 참고하여 우리도 교정시설 내 임신부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 물적 시설 정비, 인적 자원을 활용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 중인 유아는 최대한 일반 사회와 다름없는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우선 여자 교정시설을 확충하고 어머니와 아기가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정시설 밖에 있는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경찰, 보건복지부, 법원, 교정본부 등 관련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민간단체와 관련 정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방면에서 수용자 자녀 양육의 지원이 필요하다.

제 5 장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개선방안

권 수 진

제5장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개선방안

제1절 | 임신부 수용자 처우 개선

1. 수용 환경 및 처우 개선

가. 충분한 영양공급

흔히 임신부라고 하면 아이를 가진 임부(임신부)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임신부는 아이를 뱀 임부와 아이를 갓 낳은 산부 모두를 의미한다.⁴⁰⁰⁾ 형집행법 제52조도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라는 표제 하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경우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⁰¹⁾

최근 10년간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임신부는 1년에 평균 약 10명 정도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리고 형집행법 제5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임신부인 수용자의 처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동안 교정시설 내 임신부 수용자 처우에 관하여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 다행히 현재 교정시설 내 임신부 수용자는 정기적으로 외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등 전반적인 의료처우는 잘 이루어지고

400)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임산부”를 “임부와 산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 정의하고 있다.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53b6ac387fc47369c4a50c4a908d2eb>, 2019.12.15. 최종검색)

401) 형집행법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있는 편이다. 다만, 임신부 수용자에게 개별 식사가 제공되지는 않으며, 의무관의 의견에 따라 죽 등의 주식과 별도의 부식 제공이 가능할 뿐이다.⁴⁰²⁾ 실제로 2019년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에서 임신부 수용자에게 별도로 준비하는 음식물은 없고, 수용자가 원할 때 미역국, 달걀 등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러나 임신부 수용자는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한 만큼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에서 영양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덧 등으로 식사가 곤란한 임신부 수용자를 위해서는 개별식을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엽산제, 철분제 등 임신 주수에 적합한 임신부용 영양제를 제공하거나 구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신부 수용자가 필요한 영양을 적절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출산을 한 산부에게 영양공급이 필요함은 임부와 마찬가지로이다. 특히 임신부에게는 아기 출산 후 건강회복을 위해 영양보충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출산을 한 임신부는 모유 수유, 유축 등으로 더 많은 열량이 소요되고, 아기 영양공급에 영향을 주므로 식사의 질과 양에 있어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나. 냉난방 및 온수목록 확대

대부분의 임신부 수용자는 혼거실에서 다른 일반 수용자와 함께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 혼거실에서는 다른 수용자의 도움을 받기는 좋은 반면, 임신부 수용자를 위한 별도의 추가 냉난방은 어렵다. 그러나 임신부는 일반인에 비해 추위와 더위에 더욱 취약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정시설 내 임신부는 아기의 출생지 기재를 고려하여 형집행정지⁴⁰³⁾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외부병원에서 아이 출산 후 2개월(60일) 이내에

402)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42조(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 소장은 임신부인 수용자 및 법 제53조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으며, 양육유아에 대하여는 분유 등의 대체식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7.>

403) 「검찰청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형집행정지기간은 1회 3개월(암환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이 가능하되 연장횟수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가급적 2회 이상의 연장은 허가하지 않도록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임신부도 일선 교도소에서 1회 3개월의 형집행정지 가능 기간 내에서 통상 3개월의 형집행정지기간을 주며, 이는 교정기관이 아닌 검사가 정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다를 수 있다고 한다. 「검찰청 자유형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 참조(비공개 검찰예규). ; 형사소송법 제471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교정시설로 돌아와 다시 수형생활을 한다.⁴⁰⁴⁾ 그러나, 이 시기 임신부는 출산 후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 전 임신부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출산 후 임신부 수용자에게도 냉난방, 특히 난방제공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유엔 여성수감자 처우와 비구금조치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이들을 위하여 거실 냉난방을 보완할 수 있도록 냉온수, 이불, 의복이 추가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임신부에게 계절 및 시기에 상관없이 추가로 온수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다. 수용거실 환경 개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임신부 거실과 양육유아 거실 등을 일반 수용거실과 분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유아와 관련한 거실 자체를 별도의 건물(동)로 건축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임신부 수용자라고 해서 독거실에 수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각 교정시설의 상황에 따라 일반 수용거실보다 수용자의 수가 적은 수용거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임신부용 거실을 만드는 등의 논의도 필요하다. 즉, 임신부, 양육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 수용자와의 분리가 전제되어야 하며, 나아가 수용동의 독립 등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임신부, 유아 양육 수용자의 수용환경이 개선되어야 보안상 제약이 완화되어 물품지급, 위생, 의료 등의 처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②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04) 제3장 제3절 조사결과, 2. 심층면접 결과 많은 임신부들이 대략 2개월 정도의 형집행 정지기간을 받았다고 하였다.

2.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지침 마련

가. 임신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임산부 수용자는 교정시설 수용에 더하여 임신, 출산이라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교도소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임산부 수용자는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또래 임산부, 전문기관,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육아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과거 임신과 출산 경험이 있는 소수의 동료 수용자들에게서 옛 경험과 조언을 들을 수 있을 뿐이다.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임산부 수용자들에게 외국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임신 및 출산 도우미 제도 등을 활용하여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부모로서 아기를 출산,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독일은 연방과 주 형법에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지원이 일반 시민 여성에 대한 지원과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 관련 지침 마련

교정시설 내에 있는 임산부 처우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천된다. 현재 교정본부 의료과에서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임산부 처우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설에서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절 | 유아 양육 수용자 처우 개선

1. 유아 양육 환경 개선

가. 여성 교정시설 및 유아 양육 시설 설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는 여자형무소 4곳 외에도 지소, 개방교정시설, 사회 복귀촉진센터 등 11개의 다양한 여성 수용자 전문 교정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대만에서도 3개의 여자감육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 교정시설은 청주여자 교도소 1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수용자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여성 수용자 전문 교정시설을 지역교정청별로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 수용자 전문 교정시설에는 유아 양육을 위하여 소망의 집과 유사한 형태의 공동 육아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살펴본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 엄마-아기 유닛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도 아이 양육을 위한 별도공간으로 모자(母子) 단지를 조성하여 보육실, 야외놀이터 등을 갖추고, 조리대, 좌식 소변기, 어린이 수도꼭지, 아기침대, 소파, 음수시설, 냉장고, TV 등을 설치하여 아이 양육에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양육 유아를 보살피기 위해 유아교육 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여 보육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아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도우미 여성 수형자도 양육 유아의 수만큼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여자교도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나. 거실 환경의 개선

임산부, 양육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처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 수용자와의 분리가 전제되어야 하며, 나아가 수용동의 독립 등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임산부, 유아 양육 수용자의 수용환경이 개선되어야 보안상 제약이 완화되어 물품지급, 위생, 의료 등의 처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여자교도소 및 공동육아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에 앞서 단기적으

로는 우선 현재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교도소 수용거실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엄마 수용자와 아이는 일반 수용거실(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또는 다른 수용자의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한 거실에 엄마와 아기 둘만 생활하도록 거실을 배정하면 더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거실 배정에 있어서 아이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만 18개월 이전의 영유아는 몇 개월 차이에도 큰 차이를 보여, 좁은 거실 공간에서 어린 아기는 큰 아이로부터 맞거나 때밀리는 등의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엄마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 거실에 발달단계가 비슷한 유아끼리 생활하도록 배정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청주여자교도소는 수용거실 맞은 편에 유아 놀이방을 갖추고 있어, 평일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그리고 주말 오후 4시간 정도 아이가 엄마와 함께 놀이방에서 유아프로그램도 시청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다. 다만, 유아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청주여자교도소뿐만 아니라 다른 교도소의 여자사동에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이번 조사에서 일부 시설에서는 여름철 방충망 미비 등으로 아이들이 모기에 물리곤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적어도 아이가 있는 수용거실은 일반 수용자 거실에 비해 적절한 온도, 습도, 환기 등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정기적인 점검, 유지, 개선이 필요하다.

2. 유아 양육 지원

가. 자비 구매물품 확대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수용자에게는 각 시설의 상황에 따라 유아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이 제공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기 이불, 욕조, 보행기, 유모차, 분유, 이유식, 기저귀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물티슈 등의 일부 물품은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매하고 있다. 그런데 성인 수용자들을 위한 자비 구매물품은 종류가 다양한 반면, 수용자의 아기를 위한 자비 구매물품은 그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기를 키우다 보면 다양한 육아용품이 필요하다.

따라서 되도록 아기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자비로 구매할 수 있도록 종류를 다양화하고 구매절차를 완화하는 좀 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아기의 특성과 체질, 그리고 발달단계에 따른 이유식 등 물품의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유아 양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에서 육아 경험이 없거나 교정시설에서 처음 육아를 경험하는 수용자들에게는 육아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히 교도소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은 아이를 양육 중인 또래 부모들, 전문기관, 육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육아 정보를 얻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나마 과거 육아 경험이 있는 소수의 동료 수용자들에게서 옛 경험과 조언을 들을 수 있을 뿐이다.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유아 양육 중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유아 양육방법에 관한 프로그램인 “어머니 교육”을 연중 분기마다 1회, 1시간씩(1년에 총 4시간) 시행하고 있다.⁴⁰⁵⁾ 그러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유아 양육 중인 수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 정보는 수용자들이 수형생활을 마치고 사회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 중인 수용자 대상 육아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에서는 조산사, 육아 전문가 등이 교정시설에 고용되어 수용자를 대상으로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정시설에서의 양육유아 관련 지침을 만들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교도소 앞에 교도소 직원들을 위한 자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교정시설로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양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어린이집 중 직장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된 경우, 교도소 내 양육 프로그램 지도를 위한 강사료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자체 어린이집이 없는 교도소의 경우, 민영 또는 공립 어린이집

405) “어머니 교육”의 내용은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 영유아 언어발달 이해, 놀이를 통한 인지 발달, 베이비 마사지 등 건강한 유아양육법 체득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의 보육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료를 교도소 예산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을 하는 보육교사를 교도소의 교육분과 교정위원으로 위촉하면 자연스럽게 이들의 봉사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절 |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 처우 개선

1. 체포 구속시 자녀 보호

가. 수용에 따른 자녀의 충격 완화

대부분의 수용자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경찰에 연행된 부모와 갑자기 헤어지게 된다. 그리고 부모가 수용된 몇 개월, 때로는 몇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모의 부재에 대한 의문은 불안으로, 불안은 부모에 대한 미움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의 발단은 체포 및 조사단계에서 아이의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하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고 아동의 상처를 완화하기 위해 경찰의 직무역량강화, 직무수칙 수행의 강제성 부과 및 경찰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의 수용에 따른 자녀들의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포와 구속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찰에서 마련한 “피의자 체포 시 자녀 배려 등 유의사항”을 학습하기 위한 의무교육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체포 후 부모에게 관련 조치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받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피의자 체포 시 자녀 배려 등 유의사항”이 강제성이 없는 지침이라는 점에서, 최근에 보다 상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수사규칙」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할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체포현장에서의 자녀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청과 지역사회 아동보호기

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나. 위탁시설 마련

수용자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다 수용되었거나 남아 있는 배우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아이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남성 수용자보다 여성 수용자 자녀들의 양육환경이 더욱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마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대개는 살던 곳을 떠나 조부모에게 맡겨지거나 시설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수용자의 자녀들에 대한 친인척 위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 수용자들은 남성 수용자들에 비해 수용기간이 짧고, 양형과정에서도 자녀에 관한 요인이 더 반영되는 만큼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한시적으로 친인척에게 위탁하고, 이들 가정에 대해 국가가 지원 및 관리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수용자가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다 수용되었거나 남아있는 배우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자녀를 한시적으로 아동보호기관 및 시설에 위탁하고 위탁기관장과 수용자 사이에 긴밀한 연락체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위탁 및 보육시설 등의 대리가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가정위탁, 보육시설의 선정, 관리, 감독 체계가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수용자 자녀를 위하여 위탁시설을 마련하는 이러한 조치는 아동과 관련한 정부 정책인 2019년 5월 23일 관계부처 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세부내용 중 ‘보호대상 아동 관련제도 혁신’과 관련이 있다. 즉, 정부의 계획은 가정위탁제도를 전문화하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영아와 학대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전문적 보호를 위해 전문 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⁴⁰⁶⁾ ‘수용자 자녀’는 영아와 학대 피해 아동 등과

406) 그리고 위 계획은 일반 가정위탁은 20~3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전문 가정위탁은 40만원을 지원하는 등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을 합리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다(관계부처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 2019, 18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위탁하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사업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동과 혈연적 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위탁과, 아동의 조부모나 친인척 등에 대한 대리양육·친인척 가정위탁이다.

같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 가정위탁보다는 전문 가정위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 가정위탁의 대상에 ‘수용자 자녀’, 즉 부모나 보호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세부규정의 추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 가정위탁의 사업 대상에 수용자 자녀를 포함하면, 교도소에 있는 부모와 아이 사이의 연계를 순조롭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가정의 보호자들 또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므로 아이에 대한 보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 수용자 자녀 정보 파악 및 지원

가. 수용자 자녀 정보 파악

2018년 유럽평의회 권고안에서는 교정당국이 구금된 수용자의 자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⁰⁷⁾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교정본부에서도 올해부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수, 성명과 나이, 성별, 보호관계 등을 파악하여 이를 보라미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있다. 현재의 정책 기초 하에서 교정본부 보라미시스템에 수용자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까지의 이행 완료는 일단 환영할 만하며 잘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10월 시행된 개정 형집행법에 따라, 교도소장은 신입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고, 수용자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⁴⁰⁸⁾ 이와 같은 보호조치 의뢰를 위해서도 수용자 자녀의 정보 파악은 중요하다. 그리고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아동복지에 관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과 “위기아동전수조사”, “e-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안내, (https://www.fostercare.or.kr/business/?mode=business_03, 2019.12.15. 최종검색)

407) 유럽평의회 권고안 제5조: 교도소 관리청은 구금된 자의 자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데 힘써야 한다. 수용자 자녀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그들에게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조항은 이외에도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5조, 제29조, 제34조, 제46조, 제52조, 제55조가 있다.

408) 제2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은 형집행법 제53조의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 내용 참조.

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⁴⁰⁹⁾

그런데 막상 현실을 보면, 교정 관계 시스템에 자녀의 실명을 등록하고 싶은 수용자는 많지 않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 없거나 받고 싶지 않은 수용자는 굳이 자녀에 대한 정보를 교정당국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한, 자녀에게 수용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수용자들은 자녀관계 등록으로 인해 혹시라도 자녀에게 본인의 수용사실이 알려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으나, 1차적으로는 자녀의 수, 보호관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등록정보를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수용자가 자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추후 개별적으로 자녀의 실명 등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다만, 정책 시행을 위해 자료수집이 우선이니만큼,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시행될 “아동통합정보시스템”과 “위기아동전수조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구축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수용자 자녀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향후 세심한 조치가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현행 수용자 자녀 정보의 파악이 주로 기결수형자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 단계에서 최종판결이 확정되어 기결수형자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아동이 부모와 헤어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조기발견 및 지원의 신속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제3장에서의 조사결과, 특히 여성 수용자들은 비교적 형기가 짧고, 미결수용 상태가 많으므로,⁴¹⁰⁾ 이에 주목하여 이들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수용자 가정 지원

유럽평의회 권고안에서는 국가 당국은 주 정부기관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수감된

409) 이와 관련하여 전술한 제2장, 제2절 수용자 자녀 양육지원 관련 법제도, 4. 관련부처의 정책, 참조.

410) 이와 관련하여 제3장의 조사연구 참고.

부모 및 그 가족이 있는 어린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필요할 경우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과 그들의 특정한 상황 및 특정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⁴¹¹⁾

현재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용자 면담 등을 통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의 상황과 자녀에 대한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각 교정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시설의 상황에 따라 일회성에 그치거나 장기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 지원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제도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수용자 가정 지원에 대해 법무부의 “수용자 자녀 보호시스템” 하에서 한국법무보호공단의 ‘가족지원’ 사업이 수용자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수용자 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보호센터도 수용자 가족 지원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⁴¹²⁾ 그러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시행을 계획 중인 수용자 가정 지원 방안의 주체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행 단계에서는 여성가족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수용자 가정 지원체제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즉, 현재는 여성가족부 부속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보호센터가 모두 수용자 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 주체가 두 개인 점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중 비용이 들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무부 산하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가족지원으로서 수용자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용자 가정 지원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조직하지 않아 현재까지 부처별 이행실태는 매우 미진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컨트롤타워의 지도 하에

411) 유럽평의회 권고안 제6조: 국가 당국은 주 정부기관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수감된 부모 및 그 가족이 있는 어린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과 그들의 특정한 상황 및 특정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포함된다.

412) 전술한 제2장, 제2절 수용자 자녀 양육지원 관련 법제도, 4. 관련 부처의 정책, 참조.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⁴¹³⁾

이외에도, 수용자 가정 지원 방안의 하나로 사회에 남겨진 미성년 자녀를 위해 “특별활동비” 등을 지원해 주거나 체험학습(소풍) 등에 함께 갈 수 있는 자원봉사자 등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하다.⁴¹⁴⁾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용자 가정 지원 업무를 위해 각 교정시설에 사회복지사가 방문해서 상담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민원실에 가족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교도관이 가족 상담에 관련한 일에 투입되는 구조가 아니라, 수용자가 가족 상담 신청을 하면 외부에서 파견된 상담 담당직원이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⁴¹⁵⁾

다. 가정 지원제도 홍보

유럽평의회 권고안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정책, 관행 및 절차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어린이와 수감된 부모와 관련된 모든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⁴¹⁶⁾ 수용자 자녀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정보를 관계자에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용자는 교정시설 입소 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교정시설에 입소한 후 남겨진 가족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가족관계의 해체, 경제적 빈곤,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 사회적 낙인 등 여러 면에서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다수의 수용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나마 다행히 일부 수용자의 경우 가족이 사회적 지원을 신청해서 받고 있었으나, 이러한 제도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⁴¹⁷⁾

따라서 수용자, 수용자의 자녀와 가족에게 사회적으로 마련된 가정 지원제도에

413) 신연희 외, 앞의 보고서, 2017, 282면, 각주 119번 참조.

414) 수용자 가정 지원을 받는 가정의 아동에게는 학교에서의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 비용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15) 예를 들면 각 지역에 있는 교도소와 가장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소속된 상담사가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416) 유럽평의회 권고안 제7조: 아동과 관련된 정책, 관행 및 절차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어린이와 수감된 부모와 관련한 모든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417) 이 연구의 제3장 조사연구 결과, 심층면담 사례 중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보부족”이 드러난 경우가 있었다(사례 4-2, 사례 4-4 등).

관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수급자, 한부모가정지원, 긴급복지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한부모가정 등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제도와 자녀돌보미 양육 및 돌봄지원에 관한 정보가 수용자 가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수용 거실과 접견실에 안내책자 또는 팸플렛 등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관련 영상을 제작해 접견 대기 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관련 안내책자의 주된 내용은 형사사법절차와 이에 따른 주요 이슈들, 수용자 가족 교류 방법(편지, 전화, 사진, 접견,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가족캠프 등)과 자격조건, 수형자의 분류 및 처우의 차이와 가족접촉이 가능한 범위, 접견의 규칙과 접견 절차, 방문을 위해 준비해야 할 물건, 복장, 접견시간, 영치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금지된 물건, 접견 전후와 접견 과정 중에 양육자가 주의해야 할 일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양육자에 대한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예로 들면, 접견 상황에서 주어진 짧은 시간에 어른들끼리의 대화에 바빠 자녀를 소외시키는 일이 없도록 수용자는 자녀에 대해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지시키는 일, 자녀의 연령대 별로 다른 행동 및 정서상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대응요령에 관하여 수용자와 양육자를 위해 지침을 제공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⁴¹⁸⁾

참고로 미국에서는 Friends Outside가 가족 및 자녀의 접견 지원, 자녀 돌봄, 상담, 재결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제공, 수용자와 가족의 연계, 자녀대상 프로그램 등 양육자와 자녀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Friends Outside는 교정기관에 접견대기실(Visitor Cente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접견대기실(Visitor Centers) 서비스는 방문을 온 가족들에 대한 교통편 지원, 특히 자녀가 접견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스낵을 제공하고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아울러 수용자 사례관리, 갈등 해결 워크숍, 수용자 접견지원(의상, 수송 등)⁴¹⁹⁾과 함께 주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부모교육, 갈등 해결 워크숍 프로그램도 진행한다.⁴²⁰⁾ 또한, Expressions Art Gallery and Outreach Ministries는 캘리포니아 주와

418) 박선영/신연희,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77면 및 각주 62번 참조.

419) 이 중에서 접견 지원은, 원거리 교도소에 위치한 수용자와 자녀의 접견을 위해 동반한 양육자와 자녀에 대해 교통편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숙박지원, 양육자가 수용된 자녀의 부모와 접견하는 동안 접견대기실 또는 자녀접견대기실에서 자녀를 돌보아주는 서비스 등을 한다. 박선영/신연희, 앞의 보고서, 2012, 100면.

연방교도소 수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접견을 위한 교통편을 지원하고, 미술치료를 통해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²¹⁾

3. 가족 교류 확대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수용자들은 현행 여러 가지 접견제도들에 대한 이용경험은 매우 적은 반면, 이용욕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스마트접견 개선

스마트접견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수용자 가족이 교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정에서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포함) 또는 PC를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실제로 스마트접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다. 다만, 스마트접견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자녀 본인이 직접 해당 교정기관에 방문하여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의 사진과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사진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절차는 미성년 자녀와 이들을 돌보고 있는 나이든 조부모에게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자신의 수용사실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정서적 충격을 받을까 봐 본인의 수용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미성년 자녀를 둔 다수의 수용자들은 스마트접견을 희망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직접 교정시설로 방문해서 등록해야 하는 스마트접견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의 가족이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제출 등으로 간단히 스마트접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개선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가 유아, 초등학생으로 어린 경우에 스마트접견 등록절차의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

한편, 현재 스마트접견은 평일 오전, 오후 시간, 그리고 미리 신청 예약한 경우 토요일에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수용자의 자녀들은 평일 오전, 오후 시간에는 학교

420) 박선영/신연희, 앞의 보고서, 2012, 81면.

421) 박선영/신연희, 앞의 보고서, 2012, 101면.

나 학원에 있으므로 집에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스마트접견의 긍정적인 효과만큼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은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접견이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스마트접견 시간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이번 조사에서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스마트접견 시설 자체가 부족하여 스마트접견이 제한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2015년 8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스마트접견은 이제 시행 5년 차로 보편적인 접견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접견 제도는 편리성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스마트접견의 활성화를 위해 각 교정시설에 스마트접견 시설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는 접견실 자체가 수용거실과 너무 멀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접견실을 수용자가 있는 수용거실과 가까이 설치하는 것도 고려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접견시 미성년 아동이 위화감을 받지 않게 수용자가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⁴²²⁾

나. 전화 사용 확대

수용자가 원거리에 있는 자녀와 연락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교류 방법은 전화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접견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교적 최근 새롭게 마련된 접견제도인 반면, 전화통화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수용자들의 대표적인 외부교통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수용자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본인의 수용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해외 또는 지방에 출장 갔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해외통화가 어디든 가능한 시대에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들의 의심과 불안감을 키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경우 자녀와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전화의 사용을 확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수용자와 자녀와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경우 처우등급별 전화사용 가능 횟수를 확대하고, 전화사용

422) 현행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은 가족접견실을 이용하는 수용자가 평상복 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용자 가정 보호라는 원래의 취지를 고려하면 미성년 자녀를 만나는 수용자 부모의 경우에 스마트접견을 할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 시간을 평일 저녁, 주말까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접견 개선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집행법 제4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경우 일반접견실이 아니라 차폐시설이 없는 곳에서의 접견이 가능하다.⁴²³⁾ 따라서 종전과는 달리 남성 수용자와 여성 수용자 모두 그들의 미성년 자녀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사실상 장소변경접견⁴²⁴⁾ 또는 가족접견을 할 수 있는데, 장소변경접견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8조⁴²⁵⁾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가족접견은 「수용자 사회복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 이하⁴²⁶⁾에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수용자가

423) 형집행법 제41조(접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424) 장소변경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통상적인 접견방식에 따라 접견하는 것을 말하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을 하는 것 외에 접견시간, 허용인원 등은 일반접견과 차이가 없다. 장소변경접견의 목적은 “일반접견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접견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용자의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권을 촉진시키는 데에 있다. 교정본부 홈페이지, 장소변경접견 안내, (<http://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072/subview.do>, 2019. 12. 15. 최종검색)

425)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88조(접견 장소)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426) 「수용자 사회복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가족접견실) ① "가족접견실"이란 수형자의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교정시설 구내에 일반 가정집 거실형태의 시설물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② 소장은 전항의 가족접견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 가족접견실이 설치되기 전까지 상담실, 장소변경접견실 등 기존의 시설 중 한 곳을 전항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가족접견의 종류 요건) ① 일반 가족접견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장은 수용자의 입소 전 경력과 직업, 가족의 구성 및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차별 시비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형기의 3분의 1 이내 수형생활 초기 수형자로서 가족관계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4조부터 제213조까지 규정된 엄중관리대상자는 제외)

2. 기타 형집행률에 관계없이 수용생활안정 및 가족관계 회복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형자와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미결수용자

② 위기 수용자 및 가족 긴급지원서비스 접견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혼 위기, 양육 곤란, 경제적 곤궁 등으로 가족위기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

2. 기타 가족 관계 해체의 징후가 현저한 수용자

그들의 미성년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반드시 접촉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장소변경접견에는 수용자의 처우등급이 문제되지 않으나, 가족접견은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의2(가족접견의 종류 요건)에서와 같은 요건에 맞는 수용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 다소 제한이 있다. 그러나 수용자가 가족접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 어렵지 않게 가족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 아동친화형 접견실 접견의 이용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교도소 외부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외국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교도소 정문 인근에 자녀접견실을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접견은 평일 오전, 오후, 그리고 미리 예약한 경우 토요일에만 가능하다.⁴²⁷⁾ 그러나 미성년 자녀들이 학교생활, 방과 후 활동, 학원 활동 등으로 평일에 원거리에 있는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부모를 접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은 실질적으로 자녀들의 접견이 가능하도록 평일 저녁 시간까지 확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와 같이 접견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정시설 인력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미결, 특수범죄유형(마약, 조직폭력 등)에 따라 접견 횟수 등이 제한되는데, 수용자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한없이 접견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가족접견실을 이용하는

③ 사회적 약자 등 배려형 접견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 중 장애인, 환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노약자, 다문화가족이 있어 가족접견실 이용이 필요한 수용자
2. 산간 및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방문 접견하여 가족접견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제25조(이용 가족의 범위) 가족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친족을 말한다)
 2. 이혼 후 재결합 등을 위한 전 배우자
 3.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수형자 또는 수형자의 직계존속·비속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족 이외의 자
- 제26조(가족접견실 이용 후 조치사항) ① 가족접견실 운영 직원은 이용 전·후 수형자 및 가족을 상담하여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상담결과는 처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가족접견실 운영 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이용기록부를 작성,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27) 다만, 사전 예약한 경우 토요일 오전 일반접견만 가능하다.

수용자는 평상복 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⁴²⁸⁾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성년 자녀들에게 수용자 본인이 복장 때문에 미성년 자녀들에게 위화감을 주거나 창피함을 느껴서 접견 자체를 회피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그들의 수용된 부모를 만날 때에는 일반 접견인 경우에도 이러한 평상복이나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라. 가족관계회복 지원

가족관계회복 지원이란 수용자에게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만남의 집 이용, 가족접견실 이용, 가족사랑캠프 참여 등 교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⁴²⁹⁾ 구체적으로 가족만남의 날 행사는 수형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온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⁴³⁰⁾ 가족만남의 집 이용은 교정시설에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에서 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하는 것이다.⁴³¹⁾ 가족접견실 이용은 수용자의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교정시설 구내에 일반 가정집 거실형태의 시설물을 갖춘 공간에서 1박 2일 동안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⁴³²⁾ 가족사랑캠프란 수형자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교정시설 내 또는 외부 연수기관 등에서 가족관계 전문가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기간은 1일 또는 1박 2일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모두 수용생활로 인하여 단절되고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복원하여 가족과의 유대강화와 수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형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어린 자녀가 있는 수형자는 가족관계 회복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⁴³³⁾ 가족

428)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복장 등) ① 소장은 가족만남의 날, 가족접견실 등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형자의 복장은 모범수형자복 또는 평상복으로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자비구매 의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가족접견에 아동복지법상 아동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의사를 물어 귀주복(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429)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호

430) 법무부 교정본부, 『2018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2018, 146면.

431) 법무부 교정본부, 『2018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2018, 150면.

432)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

433)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4조(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만남의 날, 가족접견실 등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형자의 복장은 모범수형자복 또는 평상복으로 하고,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자비구매 의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특히 가족접견에 아동복지법상 아동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의사를 물어 사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⁴³⁴⁾ 이는 수형자의 수치심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가족만남의 집 건물 자체가 교정시설 내부에 있어 수형자 가족이 이용시 느끼는 불편감, 주말 이용 불가, 1박 2일 동안 현관문 시정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가족만남의 집을 교도소 정문 밖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생활과 직장생활과 평일 이용이 어려운 가족을 위해 주말에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적어도 낮 시간에는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⁴³⁵⁾

한편, 가족사랑캠프는 가족접견과 마찬가지로 이혼 후 재결합 등을 위한 전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도 참여 가능하도록 하여 참여 가족의 범위가 넓다. 구체적으로 가족사랑캠프 참여 가족의 범위는 수형자의 친족(민법 제 767조의 친족), 이혼 후 재결합 등을 위한 전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수형자 또는 수형자의 직계존속·비속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을 같이 한 경우에 한함), 기타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족 이외의 자⁴³⁶⁾로 규정하여 참여 가족의 범위가 넓고, 실질적으로 가족관계회복이 필요한 관계자를 가족의 범위로 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접견, 가족만남의 집 이용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가족관계회

1. 어린 자녀 또는 연로한 부모가 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심적 안정이 필요한 자
 2. 소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서 가족으로부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자
 3. 학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성적이 우수하여 격려가 필요한 자
 4. 교도작업 능력향상, 교정사고 방지, 그 밖의 선행 등으로 수용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5. 소장이 교화상 특히 가족관계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소장은 가족이 있는 수형자로서 가족관계회복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형기 중 1회 이상 제2조 제2호 교화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34) 「수용자 사회복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435) 권수진/권창모/오영근,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446면.

436) 「수용자 사회복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

복이 필요한 가족, 즉, 이혼 후 재결합 등을 위한 전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도 가능하도록 가족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부모 역할 지원

가. 동화 읽어주기

영국에서는 “Story Book Dads(Mams) Program(SBD Program)”이라 하여 교정시설에서 부모가 동화를 읽어주고 이를 녹음하여 아이에게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큰 예산을 소요하지 않으면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부모가 자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줌으로써, 아이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시작된 이러한 프로그램은 시발지인 영국에서 가족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³⁷⁾ 올해 우리나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도 엄마 수용자가 자녀를 위해 동화를 읽어주고 이를 녹음하여 아이에게 전달하면,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로 동화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프로그램의 이용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 중인 여성 수용자만 가능하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수용자들의 성별을 보면, 엄마에 비해 아빠의 비율이 훨씬 많다. 따라서 향후 동화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은 남성 수용자에게도 기회를 부여하여 확대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물품 구매 및 배송

현재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자녀에게 수용사실을 숨기고, 외국 또는 지방에 일하러 갔다고 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부모는 아이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에 직접 선물을 구입해서 보낼 수 없어 지인을 통해 선물을 대신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바라건대, 수용자들이 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의 영치금으로 학용품, 장난감 등의

437) 박영숙, “여성 수형자의 자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교정복지의 방향”, 교정복지연구 제10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07, 54면.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자녀에게 보내줄 수 있는 서비스도 고려할 만하다. 부모의 수용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민간단체(세진회, 두루, 세움 등)와 연계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4절 | 자녀보호를 위한 형사제재

1. 기존 구금제도의 개선

가. 근거리 교정시설 배정

어린 자녀 혼자 또는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접견이 용이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즉, 2018년 유럽평의회 권고안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가족관계, 특히 어린 자녀 유무를 고려하여 가능한 자녀의 주거지와 가까운 교정시설에 수감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감된 이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수감 중인 부모와 자녀와의 거리가 멀어져 교정시설의 이송을 신청할 경우, 어린 자녀의 유무, 보호관계, 거주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용자의 자녀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배려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재소자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부모로서의 의무를 회복할 준비를 하여 출소하도록 하는 교정처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 자녀보호를 위한 외출휴가

영국에서는 ‘자녀보호를 위한 외출휴가’ 제도가 있는데, 이는 수용자가 16세 미만의 자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임시외출허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2달에 1회, 1회 3박까지 자녀들과 함께 지내기 위한 외출을 허가하고 있는 제도이다.⁴³⁸⁾ 외출은 우리나라의 귀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형집행법상 귀휴 사유⁴³⁹⁾에는 자녀보호를 위한 경우가 귀휴사유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자녀보호를 위한 외출휴가는 부모와 자녀와의 연대를 유지하고, 수용자가 출소 후 부모로서의 의무를 회복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⁴⁴⁰⁾ 이러한 ‘자녀보호를 위한 외출휴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수용자의 자녀보호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선진적인 개방처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대안적 형사제재의 활용

가. 구금의 최소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미결 구금률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⁴⁴¹⁾ 그런데 대부분의 수용자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경찰에 연행된 부모와 갑자기 헤어지게 된다. 그리고 부모가 구속된 긴 시간 동안 충격, 의문, 불안, 미움 속에 지내게 된다. 특히 부모의 구속으로 자녀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범죄자에게 어린 자녀가 있고, 범죄자가 아이의

438) 임시출소 허가를 쉽게 설명한 것으로, Prisoners' Advice Service, "Release on Temporary Licence, Easy Read Self Help Toolkit" 참조. (<http://www.prisonersadvice.org.uk/wp-content/uploads/2017/10/Release-On-Temporary-Licence-Easy-read.pdf>, 2018.12.15. 최종검색)

439) 형집행법 제77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 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440) 권수진/권창모/오영근, 앞의 보고서, 2018, 360~361면 참조.

441) 특히 미결 구금자 비율은 저소득 국가일수록 높고, 고소득 국가일수록 낮게 나타난다. United Nations,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30th United Nations Congress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2015, pp. 53~55 참조.

일차적 보호자이자 유일한 양육자일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여 미결구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구속대상자 또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구속재판을 진행하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판 결과 징역형이 내려질 경우에는 이에 영향을 받는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구금의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그 부모가 아이의 일차적 보호자이자 유일한 양육자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수용대상자가 어린 자녀의 유일한 보호자일 경우 대안적 형사제재로서 벌금형제도, 유예제도(선고유예와 집행유예)⁴⁴²⁾가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형사제재들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양형의 조건으로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는데,⁴⁴³⁾ 이때 수용대상자의 가족관계, 특히 어린 자녀의 유무, 그리고 수용대상자가 아이의 일차적 보호자, 유일한 양육자인지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나. 대안적 형사제재의 모색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범죄자가 어린 자녀의 유일한 보호자인 경우 대안적 형사제재로서 주말구금, 주중구금, 재택구금을 고려할 수 있다.

주말구금(weekend imprisonment)은 수용자가 평일에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주말에만 구금되는 제도이다. 주말구금제도는 수용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가능하고, 사회적 낙인도 적고, 수용자 가족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주말구금과 반대로 주중에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주중구금(weekday imprisonment)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자들이 평일에 직장생활을 하기는 어렵지만, 수용자인

442) 형법 제59조 및 제62조.

443)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부모가 주말에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류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택구금(home confinement, home detention, house arrest)은 범죄인을 형사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본인의 집에 구금하는 것이다. 재택구금은 감금의 대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범죄인에 대해 재택구금에 더하여 전자장비를 통하여 또는 전자장비 없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Home Confinement Policy Manual 1991).⁴⁴⁴⁾ 재택구금은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고, 교정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점과 함께, 무엇보다도 구금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없고,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택구금은 고령자, 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고려될 수 있는 형사제재인데, 특히 대상자가 임신부 또는 영유아 자녀의 유일한 보호자일 경우 유용한 형사제재라고 할 수 있다.⁴⁴⁵⁾

444) 이승현/권수진, 『가석방자에 대한 재택전자감독의 도입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과제, 2019, 29면.

445) 이와 관련하여 차기 연도에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 6 장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결 론

권 수 진

교정시설에는 죄를 지은 수용자 외에 임신부 수용자의 태아,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양육 중인 만 18개월 이하의 영아도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부모로 인해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는 부모의 체포, 구속으로 남겨진 수용자들의 어린 자녀들도 있다. 이들은 부모의 체포, 구속을 직접 목격하여 심리적 충격을 받거나 그 과정 중 방치되는 경우도 많으며, 부모의 수감으로 가정 해체, 경제적 빈곤, 신체적·정신적 건강 악화, 사회적 낙인 등 여러 면에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용자의 자녀들은 범죄와 아무 상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는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부모의 체포, 사법절차, 법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경찰청장,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등 관련 책임자들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무고한 수용자의 자녀가 죄를 지은 부모로 인해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무고하지만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임신부 수용자의 태아와 만 18개월 이하의 양육 유아, 그리고 사회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용자의 어린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더 나은 환경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교정시설 내

임산부, 만 18개월 이하의 유아를 양육 중인 수용자와 유아,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자녀로 가진 부모 수용자들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관련 법제도, 정책 및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용자 자녀 양육 실태를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자 실증연구로서 교정시설 내 임산부 및 유아 양육 중인 수용자, 어린 자녀가 있는 남녀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외국의 임산부 수용자 처우, 교정시설 내 유아 양육 지원, 수용자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임산부 수용자에 대하여는 수용 환경 및 처우 개선으로서 충분한 영양공급, 냉난방 및 온수목욕 확대, 수용거실 환경 개선,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지침 마련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교정시설 내 유아 양육 수용자에 대해서는 유아 양육 환경의 개선으로서 지방교정청별 여자교도소 추가 설치 및 유아 양육 시설 설치, 유아 수용거실 환경의 개선, 유아 양육을 위한 자비 구매물품의 확대, 유아 양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회에 남겨진 수용자의 어린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서는 체포·구속시 자녀 보호로서 수용에 따른 자녀 충격 완화, 위탁시설 마련, 수용자 자녀 정보 파악 및 수용자 가정 지원, 스마트접견 개선, 가족관계회복 지원 등 가족 교류 확대, 그 외 부모 역할 지원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형사정책적 대안으로 임산부와 어린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근거리 교정시설 배정, 자녀보호를 위한 외출휴가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임산부와 어린 자녀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장치부착 조건 불구속재판의 확대, 주말구금, 주중구금, 재택구금 등 대안적 형사제재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로 제안된 개선방안이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에 작은 밑거름이 되어, 수용자 자녀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더 나은 환경에서 보호, 돌봄과 지원을 받으며 자라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 박철주 역주, 『역주 대명률 직해』, 민속원, 2014.
- 법무부 교정본부, 『2018 교정통계연보』,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2018.
- 법무부 교정본부,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법무부, 2012.
- 법무연수원, 『2018 범죄백서』, 2019.
- 사단법인 세움, 『2018 애뉴얼리포트』, 2018.
- 채웅석, 『고려사 형법지 역주』, 신서원, 2009.
- 천주교인권위원회,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개정판』, 2019.
- 하야시 마코토(林 眞琴) 외 2인(저)/안성훈·금융명(역), 『축조해설 일본행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 한인섭, 『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2006.
- Laubenthal, Klaus/신양균 외 2인(역), 『독일행형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2) 논문

- 남상철/신연희, “재소자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교정정책의 방향”, 교정연구 제15호, 한국교정학회, 2002.
- 박영숙, “여성 수형자의 자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교정복지의 방향”, 교정복지연구 제10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07.
- 신연희, 『기혼여자재소자에 관한 연구: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 신연희, “부모의 교도소 수용에 따른 자녀들의 문제행동 관련요인: 출소준비수형자 및 출소자대상 조사”, 한국아동복지학 제51호, 한국아동복지학회, 2015.

- 신연희, “부모 수용 후 자녀들의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제10권 제1호, (사)아시아교정포럼, 2016.
- 조병준/이희정, “여성 수용자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44호, 한국교정학회, 2009.
- 최경옥/신연희, “텔파이 조사를 통해 본 수용자자녀 권리보장 및 지원방안”, 교정담론 제12권 제3호, (사)아시아교정포럼, 2018.

(3) 연구보고서 등

- 김승만/신연희, 『장기수형자 처우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권수진/권창모/오영근,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 박선영/신연희,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신연희 외,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
- 이동훈 외,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방안 연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4.
- 이승현/권수진, 『가석방자에 대한 재택전자감독의 도입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과제, 2019.
- 이승호/윤옥경/금용명,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III) :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전영실/신연희/김영식, 『수형자 가족관계 건강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 연구』, 법무부·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정부자료, 『제12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총회 및 제19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 참가보고서』, 2010.
- 정영진/신연희, 『장기수형자 처우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태희원, 『충남지역 수용자 자녀 지원 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14.
- 최인섭, 『여자수용자의 처우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4) 기사

- 경향신문, “감방의 유아 양육기관의 설치 법무부서 인권옹호견지서 추진.”, 1960.12.8.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0120800329103015&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60-12-08&officeId=00032&pageNo=3&printNo=4552&publishType=00010>, 2019.12.15. 최종검색)
- 경향신문, “떡, 엿, 내의 등 법무부서 죄수들에게 새해 선물”, 1961.1.3.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1010300329203020&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1-01-03&officeId=00032&pageNo=3&printNo=4578&publishType=00020>, 2019.12.15. 최종검색)
- 경향신문, “형무소 안에 고고(嗚咽)소리”, 1958.11.26,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811260032920301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58-11-26&officeId=00032&pageNo=3&printNo=4169&publishType=00020>, 2019.12.15. 최종검색)
- 동아일보, “사면 5,378명 단행.”, 1978.12.23,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8122300209201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8-12-23&officeId=00020&pageNo=1&printNo=17606&publishType=00020>, 2019.12.15. 최종검색)
- 동아일보, “영어중(圜中)의 신음 13,700여”, 1926.8.12,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26081200209202008&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6-08-12&officeId=00020&pageNo=2&printNo=2130&publishType=00020>, 2019.12.15. 최종검색)
- 동아일보, “천진(天真)한 유아(乳兒)도! 13명이 옥(獄)사리”, 1933.1.26,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33012600209102007&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3-01-26&officeId=00020&pageNo=2&printNo=4351&publishType=00010>, 2019.12.15. 최종검색)
- 매일경제, “수감 한국여죄수의 실태”, 1968.5.6,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

- 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805060009920301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68-05-06&officeId=00009&pageNo=3&printNo=658&publishType=00020, 2019.12.15. 최종검색)
- 법률신문, “[판결]마약사범 미혼모에 ‘UN 아동권리협약’ 첫 적용 집행유예”, 2015. 9.18.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632&kind=AA03&key=>, 2019.12.15. 최종검색)
- 연합뉴스, “교정시설 수용자, 칸막이 없이 미성년 자녀 면회 가능”, 2019.4.5.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5145100054>, 2019.12.15. 최종검색)
- 한국경제, “교도소 콩밥은 ‘옛말’…재소자 100% 쌀밥 먹는다”, 2014.2.20.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402207863g>, 2019.12.15. 최종검색)
- KBS News, “유엔 수감자 처우 기준 60년 만에 개정…‘만델라 룰’ 적용”, 2015.5.2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81227>, 2019.12.15. 최종검색)

(6) 기타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중종실록 31권, 중종 13년 1월 6일 병오(丙午) 1번째 기사, 국편영인본 15책. (http://sillok.history.go.kr/id/kka_11301006_001, 2019.12.15. 최종검색)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 84권, 광해 6년 11월 26일 갑술(甲戌) 3번째 기사 국편영인본 32책. (http://sillok.history.go.kr/id/kob_10611026_003, 2019.12.15. 최종검색)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 중초본 36권, 광해 8년 6월 3일 임인(壬寅) 1번째 기사 국편영인본 28책. (http://sillok.history.go.kr/id/kob_10806003_001, 2019.12.15. 최종검색)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53권, 세종 13년 7월 28일 경인(庚寅) 3번째 기사 국편영인본 3책. (http://sillok.history.go.kr/id/wda_11307028_003, 2019.12.15. 최종검색)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57권, 세종 14년 7월 11일 정묘(丁卯) 3번째 기사 국편영인본 3책. (http://sillok.history.go.kr/id/wda_11407011_003, 2019.12.15. 최종검색)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familynet.or.kr/introduce/business/oth>

- eragency/otheragency2.do, 2019.12.15. 최종검색)
- 경찰청 내부자료. 2019년 10월.
- 관계부처 합동,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2016.12.27.
- 관계부처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자료)”, 2019.
- 교정본부 홈페이지, 장소변경접견 안내. (<http://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072/subview.do>, 2019.12.15. 최종검색)
- 권수진, “일본 수용자 자녀양육 현황 등 자문회의 및 시설참관”, 국외출장복명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0.4.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필요, 제도개선 등 권고”, 2019.5.30.
- 권창모, “대만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 권창모, “임산부 수용자 및 수용자 자녀양육 지원의 역사적 발전”, 「제2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0.4.
- 금용명, “일본의 임산부 및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제도”, 「제3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1.1.
- 김경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27호, 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8.
- 김영식, “독일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1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7.8.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1052&cid=43667&categoryId=43667>, 2019.12.15. 최종검색)
- 박선영, “미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을 위한 처우”, 「제2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0.4.
- 박선영, “영국의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처우”, 「제3차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워크숍 발표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1.1.
-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스마트접견예약. (<http://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110/subview.do>, 2019.12.15. 최종검색).
- 법무부 보도자료, “교정시설에서도 엄마, 아빠를 반갑게 만나요”, 2019.7.16.
- 법무부 보도자료, “수용자 자녀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 2018.12.12.

- 법무부 사회복귀과, “형집행법 개정에 따른 수용자 자녀 보호 지원제도 운영계획(안)”, 2019.
- 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8.
- 사단법인 두루, 두루활동. (http://duroo.org/bbs/list.php?m_seqno=2, 2019.12.15. 최종검색)
- 사단법인 세진회, 수용자 자녀 사역. (<http://sejin.org/chnet2/home/?type=sub&step1=8&sid=81>, 2019.12.15. 최종검색)
- 신연희,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아이들: 지원필요성과 지원방안”, 「한일 수용자자녀 및 가족지원에 관한 실태와 과제 정책세미나」 발표문, 국회의원 유승희 의원실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2015.
- 신연희, “수용자자녀들의 상황과 관련제도의 과제 :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수용자 및 출소자 가족 지원제도와 교정복지의 실현」, 제30회 아시아교정포럼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9.
- 여성가족부, 『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19.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안내. (https://www.fostercare.or.kr/business/?mode=business_03, 2019.12.15. 최종검색)
-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 통계청.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 2019.12.15. 최종검색)
-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53b6ac387fc47369c4a50c4a908d2eb>, 2019.12.15. 최종검색)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고전번역서 목민심서 형전 제3조 신형(愼刑), 장순범 역, 1986.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288A_0100_050_0080, 2019.12.15. 최종검색)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 출소자 주거지원 사업. (https://koreha.or.kr/sub/02_01_6.do?MN1=3&MN2=16&MN3=212&MN=212, 2019.12.15. 최종검색)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지원. (https://koreha.or.kr/sub/02_01_7.do?MN1=3&MN2=16&MN3=213&MN=213, 2019.12.15. 최종검색)
- 형법대전 형형업무(行刑業務) 제19절 보방규칙(保放規則) 제백팔십오조(第百八十五條). (http://db.history.go.kr/law/item/level.do?levelId=jlwb_190_0040_0010_0190_0010, 2019.12.15. 최종검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45호, 2019. 4. 23, 일부개정], 개정의 주요이유.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9D%98%EC%A7%91%ED%96%89%EB%B0%8F%EC%88%98%EC%9A%A9%EC%9E%90%EC%9D%98%EC%B2%98%EC%9A%B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6345,20190423,2019.12.15. 최종검색\)](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9D%98%EC%A7%91%ED%96%89%EB%B0%8F%EC%88%98%EC%9A%A9%EC%9E%90%EC%9D%98%EC%B2%98%EC%9A%B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6345,20190423,2019.12.15. 최종검색)))

2. 외국문헌

(1) 단행본

Sellin, T. *Pioneering in Penology : the Amsterdam Houses of Correction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University of Philadelphia Press, 1944.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2015.

House of Commons Health and Social Care Committee, Prison Health, *Twelfth Report of Session 2017-19*, 2018.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719/cmselect/cmhealth/963/963.pdf>, 2019.12.15. 최종검색)

(2) 논문

Barberet, Rosemary. "UN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Sanctions for Women Offenders(the Bangkok Rules): A Gendered Critique", *Papers* 2017, 102/2, 2017. (<http://dx.doi.org/10.5565/rev/papers.2336>, 2019.12.15. 최종검색)

Bilchik, S. "Mentoring: A Promising Intervention for Children of Prisoners", *Research in Actions*, issue 10, Eric, 2007.

Bronson, Jennifer/Sufrin, Carolyn. "Pregnant Women in Prison and Jail Don't Count: Data Gaps on Maternal Health and Incarceration", *Public Health Reports* vol. 134, SAGE journals 2019. (<https://journals.sagepub.com/doi>

/full/10.1177/0033354918812088, 2019.12.15. 최종검색)

- Butler, Roya/Dam, Andrew/Eberspacher, Sarah/Kelley, Charlotte/Pastor-Chermak, Alina. "Correctional Facilities", *The Georgetown Journal of Gender and the Law* vol.20,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2019.
- Byrne MW/Goshin LS/Joestl SS. "Interventions within Prison Nurseries. In J. Eddy & J. Poehlmann (Eds.),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 Handbook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Urban Institute Press, 2010.
- Byrne, Mary/Benning, Sara. "Prison Nursery Co-residence and Re-entry: New York Studies", *Healthy Generations*, University of Minnesota, 2015.
- Carlson, J. R. "Prison nurseries: A pathway to crime-free futures", *Corrections Compendium* vol.34 no.1,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2009.
- Elmalak, Seham. "Babies Behind Bars: An Evaluation of Prison Nurseries in American Female Prisons and Their Potential Constitutional Challenges", 35 *Pace L. Rev.* 1080, Pace Law Review, 2015.
- Fearn, NE/Parker, K. "Washington State's residential parenting program: An integrated public health, education, and social service resource for pregnant inmates and prison mothers.", *California Journal of Health Promotion* vol.2 no.4, California State University, 2004.
- Ferszt, Ginette/Palmer, Michelle/McGrane, Christine. "Where Does Your State Stand on Shackling of Pregnant Incarcerated Women?", *Nursing for Women's Health* vol.22, issue 1, Association of Women's Health, 2018.
- Griggs, L. Claire. "Birthing Barbarism: The Unconstitutionality of Shackling Pregnant Prisoners", *Journal of Gender, Social Policy and the Law* vol. 22 issue 1,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2011.
- Laufer, Samantha. "Reproductive Healthcare for Incarcerated Women: from 'Rights' to 'Dignity'", *American Criminal Law Review* vol.56,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2019.
- Öberg, Marko Divac "The Legal Effects of Resolu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General Assembly in the Jurisprudence of the ICJ",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6 no.5, EJIL 2006.

- Sufrin, Carolyn/Beal, Lauren/Clarke, Jennifer/Jones, Rachel/D. Mosher, William. "Pregnancy Outcomes in US Prisons, 2016-2017",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109 issue 5,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019. (<https://ajph.aphapublications.org/doi/10.2105/AJPH.2019.305006>(2019. 12.15. 최종검색))
- Turney, Kristin. "Understanding the Needs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What Educators Should Know", *American Educator*, 2019. (<https://www.aft.org/ae/summer2019/turney>, 2019.12.15. 최종검색)
- 矢野恵美, "犯罪者を親にもつ子どもについて考える—受刑者を親にもつ子どもを中心に", 法律時報 第89巻 第6号, 日本評論社, 2017.
- 立石直子, "受刑中の親を持つ子どもの問題: 子どもの困難と親との法的関係(小特集 犯罪者を親にもつ子どもについて考える)", 法律時報 第89巻 第6号, 日本評論社, 2017.

(3) 기사

- Bild, "Hinter Gittern: Der große BILD-Report aus deutschen Knästen, KINDER IM KNAST", 2013.11.12. (<https://www.bild.de/news/inland/gefaengnis/der-grosse-bild-report-aus-deutschen-knaesten-33798392.bild.html>, 2019.12.15. 최종검색)
- Concord Monitor, "Family Connections Center celebrates 20 years in NH corrections", 2018.9.29. (<https://www.concordmonitor.com/Family-Connections-Center-marks-20-years-in-NH-20443635>, 2019.12.15. 최종검색)
- Daytondaily News, "Mom feels blessed to have child with her in prison", 2017.5.15. (<https://www.daytondailynews.com/news/crime-law/mom-feels-blessed-have-child-with-her-prison/QkK1qBcOsiZkIVue427LjI/>, 2019.12.15. 최종검색)
- Midwifery Around the World, "Pregnant in Prison: Available Care for Pregnant Persons in Incarceration Facilities in the US and UK", 2018.12.12. (<https://medium.com/midwifery-around-the-world/pregnant-in-prison->

3db18bf109e3, 2019.12.15. 최종검색)

NBC News, "Prison nurseries give incarcerated mothers a chance to raise their babies — behind bars", 2018.8.4. (<https://www.nbcnews.com/news/us-news/prison-nurseries-give-incarcerated-mothers-chance-raise-their-babies-behind-n894171>, 2019.12.15. 최종검색)

NBC News, "Prison nurseries give incarcerated mothers a chance to raise their babies — behind bars", 2018.8.4. (<https://www.nbcnews.com/news/us-news/prison-nurseries-give-incarcerated-mothers-chance-raise-their-babies-behind-n894171>, 2019.12.15. 최종검색)

NPR, "In Ohio, Inmate Mothers Care For Babies In Prison", 2008.8.13. (<https://www.npr.org/templates/story/story.php?storyId=93548405>, 2019.12.15. 최종검색)

NPR, "Federal Legislation Seeks Ban On Shackling Of Pregnant Inmates", 2018.12.5.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8/12/05/673757680/federal-legislation-seeks-ban-on-shackling-of-pregnant-inmates>, 2019.12.15. 최종검색)

People, "Inside the Washington State Prison Nursery Where Inmate Moms Raise Their Babies Behind Bars", 2018.4.1. (<https://people.com/human-interest/washington-state-prison-nursery-inmate-moms/>, 2019.12.15. 최종검색)

Quartz, "Should a pregnant person ever go to prison?", 2019.4.6. (<https://qz.com/1587102/what-its-like-to-give-birth-in-a-us-prison/>, 2019.12.15. 최종검색)

Quartz, "Should a pregnant person ever go to prison?", 2019.4.6. (<https://qz.com/1587102/what-its-like-to-give-birth-in-a-us-prison/>, 2019.12.15. 최종검색)

SaukValley, "Pregnant behind bars: prison opens a special wing for mothers-to-be and postpartum inmates", 2019.9.9. (<https://www.saukvalley.com/2019/09/08/pregnant-behind-bars-prison-opens-a-special-wing-for-mothers-to-be-and-postpartum-inmates/auczpn3/>, 2019.12.15. 최종검색)

Süddeutsche Zeitung, "Mütter im Gefängnis: Das Wohl der Kinder hat keiner im

- Blick”, 2018.8.11. (<https://www.sueddeutsche.de/panorama/sz-werkstatt-mutter-kind-gefaengnis-1.4087792>, 2019.12.15. 최종검색)
- Süddeutsche Zeitung, “Wenn eine Mutter hinter Gittern sitzt”, 2018.8.11. (<https://www.sueddeutsche.de/leben/strafvollzug-und-familie-wenn-eine-mutter-hinter-gittern-sitzt-1.4085975>, 2019.12.15. 최종검색)
- The Guardian, “Baby dies in UK prison after inmate 'gives birth alone in cell': Police investigate unexplained death at Bronzefield women's prison in Surrey”, 2018.10.4.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oct/04/baby-dies-in-uk-prison-after-inmate-gives-birth-alone-in-cell>, 2019.12.15. 최종검색)
- The Washington Post, “Raising babies behind bars”, 2018.5.18.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local/wp/2018/05/11/feature/prisons-are-allowing-mothers-to-raise-their-babies-behind-bars-but-is-the-radical-experiment-in-parenting-and-punishment-a-good-idea/?utm_term=.5c9c5f568c76, 2019.12.15. 최종검색)
- Wifi News, “Program Allows Incarcerated Mothers Care For Newborns In Prison”, 2017.8.31. (<https://www.wfyi.org/news/articles/program-allows-incarcerated-mothers-care-for-newborns-in-prison>, 2019.12.15. 최종검색)
- Wyofile, “Born behind bars: Wyoming's approach to pregnancy in prison”, 2018.5.29. (<https://www.wyofile.com/born-behind-bars-wyomings-approach-to-pregnancy-in-prison/>, 2019.12.15. 최종검색)

(4) 기타 자료

- Abbott, Laura. “The Incarcerated Pregnancy: an Ethnographic Study of Perinatal Women in English Prisons”, Docto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Hertfordshire, 2018,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The-Incarcerated-Pregnancy%3A-an-Ethnographic-Study-Abbott/3d15e116a0e890c3236b802f0f1a1b0105d81401>, 2019.12.15. 최종검색)
- ACLU 홈페이지, State Standards for Pregnancy-Related Health Care and Abortion for Women in Prison, (<https://www.aclu.org/state-standards-pregnancy->

- related-health-care-and-abortion-women-prison-0, 2019.12.15. 최종검색)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홈페이지, ACLU Briefing Paper: The Shackling of Pregnant Women & Girls in U.S. Prisons, Jails & Youth Detention Centers, (<https://www.aclu.org/other/aclu-briefing-paper-shackling-pregnant-women-girls-us-prisons-jails-youth-detention-centers>, 2019.12.15. 최종 검색)
-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홈페이지, Committee Opinion 511: Health Care for Pregnant and Postpartum Incarcerated Women and Adolescent Females (2013), (<https://www.acog.org/Clinical-Guidance-and-Publications/Committee-Opinions/Committee-on-Health-Care-for-Underserved-Women/Health-Care-for-Pregnant-and-Postpartum-Incarcerated-Women-and-Adolescent-Females?IsMobileSet=false>, 2019.12.15. 최종검색)
-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https://www.aft.org/about>, 2019.12.15. 최종 검색)
- ARRWIP(Advocacy and Research on Reproductive Wellness of Incarcerated People) 홈페이지, PIPS project, (<https://www.arrwip.org/the-project>, 2019.12.15. 최종검색)
- Banardo 홈페이지, (<https://www.barnardos.org.uk/what-we-do/helping-families/children-with-a-parent-in-prison>, 2019.12.15. 최종검색)
- Beck-Online 홈페이지, BVerwG: Jugendhilfe in Mutter-und-Kind-Einrichtungen des Strafvollzugs, NJW 2003, S. 2399.
- Birth Companion, (<https://www.birthcompanions.org.uk/>, 2019.12.15. 최종검색)
- 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https://www.cdcr.ca.gov/adult-operations/fops/community-prisoner-mother-program/>, 2019.12.15. 최종검색)
- Cambridge Dictionary 홈페이지, doula, (<https://dictionary.cambridge.org/ko/%EC%82%AC%EC%A0%84/%EC%98%81%EC%96%B4/doula>, 2019.12.15. 최종 검색)
- Center for Healthy Mind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https://centerhealth>

- yminds.org/join-the-movement/supporting-kids-of-incarcerated-parents, 2019.12.15. 최종검색)
- Center on Juvenile and Criminal Justice 홈페이지, (<http://www.cjcj.org/Direct-services/Children-s-Waiting-Rooms.html>, 2019.12.15. 최종검색)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홈페이지,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supporting/support-services/incarceration/#state>, 2019.12.15. 최종검색)
-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Initiative, (<http://ctcip.org/>, 2019.12.15. 최종검색)
- Congress of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house-bill/6805>, 2019.12.15. 최종검색)
- CURA(Center for Urban and Regional Affairs) 홈페이지, (<http://www.cura.umn.edu/news/minnesota-prison-doula-project-supporting-incarcerated-pregnant-and-parenting-women>, 2019.12.15. 최종검색)
- Department of Corrections Washington State, "Residential Parenting Program", Fact Sheet, 2017, (<https://www.doc.wa.gov/docs/publications/fact-sheets/400-FS003.pdf>, 2019.12.15.최종검색)
- Division of Program Planning, Research and Evaluation, "Profile of participants: The Bedford Hills and Taconic Nursery Progrm in 1992", State of New York, 1993.
- DONA International 홈페이지, About DONA International, (<https://www.dona.org/the-dona-advantage/about/>, 2019.12.15. 최종검색)
- DONA International, What is a doula? (<https://www.dona.org/what-is-a-doula/>, 2019.12.15. 최종검색)
- Families Outside 홈페이지, (<https://www.familiesoutside.org.uk/>, 2019.12.15. 최종검색)
- Federal Bureau of Prisons 홈페이지, (https://www.bop.gov/inmates/custody_and_care/female_offenders.jsp, 2019.12.15. 최종검색)
- Federal Bureau of Prisons 홈페이지, Program Statement: Escorted Trip. No. 5538. 07, 2015, (https://www.bop.gov/policy/progstat/5538_07.pdf, 2019.12.15. 최종검색)

- Georgia General Assembly, 2019-2020 Regular Session - HB 345: Penal institutions; pregnant female inmates or a female inmate who is in the immediate postpartum period; provide prohibited practices, (<http://www.legis.ga.gov/Legislation/en-US/display/20192020/HB/345>, 2019.12.15. 최종검색)
- Government of UK, (<https://www.gov.uk/help-with-prison-visits>, 2019.12.15. 최종검색)
- Government of UK, Prison Life-Pregnancy and childcare in prison, (<https://www.gov.uk/life-in-prison/pregnancy-and-childcare-in-prison>, 2019.12.15. 최종검색)
- Helm, Angela. "Yesterday in Georgia, Women in Prison Regained Some of Their Dignity", 2019, (<https://www.theroot.com/yesterday-in-georgia-women-in-prison-regained-some-of-1838715676>, 2019.12.15. 최종검색)
- Horst, Belz. "Hilfen für Kinder von Inhaftierten - Eltern-Kind-Projekt-Chance", 2014, (<https://www.praeventionstag.de/nano.cms/vortraege/id/2712>, 2019.12.15. 최종검색)
- Illinois Birth Justice, (<https://www.illinoisbirthjustice.org/overview>, 2019.12.15. 최종검색)
- Indiana Department of Correction, (<https://www.in.gov/idoc/2857.htm>, 2019.12.15. 최종검색)
- Institute of Research on Povert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https://www.irp.wisc.edu/publications/factsheets/pdfs/Factsheet7-Incarceration.pdf> (2019.12.15. 최종검색)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https://www.theiacp.org/>, 2019.12.15. 최종검색)
- Lakin Correctional Center, (<http://www.prisonpro.com/content/lakin-correctional-center>, 2019.12.15. 최종검색)
- Lang, Jason/Bory, Christopher. "A Collaborative Model to Support Children Following a Caregiver's Arrest: Responding to Children of Arrested Caregivers Together", Connecticut Center for Effective Practice, 2012, (https://www.cga.ct.gov/ph/bhpoc/caq/related/20140101_2014/20140117/Presentation

- n%202.pdf, 2019.12.15. 최종검색)
- Library of Congress, United States of America, Last Updated 2015.7.2., (<https://www.loc.gov/law/help/children-residing-with-parents-in-prison/foreign.php>, 2019.12.15. 최종검색)
- Maria Montessori Institute 홈페이지, (<https://www.mariamontessori.org/outreach/born-inside/>, 2019.12.15. 최종검색)
- Michigan Prison Doula Initiative, Our doula program, (<https://momsbeyondbars.org/ourprogram>, 2019.12.15. 최종검색)
- Ministry of Justice 홈페이지, Management information notice: applications and admissions to prison mother and baby units, 2016,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mother-and-baby-units-applications-and-admissions>, 2019. 12.15. 최종검색)
- Minnesota Legislature 홈페이지, SF 2423(A bill for an act relating to public safety; addressing the needs of incarcerated women related to pregnancy and childbirth; authorizing an advisory committee; proposing coding for new law in Minnesota Statutes, chapter 241), (https://www.revisor.mn.gov/bills/text.php?number=SF2423&version=latest&session=ls88&session_year=2014&session_number=0, 2019. 12.15. 최종검색)
- Minnesota Prison Doula Project, (<https://www.mnprisondoulaproject.org/about>, 2019.12.15. 최종검색)
- Multnomah County Family Court, “Second Chances-A Guidebook for Parents Wishing to Reunite with their Children”, 2017, (<https://multco.us/file/66573/download>, 2019.12.15. 최종검색)
- National Information Centre on Children of Offenders(NICCO) 홈페이지, (<https://www.nicco.org.uk/>, 2019.12.15.최종검색)
- 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 (<https://nicic.gov/>, 2019.12.15. 최종검색)
- National Offender Management Service, Mother & Baby Units, 2014, (<https://www.justice.gov.uk/downloads/offenders/psipso/psi-2014/psi-49-2014-mother-and-baby-units.pdf>, 2019.12.15. 최종검색)
- Nepas 홈페이지, (<https://www.justice.gov.uk/contacts/prison-finder/durham/>

- visiting-information, 2019.12.15. 최종검색)
- NIACRO 홈페이지, (<https://www.niacro.co.uk/chip-children-imprisoned-parents>, 2019.12.15. 최종검색)
- Nohe, Lori. "West Virginia's premier program for Incarcerated Mothers", 연도미상, (http://www.aca.org/aca_prod_imis/Docs/Corrections%20Today/2014%20Articles/Nohe.pdf, 2019.12.15. 최종검색)
-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in New York States 홈페이지, (https://ocfs.ny.gov/main/incarcerated_parents/ (2019.12.15. 최종검색)
- Oklahoma State Legislature 홈페이지, HB 3393(An Act relating to prisons and reformatories; directing penal institutions, detention centers and jails to use least restrictive restraints on pregnant inmates; prohibiting use of restraints on inmates during labor and delivery; providing an exception; providing for publication of certain notice; directing penal institutions, detention centers and county jails to allow access to family member, friend or doula services for pregnant inmates; making certain acts unlawful; providing penalties; defining terms; providing for codification; and providing an effective date), (<http://www.oklegislature.gov/BillInfo.aspx?Bill=hb3393&Session=1800>, 2019.12.15. 최종검색)
- Ott, Marion. "Klein(st)kinder mit ihren Müttern in Haft. Eine ethnographische Studie zu Entwicklungsbedingungen im (offenen und geschlossenen) Strafvollzug. Forschungsbericht einer Pilotstudie in Mutter-Kind-Heimen des offenen und geschlossenen Vollzugs einer Justizvollzugsanstalt", 2012, (https://www.pedocs.de/volltexte/2012/5768/pdf/Ott_2012_Kleinstkinder_mit_ihren_Muettern_in_Haft_D_A.pdf, 2019.12.15. 최종검색)
- PACT 홈페이지, (<http://www.pact.co.uk/>, 2019.12.15. 최종검색)
- Pennsylva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https://www.cor.pa.gov/Pages/default.aspx>, 2019.12.15. 최종검색)
- POPS 홈페이지, (<http://www.partnersofprisoners.co.uk/what-pops-do/prison-visitor-centres/>, 2019.12.15. 최종검색)
- Pops the Club 홈페이지, (<https://popsclubs.org/>, 2019.12.15. 최종검색)

- POPS, Visitor's Information: HMP BUCKLEY HALL, 2018, (<http://www.partnersofprisoners.co.uk/wp-content/uploads/2013/01/VISITOR-INFORMATION-BUCKLEY-HALL-v4.pdf>, 2019.12.15. 최종검색)
- Prison Legal News 홈페이지,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House of Delegates Resolution 203 (A-10) Shackling of Pregnant Women in Labor 2010. (<https://www.prisonlegalnews.org/news/publications/american-medical-association-house-of-delegates-resolution-203-a-10-shackling-of-pregnant-women-in-labor-2010/>, 2019.12.15. 최종검색)
- Prison Reform Trust 홈페이지, (<http://www.prisonreformtrust.org.uk/>, 2019.12.15. 최종검색)
- Prisoners' Advice Service, "Release on Temporary Licence, Easy Read Self Help Toolkit", (<http://www.prisonersadvice.org.uk/wp-content/uploads/2017/10/Release-On-Temporary-Licence-Easy-read.pdf>, 2019.12.15. 최종검색)
- Prisoners' Families Helpline 홈페이지, (<https://www.prisonersfamilies.org/>, 2019.12.15. 최종검색)
- Rebecca Project for Human Rights/National Women's Law Center, Mothers behind Bars, National Women's Law Center, 2010, (<https://www.nwlc.org/sites/default/files/pdfs/mothersbehindbars2010.pdf>, 2019.12.15. 최종검색)
- Representative Karen Bass 홈페이지, "Women Members of Congress Introduce Legislation To Protect Pregnant Women In Custody", 2018, (<https://bass.house.gov/media-center/press-releases/women-members-congress-introduce-legislation-protect-pregnant-women,2019.12.15>. 최종검색)
- Shelter 홈페이지, (<https://england.shelter.org.uk/>, 2019.10.30. 최종검색)
- South Dakota Department of Corrections, (<https://doc.sd.gov/adult/facilities/wp/mip.aspx>, 2019.12.15. 최종검색)
- Statistisches Bundesamt 홈페이지, Strafvollzug-Strafgefangene nach Geschlecht, (<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Justiz-Rechtspflege/Tabelle/strafgefangene.html>, 2019.12.15. 최종검색)
-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https://www.tdcj.texas.gov/divisions/rpd/bambi.html>, 2019.12.15. 최종검색)

- The National Resource Center on Children and Families of the Incarcerated, (<https://nrccfi.camden.rutgers.edu/>, 2019.12.15. 최종검색)
- University of St. Thomas 홈페이지, “The Power of Restorative Love: Supporting Moms in Prison”, 2015, (<https://news.stthomas.edu/power-restorative-love-supporting-moms-prison/>, 2019.12.15. 최종검색)
- Washington State Legislature 홈페이지, HB 2016(Concerning midwifery and doula services for incarcerated women), (<https://app.leg.wa.gov/billssummary?BillNumber=2016&Initiative=false&Year=2017>, 2019.12.15. 최종검색)
- World Prison Brief Germany-Female prisoners, 홈페이지, (<https://www.prisonstudies.org/country/germany>, 2019.12.15. 최종검색)
- Youth.gov 홈페이지, (<https://youth.gov/youth-topics>, 2019.12.15. 최종검색)
- 대만 법무부 교정서 고용여자감옥 홈페이지, (<https://www.ksw.moj.gov.tw/>, 2019.12.15. 최종검색)
- 대만 법무부 교정서 도원여자감옥 홈페이지, 위생의료, (<https://www.tyw.moj.gov.tw/6031/6065/6075/124947/>, 2019.12.15. 최종검색)
- 대만 법무부 교정서 도원여자감옥 홈페이지, 작업, (<https://www.tyw.moj.gov.tw/6031/6065/6069/124916/>, 2019.12.15. 최종검색)
- 대만 법무부 교정서 홈페이지, 矯正機關常見收容問題 Q&A, 法務部矯正署(107年1月), 2018, 問 7. 請問女性懷孕中, 一定要入監服刑嗎?, (<https://www.mjac.moj.gov.tw/4786/4812/4822/92495/post>, 2019.12.15. 최종검색)
- 대만 법무부 교정서 홈페이지, 연혁, (<https://www.mjac.moj.gov.tw/4786/4788/4790/92471/post>, 2019.12.15. 최종검색)
- 대만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통계-교정통계, (https://www.rjsd.moj.gov.tw/rjsdweb/common/WebList3_Report.aspx?list_id=1216, 2019.12.15. 최종검색)
- 대만 전국법규자료고 홈페이지, 법무부조직법 연혁, (<https://law.moj.gov.tw/LawClass/LawHistory.aspx?pcode=I0000001>, 2019.12.15. 최종검색)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ing Correctional Treatment to Support the Inmate's Child Rearing

Kwon, Soo-jin · Shin, Yeun-hee

There are the fetus of pregnant women inmates and infants under 18 months old who were born to the inmates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Despite their own innocence, they are forced to live in correctional facilities due to their parents' crimes. Also, there are young children of inmates left behind in society. This study is aimed at improving correctional treatment to support the inmate's child rearing so that they can grow up in a better environment without being alienated from society.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in detail the laws, policies, current situations and foreign cases related to the treatment of pregnant inmates, infants under 18 months old and their mother inmat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inmates who are parents of children under 12 years of age.

We looked at the legal system that considers raising children of Korean inmates. At present, the domestic rul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custody of children of inmates are provided in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its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 in Korea. Guidelines for the Support of Inmates' Social Return are provided as well.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agreements related to children of incarcerated women include the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Nelson Mandela Rules), UN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men Prisoners and Non-Custodial Sanctions for Women Offenders(the Bangkok Rule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Recommendation CM/Rec(2018)5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concerning children with imprisoned parents.

In this study we have conducted 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with inmates to get a better picture of the situat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children of the survey respondents were in a parenting environment that lacked the presence or stability of the care giver. Half of the inmates' children were raised in families where their parents were not legally married. In many cases a single parent raises a child, and it was evident that the number of households where grandparents take on the role of parents is increasing. And it turns out that many of inmates' families are poor, and nearly 20 percent of them were the poorest families supported by the state. Also, the majority of inmates' children had lived with their parents before parent's incarceration, with some children being present at the moment their parents were taken into police custody. In particular, more than 70 percent of the children of inmates were unaware of their parents' detention, and most of the incarcerated parents did not want their children to know about it in the future.

For comparative legal study, we looked at the current situation of supporting for pregnant inmates, nursing infants and inmates' children in correctional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Germany, Japan and Taiwan, and there were some points we could refer to. The United States has been working on establishing laws to support pregnant women in correctional facilities, including data analysis on pregnant inmates and a ban on the use of restraints on them. Using the Doula system,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port female inmates before and after pregnancy, and provide maternal and caring training. The United Kingdom supports pregnant inmates and their babies through "Birth Companions" and has set up and operated mother-baby units at correctional facilities. Germany treats pregnant inmates equal to ordinary pregnant citizens with its federal and state laws. In addition, German correctional

facilities also operate mom-child home and hire nursing teachers. Caritas association of Germany also has an online counseling web site for inmates' families and children. Japan currently operates a number of women specialized correctional facilities. Japan began to entrust the children of inmates to child care facilities of each local government since the 2000s, when overcrowding became a problem. There are several women prisons in Taiwan, and separate facilities such as infant shelters, nursery rooms and outdoor playgrounds. Also, nursing teachers for inmates' children are assigned as many as the number of infants. In particular, infants of inmates aged 2 and up are allowed to commute to an outside nursery.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 the suggestion to improve treatment for supporting the inmate's child rearing.

First, it is advised to supply sufficient nutrition for pregnant inmates, expand cooling and hot water baths, improve the living room environment, operate the maternal and caring training and prepare related guidelines. Second, for inmates' infants care in correctional facilities, construction of additional women's prisons and child care facilities by local correctional offices are proposed. To improve the living room environment for infants in prison, expanding the purchase of essential items on inmate's own account for infant care and operating the infant care program are necessary. Third, to support the children of inmates left in society, when their parents are arrested, children should be treated delicately to reduce shock. Also, providing entrusted facilities, information for inmates' children, more possibilities for the family ties, improving their meeting condition such as family access and Smart visitation(Remote Inmate Visitation using a smartphone), and supporting the role of parents are advised. Fourth, as an alternative criminal policy, pregnant inmates and inmates with children underage could be placed in close range correctional facilities. And Leave for Childcare could be another option. Fifth, minimizing detention for pregnant or defendant

with young children is proposed. Trial without detention, weekend detention, weekday detention, and home detention are also suggested.

Key words: Correctional Treatment, the Inmate's Child, Pregnant Inmate, Inmates with Child, Woman Inmates, Women's Prison.

자녀 지원을 위한 부모대상 조사

본 조사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자녀와 양육자를 돕고 관련분야의 정책마련에 사용될 것입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 8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년 8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초등학생 이하 자녀(1세~13세 이하)가 있는 분만 답변해 주세요.

1. 귀하에게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습니까? (13세 이하 자녀)
_____ ① 있음 _____ ② 없음 (☞ 답변을 중단하여 주세요)
2. 귀하의 자녀들은 총 몇 명이며, 이 중 초·중·고등학교(13세이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총 자녀수 ()명. 초·중·고등학교 이하 자녀 ()명
3. 자녀(들)별로 다음 사항들에 대해 답변에 √ 표시해 주세요.

초·중·고·대학 학생 이하 자녀	자녀 나이	경찰 연행당사자 자녀 소재	경찰연행-구속 전 자녀 돌봄자	구치소(교도소) 수용 후 자녀돌봄자	현재 자녀돌봄자	수용사실을 자녀가 아는지요?	수용 전에 자녀와 함께 살았나요?
자녀 1		① 현장에 함께 있었음 ② 현장에 없었음	① 귀하 배우자 ② 귀하 부모 ③ 귀하 배우자 부모 ④ 친인척, 지인 ⑤ 시설 ⑥ 자녀끼리만 있음 ⑦ 기타 ⑧ 모르겠음	① 귀하 배우자 ② 귀하 부모 ③ 귀하 배우자 부모 ④ 친인척, 지인 ⑤ 시설 ⑥ 자녀끼리만 있음 ⑦ 기타 ⑧ 모르겠음	① 귀하 배우자 ② 귀하 부모 ③ 귀하 배우자 부모 ④ 친인척, 지인 ⑤ 시설 ⑥ 자녀끼리만 있음 ⑦ 기타 ⑧ 모르겠음	① 알고 있음 ② 모르고 있음 ③ 확인 못했음	① 예 ② 아니오

초등 학생 이하 자녀	자녀 나이	경찰 연행당시 자녀 소재	경찰연행-구속 전 자녀 돌봄자	구치소(교도소) 수용 후 자녀돌봄자	현재 자녀돌봄자	수용사실을 자녀가 아는지요?	수용 전에 자녀와 함께 살았나요?
자녀 2		① 현장에 함께 있었음 ② 현장에 없었음	① 귀하 배우자 ② 귀하 부모 ③ 귀하 배우자 부모 ④ 친인척, 지인 ⑤ 시설 ⑥ 자녀끼리만 있음 ⑦ 기타 ⑧ 모르겠음	① 귀하 배우자 ② 귀하 부모 ③ 귀하 배우자 부모 ④ 친인척, 지인 ⑤ 시설 ⑥ 자녀끼리만 있음 ⑦ 기타 ⑧ 모르겠음	① 귀하 배우자 ② 귀하 부모 ③ 귀하 배우자 부모 ④ 친인척, 지인 ⑤ 시설 ⑥ 자녀끼리만 있음 ⑦ 기타 ⑧ 모르겠음	① 알고 있음 ② 모르고 있음 ③ 확인 못했음	① 예 ② 아니오
자녀 3		① 현장에 함께 있었음 ② 현장에 없었음	① 귀하 배우자 ② 귀하 부모 ③ 귀하 배우자 부모 ④ 친인척, 지인 ⑤ 시설 ⑥ 자녀끼리만 있음 ⑦ 기타 ⑧ 모르겠음	① 귀하 배우자 ② 귀하 부모 ③ 귀하 배우자 부모 ④ 친인척, 지인 ⑤ 시설 ⑥ 자녀끼리만 있음 ⑦ 기타 ⑧ 모르겠음	① 귀하 배우자 ② 귀하 부모 ③ 귀하 배우자 부모 ④ 친인척, 지인 ⑤ 시설 ⑥ 자녀끼리만 있음 ⑦ 기타 ⑧ 모르겠음	① 알고 있음 ② 모르고 있음 ③ 확인 못했음	① 예 ② 아니오
자녀 4		① 현장에 함께 있었음 ② 현장에 없었음	① 귀하 배우자 ② 귀하 부모 ③ 귀하 배우자 부모 ④ 친인척, 지인 ⑤ 시설 ⑥ 자녀끼리만 있음 ⑦ 기타 ⑧ 모르겠음	① 귀하 배우자 ② 귀하 부모 ③ 귀하 배우자 부모 ④ 친인척, 지인 ⑤ 시설 ⑥ 자녀끼리만 있음 ⑦ 기타 ⑧ 모르겠음	① 귀하 배우자 ② 귀하 부모 ③ 귀하 배우자 부모 ④ 친인척, 지인 ⑤ 시설 ⑥ 자녀끼리만 있음 ⑦ 기타 ⑧ 모르겠음	① 알고 있음 ② 모르고 있음 ③ 확인 못했음	① 예 ② 아니오

4.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세요.

1) 귀하의 수용사실에 대해 자녀가 모르고 있다면, 향후 자녀에게 알릴 것입니까?

_____ ① 알리겠다(이유 : _____)

_____ ② 알리지 않겠다(이유 : _____)

_____ ③ 이미 알고 있다

2) 자녀와의 접견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_____ ① 현재보다 자주 접견하고 싶음(이유 : _____)

_____ ② 현재의 접견정도에 만족함

_____ ③ 자녀와 접견을 원하지 않음(이유 : _____)

3) 자녀와의 접견할 때 불편하였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4) 다음은 귀하께서 자녀와 교류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한 귀하의 경험과 생각을 묻겠습니다.

항 목	수용된 후 자녀와 교류(이용경험)	앞으로 이용할 의사	선호하는 우선순위를 매겨 주세요. 1순위~10순위
①서신	① 한적 있음 ② 한적 없음	①적극적 이용 ②보통임 ③이용의사 없음	
②전화	① 한적 있음 ② 한적 없음	①적극적 이용 ②보통임 ③이용의사 없음	
③이메일	① 한적 있음 ② 한적 없음	①적극적 이용 ②보통임 ③이용의사 없음	
④일반접견	① 한적 있음 ② 한적 없음	①적극적 이용 ②보통임 ③이용의사 없음	
⑤가족접견	① 한적 있음 ② 한적 없음	①적극적 이용 ②보통임 ③이용의사 없음	
⑥화상접견	① 한적 있음 ② 한적 없음	①적극적 이용 ②보통임 ③이용의사 없음	
⑦스마트접견	① 한적 있음 ② 한적 없음	①적극적 이용 ②보통임 ③이용의사 없음	
⑧가족사랑캠프	① 한적 있음 ② 한적 없음	①적극적 이용 ②보통임 ③이용의사 없음	
⑨가족만남의 날	① 한적 있음 ② 한적 없음	①적극적 이용 ②보통임 ③이용의사 없음	
⑩가족만남의 집	① 한적 있음 ② 한적 없음	①적극적 이용 ②보통임 ③이용의사 없음	

5) 귀하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_____ ①매우 좋다 _____ ②좋은 편이다 _____ ③보통이다

_____ ④나쁜 편이다 _____ ⑤매우 나쁘다

- 6) 귀하와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_____ ①매우 좋다 _____ ②좋은 편이다 _____ ③보통이다
_____ ④나쁜 편이다 _____ ⑤매우 나쁘다
- 7) 현재 자녀가 살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어느 정도입니까?
- _____ ①매우 부유한 편 _____ ②부유한 편 _____ ③보통
_____ ④가난한 편 _____ ⑤매우 가난한 편
- 8) 현재 자녀가 살고 있는 가정이 가난하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가요?
- _____ ①수급자임 _____ ②수급자 아님 _____ ③잘모르겠음
5. 귀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 1) 귀하 자녀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해당사항 모두에 표시해 주세요.)
- _____ ①질병 _____ ②학교부적응
_____ ③보호자와 갈등 _____ ④비행, 일탈행동
_____ ⑤경제적어려움 _____ ⑥보호자 건강문제
_____ ⑦기타 () _____ ⑧자녀 상황을 모름
- 2) 다음은 자녀들을 위해 사회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목록입니다. 필요성의 정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보통이다	거의 필요 치 않다	전혀 필요 없다
(1) 적절한 보호자 연계·선정	⑤	④	③	②	①
(2) 자녀가정 경제적 지원	⑤	④	③	②	①
(3) 자녀 심리안정 지원	⑤	④	③	②	①
(4) 학교생활·학업 지원	⑤	④	③	②	①
(5) 자녀양육자 교육·심리적지원	⑤	④	③	②	①
(6) 귀하와 원활한 만남 지원	⑤	④	③	②	①
(7) 건강관련 지원(수술연계, 병원비 등)	⑤	④	③	②	①
(8) 문제행동 교정을 위한 상담 등	⑤	④	③	②	①

- 3) 교정시설 내부 또는 인근에 수용자 어린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이 있다면 이용하
실 생각이 있는지요?
_____ ① 예(이유 : _____) _____ ② 아니오(이유 : _____)
- 4) 출소 후 자녀와 함께 살 계획이십니까?
_____ ① 예 _____ ② 아니오
- 5) 출소 후 자녀와 함께 살 계획이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순위를
매겨주세요 (1순위-5순위)
_____ ① 자녀와 함께 살 집 마련 _____ ② 생활비 마련
_____ ③ 자녀와 관계회복 _____ ④ 배우자와 관계회복
_____ ⑤ 기타 (_____) _____ ⑥ 자녀와 함께 살지 않을것임
6. 다음은 귀하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통계처리용으로만 사용되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__ ① 남자 _____ ② 여자
- 2) 귀하의 나이를 적어주세요. 만 _____ 세
- 3)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어떠합니까?
_____ ① 미혼 _____ ② 법적 혼인 _____ ③ 동거
_____ ④ 이혼 _____ ⑤ 이혼진행 중 또는 사실상 이혼
_____ ⑥ 사별
- 4) 귀하의 현재 수용상태는 무엇입니까?
_____ ① 미결 _____ ② 기결 _____ ③ 기타(_____)
- 5) 귀하의 죄명을 적어주세요. (_____)
- 6) 현재 사건의 형기와 잔여기간을 적어주세요.
전체: _____ 년 _____ 개월 / 잔여: _____ 년 _____ 개월
- 7) 현재 사건을 포함하여 교정기관에 수용된 적은 몇 번인가요? 총 _____ 회

♣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와 귀하 자녀들의 건강과 평안,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구총서 19-AA-07

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방안

발 행 | 2019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한 인 섭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10,000원

인 쇄 |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02) 2272-0307

I S B N | 979-11-89908-34-8 9336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06764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T. 02-575-5282 www.kic.re.kr

